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시행방안

2005. 10

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 : 한국수산회  
협동연구기관 : 부경대학교

해 양 수 산 부

# 제 출 문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시행방안**" 과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년 10월**

주 관 연 구 기 관 명 : 한국수산회

총 괄 연 구 책 임 자 : 박 규 석

연 구 원 : 이광남, 이진주, 정영태, 박정환,  
김규태, 서병귀, 김민형, 최광림  
박재홍, 유성택, 신재정

협 동 연 구 기 관 : 부경대학교

협 동 연 구 책 임 자 : 이 상 고

연 구 원 : 박철형, 박정석, 이창수, 백진석,  
김형철, 최상선, 한경숙

# 요 약 문

## I. 제 목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시행방안 연구

##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낚시 인구 증가로 낚시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향후 우리나라 낚시가 제도적 관리 없이 자유방임상태로 지속될 경우, 낚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물고기자원 남획 등과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낚시가 국민적 레저 산업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낚시 및 관련 산업을 파악하고, 낚시관리 중심으로 외국의 주요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낚시관리체제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모델 개발과 더불어 종합적인 낚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 III.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1차년도 연구와 2차년도 나누어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1차년도는 낚시관련 구체적 실태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낚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관리·보존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실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낚시면허제의 개념 분석 및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세미나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낚시면허제 도입에 따른 각 계층의 여론을 수렴하였고, 대국민 홍보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외국의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일반국민, 낚시인, 조구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관리제도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바다와 민물로 구분하여 이용 및 관리권자 중심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관리 유형을 제시하였고, 낚시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률, 주관부

서, 낚시단체 지원, 홍보, 낚시 통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 IV.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계획

### IV-1. 연구개발 결과

#### IV-1-1. 낚시관리 모델 제시

##### 1. 낚시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

바다의 해수면에 대한 이용권리자(어업권자) 및 공유수면과 민물의 내수면 수면관리자 또는 개인소유 수면에서 개발한 낚시터에 대해 종합적인 이용계획 수립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자(관리자) 수면은 권리자에게 이용권을 전담케 한다. 이를 제외한 기타 해수면의 공유수면은 지자체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의 낚시관련 업계 또는 낚시인에게 새로운 부담(2중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낚시터에 대한 인프라가 거의 없는 실정임으로 낚시이용료를 징수할 경우는 선투자 후 회수를 원칙으로 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2. 바다 및 민물낚시 관리 유형별 모델

###### 가. 바다낚시 관리유형별 모델

바다낚시에 대한 이용권자 및 현행 낚시어선업, 공유수면 등을 고려하여 관리유형별 모델을 제시하면 제1유형(어업인단체 관리형), 제2유형(낚시어선 관리형), 제3유형(지자체 관리형)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낚시터에 대한 이용, 조성, 지원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 나. 민물낚시 관리유형별 모델

민물에 대한 이용권자, 지자체 및 공공기간 관리 수면, 개인 소유 등을 고려하여

관리유형별 모델을 제시하면 제1유형(어업인단체 관리형), 제2유형(지자체관리형), 제3유형(개인 관리형), 제4유형(공공기관 관리형)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낚시터에 대한 이용, 조성, 지원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1] 바다 및 민물낚시 유형별 관리모델

분	유형별 모델명	관 리 수 역 및 방 안
바다 낚시	제1유형 (어업인단체 관리형)	어업면허(마을어업, 협동양식업, 정치망 등)어장 및 유어장에 해당 어업인들이 주축이 되고 낚시단체가 협력하여 관리하는 방안
	제2유형 (낚시어선 관리형)	현행 낚시어선업법 관련 유어낚시선이 어업인단체(제1형)와 제3유형(지자체관리형)과 협의·조정하여 관리하는 방안
	제3유형 (지자체 관리형)	어업면허를 제외한 지자체관할의 공유수면에 개발한 낚시터
민물 낚시	제1유형 (어업인단체 관리형)	어업면허(마을어업, 협동양식업, 정치망 등) 어장 및 유어장에 낚시단체가 협력하여 관리하는 방안
	제2유형 (지자체 관리형)	어업 면허를 제외한 지자체 관할의 공유수면에 개발한 낚시터
	제3유형 (개인 관리형)	개인이 사유지에 개발한 낚시터
	제4유형 (공공기관 관리형)	수자원공사 관리수면(댐)과 농업기반공사(농업용 저수지)가 개인과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료낚시터는 현행대로 유지함을 원칙으로 함

## IV-1-2. 낚시관리 모델별 주요 내용

### 1. 바다낚시 관리현황 및 유형별 모델 내용

#### 가. 바다낚시 관리 현황

##### (1) 접근성에 제한을 받지 않는 낚시터

해안선, 방조제 연장, 어촌계(마을어장등), 연안의 자연부락, 방파제 등의 낚시터에서 낚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안선 길이는 12,902km로 이중에서 도서인접이 8,397km(65%), 육지인접이 4,505km(35%)로 나타났으며 전국 방조제 길이는 총 1,155km으로 이중에서 국가관리가 전체의 271km(23.4%), 지자체관리 854km(74.0%) 조

사되었다.

전국의 어촌계 어업권 현황은 정치망어업 942건(5,421ha), 어류등양식어업 720건(2,603 ha), 복합양식어업 512건(5,844ha), 협동양식어업 343건(6,264ha), 마을어업 2,804건(128,587ha) 등 이다.

## (2) 접근성에 제한을 받는 낚시터

여객선이나 유사한 교통수단(어선 등)을 이용하여 이동해서 유인도 및 무인도서 지역에서의 낚시터를 말한다. 전국 도서수는 총 3,170개소(면적 3,787km<sup>2</sup>)이며, 이 중에서 유인도서 491개소(15.5%, 3,701km<sup>2</sup>)이고, 무인도서는 2,679개소(84.5%, 85km<sup>2</sup>) 조사되었다.

## (3) 유어낚시선을 이용하여 낚시를 하는 것

낚시어선척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4년말 현재 5,191척으로 조사되었다.

## 나. 바다낚시 유형별 관리모델 내용

### (1) 제1유형(어업인단체 관리형)

현재 바다낚시의 유어장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55조(유어장의 지정)는,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어업인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당해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역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 또는 낚시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4조(유어장의 지정 등)에 근거하도록 되어있다.

유어장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2월 현재, 전국에 유어장 46개소(979ha) 유료낚시터(21개소 545ha)), 체험어장(25개소(434ha))]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유어장의 연 이용인원(개소당)은 36명~10,500명(평균 1,445명)이며, 1회 이용료를 2,000원 ~ 50,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건수 및 면적은 '01년 32개소, 1,304ha에서 '04년 46개소, 979ha로, 연도별 평균 이용인원(개소당)은 '01년

912명에서 '04년 1,445명으로, 연도별 평균수입액(천원)은 '01년(6,500천원)에서 '04년(11,259천원)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현재의 제도 틀 내에서 낚시터 범위를 이용권자인 어업인들로 하여금 수산업법 제55조에 나타나 있는 유어장제도와 연계하여 낚시단체와 협력하여 관리하는 방안이다.

## (2) 제2유형(낚시어선 관리형)

낚시어선업은 낚시어선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낚시어선업신고필증의 교부현황 및 안전점검 실시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2004년도 신고척수 및 이용객 등 현황을 살펴보면, 점차적으로 낚시어선업 신고척수, 이용객 수 및 척당운영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척수는 전년에 비하여 768척(17%) 증가하였고 이용객은 442천명(31%) 증가, 척당운영수입은 2백만원(23%) 증가하였다.

현행 낚시어선업은 현재 체제와 같이 추진하되, 어업인단체와 지자체간의 협의 및 조정을 통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즉, 낚시어선에 요금을 지불한 후 어선을 타고 갯바위나 연안 해역에서 낚시를 하는 낚시인들이 2중으로 어촌계 등(제1유형 및 제3유형)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이용 요금에 대해서는 낚시어선 선주와 지자체 또는 어촌계와 협의 및 조정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 (3) 제3유형(지자체 관리형)

수산업법상 어업인들이 해면에서 면허받은 마을어업, 복합양식장, 양식장, 정치망 등 이외의 수면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는 낚시터를 개발하여 관리하는 방안(방조제 및 방파제 등)이다. 방파제의 경우는 중앙정부(해수부)와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용권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한다. 방조제 1,155km 중 국가관리 271km (23.4%), 지자체관리 854km(74.0%)이다.

현재는 지자체에서 직접 및 위탁하여 운영하는 바다낚시터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지원하의 개발 및 지자체 자체별로 먼저 투자 및 개발하여, 여건 조성 후 지자체 실정에 맞는 낚시이용료 부과하는 방안(선투자 후 낚시이용료 회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권리자(관리자)가 있는 무인도에 갯바위 낚시를 할 경우 낚시에 대한 이용요금

낚시인에게 이중으로 지불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주와 무인도 관리자(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이용요금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 이는 각 지자체별로 해양관광단지 조성 및 어촌종합개발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관광어촌 발전 도모, 인접 관광지 개발과 연계가 가능하여,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표 2] 바다낚시 관리 모델별 주요 내용

유형별	낚시터 범위	관리 및 운영주체	관리 방안	관련법
제1유형 (어업인단체관리형)	마을어업, 협동양식업, 정치망 등	어업인 단체 (어촌계)	어촌관광과 연계하여 어업인 소득 도모	수산업법 55조
제2유형 (낚시어선 관리형)	현행 낚시어선 영업	어업인단체와 지자체와 협의	어업인 단체와 지자체간의 협의 및 조정을 통한 운영방안	낚시어선업법
제3유형 (지자체관리형)	어업면허를 제외한 지자체 관할 공유수면 및 인접수면에서 개발한 낚시터	지자체	관광어촌 발전 도모 인접 관광지 개발과 연계 가능, 시너지효과 도모	무

주) 제1유형(어업인단체 관리형), 제2유형(낚시어선 관리형), 제3유형(지자체관리형)

## 2. 민물낚시 관리 모델

### 가. 민물낚시 관리 현황

내수면에서 유어행위의 질서 확립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혹은 시도지사가 어구, 시기, 대상 및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내수면어업법 제18조).

민물(내수면)은 바다(해수면)와 달리 이용권자 및 수면관리자 있어 차이 존재하며 내수면은 해수면과는 달리 직접 소유·점유·이용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수면관리자 및 이용자가 존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내수면에서는 유료낚시터의 운영은 낚시터(강, 호수, 저수지 등)가 될 수 있는 곳이 국, 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에 따라 다르고, 관리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허가권과 단속권을 가지고 있다. 내수면낚시터는 전국 6,000여곳으로 추정(이중 유료낚시터 : 약 540개소)되고, 무허가 유료낚시터가 500여개소로 추정된다.

## 나. 민물낚시 유형별 관리모델 내용

### (1) 제1유형(어업인단체 관리 모델)

내수면 어업현황을 살펴보면, 면허어업은 2004년 12월말 현재, 전체 166건(양식어업 : 124건, 공동어업 : 42건)이고 허가어업은 4,973건 중 자망이 42%, 대부분 패류채취, 각망, 낚시업, 연승, 종묘채포, 낭장망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고어업은 전체 3,419건 중 육상양식이 74%로 가장 많았다.

내수면 양식계(면허)어장에 대한 낚시터 운영권은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어업인들과 낚시단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있다.

### (2) 제2유형(지자체 관리형)

지자체 관할의 하천(강), 호수, 저수지 등에 대한 낚시터를 개발하여 관리하는 방안이며, 현재 이들 낚시가능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허가권과 단속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이와 연계가 가능하다.

지자체 지역에 있는 국·공유지를 이용하여 낚시터를 개발할 중앙정부(관할 중앙정부, 건교부 및 농림부 등)와 협의하여 낚시터를 개발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특히 지자체관할의 하구호 또는 자연호에 대한 낚시터 개발을 통한 지역 소득 창출 및 관련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낚시인구의 증가를 유도할 수도 있다.

현재 하천(강)에 이루어지는 유어낚시를 관리 및 규제하는 것으로서 내수면어업법에서 유어행위제한을 근거로, 서울시에서 한강의 수계를 관리하는 지자체관리형의 사례로서 한강의 유어낚시 관리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 (3) 제3유형(개인 관리형)

내수면에서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혹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면에서 개인이 낚시터를 조성하여 관리하는 방안이다. 내수면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허가낚시터, 사유지신고낚시터, 사유지무신고낚시터(불법낚시터)로 구분된다.

수입어종인 이식승인 어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 거쳐야한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불법낚시터 각종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 공공수면과 연결하지 않은 개인수면의 사유지 낚시터는 낚시업을 목적으로 농지법에 의해 농지전용을 득하고 낚시업 허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허가를 득할

수 있고, 아니하여도 내수면어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등의 유료낙시터로 허가 받지 않은 곳에 양어장으로 허가를 받아 유료낙시터로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약 500여곳으로 추정된다.

(4) 제4유형(공공기관 관리형)

내수면은 소유, 점유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수면관리자가 존재하고 있음으로 기존의 수면관리자로 하여금 현행대로 관리케 하는 방안이다.

중앙정부가 관리를 위임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및 농업기반공사 관할 수면은 다목적댐(13개소), 발전용댐(10개소), 생공용수댐(12), 농업용수댐(4), 저수지(18,750) 등이 있다. 특히,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유료낙시터는 약 540개소이며, 이들 낙시터는 농업기반공사와 개인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현행대로 관리제도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외래어종 낙시어용 입식 문제 및 기본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준수가 필요하다.

[표 3] 민물낙시 관리 모델별 주요 내용

구분	유형별	낙시터 범위	관리 및 운영주체	관리 방안	관련법
민물낙시	제1유형	마을어업, 협동양식업, 정치망 등	어업인 단체 (어촌계)	어촌관광과 연계하여 어업인 소득 도모	수산업법 55조
	제2유형	어업권 수면을 제외한 지자체 관할의 공유수면] - 하천, 댐, 호수, 저수지, 인공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 - 국가나 지자체 혹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관리하는 내수면	지자체	지역사회 관광어촌 발전 도모 인접 관광지 개발과 연계 가능, 시너지효과 도모	무
	제3유형	개인이 개발한 낙시터	개인	허가된 수면 관리	내수면어업법 제18조
	제4유형	중앙정부가 관리 위임을 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및 농업기반공사 관할 수면	정부 위탁관리 기관	현행 관리제도 유지를 원칙으로 함	

### IV-1-3. 낚시관리모델 요약

#### 가. 바다 및 민물낚시 관리모델 종합

전체적으로 낚시관리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첫째, 바다와 민물의 이용권자와 관리권자가 완전히 상이함으로 이에 기초하여 바다와 민물낚시 관리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둘째, 바다와 민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낚시관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셋째, 종합적인 낚시관리방안이 결정이 되면 모든 유형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준수해야 함이다(개인낚시터 및 공공기관 관리 낚시터 등). 넷째, 어느 유형이든 낚시단체와 협력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를 가장 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선 투자 후 이용료 회수).

이에 근거하여 바다낚시는 제1유형(어업인단체 관리형), 제2유형(낚시어선 관리형), 제3유형(지자체 관리형) 등 크게 3가지 유형, 민물낚시는 1유형(어업인단체 관리형), 제2유형(지자체관리형), 제3유형(개인 관리형), 제4유형(공공기관 관리형)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낚시터에 대한 이용, 조성, 지원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나. 바다 및 민물낚시 관리모델 차이점

동 모델에 대한 바다 및 민물낚시의 공통점은 바다 및 민물에서 자원이용권자인 어업인단체 중심의 각각 제1유형(어업인단체 관리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지자체관리형 바다 제3유형, 민물 제2유형은 지자체 관리하에 있는 공유수면, 방파제 및 방조제(국가소유인 경우 중앙정부와 협의)이나 하천(강), 하구호, 자연호 등에서 낚시터를 조성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차이점은 바다낚시의 경우는 민물에서는 없는 현행 낚시어선업법 관련 유어낚시선업이 존재함(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현재 없음)으로 제2유형(낚시어선 관리형)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동 유형은 낚시어선에 요금을 지불한 후 타 낚시터로 이동하여 낚시할 경우, 2중 부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어업인단체와 지자체간의 협의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유도하였다. 예를 들면, 어업인단체와 낚시단체간에 상호 협력하여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바다낚시에 비하여 민물낚시는 수면관리권자가 있음을 고려하여, 민물에서 사유지 낚시터 개발 및 운영의 경우는 제3유형(개인관리형)을 제시하였고, 수면관리권자가 정부인 경우는 제4유형(공공기관 관리형)으로 현행제도를 그

대로 수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표 4] 바다 및 민물낙시 관리 모델별 유사점과 차이점

	구분	유형별	모델명	낙시터 범위
유사한 사례	공동 (바다 및 민물)	제1유형	어업단체 관리형	바다 및 민물에서 수산업법 제55조 관련 마을어업, 협동양식업, 정치망 등에서 하는 낙시터
	바다	제3유형	지자체 관리형	어업면허를 제외한 지자체 관할 공유수면에서 개발한 낙시터
	민물	제2유형	지자체 관리형	어업권 수면을 제외한 지자체 관할의 공유수면] - 하천, 댐, 호수, 저수지, 인공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 - 국가나 지자체 혹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관리하는 내수면
차이	바다	제2유형	낙시어선 관리형	현행 낙시어선의 영업(민물은 없음)
	민물	제3유형	개인 관리형	개인이 개발한 낙시터
	민물	제4유형	공공기관 관리형	중앙정부가 관리 위임을 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및 농업기반공사 관할 수면

#### IV-1-4. 종합적인 낙시발전 방안

##### 1. 정책수립의 필요성 및 목표

###### 가. 정책수립 필요성

낙시인의 쓰레기 방치 및 떡밥 등 과도한 미끼사용으로 해양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원감소 및 어장이용을 둘러싼 어업인과의 마찰 발생을 해소해야 한다.

현재 낙시인의 안전문제나 편의시설 제공 등 낙시를 바람직한 국민 여가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낙시관련 업무의 종합적 관리 지원책이 없다. 5개 부처 17개 법률에 의거 각기 분산되어있다. 또한 갯바위나 방파제, 낙시선 등에서 매년 상당수의 사망·부상자 발생하거나 기상 특보 발효시에도 무리하게 출조하여 잦은 사고 등 낙시인의 안전조치 미흡실정임으로 이에 대한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따라서 낙시관련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낙시문화 정착을 위해 낙시업

발전을 포함한 종합적인 낚시관리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 나. 정책목표

낚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지원·육성을 통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낚시를 바람직한 국민 여가문화로 정착시키는 한편, 어촌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어촌사회 발전 및 어업인 소득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03 말 현재 낚시인은 570만명(바다 130)이고, 낚시터 16천개소(바다 10)에 이른다.

또한 서민들의 레저활동으로 방치되어 있는 낚시를 제도권내로 흡수하여 물고기 자원 및 낚시터 환경보호 등 바람직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 다. 추진 방향

낚시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 구축을 위한 관련법규 정비, 낚시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발전방안 마련하고 중앙정부는 낚시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수면 이용권자 및 관리권자로 하여금 낚시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각 관리주체가 관할수면에서 낚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유어낚시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지역 및 지자체 등의 실정에 맞는 낚시관리체제를 구축하고 낚시터 및 낚시단체, 낚시인, 낚시터용 물고기 자원조성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하여야 하며 기존의 어촌계(유어장) 또는 낚시 단체, 낚시 동호회, 자원봉사 모임 등을 활용하여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유도해야 한다.

## 2. 단계별 추진체계(안)

### 가. 단계별 추진목표 및 체계

단계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을 5년간(2006-2010년)으로 정하였으며, 1단계는 낚시발전 기반조성('05), 2단계 낚시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통한 낚시발전 체제 구축('06~'8), 3단계 국민의 삶 질 향상 차원의 이용 및 관리권자 중심의 낚시관리 체제 정착('11~'15)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표 5] 종합적인 낚시발전방안 목표 및 추진전략

단계별	목 표	추진전략
1단계 (’06)	낚시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기반 구축	<p>[낚시발전 기반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적인 낚시발전 실행을 위한 체제정비 및 제도개선 기반 구축</li> <li>· “연차별 중장기 종합적인 낚시발전계획” 수립(’06년말)</li> <li>· “낚시진흥법(가칭)” 제정 추진(’06~’07)</li> <li>· 낚시발전 본격추진을 위한 유어낚시팀 구성(’06)</li> <li>· 낚시발전 조기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계속)</li> <li>· 낚시관련 토털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06)</li> <li>· 낚시단체 해수부 일원화 추진(’06)</li> </ul>
2단계 (’07~’08)	법·제도정비를 통한 낚시 발전 체제 구축	<p>[낚시발전 체제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차원의 유어낚시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li> <li>· 바다 및 민물 낚시에 대한 이용 및 관리권자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모델별 적용을 통한 체제구축</li> <li>· 이용 및 관리권자별 주요 낚시터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이용 및 발전계획 추진</li> <li>· 낚시발전 모델별(바다/민물)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방안 마련 및 실시</li> <li>· 시범낚시터 선정 및 도상연습을 통한 실시 준비 및 실시</li> </ul>
3단계 (’09~’10)	국민 삶의 질 향상 차원의 이용 및 관리권자 실정에 적합한 낚시발전 체제 정착	<p>[낚시발전 체제정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적인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즐겁게 유어낚시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인 낚시터조성 체제를 정착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li> <li>· 중앙정부차원의 낚시발전 모델을 기초로 이용 및 관리권자 단위의 낚시관리체제로 전환</li> <li>· 낚시발전 정책별 목표에 대한 연차별 이행방안 점검 및 보완을 통한 쾌적한 낚시터 기반 확립</li> </ul>

나. 단계별 세부추진 내용

(1) 1단계 : 기반조성

(가) 계획기간 : 2006년

(나) 추진전략

- 종합적인 낚시발전 실행을 위한 체제정비 및 제도개선 등 기초적인 기반 구축
  - 낚시관련 부처간의 낚시관리 업무 역할 정비('06)
  - 낚시단체 및 관련 업계 현황조사('06-'08)
  - 낚시대표 단체 결성을 통한 정부와의 업무협조 체제 구축('06-'08)
  - 중장기 종합적인 낚시발전계획 수립('06)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모델 확정
    - 종합적 발전방안 계획 공청회 개최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정
  - ※ 낚시환경 조성 범위, 낚시인 지원방안, 낚시산업 지원방안 등 계 구축
- 제도정비를 위해 “낚시발전법(가칭)” 제정 추진('06~'07)
- 낚시발전 본격추진을 위한 낚시발전팀 구성 및 운영('06)
  - 종합적인 낚시발전을 위한 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한 유어낚시팀 설치

(2) 2단계 : 낚시발전 체제 구축

(가) 계획기간 : 2007~2008년(2개년)

(나) 추진전략

- 중앙정부차원의 유어낚시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07)
  - '06년도의 유어발전팀의 업무 및 조직을 확대 및 지방자체단체, 낚시관련 단체와의 유기적 관계 강화
- 바다 및 민물 낚시에 대한 이용 및 관리권자 지역 실정에 맞는 낚시발전 모델에 따른 시범실시를 통한 체제구축('07-'08)
  -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별 낚시관리 체제 문제점 발굴 및 개선·보완
- 이용 및 관리권자의 지역별 주요 낚시터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발전계획 추진
  - 지역 실정에 맞는 낚시발전 모델과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낚시관리 및 발전방안 세부 추진 계획 확정('07-'08)
- 중앙/수면 이용 및 관리권자/낚시단체 등 역할분담을 통한 연차적·체계적으로 실시
- 낚시발전 모델별(바다/민물)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방안 마련 및 실시
  - 낚시터 환경 개선, 낚시업계 진흥, 낚시인의 낚시문화 증진, 낚시대상 어자원 관리 계획 등
  - 낚시모델의 제도적 정착방안 평가 등을 통해 문제점을 수정·보완

(3) 3단계 : 낚시발전 체제 정착

(가) 계획기간 : 2009~2010(2개년)

(나) 추진전략

- 전국적인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즐겁게 유어낚시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인 낚시터 조성 체제를 정착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이용 및 관리권자의 지역실정에 맞는 낚시발전 모델 정착
- 중앙정부차원의 낚시발전 모델을 기초로 이용 및 관리권자 단위의 낚시관리 체제로 전환
- 유어낚시 발전 정책별 목표에 대한 연차별 이행방안 점검 및 보완을 통한 쾌적한 낚시터 기반 확립

3. 주요내용 세부추진 계획

가. (가칭)낚시발전법 제정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낚시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가칭)낚시발전법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낚시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수면마다 각기 다른 목적이 있으므로 낚시관련 기본적인 규정을 한곳으로 모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가칭)낚시발전법은 낚시발전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낚시에 관한 조장 및 진흥법으로 제정되어 수면이용권자 및 관리권자(어업인, 지자체, 개인 등)가 낚시에 관한 이용 및 관리가 가능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돕는다. 또한, 채포어종길이 제한, 어구어법의 제한, 채포금지기간, 금지구역 등 낚시인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도 포함되며, 낚시관련 단체, 언론기관 지원·육성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한다.

추진일정은 (가칭) “낚시발전법” 법안 연구용역('06. 2~'06. 7) 후, 낚시발전법 제정·시행('06~'07)을 하고, 낚시발전법 시행령 제정·시행('07년 이후)한다.

## 나. 낚시관리 전담부서 신설

유어낚시에 관한 종합적인 발전대책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낚시인의 안전문제나 편의시설 제공 등 낚시를 바람직한 국민 여가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낚시관련 업무의 종합적 관리대책 마련 및 지원도 필수다. 또한 해양환경오염 심화, 자원감소 및 어장이용을 둘러싼 어업인과의 마찰 조정의 역할도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낚시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낚시발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낚시터, 낚시인의 이용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낚시용 물고기자원 방류에 관한 사항, 낚시행위에 따른 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우수 낚시터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낚시용 쓰레기 봉투제 도입 등에 관한 사항과 낚시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낚시인 안전에 관한 사항이 그것이다.

이용 및 관리권자 지역 실정에 맞는 시범사업도 실시해야 한다. 바다 및 민물낚시에 대한 이용 및 관리권자의 지역 실정에 맞는 시범실시를 통해 낚시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추진일정은 낚시관련 정책을 총괄·관리하기 위한 (가칭) “낚시발전팀” 구성 및 운영(‘06. 5 - ‘07.4)하고, (가칭) “낚시발전과” 구성 및 운영, 팀에서 과로 승격(‘07.5 - 계속) 시킨다. 유어낚시에 관한 종합적인 발전대책 수립 및 시행(‘06)을 통해 낚시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06-계속)하고 바다 및 민물 낚시에 대한 이용 및 관리권자 지역 실정에 맞는 시범실시(‘07-‘08)를 한다.

## 다. 낚시용 물고기 자원조성

낚시터용 자원조성 및 방류사업 전개가 필요하고, 낚시 어종의 지속적 관리 및 자원량을 추정 조사하여 방류사업 확대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추진일정은 낚시용 물고기자원 방류 계획 수립(‘07) 후, 낚시용 물고기 자원량 추정(‘08)하고 낚시용 물고기 방류 사업을 추진(‘09- 계속)한다.

## 라. 낚시단체 지원·육성

먼저, 낚시인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어 민간중심의 환경보호운동으로 확산 필요하다. 그 후에 낚시인들의 통합된 의사전달을 위해 대표성이 있는 단체의 설립을 유도하고 대표낚시단체의 다양한 낚시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 지속적 정부지원이 필

요하다. 또한 여러 부처에 등록된 낚시단체를 해수부 중심으로 등록기관 이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진일정은 낚시단체 해양수산부로 이관 유도 추진('08까지) 후, 낚시관련 최고상위단체 결성 등록을 추진('06-'07)하고, (가칭)한국낚시총연합회를 재단법인화('07- 계속)한다.

#### 마. 환경친화형 미끼 및 낚시추 연구개발 지원

환경친화형 미끼 및 낚시추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제품개발 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대한 판매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낚시단체와 연계하여 제품사용을 권장하고, 환경친화적인 낚시대회 개최를 통한 낚시인의 인식을 제고시키며 친환경 낚시용구에 환경마크 부여 등의 친환경 낚시용구 제작 업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친환경 낚시터 사용 낚시인 낚시터 이용 할인 혜택 제공 등도 방법이다.

추진일정은 현행 낚시 미끼 및 낚시추 사용실태조사('06-'07)를 하고, 환경친화형 미끼 및 낚시추 연구개발('07)을 한 후, 환경친화형 미끼 및 낚시추를 상품화('08)한다.

#### 바. 낚시문화정착 캠페인

수산자원·해양환경·생태계의 중요성 등에 대한 자료 발간·배포와 낚시단체, 환경단체 등 NGO에 명예환경감시요원 등 적절한 역할 부여를 통해 정부와 연계 방안 추진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낚시관리제도의 조기정착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배 낚시대회 개최나 국정홍보보처 등 관계기관에 협력하여 홍보방안에 대해 추진이 필요하다. 낚시관련 TV 및 언론을 통한 홍보 강화도 중요하다.

추진일정은 해양수산부 장관배 낚시대회를 바다낚시대회, 민물낚시대회로 구별해 추진 개최('06)한다. 교육 및 홍보 목적의 연 간본으로서, 바다 및 내수면별로 주요 조획 대상 어종, 지역별 정보, 낚시환경 및 자원보호를 위한 홍보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유어핸드북을 발간('06) 하고, 우수낚시터 선정 및 장관표창수여('07)함으로써 해수욕장과 같이 매년 주요낚시터 등급화도 추진한다.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도 연중 계속 전개한다.

#### 사. 낚시포털사이트 운영

바다 및 민물낚시와 조구 및 미끼관련 모든 분야의 정보가 모이는 포털 사이트 운영하여 낚시인들에게 어류 생태 및 낚시터 정보 등 낚시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낚시관련 법제도 소개 및 우수낚시터 운영 사례를 제공하고 국내 낚시단체 및 관련 산업 연계, 전 세계 낚시관련 사이트와 연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육성함으로써 낚시관련 사업기회 창출할 수 있다.

추진일정은 유사한 포털사이트(Portal Site)를 벤치마킹하고, 낚시인 및 낚시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등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낚시포털사이트 구축을 위한 기초작업('06)을 한 후, 낚시포털사이트를 열고 지속적인 정보 수정·보완과 함께 사이트를 운영('07- 계속)한다.

#### 아. 아름다운 낚시터 100선 자매결연을 통한 낚시발전 도모

주요낚시터 및 낚시동호회, 낚시단체의 현황 파악을 추진하고 자매결연을 원하고 있는 어촌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정부가 주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대표 낚시단체가 주축이 되어 자매결연을 추진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추진일정은 분산되어 있는 낚시단체를 일원화('06)하고, 대표낚시단체 선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조성('07) 후, 본격적인 자매결연을 추진('08)한다.

#### 자. 낚시관련 산업 육성

낚시관련 산업의 범위 및 현황을 파악하고 친환경낚시용품에 대한 판매지원 대책과 함께, 관계부처와의 업무협의를 통한 산업관리의 해양수산부로 이관을 추진해야 하며, 낚시관련 산업협회 설립 추진 시 지원해야 한다. 추진일정으로는 낚시산업의 범위 및 실태조사('06-'07)를 마친 후, 낚시산업 지원방안 마련('08)하여 낚시산업에 대한 지원('09- 계속)을 실시한다.

#### 차. 낚시관련 통계구축

시군의 협조를 받아 바다 및 민물로 구분하여 1년 단위로 낚시기본조사에 관한 통계를 작성 한다. 기초적인 낚시통계자료 구축 후, 통계자료는 정책추진의 가장 기

본적인 자료이므로 일본과 같이 5년 단위로 유어낚시 센서스 조사를 한다. 유어낚시 인구, 낚시터, 조업업체, 주요 조획어종별 조획량, 출어경비, 연간 조획량, 낚시관련 경비 등 조사 항목도 개발한다.

추진일정은 매년 낚시기본통계조사('06)를 실시해 기초 자료를 작성한 후 유어낚시 센서스 조사 계획수립('07)을 통하여 유어낚시 센서스 도상연습 및 본격으로 실시('08)한다.

## IV-2.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낚시인은 쾌적한 환경에서 낚시를 즐기고, 낚시터 주변 지역주민들은 낚시인을 지역에 유치하여 관광소득으로 연결하여 상호발전이 가능하고, 낚시가 매력 있는 레저활동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실행가능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 자유방임 상태의 낚시관리를 보다 체계적인 낚시관리제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낚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종합관리를 위한 법적토대 및 주관 부서를 설립하여 낚시가 야외레저로서 사회적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산업적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차원의 추진시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이외에도 낚시관리에 대한 이론적 토대 및 제도적 도입 및 정착에 대한 기술적 정보를 제공과 더불어 낚시관리는 자유방임적 낚시가 지니는 과잉낚시, 생태환경의 왜곡과 같은 문제에서 발생하는 사회가치의 손실을 최소화 방안 및 낚시의 산업적 장애요소를 제거 방안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책임있는 낚시(responsible fishing)와 지속가능한 해양 레저산업(sustainable ecotourism)으로서의 성장 그리고 올바른 낚시문화 정착 분위기 조성과 제도적 낚시관리의 정책수단 확보, 국민의 자연환경보호, 수질오염방지 등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S U M M A R Y**

## **I . Title**

Models of Recreational Fishing System in Korea

## **II . Purpose of research and the importance**

The creation of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the overall development of the recreation fishing industry is needed to afford the increasing number of anglers appeared with the rise of the income level. If the Korean recreational fishing industry is left-alone without any institutional management, it'll be hard to anticipate the bright future of the fishing industry due to the problems such as over-fishing or garbage contamination produced in the process of fishing.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appropriate model for Korean recreational fishing, lay out the comprehensive scheme of developing the recreational fishing industry by grasping recreational fishing and other related industries, and compare them to the precedents of recreational fishing management system held in some leading countries.

## **III . Contents and range of the research**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contamination occurred by fishing and the concrete effects on resources preservation caused by fishing based on a thorough study of the actual conditions. The researcher(s) analyzed the concept and foreign cases of the recreation fishing, collected public opinion on carrying out the system by opening seminars and holding open hearings as well.

For the next step, the researcher(s) held an opinion survey to the general public, anglers, interested people such as the fishing companies and had a research in creating the solution of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on

the basis of the result.

As a consequence, we were able to suggest the management type appropriate to Korea's fishing industry centering around the users and managers dividing the saltwater to the freshwater and to set up the detailed promoting plan about the related laws, managing departments, fishing group assistance, public relations, and fishing statistics for comprehensive fishing management.

#### **IV. Results of the study and proposals for applying**

The basic concept of managing fishing is setting up the comprehensive utilization plan of the fishing place owned by the users of the sea surface(the fishermen), the managers of the public sea surface and the inland waters, and individuals. The surface that belongs to a rightful person(the manager) takes the whole responsibility in principle.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are in charge of the other sea surfaces as a rule, but in a way to minimize the additional burden(which is charged double) to the fishing related industry and the fishers.

There are three models of seawater and freshwater management, according to the users and current fisherboat business of sea fishing, the public sea surface, etc, that are classified by the types of fishing management. In the case of saltwater, there are type one(managed by the fishermen's group), type two(managed by the fisherboat), and type three(managed by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In freshwater fishing, according to private possessions and managing water surface of the users,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public institutions, there are four models classified by the types of fishing management-type one(managed by the fishermen's group), type two(managed by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type three(managed by individuals), and type four(managed by the public institutions).

Next, there exist necessities of setting up the polici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overall fishing industry. First, the ocean is getting contaminated more and more because of garbage thrown away and excessive use of fish bait. Second, there are conflicts to solve with the fishermen about

resources reduction and fishery use.

No comprehensive fishing management solution currently guarantees the security of the anglers nor offers them convenient facilities. The solutions, however, are surely needed in order to make recreational fishing settled as the desirable leisure culture. The five departments are separated proceeded on 17 laws. Besides, casualties occur every year on seashore rocks, moles, and fisherboats; accidents take place often because of the fishers fishing even when the special weather report is announced. As the security of the anglers is inadequate,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y is promptly needed.

The aim of the policy for the development of fishing is as follows: notice the people about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the circumstances and the ecosystem of the ocean by managing, supporting, promoting fishing synthetically, settle recreational fishing as a desirable leisure culture for citizens, and in the meantime, closely connect the policy with the tourism industry of the fishing villages to help the villages be developed and the villagers earn money, In addition, the policy also aims for systematizing fishing, which now is neglected simply as leisurely activities, to protect the fish resources and the fishing place environment.

It will be driven forward through consolidating related laws for creating comprehensive fishing development plans, making systematic development plans such as installing and managing the department of fishing. The central authorities should create synthetic institutions of fishing management. In addition, the managers ought to lay down the fishing management details in their sphere of management so that the users and other rightful people are available to exercise their rights.

The fishing management system appropriate to the realities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should be prepared under the current system of fishing. The supply of fish resources for fishing place, fishing groups and individual anglers are also needed. At last, recreational fishing should be settled as a desirable culture by making use of the existing fisheries, fishing groups, anglers' club, and voluntary associations.

The project of fishing development was planned as five years(from 2006 to 2010) scheme by the steps of the aims and strategies. First, make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fishing industry('06). Second, make a system for fishing development by improving the laws and institutions('07~'08) At last, settle the fishing management system in the aspect of qualifying men's life.

The consequences of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the basic materials of making policy of making the fishing industry that anglers can fish with convenience, the local residents make a living by tourism, and fishing itself be an attractive leisurely activity.

# CONTENTS

<b>Chapter I . Introduction</b> .....	<b>1</b>
<b>Chapter II. Basic systems in recreational fishing management</b> .....	<b>6</b>
1. Institutional comprehension in the necessity .....	6
2. Purpose and the systematic structure .....	9
3. Institutional means, types and systems of effects .....	11
4. Analysis about management of the recreational fishing theory .....	17
5. Analysis of the social and economical effects 27 .....	
<b>Chapter III. Analysis of the social and economical structure</b> .....	<b>37</b>
1. Social and economical basis of recreational fishing .....	37
2. Estimating the number of anglers .....	39
3. Features of recreational fishing .....	51
4. Associations and industry related to recreational fishing .....	55
<b>Chapter IV. Realities, system of recreational fishing</b> .....	<b>69</b>
1. Management realities in recreational fishing .....	69
2. Institutional realities in recreational fishing .....	76
3. Main concepts of preexisting laws related to recreational fishing .....	103
4. Problems and solutions in recreational fishing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	103
<b>Chapter V. Recreational fishing management in other countries</b> .....	<b>110</b>
1. Recreational fishing management of Japan .....	110
2. Recreational fishing management of other countries .....	128
<b>Chapter VI. Management model adequate to Korea's situation</b> .....	<b>190</b>
1. Necessity of carrying out the management institution .....	190
2. An opinion survey on the management institution .....	219
3. Korean-style of recreational fishing management .....	230
<b>Chapter VII. Synthetic plan of development in Korea</b> .....	<b>245</b>
1. Suggest recreational fishing management models .....	245
2. Comprehensive plan of development in fishing .....	259

## < 목 차 >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표 .....	1
1. 기술적 측면 .....	2
2. 산업경제적 측면 .....	2
3. 사회문화적 측면 .....	2
제2절 연구방법 .....	3
제3절 연구내용 .....	4
제2장 낚시관리 제도적 기본체계 이해 .....	6
제1절 필요성에 대한 제도적 이해 .....	6
1. 낚시수급의 안정화 및 지속화 .....	6
2. 낚시관리의 개념과 이론적 이해 .....	7
3. 낚시관리 기능적 수단의 필요성 .....	8
제2절 제도적 목적과 체계구성 .....	9
1. 낚시관리의 제도적 목적 .....	9
2. 낚시관리의 제도적 체계구성 .....	10
제3절 제도적 수단과 유형 및 효과체계 .....	11
1. 낚시관리-면허수단의 개념과 성격 .....	11
2. 낚시관리의 제도적 수단과 유형 .....	12
3. 낚시관리 수단의 제도적 기능성 .....	13
4. 낚시관리의 제도 기능적 효과체계 .....	14
5. 낚시관리의 산업적 효과체계 .....	16
제4절 낚시관리의 조획이론 분석 .....	17
1. 낚시자원의 변동과 자원증가량 .....	17
2. 낚시자원과 지속적 조획함수 .....	19
3. 낚시자원과 조획의 공공 및 환경문제 .....	22
4. 자유방임적 조획의 공유재산적 자원 외부성 .....	22
5. 낚시의 생태환경적 영향의 조획이론적 접근 .....	24
제5절 사회경제적 시장효과 분석 .....	27
1. 낚시관리의 시장가치적 효용이론 .....	27
2. 낚시의 환경비용과 외부성의 내부화 .....	30
3. 낚시관리의 사회경제적 시장효과 분석 .....	33

<b>제3장 낚시의 사회경제적 구조분석</b> .....	<b>37</b>
<b>제1절 낚시의 사회경제적 기초분석</b> .....	<b>37</b>
<b>제2절 낚시인구의 추정</b> .....	<b>39</b>
1. 추정 방법 .....	41
2. 추정 결과 .....	42
<b>제3절 낚시의 특성</b> .....	<b>51</b>
1. 행태적 측면 .....	51
2. 사회경제학적 측면 .....	54
<b>제4절 낚시관련 단체 및 산업실태</b> .....	<b>55</b>
1. 낚시단체 .....	55
2. 낚시산업 .....	66
가. 조구업체 현황 .....	66
<b>제4장 낚시관리 실태 및 유형과 법체계</b> .....	<b>69</b>
<b>제1절 낚시관리 실태</b> .....	<b>69</b>
1. 민물낚시의 관리실태 .....	69
2. 바다낚시의 관리실태 .....	72
3. 낚시관리에 대한 불명확한 행정 및 법체계 .....	74
<b>제2절 낚시의 관리유형과 제도체계</b> .....	<b>76</b>
<b>제3절 낚시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b> .....	<b>96</b>
1. 수산업법 .....	96
2. 내수면어업법 .....	98
3. 낚시어선업법 .....	98
4. 수질환경보전법 .....	99
6. 자연환경보전법 .....	101
7. 하천법 .....	101
8. 수도법 .....	102
9. 문화재보호법 .....	102
<b>제4절 낚시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b> .....	<b>103</b>
1. 낚시관리 용어사용의 문제 .....	103
2. 낚시관리-유어에 관한 법률의 부재 .....	104
3. 낚시인의 책임(권리·의무)규정 부재 .....	105
4. 낚시관리 관련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 부재 .....	106
5. 낚시관리 관련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문제 .....	107
6. 낚시관리 관련 법·제도의 개선책 .....	107

<b>제5장 주요국의 낚시관리제도 고찰</b> .....	<b>110</b>
<b>제1절 일본의 낚시관리</b> .....	<b>110</b>
1. 유어낚시 현황 .....	110
2. 유어관리 방법 .....	114
3. 유어증 발급 행정절차 및 집행 .....	118
4. 면허의 감시체계 및 처벌수단 .....	120
5. 한·일간 낚시관리 제도 비교 .....	121
<b>제2절 기타 주요국의 낚시관리와 면허제</b> .....	<b>128</b>
1. 미국 .....	128
2. 독일 .....	139
3. 캐나다 .....	147
4. 호주의 낚시관리와 면허제 .....	156
5. 뉴질랜드의 낚시관리와 면허제 .....	162
6. 유럽 주요국 .....	178
7. 아시아 일부 국가 .....	188
<b>제6장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 관리 모델 검토</b> .....	<b>190</b>
<b>제1절 낚시관리제도 필요성</b> .....	<b>190</b>
1. 자원관리 측면 .....	190
2. 환경관리 측면 .....	192
3. 낚시인의 안전관리 측면 .....	197
4. 낚시관리 제도 측면 .....	197
<b>제2절 낚시관리제도에 대한 설문조사</b> .....	<b>219</b>
1. 현행 낚시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	219
2. 종합적인 낚시 발전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	222
<b>제3절 한국형 낚시 관리제도 모델의 개발</b> .....	<b>230</b>
1. 주요국의 낚시관리 유형 분류 .....	230
2. 낚시관리의 주체구성의 형태 .....	234
3. 낚시관리 유형별 체제의 비교분석 .....	235
4. 주요국 낚시관리 유형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 검토 .....	237
<b>제7장 종합적인 낚시발전 방안</b> .....	<b>245</b>
<b>제1절 낚시관리 모델 제시</b> .....	<b>245</b>
1. 낚시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 .....	245
2. 바다 및 민물낚시 관리 유형별 모델 .....	246

3. 낚시관리 모델별 주요 내용 .....	247
4. 낚시관리모델 요약 .....	256
<b>제2절 종합적인 낚시발전 방안 .....</b>	<b>259</b>
1. 정책수립의 필요성 및 목표 .....	259
2. 단계별 추진체계(안) .....	260
3. 주요내용 세부추진 계획 .....	263
4. 낚시발전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 .....	272
<b>참고문헌 .....</b>	<b>275</b>
<b>부록 1. 유어장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b>	<b>279</b>
<b>부록 2. 일본의 유어규칙 .....</b>	<b>286</b>
<b>부록 3. 호주의 유어낚시 규정(퀵랜드 지역) .....</b>	<b>297</b>
<b>부록 4. 국내·외 낚 관련 환경기준 .....</b>	<b>310</b>
<b>부록 5. 유어낚시 종합적 발전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b>	<b>311</b>

## <표 목차>

[표 1-1] 낚시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현황 및 주요내용 .....	4
[표 3-1] 우리나라 기존의 낚시인구 추정치 .....	40
[표 3-2] 유럽 낚시면허제 도입국가의 낚시인구 .....	41
[표 3-3] 단계별 추출 방법 .....	42
[표 3-4] 6단계 출조빈도별 낚시인구의 추정치(성별, 연령별, 지역별) .....	44
[표 3-5] 출조빈도에 따른 유형별 낚시인구(성별, 연령별, 지역별) .....	45
[표 3-6] 바다 및 민물낚시인구의 추정치 .....	48
[표 3-7] 민물낚시인구의 추정치(성별, 연령별, 지역별) .....	49
[표 3-8] 바다낚시인구의 추정치(성별, 연령별, 지역별) .....	50
[표 3-9] 민물낚시 출조지 선호 유형에 따른 이용형태 .....	51
[표 3-10] 바다낚시 출조지 선호 유형에 따른 이용형태 .....	52
[표 3-11] 바다/민물낚시의 일반적 출조 특성의 비교 .....	52
[표 3-12] 바다·민물낚시 출조자체에 대한 만족감의 화폐가치 .....	53
[표 3-13] 유어낚시인구의 학력적 특성 (단위: %) .....	54
[표 3-14] 유어낚시인구의 소득분포의 특성 (단위: %) .....	55
[표 3-15] 유어낚시인구와 보유낚시장비의 금액 (단위: %) .....	55
[표 3-16] 연도별 조구업체수 및 생산량 .....	66
[표 3-17] 지역별 낚시용품 관련업체 현황 .....	68
[표 4-1] 낚시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사례 .....	73
[표 4-2] 낚시관리 관련 불완전한 법체계 .....	76
[표 4-3] 우리나라 내수면 현황 .....	78
[표 4-4] 연도별 내수면어업의 면허, 허가, 신고 추이 .....	79
[표 4-5] 2004년 업종별 지역별 내수면 면허, 허가, 신고 현황 .....	80
[표 4-6] 내수면어업 어선세력 추이 .....	81
[표 4-7] 각 수계별 관할 자치단체 .....	82
[표 4-8] 수계별 어업 현황 및 특징 .....	83
[표 4-9] 내수면 낚시 관련 단체 현황 .....	85
[표 4-10] 전국 플라이낚시 포인트 .....	86
[표 4-11] 내수면 민물낚시의 관리구조 .....	87
[표 4-12] 유어장등의 지정현황(2004년) .....	92
[표 4-13] 유어장 지정 및 이용현황 .....	93
[표 4-14] 체험어장 현황 .....	94
[표 5-1] 일본의 유어낚시 인구추이 .....	110
[표 5-2] 일본 해면유어자 수와 분류(1996) .....	111
[표 5-3] 일본 유어낚시의 경제적 효과와 관리체제 .....	111
[표 5-4] 일본 유어낚시관리와 면허제 .....	121
[표 5-5] 한·일간 유어낚시제도 비교 .....	122
[표 5-6] 한국의 유어낚시인구 .....	123

[표 5-7] 미국 유어낚시의 경제적 효과와 관리체제 .....	129
[표 5-8] 미국의 낚시면허제 전담부서 및 시행조직 .....	130
[표 5-9] 플로리다 주의 면허증 종류와 면허요금 .....	133
[표 5-10] 버지니아 주 바다낚시 면허증 종류와 면허요금 .....	134
[표 5-11] 캘리포니아 주 낚시면허증의 종류와 면허요금 .....	134
[표 5-12] 와이오밍 주 낚시면허증의 종류와 면허요금 .....	134
[표 5-13] South Carolina 주의 낚시면허수익금 사용 .....	136
[표 5-14] 불법낚시인의 단속과 처벌규정 .....	138
[표 5-15] 미국의 유어낚시관리와 면허제 실태 .....	139
[표 5-16] 독일 유어낚시의 관리와 면허제 .....	147
[표 5-17] 캐나다 주정부와 영의 유어낚시의 관리에 대한 책임 .....	148
[표 5-18] 캐나다 수산해양부의 유어낚시에 대한 역할 .....	149
[표 5-19] 온타리오 주의 낚시면허증의 종류와 면허요금 .....	152
[표 5-20] BC 지역의 바다스포츠낚시면허증의 요금 .....	155
[표 5-21] 캐나다의 유어낚시 관리와 면허제 .....	156
[표 5-22] 호주의 낚시면허증의 종류와 면허요금 .....	158
[표 5-23] 바위서식 바닷가재의 채취 제한 .....	159
[표 5-24] 전복류의 채취 제한 .....	159
[표 5-25] 면허대상어와 제한사항 .....	160
[표 5-26] 호주의 유어낚시 관리와 면허제 .....	162
[표 5-27] 바다/민물 낚시별 부서와 관련법규 .....	163
[표 5-28] 낚시면허대상자와 면허료 .....	164
[표 5-29] 뉴질랜드 Auckland/Waikato 지역 각 호수에 대한 낚시규정 .....	168
[표 5-30] 뉴질랜드 북지역의 지느러미 고기에 대한 체장제한 및 일일조획량 .....	174
[표 5-31] 뉴질랜드 북지역의 어패류에 대한 1일 채취제한량 및 크기 .....	175
[표 5-32] 뉴질랜드의 유어낚시 관리와 면허제 .....	177
[표 5-33] 프랑스 낚시면허증 유형 및 비용 .....	179
[표 5-34] 네덜란드 낚시면허 .....	180
[표 5-35] 유럽국의 유어낚시 관리와 면허제 .....	188
[표 6-1] 유어행위에 의한 주요 조획 어종 .....	191
[표 6-2] 설문조사에 의한 바다/민물낚시의 조획량 .....	191
[표 6-3] 낚시용 납추와 세라믹 추의 비교 .....	195
[표 6-4] 낚시어선 사고현황('02~'04) .....	197
[표 6-5] 낚시관련 현행 법규 현황 .....	198
[표 6-6]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의 지정요건 .....	200
[표 6-7]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의 시설기준 .....	200
[표 6-8]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의 수산자원조성 등 .....	200
[표 6-9]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 이용료 사용용도 .....	201
[표 6-10]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 이용의 제한/금지 .....	201
[표 6-11] 불법 유어장 운영시 과태료 부과 현황 .....	202
[표 6-12] 일반인들이 내수면/해면에서 포획/채취 가능 및 금지한 종류 .....	202

[표 6-13]	내수면어업의 종류 .....	203
[표 6-14]	내수면에서 유어행위(遊漁行爲)가 가능한 종류 .....	204
[표 6-15]	유어행위를 제한할 경우 고려사항 .....	204
[표 6-16]	유어행위 제한시 고시사항 .....	204
[표 6-17]	유어질서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제3항관련) .....	205
[표 6-18]	낙시어선업법 위반시 벌금 현황 .....	206
[표 6-19]	낙시제한 관련 수면의 용어 정의 .....	207
[표 6-20]	낙시제한구역에서의 낙시인에게 쓰레기 처리비용 수수료 징수 .....	208
[표 6-21]	낙시 금지/제한구역의 지정시 고려 사항 .....	208
[표 6-22]	낙시터 제한구역에서의 제한 사항 .....	209
[표 6-23]	수질환경보전법상 낙시금지/제한구역에서 낙시행위시 벌칙 및 과태료 .....	209
[표 6-24]	낙시금지/제한구역에서 낙시행위시 벌칙 및 과태료 .....	210
[표 6-25]	생태계보전지역의 구분 .....	211
[표 6-26]	자연환경보전법상 멸종위기/보호어종 현황 .....	211
[표 6-27]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위반 시 벌칙 현황 .....	212
[표 6-28]	하천법에 의한 낙시행위 위반 시 내용 .....	213
[표 6-29]	천연기념물 지정 어종 .....	214
[표 6-30]	문화재보호법상 벌칙 규정 .....	214
[표 6-31]	낙시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	215
[표 6-32]	일반인들의 낙시행위 가능/금지 내용 분석 .....	216
[표 3-33]	낙시인에게 이용료 및 처리비용 수수료 부과 근거 분석 .....	217
[표 3-34]	불법 낙시행위시 벌칙/과태료 부과 현황 .....	218
[표 3-35]	해당되는 법규의 낙시행동에 대한 용어 분석 .....	219
[표 6-36]	낙시관리제도에 대한 인식도 .....	222
[표 6-37]	정부의 단기정책의 우선순위 .....	223
[표 6-38]	정부의 중기정책의 우선순위 .....	224
[표 6-39]	정부의 장기정책의 우선순위 .....	224
[표 6-40]	유어핸드북의 내용 .....	225
[표 6-41]	웹사이트의 컨텐츠 .....	225
[표 6-42]	홍보 및 계몽 활동방안 .....	226
[표 6-43]	해수면 낙시터 .....	226
[표 6-44]	내수면 낙시터 .....	226
[표 6-45]	감시와 지도의 방법 .....	227
[표 6-46]	주무부서의 설치여부 .....	227
[표 6-47]	주무부서가 설치될 정부부처 .....	228
[표 6-48]	주무부서의 주된 역할 .....	228
[표 6-49]	친환경 낙시용구 제작 활성화 방안 .....	228
[표 6-50]	홍보 및 계몽수단 .....	229
[표 6-51]	법적근거 마련에 관한 의견 .....	229
[표 6-52]	법안의 내용 .....	229
[표 6-53]	독일의 낙시권과 낙시터 임대제 .....	234

[표 7-1] 바다 및 민물낙시 유형별 관리모델 .....	246
[표 7-2] 바다낙시 유형 구분 .....	248
[표 7-3] 년도별 신고척수 및 이용객 등의 변동추이 .....	249
[표 7-4] 71개 시·군·구의 고시 제정 추진내역 .....	249
[표 7-5] 바다낙시 관리 모델별 주요 내용 .....	250
[표 7-6] 내수면 유형별 수면관리자 .....	251
[표 7-7] 낙시터 운영과 관리체제 .....	252
[표 7-8] 서울시 관할 한강유역 낙시관리 사례 .....	253
[표 7-9] 서울시 한강 「낙시회원제」 운영(안) .....	254
[표 7-10] 민물낙시 관리 모델별 주요 내용 .....	256
[표 7-11] 바다 및 민물낙시 관리 모델별 주요 내용 .....	257
[표 7-12] 바다 및 민물낙시 관리 모델별 유사점과 차이점 .....	258
[표 7-13] 종합적인 낙시발전방안 목표 및 추진전략 .....	261
[표 7-14] 낙시발전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 .....	274

## < 그림 목차 >

[그림 2-1] 자연균형적 낙시수급의 안정과 발전 .....	6
[그림 2-2] 낙시관리의 이론적 이해 .....	8
[그림 2-3] 낙시관리 기능적 수단의 필요성 .....	9
[그림 2-4] 낙시관리의 제도적 목적 .....	9
[그림 2-5] 낙시관리의 제도적 체계구성 .....	11
[그림 2-6] 낙시관리의 보편적 면허수단 .....	12
[그림 2-7] 낙시관리의 제도적 수단과 유형 .....	13
[그림 2-8] 낙시관리 합리적 수단의 기능성 .....	14
[그림 2-9] 낙시관리의 제도적 기능 .....	15
[그림 2-10] 낙시관리의 제도적 효과체계 .....	16
[그림 2-11] 낙시관리의 산업적 효과체계 .....	17
[그림 2-12] 낙시자원(X)과 자원증가량(F(X))간의 관계 .....	18
[그림 2-13] 낙시노력량과 균형자원량 .....	20
[그림 2-14] 지속적 낙시노력-낙시량 곡선 .....	21
[그림 2-15] 시간흐름에 따른 낙시인구와 낙시자원간의 괴리현상 .....	23
[그림 2-16] 낙시의 생태환경적 영향과 자원량의 변화 .....	26
[그림 2-17] 낙시인의 시장가치적 효용곡선과 비용곡선 .....	28
[그림 2-18] 낙시관리에 따른 낙시인의 효용변화 .....	30
[그림 2-19] 낙시행위에 따른 환경비용적 외부불경제의 내부화 .....	32
[그림 3-1] 유어낙시인 연령분포 .....	46
[그림 3-2] 설문대상자의 주요 거주지 .....	46
[그림 3-3] 낙시관련 단체 현황 .....	56

[그림 4-1] 내수면 민물낚시의 관리구조 .....	70
[그림 4-2] 해면 바다낚시의 관리구조 .....	72
[그림 4-3] 낚시관리에 대한 불명확한 행정체제 .....	75
[그림 4-4] 공공용수면의 민물낚시 관리유형과 제도체계 .....	77
[그림 4-6] 농업기반공사 저수지의 민물낚시 관리유형과 제도체계 .....	90
[그림 4-7] 마을어장, 복합양식장의 바다낚시 관리유형과 제도체계 .....	90
[그림 4-8] 낚시어선업의 바다낚시 관리유형과 제도체계 .....	91
[그림 5-1] 가재류 크기 측정 .....	160
[그림 6-1] 자율부분형 낚시관리(일본) .....	231
[그림 6-2] 개방결합형 낚시관리(미국 등) .....	232
[그림 6-3] 자격분리형 낚시면허제(독일) .....	233
[그림 6-4] 낚시관리 주체구성의 유형 .....	235
[그림 6-5] 낚시관리 유형별 체제의 비교분석 .....	236
[그림 6-6] 민물낚시 관리에 면허수단 적용시 문제점 (I) .....	238
[그림 6-7] 민물낚시 관리에 면허수단 적용시 문제점(II) .....	239
[그림 6-8] 바다낚시 관리에 면허수단 적용시 문제점 (I) .....	240
[그림 6-9] 바다낚시 관리에 면허수단 적용시 문제점 (II) .....	241
[그림 6-10] 기존 낚시관리의 개선 및 발전모델: 자율낚시관리 .....	242
[그림 6-11] 민물·바다낚시의 자율낚시관리 모델 .....	243
[그림 6-12] 낚시어선업 바다낚시의 자율낚시관리 모델 .....	244
[그림 7-1] 한강의 유어행위 제한 및 금지구역 지정대상지 .....	254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목표

낚시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중요한 야외 레저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적 수요증대가 높은 레저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유어낚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전통적 어업과 함께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산업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레저의 사회경제적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낚시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낚시가 제도적 관리 없이 자유방임상태로 지속될 경우, 낚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치어 남획 등에 따른 자원고갈 및 면허어장 등 개별 소유 수면의 이용에 따른 어업인과의 마찰 등과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낚시가 국민적 레저 산업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는 첫째, 기존 생계유지 형 전통어업과의 합리적인 관계 설정과 이들 제도권 자원 이용자 간의 형평성 문제, 둘째, 낚시에 연관된 생물서식지의 보호 및 환경보존문제, 셋째, 자유방임적 조획으로 등으로 인한 낚시자원 및 연안생태 문제, 마지막으로 낚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을 포함한 정책적 접근의 부재 등이다.

그와 더불어 수적인 측면에서도 최근 들어 급증하는 낚시인구는 400만을 넘어 500만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제 낚시인이 연안의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회복시키는 노력과 협력 없이는 어떤 형태의 자원 및 어업관리 정책의 성공여부를 떠나 지속가능한 낚시레저산업(sustainable ecotourism)으로서의 성장 그리고 올바른 낚시문화 정착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낚시 및 관련 산업을 파악하고, 낚시관리 중심으로 외국의 주요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낚시관리체제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종합적인 낚시 발전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낚시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여론 수렴을 강화하였다. 여론 수렴결과를 토대로 보다 구체화된 낚시 관리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며 낚시를 바람직한 국민 여가문화로 정착시키는 한편, 어촌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낚시관리의 모델과 종합적인 낚시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 1. 기술적 측면

낙시관리는 생태환경의 악화, 생물자원의 감소 또는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낙시 참여를 적정수준으로 제한하고, 생태환경 및 생물자원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투자 재원을 조달케 하는 기술적 환경 및 자원관리에 대한 하나의 수단이다. 낙시에 대한 관리수단의 효과적인 접근과 그 목적은 무엇보다도 낙시가 지니는 생태환경 및 생물자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낙시관리에 대한 기술적 문제에는 낙시의 자유참입을 적절히 제한하기 위한 생태환경 수용력이나 이용가능한 생물자원의 평가이며, 이를 위한 기술적 자원평가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낙시참여의 적절한 정한수를 설정하여 낙시가 지니는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생태환경 및 생물자원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참여 정한수 이행에 대한 관리수단의 효율화를 위한 감시·감독체제의 구축도 낙시관리의 중요한 기술적 문제이다.

## 2. 산업경제적 측면

유어낙시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중요한 레저의 하나이며, 특히 다양한 레저중에서 수요가 높은 잠재적 역량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민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다양한 야외 레저가 발달되면 자연히 낙시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유어낙시의 사회경제적 수요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관리가 이행된다면 낙시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낙시관리는 낙시에 참여하는 낙시인의 수, 조획량, 대상 어종, 낙시장소 및 기간 등을 적정수준으로 제한하고, 낙시 관련 생태환경 및 생물자원을 보호 보존하고, 낙시 관련의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낙시 관리는 결국 낙시의 지속성 유지와 낙시 레저의 산업적 발전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 낙시관리는 정부의 제도적 관리와 지원을 통하여 낙시환경과 자원을 보호 보존하고, 관련 낙시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여 유어낙시의 사회적 안정성과 경제적 성장·발전성 유지에 그 목적을 둔다.

## 3. 사회문화적 측면

유어낙시에 대한 제도적 관리는 기본적으로 자유참입적 낙시가 지니는 생태환경

및 생물자원의 왜곡과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한 사회적 효용내지 편익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개입으로 이해된다. 낚시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개입의 원인이 되는 자연자원의 왜곡적 배분이나 편익의 감소를 자원경제에서는 자원배분의 시장실패라 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낚시의 대상이 되는 생태환경의 심미적 자원이나 생물자원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공유재산적 자연자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유재산적 자연자원은 정부의 적절한 관리가 없으면 무분별한 과잉 이용으로 인하여 자원의 지속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낚시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접근은 바로 낚시자원의 왜곡적 배분을 막아 낚시자원의 지속성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접근은 기본적으로 법적 제도적 낚시에 대한 관리와 정책적 지원이 주를 이루며, 낚시인, 낚시단체 및 관련업체가 수궁할 수 있는 효과성,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 있는 낚시관리 및 지원제도의 구축을 의미한다.

## 제2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낚시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낚시자원과 생태환경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규제 및 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제도적 체제 구축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연구의 기초단계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낚시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였다. 특히 낚시관리에 대하여 각 부처를 달리하면서 상이한 규정과 관리의 상충성으로 인해 통합적 관리체제의 미비, 불완전한 체제의 이행과 그리고 자원, 환경목표접근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를 집중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낚시관리를 중심으로 유어낚시의 개념과 성격, 그리고 제도적 접근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와 함께 제도적 기능과 효과에 대해서 이론적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보다 현실성 있는 낚시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2차에 걸친 설문 조사를 통하여 낚시인의 정의와 규모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초 낚시 자료수집을 위한 1차 설문조사는 '03년 11월부터 '04년 7월까지 전국 유·무료 낚시터를 대상으로 한 직접면담조사와 인터넷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총 3,900부의 설문지가 회수 되었으나, 설문답안의 신뢰성 검토결과 최종 3,623명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유어낚시의 종합적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2차 설문조사는 2005년 9월 10일에서 20일까지 낚시 관련 웹사이트([www.dinak.co.kr](http://www.dinak.co.kr))를 이용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719명의 응답자 가운데 546명의 유효응답을 설문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4차에 걸친 낚시발전방안 토론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하여 보다 현실적인 낚시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을 도모하였다.

[표 1-1] 낚시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현황 및 주요내용

구 분	일 시	참 석 자	내 용
1차	2004. 12.9.~11	낚시단체 및 업계, 연구팀, 해양수산부, 자문	· 낚시관리제 도입에 대한 낚시업계 및 단체 의견 수렴, 추진방향에 대한 정부방침 설명 및 공조방안 논의
2차	2005. 1.7~8	낚시단체, 조구업체, 낚시 관련언론계, 연구팀, 해양 수산부	· 낚시문화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이의 육성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낚시단체, 조구업체, 정부, 연구팀 간의 의견교환 및 추진방법 협의
3차	2005.1.27	낚시단체, 조구업체, 낚시 관련언론계, 연구팀, 해양 수산부	· 바다낚시를 중심으로 낚시발전을 위한 낚시인 지원내 용에 대한 낚시단체의 의견, 조구업체 지원에 대한 의 견, 낚시단체의 역할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
4차	2005.6.10	낚시단체 및 업계, 연구팀, 해양수산부, 낚시관련언론 계, 학계	· 유어낚시 발전에 대한 관련기관 및 낚시단체 의견 수렴 을 통하여 유어낚시 발전 방향과 향후 추진계획 수립

또한, 외국 주요국의 낚시관리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낚시관리 모델의 일반적인 유형과 관리주체에 대해서 살펴본 후, 낚시관리 기본모델을 유형별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효용성과 실용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관리 모델을 제시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 제3절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낚시산업의 지속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유참여적 낚시를 제도적 관리하여야 하는 당위성에서 시작한다. 현재 우리나라 낚시가 직면하는 문제로서 낚시의 사회경제적 수요와 낚시자원과 자연환경의 수용력의 균형을 위한 조절하는 관리체계가 없다는 점이다. 낚시에 대한 제도적 관리 및 지원체제가 낚시산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태환경적 공급의 왜곡과 규범화되지 못하는 낚시문화가 지속된다. 결국 낚시관리는 적정자원의 개발, 최적낚시량의 투입 그리고 최대의 사회가치화를 통해서 낚시의 수급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낚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낚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자원과 환경에 대한 책임과 규제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당위성을 가진다.

낚시로 인한 조획량, 연간 출조일수, 출조비용, 연간 낚시미끼와 밑밥 투여량 등

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소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낚시가 지니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론적 분석한다. 물론 실증적 분석은 주어진 자료 및 통계적 정보에 한하여 일부 이루어진다. 제도적 관리의 규제수단에서는 기술적 수단의 직접규제에서 일일조획량 제한, 소유, 출조횟수제한, 조획체장제한, 금조기, 금조지역 및 조획투입장비제한 등이 있으며, 경제적 지원 및 유인수단도 있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낚시관리의 실태와 유형을 민물낚시터와 바다낚시터로 구분하여 운영체계를 살펴보고 관련법령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난 후 외국낚시관리의 사례분석을 비교한다. 외국낚시관리를 국별(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유럽국, 아시아국)로 낚시와 관련한 주요 법령과 관리주관처, 관리유형, 운영체계, 감시 및 단속체계, 불법낚시의 처벌규정, 관리의 시행대상 및 범위를 바다낚시와 민물낚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특히, 제6장에서는 낚시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낚시관리에 대해 현행 체제와 발전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관리 모델 제시를 위하여 주요 선국들의 관리 유형 비교 분석과 더불어 우리나라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7장에서는 낚시인은 쾌적한 환경에서 낚시를 즐기고, 낚시터 주변 지역주민들은 낚시인을 지역에 유치하여 관광소득으로 연결하고, 이를 통하여 상호발전이 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낚시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바다 및 민물 낚시에 대한 모델과 종합적인 낚시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제2장 낚시관리 제도적 기본체계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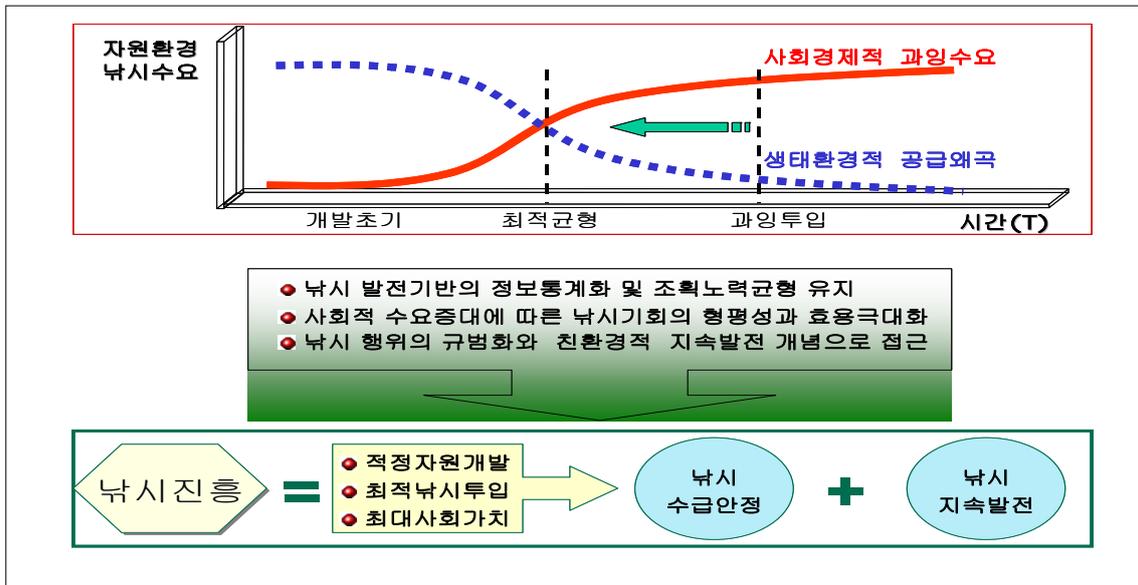
### 제1절 필요성에 대한 제도적 이해

#### 1. 낚시수급의 안정화 및 지속화

현재의 갯바위, 유·무인 섬, 방파제,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다낚시와 저수지, 댐, 호수, 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물낚시는 과거 개발초기에 비해 조획 기술의 고도화, 기동성 향상 및 개인 보트의 활성화, 특히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조획 노력량의 잠재력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

과거에 낚시자원 즉 어류자원을 포획한다는 말은 낚시를 제외한 상업적 어업에서만 주로 통용되는 말이었다. 그러나 어업인구가 30만도 채 되지 않는 상업적 어업의 현실에서 수백만으로 추정되는 낚시인의 조획 현실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다.

일본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바다낚시의 선상낚시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한정된 곳에서의 갯바위 낚시가 성행한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지속적인 유어낚시의 발전을 위하여 유어낚시의 조획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2-1] 자연균형적 낚시수급의 안정과 발전

초기의 낚시자원은 주로 상업적 어업의 대상이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낚시로 인한

조획 강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수요 또한 계속해서 증가한다. 반면에 낚시자원 및 생태환경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수용력은 제한되어 있으며, 낚시자원은 살아있는 생물자원이고 자연적 증가속도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유방임적 낚시에서 낚시자원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낚시자원의 감소뿐만 아니라 낚시행위로 인하여 투입되는 각종 밑밥 및 집어제 등도 낚시자원이 서식하는 생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낚시로 인해서 수질오염에 주는 영향은 생활폐수, 공장폐수 등에 비하여 극히 미진한 영향으로 인식되지만 지속적으로 상당수의 낚시인들이 과도하게 투입하는 밑밥 및 집어제, 그리고 낚시행위 중에 분실되는 낚시줄과 밥봉돌 등은 분명 생태환경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낚시의 사회경제적 수요와 생태환경 및 낚시자원이 주는 공급이 일치하는 최적균형의 상태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는 낚시 행위의 노력이 자유방임적 이용에 따라 과잉 투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과잉 투입상태에서 최적균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낚시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낚시의 지속적 발전기반에 대한 정보통계화 및 조획 노력량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과 사회적 수요증대에 따른 낚시기회의 형평성과 효용극대화, 그리고 낚시행위의 규범화와 친환경적인 지속발전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낚시관리의 목적은 결국 지속가능한 낚시진흥으로서의 단순히 낚시행위의 규제와 제한이 아닌 적정자원의 개발과 최적 조획량 투입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최대화를 목표를 함으로써 유어낚시의 지속적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낚시관리의 개념과 이론적 이해

낚시관리란 어족자원 및 생태환경의 지속적 생산성과 낚시목적 달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낚시활동의 규제나 조정, 필요에 의한 제재, 자원의 배분과 공공화의 시행, 의사결정, 계획, 자문, 분석, 정보수집 등에 대한 통합적 이행과정의 제도적 총칭이다. 이러한 낚시관리에 대한 이론적 이해는 기본적으로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이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개입에 대한 공공 또는 환경경제학적 논리가 필요하다.

낚시자원은 비배제성과 경합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공유재적 자원임으로 개인의 자유방임적인 낚시 행위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개인의 자유에 맡기게 되는 자유방임상태의 자유낚시는 개인의 낚시행위에 따른 이기성과 배타성으로 인

해서 최적낙시 이용량을 초과하게 되는 자원 왜곡적 시장실패와 외부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괴리로 인하여 과도한 조획노력량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동시에 낙시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자연환경적 왜곡 요소들로 인하여 환경수용력이 감소하게 되고, 낙시자원의 가용량이 줄어들게 된다.



[그림 2-2] 낙시관리의 이론적 이해

그러나 이러한 자유방임상태의 자유낙시를 제도적으로 관리함으로 낙시자원의 시장실패와 외부효과를 상당히 줄이거나 부분적 해결을 가능케 한다. 낙시행위의 제도적 관리는 대부분 선진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면허제와 같은 제한 수단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낙시면허제와 같은 관리 수단을 통하여 제도적 운용, 자원의 관리 그리고 낙시행위의 관리를 통해 낙시인 개인의 편익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편익 증대와 자연환경의 수용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 3. 낙시관리 기능적 수단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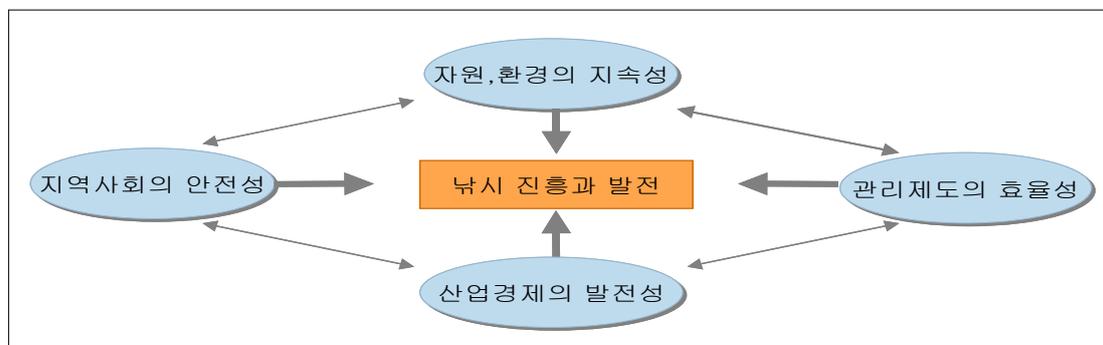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적 생물자원과 생태환경은 자유낙시로 인해 환경 및 자원의 왜곡적 배분현상을 낳게 되고, 이는 자원과 환경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규제 및 지원정책이 따라야 하며, 이러한 제도적 관리규제 및 지원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낙시관리의 수단적 기능의 필요성은 바로 통계정보적 기능과 이용조정적 기능, 그리고 규범 통제적 기능을 통해 환경친화적 낙시문화의 정착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낙시자원 환경기반을 공고히 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그림 2-3] 낚시관리 기능적 수단의 필요성

## 제2절 제도적 목적과 체계구성

### 1. 낚시관리의 제도적 목적

낚시관리의 제도적 목적은 자원 및 환경의 지속성, 낚시관리의 효율성, 지역사회  
의 안전성, 낚시관련 산업경제의 발전성이라는 4가지 항목의 균형 있는 지속성을  
목표로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유어낚시 관리라 함은 낚시자원, 생태환경의 지속적  
생산성과 낚시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낚시활동의 규제나 조정, 필요에  
의한 제재, 자원의 배분과 공공화의 시행, 의사결정, 계획, 자문, 분석, 정보수집 등  
에 대한 통합적 이행과정의 제도적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4] 낚시관리의 제도적 목적

## 2. 낚시관리의 제도적 체계구성

낚시관리의 제도적 기본체제는 중앙 및 지자체 낚시관련 부서하에 자원관리전담 부서와 환경관리계획상의 수질관리과 결합하여 자원 및 환경관리체계를 이루고 있어 이 두 역할이 결합하여 낚시관리체제를 이루는 것이다. 낚시관리체제라 함은 크게 관리체계와 감시체계, 그리고 법체계의 3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낚시 관리체계라 함은 낚시관리를 주도하는 주체와 관리수단 그리고 관리대상으로 구분되는데, 낚시관리의 주체는 낚시를 관리하는 국가의 실정에 따라 정부, 낚시단체, 지자체, 협정법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낚시관리의 수단으로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낚시면허제와 함께 동시에 일일조획량 제한, 소유/출조횟수 제한, 체장제한, 금조기/금어지 지정 및 조획장비 제한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낚시자원의 관리대상은 낚시인, 대상어종과 방법, 그리고 대상지역으로 나누어진다.

둘째, 낚시관리의 제도적 기본체제에는 감시·감독체계가 있다. 이 감시·감독체계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사전규제방식, 벌칙규제의 사후규제, 강제수단에 따른 행정규제, 시장차원에서의 경제규제, 부담원칙에 따른 비용규제, 조획노력량 제한에 따른 진입규제 등이 있다. 물론 상기 규제 방식상에서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기본체제의 법체계에서는 해양수산부내에 수산업법, 내수범어업법, 낚시어선업법, 어선법, 어항법, 연안관리법, 항만법, 해상교통안전법이 있고, 환경부내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호소수질관리법, 건설교통부내에서는 수도법, 하천법, 연안관리법, 댐지원법 등이 있으며, 농림부내에서는 농지법, 산림법,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을 정해 두어 특별히 보호어종을 정해두고 있다.



[그림 2-5] 낚시관리의 제도적 체계구성

### 제3절 제도적 수단과 유형 및 효과체계

#### 1. 낚시관리-면허수단의 개념과 성격

낚시관리에서 일반적인 수단으로서의 면허라 함은 규범자격의 면허와 수익자 비용부담의 허가로 구성되는 제도적 규제수단이 되는 것이다. 우선 낚시면허는 개인 낚시행위의 사회적 규범화, 자격화를 증명하는 것이고, 낚시허가는 낚시인들이 조획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효용에 대응하여 자원 및 제도적 관리비에 상응한 수익자 부담원칙의 지불로 얻는 낚시입어를 허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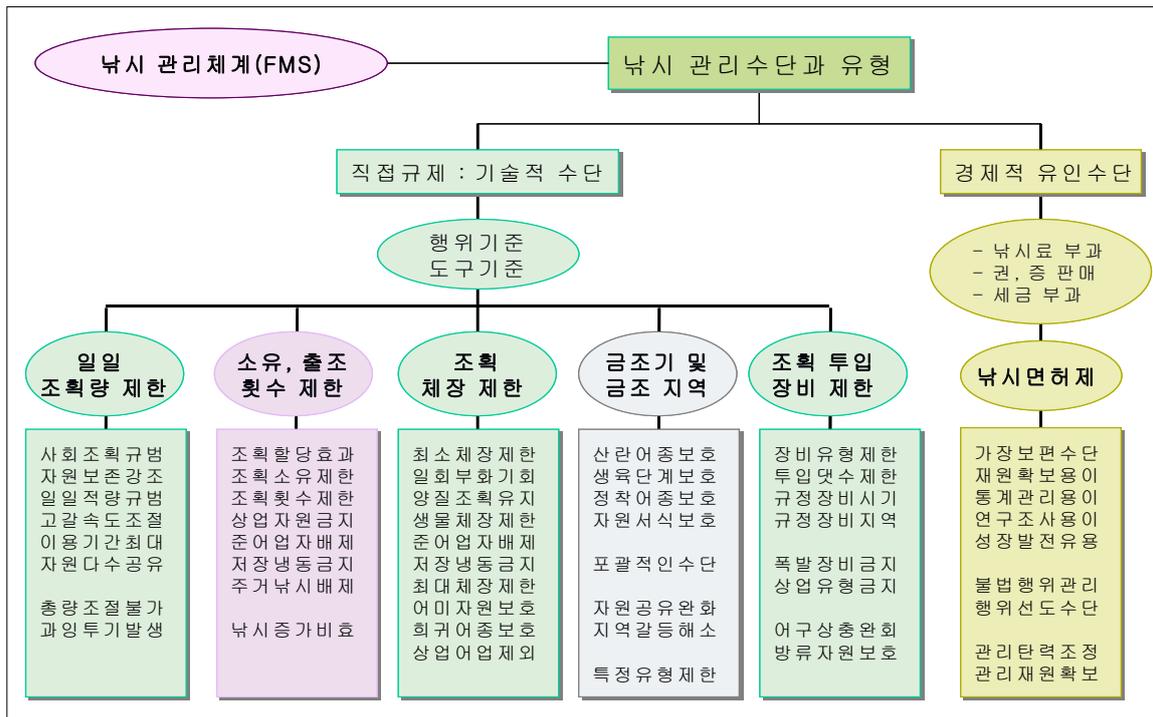
[그림 2-6] 낚시관리의 보편적 면허수단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낚시관리 수단은 크게 면허(Fishing License)방식과 승인(Fishing Permit)방식이다. 면허방식은 행정자격수단, 행위의 규범화, 낚시유형의 제한, 낚시질서의 유지, 자원환경보호의 수단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용어에는 낚시면허증, 유어면허증이 있다.

승인방식은 비용지불수단, 노력량제한, 대상의 제한, 지역/방법/도구제한, 자원환경보전의 수단이 되는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용어는 낚시증(유어승인증), 낚시권(유어허가권)이 있다.

## 2. 낚시관리의 제도적 수단과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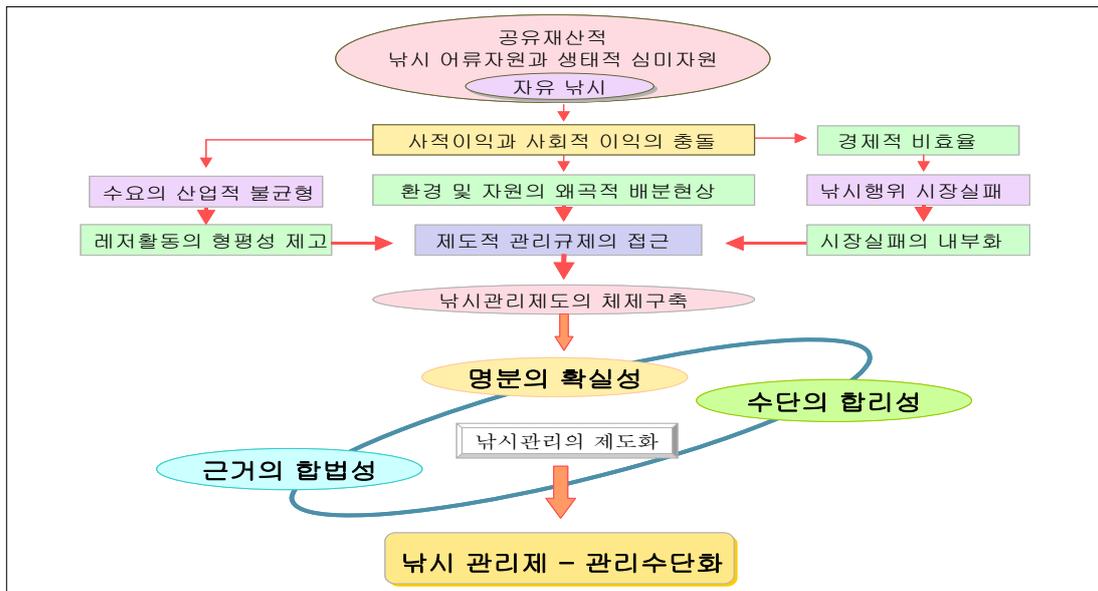
낚시관리의 제도적 기본체계를 낚시관리 규제수단과 관련한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크게 직접규제(기술적 수단)와 경제적 유인수단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규제에서는 일일조획량 제한, 소유/출조획수제한, 조획체장제한, 금조기 및 금조지역 그리고 조획투입장비제한이 있고 경제적 유인수단으로는 낚시면허제가 있다.



[그림 2-7] 낙시관리의 제도적 수단과 유형

### 3. 낙시관리 수단의 제도적 기능성

낙시관리 수단화의 이론적 합리성은 공유재산적 낙시자원과 생태적 심미자원을 자유방임상태의 자유낙시를 허용함으로써 낙시인, 낙시단체의 사적이익과 사회전체의 사회적 이익의 충돌, 경제적 비효율로 인한 낙시행위의 시장실패, 시장실패의 내부화, 수요의 산업적 불균형, 레저활동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제도적관리규제의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그림 2-8] 낚시관리 합리적 수단의 기능성

낚시관리 도입의 필요성은 낚시의 명분화와 근거의 합법화, 그리고 수단의 합리성을 통한 낚시관리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에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수단인 낚시면허제 방식이 적합하다. 낚시면허제 수단은 단지 시장접근에 기초한 비용 유발적인 요소로서의 장점뿐만이 아니라, 면허제의 실시로 인해 낚시인의 낚시행태, 연간의 조획량 파악, 자원 및 생태환경에 미치는 요소에 대한 연구, 조사, 분석을 가능케 해주며, 가장 기본적인 낚시 인구를 추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 4. 낚시관리의 제도 기능적 효과체계

낚시관리의 제도 기능적 효과는 낚시관리의 목적에 대응한 관리 수단의 효과를 말한다. 이러한 효과는 기본적으로 관리수단이 지닌 기능적 효과이다.

낚시관리 수단은 대표적인 비용유발 수단으로서 낚시권자나 낚시인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낚시행위를 할 수 있는데 대한 지불승인형식이다. 결국 제도적 관리를 통해서 낚시행위의 사회성, 제도성과 규범성을 확립하고, 무분별했던 낚시행위의 사회적 합리성과 사회적 편익의 극대화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9] 낚시관리의 제도적 기능

낚시관리는 낚시행위의 규범화를 통한 자원환경의 지속성, 과학적 정보수집 등을 통한 사회경제적 효율성과 낚시정보의 완전성, 조획노력량 조절을 통한 조획 규모의 적정화, 사후관리로서의 불법행위 제재와 낚시질서 유지, 그리고 산업적 상충완화를 통한 제도적 관리의 형평성 등 여러 요소들로 결국 낚시환경의 개선과 자원 및 환경의 균형을 도모하고 이것이 낚시에 대한 수급안정으로 이어진다. 이와 더불어 유어낚시 관련 산업의 성장기반으로 사회적 수용의 제도적 안정화와 국내외 산업적 발전효과를 통해 결국 낚시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이루게 된다.

낚시관리의 시스템 운영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우선 정부가 낚시행위가 가능한 낚시터에 대한 낚시권을 개인, 낚시단체, 또는 지역주민에게 경매를 통해 임대하게 된다. 이때 경매를 낙찰 받은 낚시권 소유자는 정부에게 경매 입찰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낚시인에게 일정한 낚시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받는 조건하에서 면허증을 주게 되며, 낚시인은 면허를 정부로부터 취득 받은 이후에 낚시권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받아 낚시행위를 할 수 있다. 이때 낚시인은 낚시행위에 따른 비용의 지불과 함께 낚시규정을 준수하게 되고, 낚시권 소유자는 낚시인에게 낚시행위를 허가하게 됨과 동시에 낚시터를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그림 2-10] 낚시관리의 제도적 효과체계

상기와 같은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낚시행위의 규범화를 통한 낚시행위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관리비용의 발생으로 자원환경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낚시질서의 확립으로 낚시행위의 효용증대와 제도적 관리를 통한 낚시관련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함으로서 수요와 공급의 수급안정, 발전기반을 이루는 것이 낚시관리 목표이다.

#### 5. 낚시관리의 산업적 효과체계

낚시관리의 산업적 효과는 생물적 지속성과 제도적 효율성, 생태적 보전성, 사회적 안정성, 기술적 생산성, 경제적 발전성을 통해 낚시효용의 증대, 자연적 수용력의 향상, 자원환경의 지속성, 사회적 수요력의 지속성을 이루는데 있다. 낚시의 관리로부터 얻게 되는 산업적 효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나 낚시자원이 지니는 생물적 지속성의 유지나 낚시의 심미적 생태환경의 유지가 근간을 이룬다.

대부분 국가에서 낚시관리의 주안점을 낚시자원이나 환경의 보호에 두는 이유도 낚시에 관련된 산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11] 낚시관리의 산업적 효과체계

## 제4절 낚시관리의 조획이론 분석

### 1. 낚시자원의 변동과 자원증가량

낚시는 낚시자원인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즐거움을 포함한 다양한 효용을 얻는 일종의 여가 활동이다. 따라서 낚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낚시행위와 이의 대상이 되는 생물자원 낚시자원과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 어업에서 어업과 어업자원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본이론을 근거로 한 낚시와 낚시자원과의 간단한 관계는 [그림 2-12]에서 이해할 수 있다.  $F(X)$ 는 낚시자원이 지닌 자원증가량으로 낚시자원의 동학적(dynamics) 개념에서 자원량의 시간적 변화량을 나타낸다. 주어진 낚시자원  $X$ 의 시간적 변동량  $F(X)$ 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주어진다.

$$\frac{dx}{dt} = F(X) = aX\left(1 - \frac{K}{X}\right) \quad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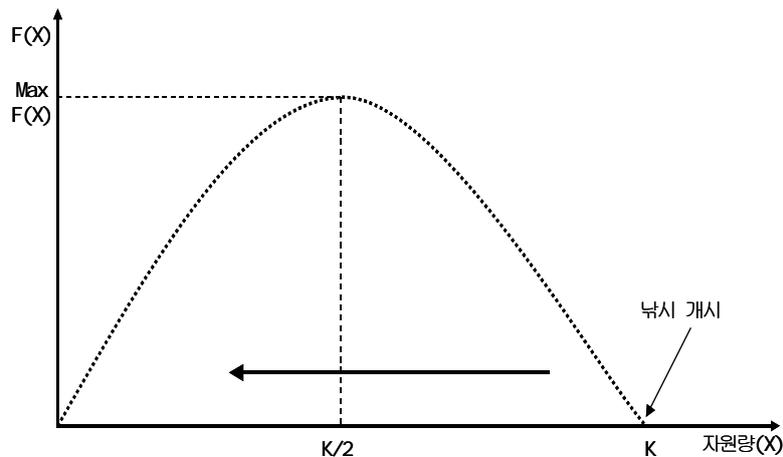
여기서  $a$ 는 낚시자원  $X$ 의 본원적 성장률을 나타내며,  $K$ 는 환경수용력이다. 이때,  $F(X)$ 는 주어진 기간에 단일 낚시자원의 생체량(biomass)이며, 함수  $F(X)$ 는 모든 곳에서 오목하며  $X=K/2$ 일 때 최대가 되며, 이후 점차 감소한다.

주어진 자원량 수준에서 일정기간에 일어나는 자원증가량을 생체량(Biomass)으로 표시한 것이다. 낚시가 개시되지 않은 처녀자원량인 환경수용력  $K$ 에서는 자원의 출생량과 사망량이 같은 수준으로 자원증가량이 영(0)인 자연균형상태가 된다. 그러나 낚시가 개시되면 낚시행위로 인한 자원감소량을 보충하기 위한 자원증가량이 영

(0)보다 크게 된다. 여기서 낚시로 인한 낚시량이 실제로 일어나는 자원증가량보다 많으면 자원은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낚시량이 자원증가량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자원량은 일정한 적정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낚시가 가능해진다.

[그림 2-12]에서 낚시가 개시되지 않는 자연균형점  $K$ 에서 낚시가 개시된다면, 낚시자원이 지니는 본래의 자원증가량과 자연사망량은 더 이상 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 낚시는 자원량을 줄이게 되고, 자원량이 감소하면 낚시자원이 지니는 자원증가량도 증가하다가 자원량이  $K/2$ 가 되는 수준에서 최고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자원량이 감소하면 자원증가량도 같이 감소한다. 따라서 낚시자원이 지니는 자원증가량 곡선은 종모양의 곡선 형태를 이룬다.

이같이 낚시자원은 환경적으로 자율갱신적인 자원증가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낚시량의 적절한 조절은 낚시자원의 지속성을 유지시켜 지속적 낚시를 가능케하며, 나아가 적절한 자원량 수준에서 낚시가능 낚시량의 최대화를 유지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림 2-12] 낚시자원(X)과 자원증가량(F(X))간의 관계

낚시자원의 자원증가량은 자원량이 영(0)으로부터 자연균형점간의 중간점인  $K/2$ 에서 최고치에 달한 후에 다시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낚시자원의 자원증가량이 영보다 크나 자원량이 생존가능한 최소자원량에 근접할 경우에는 낚시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자원량의 지속성이나 낚시의 산업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 2. 낚시자원과 지속적 조획함수

낚시자원에 낚시가 가해질 경우 낚시자원의 자원증가량에 낚시량과 낚시로부터 일어나는 생태 왜곡적 현상이 새로운 변수로 취급된다. 여기서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서 낚시가 지나는 생태 왜곡적 현상에 대해서는 취급하지 않고 낚시량만 취급한다.<sup>1)</sup> 따라서 향후 분석에서 적용되는 낚시량은 앞에서 설명하는 단순한 조획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낚시에서 발생하는 포괄적인 효용의 양적 개념이다. 포괄적인 낚시가 개시되어 매 기간마다  $H(X)$ 만큼 자원량이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자원의 자원증가량에 낚시량을 감한 자원증가량이 된다.

낚시를 위해서는 낚시에 필요한 어선, 낚시도구 그리고 숙련된 낚시인을 비롯하여 음식, 연료, 장비 그리고 미끼 등에 해당되는 낚시생산요소가 투입되며, 이를 낚시노력량이라 한다. 낚시에 투입된 생산요소 즉, 낚시노력량을 통하여 낚시할 수 있는 단위투입노력당낚시량(FPUE: fishing per unit of efforts)<sup>2)</sup>은 낚시자원량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러한 비례관계가 모든 낚시노력량과 자원량 수준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전제하에서 다음과 같은 낚시량 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

$$H = qEX \tag{2}$$

$E$ 는 낚시노력량을 나타내고,  $X$ 는 낚시자원량이며,  $H$ 는 낚시량이다.  $q$ 는 낚시상수(fishingability coefficient)이나 보통 수식 전개에 편리상  $q=1$ 로 두어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표준화시킨 낚시함수  $H=EX$ 로 나타낸다. 이 표준화된 식을 식 (1)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자원증가량 함수식이 얻어진다.

$$\frac{dX}{dt} = F(X) - H(X) = aX \left[ 1 - \frac{X}{K} \right] - EX \tag{3}$$

위의 식에서 자원증가량  $F(X)$ 와 낚시량  $H(X)$ 가 일치할 경우 자원증가량은 영(0)이 되어 자원량  $X$ 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균형을 생물경제적 안정 균형(steady-state bioeconomic equilibrium)이라 한다.

1) 이론적 분석에서 적용되는 낚시량은 양적 질적으로 표시된 조획량에 가용할 낚시터 수나 수역의 범위, 낚시기회의 빈도수나 가능 어종 수 등을 낚시 과정과 최종적으로 얻는 낚시 효용산출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양의 개념이다.

2) 단위투입노력당낚시량은 낚시노력의 자원생산성으로 일반적으로 투입노력량에 대한 낚시율로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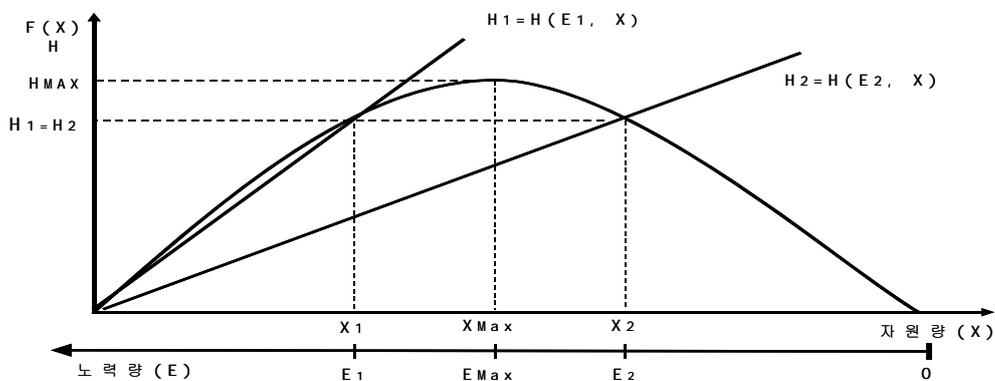
낙시의 지속적 균형은 해당 기간당 낙시량  $H(X)$ 가 낙시자원의 자연증가량  $F(X)$ 와 일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속적 낙시는 (3)식으로부터 낙시량과 낙시자원의 자원증가량이 일치하는 (4)식과 같게 된다.

$$F(X) - H(X) = 0 \quad F(X) = H(X) \quad (4)$$

낙시의 생물경제적 안정균형 상태에서 낙시노력량  $E$ 를 일정불변으로 두고  $F(X)$ 와  $H(X)$ 가 일치하는 균형자원량을 구하면  $E$ 가  $a$ 보다 작을 때 0이 아닌 유일한 균형자원량은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X = K \left[ 1 - \frac{E}{a} \right] \quad (5)$$

[그림 2-13]는 낙시노력량이  $E_1$ 과  $E_2$ 일 때 ( $E_1 > E_2$ ) 자원증가량과 낙시량이 일치하는 것이며, 낙시량  $H_1$ 과  $H_2$ 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이들 각각 낙시량에 대응하는 균형자원량  $X_1$ 과  $X_2$ 가 얻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낙시노력량  $E_1$ 과  $E_2$ 에서 균형자원량  $X_1$ 과  $X_2$ 는 모두 안정적 균형자원 수준이다.  $X_2$ 의 좌측에서는 자원증가량이 낙시량  $H_2$ 보다 커서 자원량이 증가하고,  $X_2$ 의 우측에서는 자원증가량이 낙시량  $H_2$ 보다 작아서 자원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X_2$ 에서 자원량이 안정된다. 그리고  $X_1$ 에서도 좌측에서는 자원량 증가, 우측에서는 자원량 감소로 인하여  $X_1$ 에서 안정적 자원균형을 이룬다. 따라서 낙시량  $H_2$ 는 지속적 낙시량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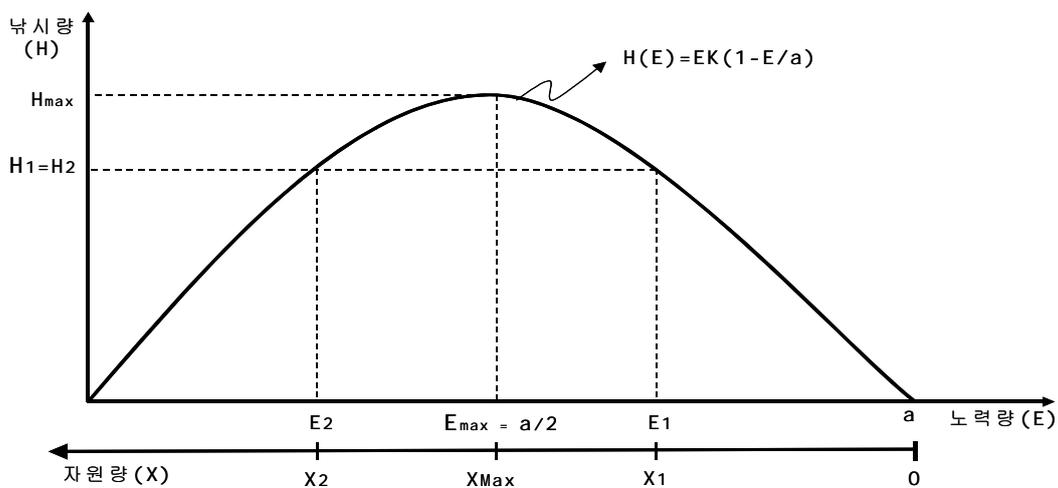
[그림 2-13] 낙시노력량과 균형자원량

낚시노력량과 균형자원량과의 관계 분석에서 낚시노력량이 큰  $E_1$ 에서의 균형자원량  $X_1$ 이  $E_2$ 의 균형자원량  $X_2$ 보다 작다는 사실은 과잉 투입노력량과 자원고갈 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는 낚시노력량이  $E_1$ 에서  $E_2$ 로 줄어도 지속적인 낚시량은 변화없이  $H_1$ 과 같은  $H_2$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2-13]에서 낚시노력량  $E_1$ 과  $E_2$ 에서 균형자원량  $X_1$ 과  $X_2$ 의 관계를 일반화 시켜서 지속적인 낚시량  $H$ 를 얻을 수 있다. 이는 (2)식에서  $q=1$ 로 두고 (5)식을 대입하여 아래 식과 같이 나타낸다.

$$H = EX = KE \left[ 1 - \frac{E}{a} \right] \quad (6)$$

위 식에서 낚시노력량  $E$ 의 값이 주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지속적인 낚시량  $H$ 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얻어진 지속적인 낚시량을 통하여 낚시노력량과 지속적인 낚시량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낚시노력-낚시량곡선(fishing-effort curve)을 도출할 수 있다. 이 곡선은 [그림 2-14]와 같이 [그림 2-12]의 자원증가량 곡선과 동일한 포물선 형태로 나타낸다. 낚시노력량이  $E_1$ 이나  $E_2$ 로 주어지면 균형자원량 수준은 [그림 2-13]에서  $E_1$ 에 대응한  $X_1$ 과  $E_2$ 에 대응한  $X_2$ 가 되고, 지속낚시량은 [그림 2-14]에서  $H_2$ 에서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된다.



[그림 2-14] 지속적인 낚시노력-낚시량 곡선

[그림 2-14]에서 낚시노력량  $E_2$ 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 낚시량은  $H_2$ 도 증대하여 최대지속낚시량  $H_{Max}$ 에 도달한다.  $H_{Max}$ 는 [그림 2-12]에서 자원량이  $K/2$  일 때 얻어지는  $X_{Max}$ 이며, 이같은  $H_{Max}$ 를 얻기 위한 낚시노력량  $E$ 는 [그림 2-13]에서  $a/2$ 이 된다. 일단  $H_{Max}$ 가 얻어지면 낚시노력량  $a/2$ 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속 낚시량은 감소한다. 낚시노력량이  $a/2$ 에서  $E_1$ 으로 증가하여도 지속낚시량은 오히려  $H_{Max}$ 보다 작은  $H_2$ 로 감소하게 되며,  $E_2$ 와 동일한 지속낚시량을 얻게 된다.

계속 낚시노력량이 증가하여  $a$ 로 되면 지속낚시량과 자원량은 0이 된다. 이러한 과정은 [그림 2-13]에서 낚시노력량  $E$ 가 증가함에 따라 직선  $H_2 = H(E_2, X)$ 에서  $H_1 = H(E_1, X)$ 로 기울기가 점차 커지고, 이에 따라 균형자원량은 점차 감소되는 결과로서 이해될 수 있다.

### 3. 낚시자원과 조획의 공공 및 환경문제

낚시 즉, 조획 행위가 낚시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과도한 낚시인의 진입, 낚시량 그리고 간접적인 연안 생태환경의 오염문제이다. 낚시에 따른 직접적인 환경문제는 자유낚시에 의한 무분별한 낚시인의 증가와 이에 따른 주요 대상 어류의 무질서한 낚시 문제이며, 간접적인 영향으로는 제한된 낚시터에 낚시인의 개방적 과도한 진입과 이들이 사용하는 밭밥, 붕돌, 폐조구와 같은 오염물질이나 환경왜곡적 낚시행위의 문제이다. 이 같은 낚시의 공공 및 환경문제는 결국 주요 낚시자원의 생물적 왜곡 내지 자원감소로 인하여 낚시산업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된다. 장소와 시간, 그리고 어종, 체장 등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없는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한 연안환경의 질적 저하는 곧 환경수용력을 저하시키고, 이의 결과 낚시자원의 자연성장과 자원감소의 근본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연안 친수공간에서 행해지는 왜곡적 낚시행위의 생태환경문제는 직접적인 낚시량에 의한 자원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낚시자원의 재생력과 환경수용력에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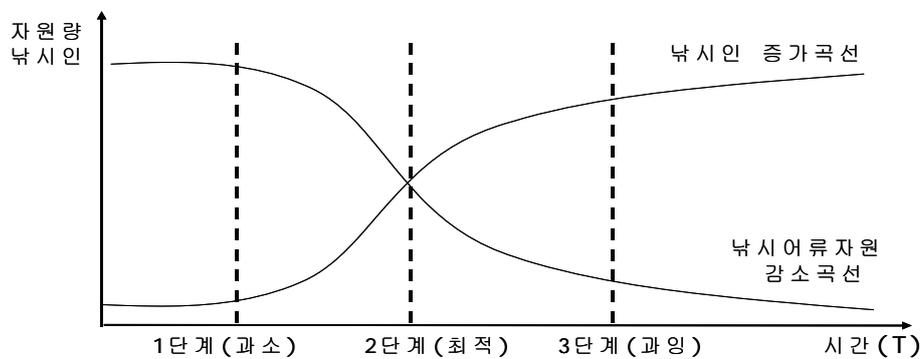
### 4. 자유방임적 조획의 공유재산적 자원 외부성

낚시가 낚시자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낚시 행위와 낚시자원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낚시를 오랫동안 자유롭게 이용(자유방임적 낚시, 자유낚시, 개방낚시, Open Access Fishing)하고 있다는 점은 아직도 자원량 수준이 자연생존의

최소자원량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낚시자원과 같은 공유재산적 자원에 대한 자유방임적 개발·이용은 과도한 자원이용으로 인한 자원감소 내지 고갈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선진국이나 후진국 할 것 없이,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나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자유방임적 낚시자원의 이용하에서는 어느 시점을 지나면 반드시 낚시로 인한 자원감소량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자원증가량보다 많아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자원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낚시자원의 감소가 자연생존 최소자원량에 이르게 되면 낚시자원은 생물자원의 특성상 언제라도 고갈되고 사라진다.

낚시행위가 낚시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별 낚시량보다는 전체 낚시인구에 의한 자연의 수용력을 능가하는 낚시인구로 인한 자원과 생태환경의 불균형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야외 레저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의해서 낚시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림 2-15]는 낚시자원과 이를 이용하는 낚시인과의 상관관계를 단순화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X축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Y축은 낚시인의 수 또는 어류 자원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5] 시간흐름에 따른 낚시인구와 낚시자원간의 괴리현상

낚시인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경우 낚시자원은 상대적으로 풍부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낚시인의 수는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낚시자원은 점차 감소하는 상반된 변화를 추이를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낚시자원의 감소는 곧 과잉된 낚시인의 투입에서 일어나는 자원과 생태환경의 불균형의 결과이다.

낚시의 1단계는 자유방임상태로서 미개발 낚시자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낚시인이 적은 상태에 해당하고, 2단계는 산업적 규모의 확대에 따라 낚시가 점차적으로 발전하여 낚시자원에 균형을 이루는 낚시 인구를 유지하는 단계이다. 낚시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없는 자유방임적 낚시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늘어나는 낚시인구와 산업적 규모의 확대에 따라 낚시자원이 과잉 개발·이용되는 것이 3단계에 해당한다. 3단계에서 대표적인 낚시자원의 개발·이용자는 바로 낚시가 되는데 이때 낚시자원의 특성은 레저자원에 해당한다.

물론 낚시행위는 규모면에서 상업적으로 대량 어획되는 어업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개발·이용 낚시인구가 수백만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낚시자원에 대한 과잉 개발·이용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낚시로 인한 낚시자원의 과도한 개발·이용은 낚시자원을 점차 고갈위기로 몰아가게 된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낚시자원은 개별 낚시산업보다 국민전체의 관점에서 보존·관리되어야 하는 공공의 성격을 띠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는 제도적 접근이 요구된다.

## 5. 낚시의 생태환경적 영향의 조획이론적 접근

낚시가 낚시자원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생태환경적 영향이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낚시인들의 친수공간에 과도한 접근에 따른 생태환경의 피로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낚시터는 친수공간으로 생태적으로 민감한 환경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적정 수준을 넘어 선 과도한 진입은 생태환경이 지니는 자원재생력이나 환경수용력의 균형을 쉽게 무너뜨린다. 특히 연안 친수공간은 물고기의 생육에 필수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서식지이다. 이러한 공간이 지니는 자연환경적 균형의 파괴는 곧 바로 연안의 환경수용력의 감소와 낚시자원의 감소로 이어진다.

다음으로, 낚시행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연안환경의 자정력 약화나 수용력의 감소로 인한 낚시자원의 감소현상이다. 낚시의 생태환경적 문제의 심각성은 낚시행위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이다. 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낚시추(납), 유실 낚시줄, 떡밥, 어분, 묵, 기타 매설물, 각종 쓰레기 등이다<sup>3)</sup>.

이와 같은 낚시와 낚시자원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영향과 변화에 따른 관계는 낚시에 대한 환경경제학이나 자원경제학의 일반적인 이론 접근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낚시의 환경오염에 따른 낚시자원의 감소에 대한 개념적 접근이나 분석은 낚시행위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원감소에 연관시켜 분석된다.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낚시자원의 왜곡문제를 두고 볼 때, 낚시자원의 자연성장력은 일정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연안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적 자연환경질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하게 된다. 특히 낚시자원은 환경오염에 민감한 자연생태적 생물자원이므로 환경변화에 따라 그 자원이 지닌 성장함수의 변화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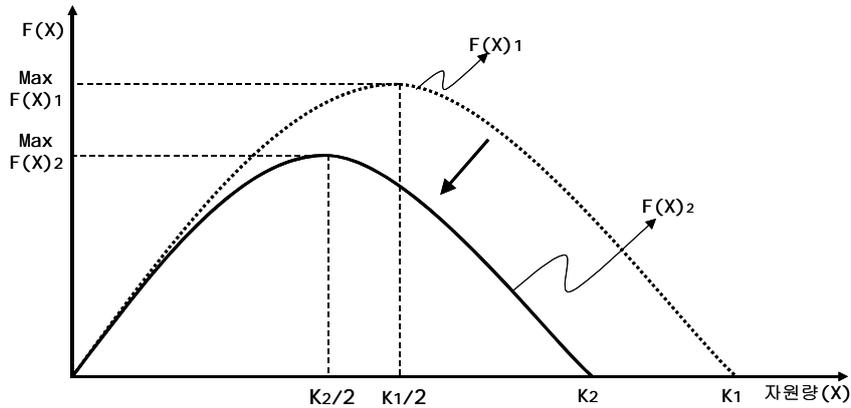
3) 낚시인이 사용하는 오염물질 중에는 집어제가 있다. 이는 연안 백화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글루텐이란 물질로 연안생태환경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낙시자원은 자연환경의 능력에 따라 자체 성장함수를 지닌 밀도 의존적 재생적 성격을 지닌 자원이다. 따라서, 연안환경오염에 따른 자연 환경질이 저하되면 자연히 그 낙시자원이 지닌 자체적 재생능력도 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환경질의 저하에 따른 낙시자원의 자체 재생능력의 저하는 여러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연안오염에 따른 낙시의 손실체계를 여러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만약 낙시 활동으로 인하여 1단위의 연안환경질을 저하시켜 낙시자원의 재생능력을  $\alpha$ 단위 줄이게 된다면, 이것은 마치  $\alpha$ 단위의 낙시로 인한 자원의 감소와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낙시 활동은 이에 따른 연안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질의 저하로 지속적으로 가능한 낙시량 만큼의 손실을 초래할 낙시자원의 재생능력을 감소시키는 사실을 감내해야 한다. 이와 같이 낙시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연안환경오염에 따른 수질의 저하와 낙시자원의 재생능력의 감소사이의 손실 함수적 체계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 아니나, 이것은 마치 낙시로 인한 환경오염이 바다에 있는 낙시자원을 먹어치워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둘째, 낙시 활동이 연안어장의 환경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면, 낙시자원의 자연적 재생능력이 감소되고, 이로 인한 자원손실은 현존하는 자원량 수준의 일정비율로 계산되어 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낙시자원의 생태환경적 영향은 자연생태환경이 지니는 환경수용력의 감소를 통하여 자원의 자연증가율을 변화시켜 낙시산업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와 같은 변화를 낙시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마치 낙시의 수요감소, 조획비용의 상승, 조획기술의 둔화 등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지니고 있어 낙시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먼저 낙시자원이 생태환경적 영향으로 인한 자원증가량 곡선의 변화는 [그림 2-16]의 곡선  $F(X)_1$ 에서 곡선  $F(X)_2$ 로 축소된 형태이다. 생태환경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변화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생태환경이 지니는 환경수용력을 감소시킨다. [그림 2-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오염과 같은 생태환경적 영향으로 인하여 생태환경이 지니는 환경수용력이  $K_1$ 에서  $K_2$ 로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환경수용력의 감소는 낙시자원이 지니는 재생산력의 감소를 통하여 자원량  $X$ 의 자원증가량 또한 감소하며, 이와 같은 결과는 곧 자원량  $X$ 의 자연증가율 곡선이  $F(X)_1$ 에서  $F(X)_2$ 로 축소되는 형태로 변하게 된다.



[그림 2-16] 낚시의 생태환경적 영향과 자원량의 변화

자원량  $X$ 가 생태환경적 영향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낚시에 미치는 영향은 자연증가율 곡선의 변화에서 잘 알 수 있다. 먼저, 생태환경이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자원량은  $K_1$ 에서  $K_2$ 로 감소한다. 다음으로, 각 수준의 자원량  $X$ 가 지니는 자연증가율이 감소되어 지속적 낚시량도 같은 수준으로 감소된다.

동태적 관점에서도 낚시행위로 인한 생태환경적 영향으로 인하여 생태환경이 지니는 환경수용력이  $K_1$ 에서  $K_2$ 로 감소하게 된다면, 자원량의 시간적 변화추세도 환경적 요인이 대폭 확대되어 새로운 로지스틱 성장곡선 형태를 지니게 된다. 즉 자연이 지니고 있는 환경적 요인에 환경오염과 같은 생태환경적 영향이 추가되어 낚시자원의 시간적 자원량  $X$ 의 변화추세는 [그림 2-16]의 아래쪽 곡선에서 새로이 축소된 로지스틱 성장곡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낚시로 인한 생태환경의 왜곡적 현상이 낚시에 미치는 영향은 이용가능한 자원량의 감소로 인한 낚시의 지속적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근본 요인이 된다. 따라서 낚시행위의 생태환경적 영향으로 인한 낚시자원의 생태적 지속성과 지속적 개발·이용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생태환경이 지니는 환경수용력의 보존과 이의 감소를 고려한 적절한 낚시를 유지할 위한 제도적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 제5절 사회경제적 시장효과 분석

### 1. 낚시관리의 시장가치적 효용이론

#### 가. 낚시관리의 시장가치적 효용함수

유어낚시는 경제적 어업행위를 하는 상업적 어업과는 달리 여가의 효용적 동기를 지닌 낚시행위로 일종의 해양 레저·스포츠 산업 부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낚시인은 자신의 낚시행위에 대한 효용이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극대화 되기를 추구한다. 즉 양적인 측면의 효용은 낚시에 투입되는 낚시노력량  $E$ 에 의한 것이고, 질적인 측면은 낚시노력당 낚시량  $H$ 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기서 낚시량은 낚시노력량과 자원량 함수로써  $H(E, X)$ 로 표시할 수 있다. 단위 낚시노력당 낚시량은 낚시자원량  $X$ 가 증가할수록 커지게 되고,  $H'(X) > 0$ <sup>4)</sup> 이 된다. 이러한 낚시량은 일단 낚시자원의 자원증가량 함수로 본다.

낚시인의 효용함수는  $U[E, H(E, X)]$ 가 되고 이때  $\delta U / \delta E < 0$ 과  $\delta U / \delta H > 0$ 이 된다. 그러면 낚시로부터 얻게 되는 낚시인의 효용은 다음과 같다.

$$U = f(E, H) \tag{7}$$

이때,  $E^*$ 는 주어진 기간에 낚시인이 투입하는 낚시노력량에 해당하며  $H$ 는 낚시량이다. 여기서 주어진 식 (7)의 효용함수를  $U = f(E)$ 로 단순화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생물학적 물량단위인 낚시량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여 효용의 값으로 이용한다. 즉 낚시량에 단위 시장가격  $p$ 를 곱한 낚시의 순수입의 값을 효용의 값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그러면 낚시인이 낚시로부터 얻게 되는 효용의 크기는 낚시량의 시장가치로 측정되는 총수입곡선으로 전환된 값으로 나타내는 셈이다. 그러므로 낚시인의 효용곡선은 단순히 낚시량의 시장가치로 환산된 수입의 크기로 나타낸 시장가치적 효용을 나타내고 있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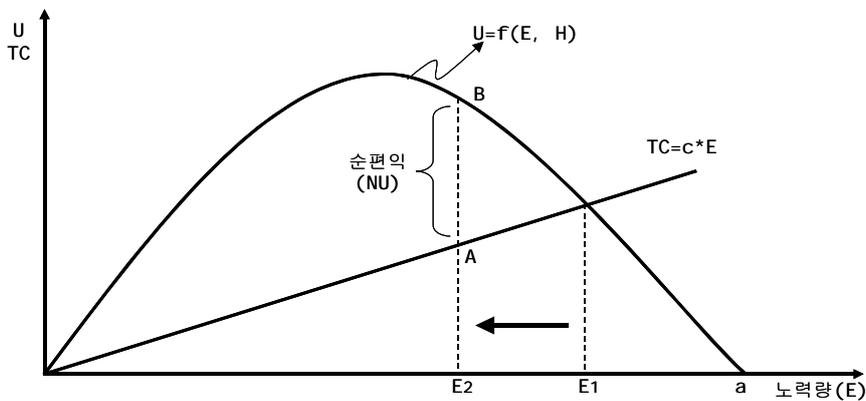
낚시량에 대한 시장가격  $p$ 가 일정하다면 낚시인의 효용곡선은 바로 낚시량 곡선

4) 낚시량은 또한 여타의 요소들, 즉 기술, 날씨, 계절 그리고 어획장비의 종류와 양에 대한 함수이기도 하다. 여기서 단순화를 위해 이러한 요소들은 외생적으로 결정되고,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5) 낚시에서 낚시인이 얻게되는 효용은 단순히 서수적 수치로 산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낚시의 빈도수, 고기의 마리수나 체장, 그리고 어종 등에 의해서 완전하게 측정될 수 없다. 그러나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이러한 요소들이 낚시인의 효용의 크기에 근접하는 내·외생적 요소임을 가정하고, 낚시인의 낚시자원량과 노력량의 결정에 필요한 효용의 크기를 산정하는 주요 요소로 삼는다.

과 동일한 형태를 가진다. 그리고 낚시인은 주어진 낚시량을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간과 적절한 장비를 투입하게 된다면 이들 장비는 주어진 효용을 얻기 위해서 투입되는 일종의 낚시노력량이다. 여기서 모든 낚시인의 낚시행위의 단위 투입노력의 요소비용은  $c$ <sup>6)</sup>로서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낚시에 투입되는 낚시노력량의 총비용은  $TC = E \times c$ 가 된다.

이같이 낚시에서 일어나는 개별 낚시인의 시장가치로 전환된 효용곡선과 비용곡선을 살펴보면 시장가치적 효용곡선은 노력과 낚시량의 함수로 낚시량 곡선의 형태를 띠고, 비용곡선은 주어진 일정한 단위노력당 비용이란 가정하에서 노력량 함수로 나타낸다.



[그림 2-17] 낚시인의 시장가치적 효용곡선과 비용곡선

이같이 주어진 효용곡선에서 낚시노력량의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이 일정불변으로 가정한다면 낚시인의 기간당 순효용인 소비자 지대 즉 소비자 편익은 다음 식 (8)와 같이 표현될 수 있으며, [그림 2-17]에서 시장가치적 효용과 비용의 차이에 해당하는 값으로 노력량  $E_1$ 일 경우에는 순효용이 0이며 노력량  $E_2$ 에서는 순효용이 두 곡선의 차이가 된다. 이같은 낚시인의 순효용을 순편익으로 볼 수 있으며, 지속경제 지대 또는 지속편익, 지속효용 등으로 표현된다.

$$NU = p * f(H) - cE \quad (8)$$

낚시에서 관리가 없는 개방낚시일 경우 효용극대화를 위한 낚시행위에서 일어나는 낚시의 순효용은 일단 0이다. 이는 개방낚시에서 낚시자원은 공유재산적 성격을

6) 물론 개별 낚시인은 낚시지역까지의 거리는 서로 상이하지만,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때기 때문에 낚시노력량의 투입은 시장가치적 효용인 수입과 비용이 일치하여 효용이 완전히 소멸되는 수준까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 2-17]에서  $E_1$ 은 개방낚시에서 투입되는 낚시노력량이며, 이 노력량에서 개방낚시의 순효용은 0이 된다.

만약 낚시노력량이  $E_1$ 보다 적으면 낚시로부터 발생하는 순효용은 0보다 크다. 개방낚시에서 발생하는 순효용이 0보다 크면 새로운 노력량이 투입된다. 따라서 개방낚시에 따른 효용이 완전 소멸되는  $E_1$ 까지 어업노력량이 계속 투입된다. 그러나 낚시노력량이  $E_1$ 보다 크면 비용이 얻게 되는 시장가치적 효용보다 크기 때문에 낚시에 따른 효용이 0보다 적게 되어 낚시손실이 발생되고, 결국 낚시를 포기하는 낚시인으로 인하여 낚시노력량이 줄게 된다. 이러한 경우 낚시의 효용이 약한 낚시인은 궁극적으로 낚시를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낚시노력량은 낚시를 중단한 낚시인 만큼 감소되어 낚시노력량 수준은  $E_1$ 에 머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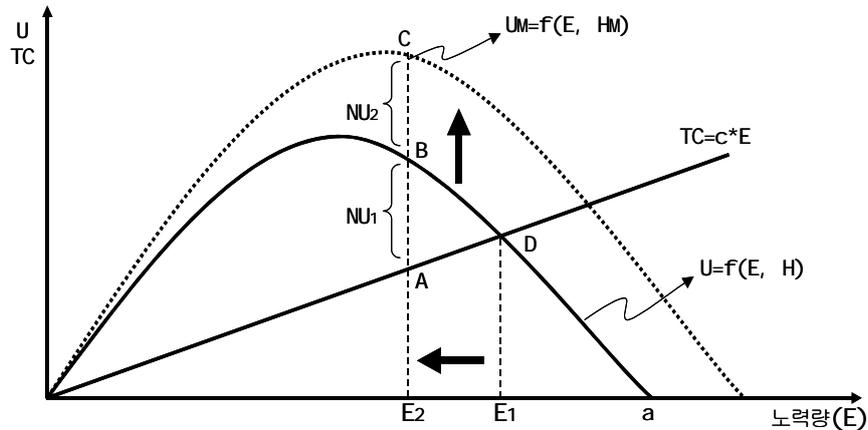
그러나 낚시에 투입되는 노력량이 감소하여  $E_1$ 에서  $E_2$ 로 되면 0에 머물고 있던 낚시 효용이 증가하여 AB로 나타나는 효용 즉 순편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낚시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낚시노력량을 줄이는 제도적 낚시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 나. 낚시의 제도적 관리에 따른 효용의 변화

낚시의 제도적 관리는 기본적으로 [그림 2-17]에서 설명되어진 바와 같이 과도한 낚시인의 참여이나 낚시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생태환경적 영향으로 인한 자원고갈과 사회적 편익의 소멸을 막기 위한 낚시노력량의 적정화와 낚시행위의 제도적 제한에 주안점을 둔다. 우선 낚시노력량을 적정수준으로 줄이면 낚시량의 감소효과와 이로 인한 생태환경의 변화를 통한 자원증가량이 새롭게 증가하게 되는 2단계 효과가 나타난다.

---

7) 여기서 조획노력량의 적정화란 일단 낚시터의 생태환경적 낚시 수용력과 낚시인의 조획투입 노력량의 균형에서 얻어진 노력량의 값을 말한다.



[그림 2-18] 낚시관리에 따른 낚시인의 효용변화

먼저, 낚시가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인 개방낚시에서 생태환경적 영향에 따른 생경제적 균형의 변화를 보자. [그림 2-18]에서 개방낚시의 생경제적 균형은 D에서 이루어진다. 균형점 D에서는  $U=F(E, H)$  곡선과  $TC$  곡선이 만나는 점으로 낚시의 순편익이 0이다. 이 점에서 개방낚시의 균형노력량은  $E_1$ 이다.

여기서 낚시가 제도적으로 관리되어 낚시노력량이  $E_1$ 에서  $E_2$ 로 감소하게 관리 낚시의 생경제적 균형이 A에서 이루어진다. 이 균형점에서는  $U=F(E, H)$  곡선과  $TC$  곡선의 차이인  $N_1(=AB)$ 만큼의 새로운 순편익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노력량의 감소에 따라 낚시로 인한 생태환경적 영향이 감소되어 낚시자원량의 자원증가량 곡선의 변화가 [그림 2-16]의 반대방향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단위노력당 낚시량(fishing per unit efforts: FPUE)이 증가하여  $U=F(E, H)$  곡선이  $U_M=F(E, H_M)$ 으로 상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같은 추가적인 변함에 따라 주어진 균형낚시 노력량  $E_2$ 에서  $N_1(=AB)$ 만큼의 순편익외에  $N_2(=BC)$ 만큼의 순편익이 부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 2. 낚시의 환경비용과 외부성의 내부화

### 가. 낚시행위의 환경비용적 외부성

낚시에서 개방낚시의 경우 유료낚시터, 낚시금지/제한구역 등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비용지불 없이 낚시장비만 갖추면 언제 어디서나 낚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러한 개방낙시에 따른 과도한 낙시인의 진입이나 부분별한 낙시행위로 인한 자원 및 환경의 왜곡적 현상은 경제적 동기의 억제력을 지닌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이 낙시관리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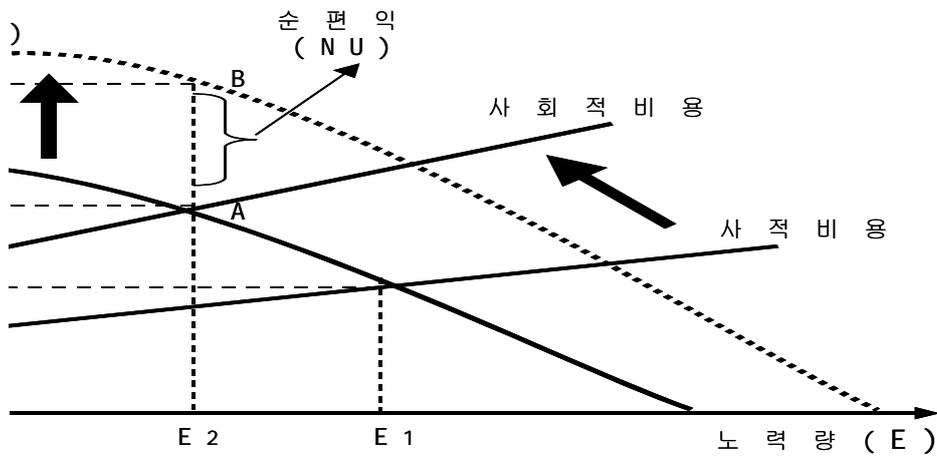
낙시의 제도적 관리에서는 낙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자원과 환경에 대한 접근의 제한이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결국 비용부담을 통한 경제적 동기억제나 낙시행위의 진입 장벽을 통하여 낙시로부터 일어나는 자원과 환경의 왜곡적 현상을 극소화한다.

낙시에서 환경경제적 외부불경제의 효과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낙시활동에 함여 있어 발생하는 비용에서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구분하여야 한다. 낙시에 투입되는 비용은 낙시용구 구매비, 낙시미끼 구입비, 교통비, 낙시어선 이용료, 민박비, 음식료비, 낙시터이용료, 수질정화비용, 각종 쓰레기 소각비 등이다. 이러한 비용에서 낙시인이 지불하는 비용인 사적비용과 낙시인이 직접적으로 지불하지 않는 비사적비용으로 구분되며, 사적비용에 수질정화비용이나 각종 쓰레기 소각비용과 같은 환경비용을 합하면 사회적 비용이 된다.

즉, 낙시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적비용은 개인적 낙시활동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양의 재화를 생산하나, 낙시인이 낙시터에서 유발시키는 각종 쓰레기 및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인 수질정화비용과 쓰레기 처분비용은 낙시행위를 한 주체가 직접적으로 지불하지 않는 비용으로서 부의 재화를 생산하게 된다.

#### 나. 낙시행위의 환경비용적 외부성의 내부화

낙시의 관리에서 환경비용적 외부성 문제의 해결은 낙시인에서 낙시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환경비용을 낙시인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이를 관리낙시에서 환경비용적 외부성에 대한 내부화라 한다. 이와 같은 환경비용에 대한 내부화는 [그림 2-19]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낙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원 및 환경의 왜곡에 대한 환경비용을 낙시인이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U1의 낙시효용을 얻기 위하여 E1만큼의 낙시노력량(인구, 회수)에 해당하는 낙시 사적비용이 투입된다. 낙시의 투입노력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낙시의 사적비용 중 낙시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는 환경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도적으로 낙시인에게 부담시킨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낙시인의 낙시에 따른 명시적 지불비용은 환경비용을 포함해야 하므로, 낙시의 실제적인 비용곡선(공급곡선)은 사적 비용곡선에서 사회적 비용곡선으로 변화하며 낙시에 투입되는 낙시노력량은 E2로 감소하게 된다.



[그림 2-19] 낚시행위에 따른 환경비용적 외부불경제의 내부화

낚시와 관련하여 환경비용을 낚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U_1$ 에  $E_1$ 의 낚시노력량이 이루어지지만 낚시에 관련하여 진정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E_2$ 에서 낚시노력량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낚시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을 낚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경우, 실제 비용보다 낮은 비용으로 낚시를 하게 되므로 낚시인은 상대적으로 낚시에 투입되는 노력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자원고갈이나 환경오염과 같은 왜곡적 자원배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아울러 환경오염 물질의 무분별한 투기 등의 외부효과에 의한 불경제적 현상을 가중시키게 된다.

반대로 효과적인 제도를 통해 낚시인을 관리·통제하여 낚시와 관련한 환경비용을 낚시인에게 부담시킬 경우에는 낚시에 관련하여 진정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E_2$ 에서 낚시노력량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보다 낮은 노력량( $E_1 > E_2$ )에서 보다 높은 효용수준( $U_1 < U_2$ )에서 낚시가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낚시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을 낚시인이 부담할 경우, 실제 비용보다 높은 비용으로 낚시를 하게되므로 낚시인은 상대적으로 낚시에 투입되는 노력량은 줄이게 되지만 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효용은 커진다( $U_1 < U_2$ ).

한편, 낚시에 관련한 환경비용을 낚시인에게 부담시켜 낚시노력량을  $E_1$ 에서  $E_2$ 로 줄이면 이로 인하여 자원고갈이나 환경오염과 같은 왜곡적 자원배분 문제가 줄어들어 시장가치적 효용곡선이  $U = F(E, H)$ 에서  $U_M = F(E, H_M)$ 로 상방 이동하게 된다. 이같은 추가적인 변함에 따라 주어진 균형낚시 노력량  $E_2$ 에서 새로운 순편익(=AB)이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환경오염 물질의 무분별한 투기 등의 외부효과에 의한 불경제적 현상이 감소하게 된다.

## 다. 낚시행위의 환경비용적 외부성의 관리수단

낚시가 지니는 자원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낚시행위를 적절히 관리·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접근에는 우선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경비용의 부담을 낚시인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이 요구된다.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낚시면허제<sup>8)</sup>와 같이 일정한 이용료만 내면 누구나 낚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원이나 환경의 손실에 대한 원인자(오염자)부담의 원칙을 구현하는 제도가 여기에 속한다.

낚시에서 낚시자원은 공유자원이므로 그 이용의 제한이 없으면 자원의 왜곡적 이용으로 인하여 사회 전체의 효용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효용감소가 개인 낚시인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낚시행위를 규제·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리에는 환경오염의 규제 방식과 마찬가지로 규제시점에 따라 사전적 규제관리와 사후적 규제관리로 나눌 수 있다. 사전적 규제관리는 예방차원의 규제로써, 환경영향평가제, 오염유발부담금, 폐기물 수거비 사전예치제, 폐기물재활용 등 환경비용의 의무부과 등이며, 사후적 규제관리는 벌칙 차원의 규제로, 낚시금지, 범칙금부과, 체벌 등 규제사항 불이행에 따른 행정 또는 사법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규제수단에 따라서는 정부의 공권력을 이용한 강제조치인 행정규제와 경제적 유인책인 경제규제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낚시행위의 규제관리 방식에서 행정규제보다는 경제규제 방식이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낚시행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낚시부담금 형식으로 낚시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여기에 정부예산을 보태어, 낚시터 정화사업, 낚시자원의 조성 등의 낚시 진흥책 개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 3. 낚시관리의 사회경제적 시장효과 분석

### 가. 낚시의 제도적 사용자비용(면허료)과 효과

낚시의 제도적 관리에서 정부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하면, 이때 정책적 목표는 낚시로부터 일어나는 사회적 순편익 흐름의 할인된 가치를 최대화<sup>9)</sup>

8) 낚시면허제(recreational fishing license)는 엄밀한 의미의 면허가 아니고 하나의 「증」으로 낚시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보통 낚시면허료제, 낚시이용료부담제, 낚시허가제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일정한 요건 및 자격을 갖춘 자가 일정한 이용료를 지불하고 낚시의 기초지식과 제한된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낚시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

9) 낚시의 동태적 조건하에서 낚시자원의 최적이용은 낚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순수익(지대)흐름의 현재 가치가 극대화되도록 낚시량을 결정하고 그 낚시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낚시자원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

하는 것이 된다. 낚시의 할인된 순편익 가치의 주요 요소는 낚시노력량, 낚시자원, 낚시량, 낚시수요 그리고 사회적 할인율이다. 이러한 낚시 관리의 목적은 해당기간에 최적적인 관리수단을 선택함으로써 낚시로부터 향유하는 사회적 순편익을 최대화하는 문제에 주안점을 둔다.

주어진 기간에 낚시인당 최적적인 낚시노력량을 결정하는 조건이며, 낚시자원에 대한 잠재된 한계사회적가치를 중요하게 다룬다<sup>10)</sup>. 안정적 균형상태에서 고갈되는 낚시자원의 이용에 대한 한계사용자비용은 만약 낚시노력량당 낚시량이 한계편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낚시자원이 풍부하여 자원량 크기의 변화가 낚시노력량당 낚시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낚시자원은 고갈되지도 않고, 또한 사용자비용은 0의 값을 가질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순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낚시노력량이 증가할 때, 한계사회적가치도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자원에 고갈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낚시노력량과 낚시인의 증대로 인한 자원량 효과는 크다. 즉 낚시노력량과 낚시인의 증가는 편익을 증대, 즉 낚시자원의 한계사회적가치를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낚시율에서는 낚시노력량과 낚시인의 증대가 생물학적 성장률의 변화 즉 자원증가량의 부호와 크기에 좌우되어, 생체량(biomass)의 자원증가량을 증대 혹은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낚시인의 한계사용자비용을 고려하여 앞서 언급한 낚시면허료를 낚시인에게 부담시킬 경우 낚시인은 자신의 낚시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게 된다. 우선 낚시행위에 참여하게 되며 낚시면허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이는 정부의 낚시면허제의 수입에 해당하며, 이러한 수입금의 일부를 낚시인을 위해 예상 낚시율을 증가시키는 치어방류와 같은 사업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낚시인의 수요는 증가하고, 낚시에 참여하는 기회와 낚시인의 순편익도 증가한다. 이때 정부의 추가적인 낚시관리 수입이 발생하게 된다. 이 추가적인 수입금으로서 낚시인을 위한 방류사업 및 낚시를 위한 시설비용 또는 불법낚시행위를 위한 감시·감독비용으로 재투자하게 되면 낚시인의 순편익도 함께 다시 증가하게 된다.

#### 나. 개방낚시의 높은 시간선호율과 배타적 낚시이용권

이다.

10) 낚시자원에 대한 한계사회적가치란 낚시자원 한 단위의 자체가치로서 주어진 기간에 낚시자원 한 단위를 더 낚시하면 미래의 낚시량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한계사회적가치 만큼의 가치가 상실되므로 이를 한계사회적비용과 동일시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시점에서 낚시자원 한 단위를 낚시했을 때의 총비용은 낚시비용 이외에도 한계사용자비용이 더 들게 된다. 따라서 한계사회적가치는 낚시자원의 변화에 따른 한계기회비용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시장가격과는 다른 개념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아니라 낚시자원의 희소성에 의해 결정되는 자원 자체의 값 또는 잠재가격, 비용(imputed costs)이다.

모든 시장에서 경쟁이 되는 개방입어 상황에서의 낚시에서는 동일한 선호체계를 지닌 낚시인은 자신의 낚시량으로 부터 순편익을 최대화하려고 할 것이다. 낚시자원은 공유재산적 자원이기 때문에 사적재산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모든 낚시인에 의해 낚시자원이 개방적으로 이용되며, 개별 낚시인은 더 많은 낚시노력량과 더 많은 낚시량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별 낚시인은 낚시로부터 얻게 되는 순한계가치(net marginal value)가 0이 될 때까지 낚시노력량을 투입하기 때문에 개방낚시에서는 사회적으로 최적화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개방낚시에서 개별 낚시인은 타 낚시인의 후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낚시량을 최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개방낚시에서 낚시자원을 이용하는 개별 낚시인의 시간선호(time preference)상의 차이를 지니게 된다. 이에 관련되어 개방낚시 조건하에서 미래의 낚시량을 위해서 현재의 낚시량을 줄일 유인이 전혀 없다. 이는 낚시인이 현재의 낚시량을 절제함으로써 미래의 편익에 대해서는 담보 받기에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즉 개방낚시 조건하에서는 미래의 낚시자원에 대한 상당히 높은 사회할인율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와 같이 낚시인의 높은 시간선호율이나 사회할인율을 지니고 있음으로써 낚시자원의 보존적 동기가 없으며, 자원 및 생태환경에 대한 합리적 개발이용이 불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낚시자원의 이용권을 확립하여 개별 낚시인으로 하여금 미래지향적으로 낚시자원 개발·이용에 대한 시간선호율을 낮추도록 하여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낚시인으로 하여금 낚시자원의 이용에 대한 이용권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여 낚시노력량과 낚시량 단위에 대한 낚시 이용료(user fee)를 낚시인에게 부담시키게 된다.

낚시인에게 배타적 낚시 이용권을 부여함에 따라서 낚시에서 개방낚시가 아닌 관리·규제적 제한에 의한 낚시인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이 경우, 배타적 이용권을 지닌 낚시인의 한계비용에 부과된 이용료는 낚시로부터 향유하는 한계편익과 상응하게 된다. 따라서 배타적 낚시 이용권을 지닌 낚시인의 한계편익은 부과된 이용료에 해당하는 만큼 낚시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미래 지향적인 낚시자원 개발·이용의 낮은 시간선호율을 지니게 된다.

#### 다. 낚시의 제도적 관리에 따른 자원지대적 효과

낚시에서 자유방임적 개방낚시에서 제도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낚시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원 및 환경 왜곡적 현상을 제거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사회적 편익이 변

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편익의 변화는 바로 낚시의 제도적 관리에 따른 효과로 이해된다. 낚시가 지니는 사회적 편익은 어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낚시 활동을 통하여 얻게 되는 낚시인의 지대, 즉 소비자 지대(consumer rent)가 있다.<sup>11)</sup> 그리고 낚시의 대상이 되는 낚시자원에 대한 자원지대(resource rent)가 존재하게 되는데, 개방낚시에서는 이 자원지대가 소멸하게 된다.

개방낚시에서 제도적으로 낚시가 관리되어 배타적인 낚시 이용권이 확립만 된다면, 자원지대는 곧 해당 낚시 이용권을 지니고 있는 낚시인의 소비자 지대 즉 소비자 편익으로 돌아가게 된다. 또한 독점적 낚시 이용권을 지닌 낚시인의 편익은 자원지대와 소비지대를 모두 합한 것이 된다.

이러한 낚시인의 순편익인 자원지대와 소비지대의 발생은 우선 낚시가 제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낚시가 정부에 의한 제도적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사회적 비용과 사적편익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낚시노력량이 투입되어 사회적으로 최적의 낚시수준이 결정됨에 따른 지대의 발생이다. 이같은 지대의 발생은 정부의 제도적 낚시관리에 따른 사후 행위의 관리나 감시·감독의 시행비용이 없다면 낚시 이용료를 낚시인에게 부과하여 사회적 순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낚시노력량을 적정수준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낚시인에게 이용료를 부과한 만큼 총수입을 얻게 되고, 제도적 관리에 따른 일정비용을 상쇄하고서도, 정적수준의 초과분으로 잉여를 얻게 된다. 이러한 잉여부분은 치어방류와 같은 해양자원이나 생태환경에 투입되어 낚시인의 자원지대로 전환된다. 그리고 낚시에 대한 수요 증대를 통하여 낚시인은 순편익, 즉 소비지대를 확보하게 되고, 여전히 발생하게 되는 외부효과(예, 군집효과)로 인한 비용 손실을 감수하는 낚시관리의 지대적 효과를 누리게 된다.

---

11) 낚시활동에 투입되는 낚시노력량에 대한 기회비용을 포함하여 낚시비용과 수입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생산자 지대(PR: producer rent)는 낚시에서는 낚시활동에 대해서 소비인지 생산인지 구분이 모호한 관계로 인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낚시에서는 생산자 지대의 개념을 제외한다.

## 제3장 낚시의 사회경제적 구조분석

### 제1절 낚시의 사회경제적 기초분석

낚시란 낚싯대와 릴, 낚싯줄, 낚시바늘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낚거나 낚으려고 하는 행위를 말하며<sup>12)</sup>, 여가선용과 심신단련을 위한 레저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낚시에는 장소에 따라서 내수면에서 행해지는 민물낚시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바다낚시가 있으며, 보다 규모화 된 산업적 관점에서 이들을 레저·스포츠 낚시 또는 낚시라 한다.

야외 레저로 발전하고 있는 낚시<sup>13)</sup>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사회경제적 수요증대의 잠재력이 높아 어업 못지않게 해양 생태자원을 이용하는 주요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유어낚시의 인구가 증가하여 전통적 어업과 다를 바 없이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유어낚시의 질적 및 양적 발전은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다양한 해양레저의 발달로, 이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증가에 기인된 것이며, 낚시자원<sup>14)</sup>의 이용에 대한 새로운 해양산업적 접근으로 그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낚시자원과 환경이 지니는 성격상 이러한 낚시의 발달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환경 악화와 낚시자원의 생태 왜곡적 현상이다. 이러한 왜곡적 현상은 낚시의 사회적 수요증가에 비례하며, 그 영향이 전통적 어업이 지니는 영향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낚시가 해양환경과 낚시자원의 생육에 밀접한 수역에서 행하여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제도적 관리가 요구되어진다. 낚시도 무주물 선점의 논리나 야수의 법리가 지배적인 환경이나 낚시자원의 이용이란 점을 고려하면 관리규제 및 정책적 지원은 필요 하다고 하겠다.

야외 레저<sup>15)</sup>로서의 유어낚시는 복잡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바다, 호수, 강 등에

12) IGFA(International Game Fish Association)의 낚시규정에 따른 낚시의 정의(해양수산부, 2002, p. 5)

13) 낚시는 민물낚시와 구별되며, 바다낚시 또는 바다유어(游漁)로 이해된다.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recreational fishing이라고 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하는 낚시, 즉 해면낚시어업(marine commercial fishing)의 개념과는 달리 낚시인에게 있어 취미나 레저활동으로의 낚시행위를 의미하며, 이에 유사하게 스포츠 낚시(sport fishing)도 있다. 세계농업식량기구(FAO)에서는 recreational fishing의 정의를 “개인적인 이용, 재미, 도전의식(이익을 내거나 연구 목적이 아닌)을 성취하기 위해 고기를 잡는 행위이며 낚시량의 전부 혹은 일정부분을 판매, 교역을 포함하지 않는 낚시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Stephen Cunningham, Michael R. Dunn & David Whitmarsh, 1985)

14) 낚시에서 낚시의 대상이 되는 물고기는 물고기자원, 어족자원, 어족자원, 낚시자원, 해양생물자원으로, 특히 수산업에서는 수산자원, 어업자원으로 불리나 여기서는 낚시의 대상이 되는 물고기를 낚시자원으로 한다.

15) 낚시는 보통 레크리에이션 낚시(Recreational fishing), 스포츠 낚시(Sports fishing)으로 구별된다. 레크리에이션 낚시는 주로 연안에서 오락, 놀이나 기분전환을 위한 것이다. 대상지역은 연안 근거리에 국한하고 대상어종도 회유성이 낮고 체장도 작으며, 순한 연안 어종이다. 반면에 스포츠 낚시는 근해 원거리 어장을 이용하고, 참치와

서 심신단련, 여가선용, 취미활동 등 생활의 다양화와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사회적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바다에서 행하는 바다낚시, 즉 낚시는 낚시선을 이용한 해변 배낚시는 물론 해안선, 방조제 연장, 방파제, 어촌계, 자연부락 등에서 행하여지는 던질낚시, 갯바위낚시, 방파제낚시, 보트 낚시 등 다양한 유형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낚시인구가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체계화되어 가는 유료낚시의 개념이 새로운 낚시산업의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인 해양산업의 다양한 범주에서 낚시<sup>16)</sup>도 분명히 상업적 어업과 함께 해양 생물자원을 개발·이용하는 레저산업의 일종이다. 따라서 낚시는 바다유어, 바다낚시 등 여러 가지 개념으로 정립되며, 바다낚시인 유어라는 의미에는 낚시를 포함하고 있어 낚시라 규정하고 유어와 바다낚시 및 유어선 등을 포함한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포괄적인 낚시의 의미를 지닌다.

해양레저산업의 발달과 함께 낚시도 점차적으로 산업규모의 확대와 사회적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전통적인 비시장적 가치의 접근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창출하는 일반 산업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곧 낚시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어업과 다를 바 없는 전형적인 낚시자원 개발·이용 산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전통적 어업에서 자유어업이 지니는 병폐를 치유코자 제도적 어업관리가 도입되어 어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 자유방임적 낚시에도 이러한 제도적 관리체계의 당위성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국민들의 레저·스포츠활동인 낚시가 낚시자원의 고갈과 자연생태환경의 파괴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국민의 공유재산 자연자원(common property natural resource: 共有財産 自然資源)인 낚시자원 및 환경의 보존과 사회편익의 극대화란 관점에서 적절한 관리를 통한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낚시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일반 상업적 어업관리와 동일한 관리체계 속에서 관리되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낚시의 제도적 관리가 낚시의 산업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낚시에 대한 산업적 이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같은 회유성이 강하고 힘이 좋은 어종, 특히 자원이 풍부한 어종을 대상으로 근육질의 운동을 낚시의 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연안의 어장이나 어종의 특성상 스포츠 낚시는 적합하지 않다.

16) 바다낚시인 유어(遊漁)라는 개념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 말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 유희를 목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일컫는 바, 우리나라에서는 수산업법 제 2조(정의)에서 "유어"라 함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낚시어선업법」, 「수산업법」에서 유어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의 「수질환경보전법」, 「호소수질관리법」과 건설교통부에서의 「하천법」에서는 그냥 낚시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양수산부의 유어행위는 상업적 어업과 구별하기 위함이고 나머지는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낚시면허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pp93~94, 해양수산부, 2002)

첫째, 해양환경과 낚시자원의 관점에서 낚시가 지니는 사회적 가치와 산업적 수요를 파악하고, 낚시가 해양환경 및 낚시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왜곡적 환경 및 자원 배분 현상을 환경경제적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둘째, 낚시의 대상이 되는 해양환경이나 낚시자원의 정부관리 서비스의 공공재적 접근과 낚시의 수혜자원칙에 따른 환경비용의 자가부담을 전제로 한 낚시를 이해하여야 한다.

셋째, 낚시의 제도적 도입에 따른 해양환경, 낚시자원의 영향과 이에 수반되는 낚시의 성장·발전양상을 분석하여 낚시의 정부관리에 대한 그 타당성의 이론을 이해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산업발달의 양상과 마찬가지로 낚시도 점차적으로 산업규모의 확대와 사회적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전통적인 비시장적 가치의 접근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창출하는 일반 산업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곧 낚시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어업과 다를 바 없는 전형적인 낚시자원 개발·이용 산업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통적 어업에서 자유어업이 지니는 병폐를 치유코자 제도적 관리가 도입되어 어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 낚시에 대한 기본적 이해의 방향도 자유방임적 낚시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구축되어야 하는 당위성도 있다는 점이다.

## 제2절 낚시인구의 추정

우리나라에서 낚시는 오래 전부터 각광받아 온 레저활동<sup>17)</sup>으로 최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해양레저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낚시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산업적인 변모와 함께 새로운 해양레저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낚시가 국민 레저·스포츠로 자리매김하면서 낚시인구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낚시장소의 제한과 유료낚시와 같은 상업적 낚시가 등장하고 있다.

낚시를 산업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본요소인 산업규모의 추계는 낚시인구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낚시인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낚시인에 대한 개념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일반적인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낚시인은 「20세 이상이면서 년 5~6회 이상 낚시를 하는 사람」<sup>18)</sup> 또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레저·스포츠차원에서 물고기를 낚는 취미를 가

17) 우리나라 낚시는 근세 조선조까지는 소수의 양반층이 향유하는 레저로 국한되다가 개화기 이후부터 서민층에게로까지 확산되면서 전 국민적 레저활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8) 환경부 수질보전국(1995년 8월)의 「낚시면허제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낚시인은 20세이상이면서 연 5~6회 이상 낚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진 사람」<sup>19)</sup>으로 개념정리를 하고 있다. 이와같이 낚시인에 대한 개념 및 범위 등에 대한 정의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낚시인구에 대한 추정은 기존의 간헐적인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1] 우리나라 기존의 낚시인구 추정치

자료 출처	추정인구	비고
배상우, 『낚시가 사회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1992	400만	민물70%, 바다30%
환경부 『낚시면허제 추진 계획안』, 1995	325만	한국갤럽표본조사
조계근, 『내수면의 낚시면허제도입 타당성 분석』, 2000	500만	내수면 350만, 해면 150만

자료: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낚시면허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2002, p. 25

우리나라 낚시인구는 300만에서 500만으로 불확실한 추정치를 지니고 있으나 유럽의 전체인구에 대한 낚시인구의 평균비율(전체인구의 4.25%)을 토대로 우리나라 2000년 전체인구 46백만의 4.25%에 대한 낚시인구를 유추해보면 약 2백만의 낚시인구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유럽국가에 낚시인구 비율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낚시인구의 추정에는 우선 낚시인에 대한 개념 정의 및 범위가 상이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많은 국민들이 유럽 선진국 못지않게 낚시를 즐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이고 많은 섬으로 구성된 도서지형이 낚시에의 접근에서 지형적으로 유리한 점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안생태환경에 대한 제도적 관리나 국민들의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낮아서 자유방임적 낚시가 보편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유럽 선진국보다 오히려 더 높은 비율의 낚시인구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연구에서 추정된 3백만 내지 5백만의 낚시인구의 추정이 결코 현실성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19) 낚시춘추(2001) 등의 전문잡지에는 “낚시용품을 구매한 사람 및 낚시대를 스스로 조작할 수 있는 자”로, 표준낚시백과사전(서동인, 도서출판자연과학, 1997)에는 “낚시대를 사용하여 상업목적이 아닌 스포츠 또는 레저차원에서 물고기를 낚는 취미를 가진 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표 3-2] 유럽 낚시면허제 도입국가의 낚시인구

국 가	인구(A)	낚시인구(B)	낚시인구비율%(A/B)
벨기에	10.0	0.30	3
체코	10.5	0.29	2.8
덴마크	5.2	0.25	4.8
프랑스	56.0	5.0	8.9
독일	79.1	1.4	1.8
헝가리	10.3	0.32	3.1
아일랜드	3.9	0.14	3.6
네덜란드	14.5	1.3	8.9
폴란드	39.0	2.0	5.1
슬로바키아	5.39	0.07	1.3
영국	57.1	2.0	3.5
평균	26.45	1.18	4.25

자료: Phil Hickley(ed.), et al, (1998), p. 2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낚시인구의 추정을 위해 한국갤럽에 의뢰한 옴니버스 설문 조사의 표본비율추정치로 통하여 낚시빈도에 따른 낚시인구를 추정을 하였다.

### 1. 추정 방법

2004년도 1, 2, 5월의 3차례에 걸쳐 한국갤럽이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낚시경험 및 그 빈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제주도는 조사지역에서 제외되었으나 전국의 표본비율추정치의 평균을 대입하여 추정) 했으며 조사원이 표본대상에 직접 방문, 면담설문조사 하였다. 표본의 수는 총 4559명으로 1월, 2월, 3월에 각각 1518명, 1514명, 1527명이다.

한국갤럽 샘플링의 기본원리는 인구비례 확률추출법(PPS: Proportionate probability Sampling)으로, 구체적으로는 3단계화 체계적 무작위추출법 (3-Stage Stratified Systematic Random Sampling)이다.

먼저, 전국규모조사를 위한 표본추출 과정은 전국을 광역행정단위별로 16개 단위, 곧 7대 도시(특별시, 광역시)와 9개 도로 나누고, 도는 다시 행정단위별로 시, 읍, 면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지역크기별 모집단 구성비에 따라 표본지점의 수를 계산해, 가구수 비례 할당한다. 모집단 구성비는 최근의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서를 준거로 하며, 표본지점수는 표본수와 표본 1지점당 조사가구수를 계산해 정한다.

가구 수에 따라 비례 할당하여 표본추출을 하기 전에 지역별, 지역크기별 모집단의 구성비에 따라 표본지점수를 계산한다. 모집단 비율은 2003년 12월31일자 주민등록통계자료를 준거로 하며, 표본지점수는 시 지역의 경우 지점당 5-7가구, 읍. 면 지역은 지점당 10~12가구씩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사지점당 조사대

상 가구수는 조사의 성격에 따라 조정된다.

최종 표본지점에 해당하는 실제 조사지점(반/리 단위)을 3단계에 걸쳐 뽑아 내려가며 다단계로 무작위 추출한다.

[표 3-3] 단계별 추출 방법

1단계 추출	
도/시	특별/광역시 또는 해당 도 중 추출된 시에서 할당된 지점수만큼 동을 무작위로 추출한다
읍	해당 도에서 할당된 지점수 만큼 읍을 무작위 추출한다
면	해당 도에서 할당된 지점수 만큼 면을 무작위 추출한다
2단계 추출	
도/시	추출된 동의 통, 반 리스트를 정리한 후 무작위로 통을 뽑는다.
읍	추출된 읍 내에서 리를 무작위 추출한다
면	추출된 면 내에서 리를 무작위 추출한다
3단계 추출	
도/시	추출된 통 내에서 무작위로 반을 뽑는다
읍	추출된 리 내에서 무작위로 자연부락을 뽑는다
면	추출된 리 내에서 무작위로 한 개의 자연부락을 뽑는다

면접원들은 각자 할당된 지역 내에서 자기재량권 없이 미리 정해진 진행경로와 리스트를 가지고 응답자를 찾게 된다. 무작위 추출된 한 가구를 방문한 면접원은 그 집안에서 만 18세 이상의 남녀 가운데 생일이 가장 빠른 사람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면접을 진행하며, 할당된 수를 다 채울 때까지 개별 가구방문을 계속한다.

## 2. 추정 결과

### 가. 낚시인구의 분류

낚시인구 표본비율을 통하여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낚시인에 대한 개념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낚시인에 대한 정의는 아직까지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지 않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낚시인에 대한 정의가 출조빈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며 결과적으로 출조빈도에 따른 스펙트럼의 형태로 낚시인구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서 6단계의 출조빈도를 구분하여 질문조사하고 다시 3단계의 잠재, 일반, 전문낚시인구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출조대상지에 따라 당연히 민물 및 바다낚시인구로 구분 추정하였으며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역시 바다와 민물에 모두 출조하는 낚시인구인 혼합낚시인구로서의 민물위주형 및 바다위주형 낚시인구와 민물 및 바다만을 전문으로 출조하는 순수민물, 순수바다낚시인구를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 (1) 출조빈도에 따른 낚시인구의 분류

총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연 3내지 4회 이하로 출조하는 낚시인구를 잠재낚시인구로 분류하였으며, 둘째, 잠재낚시인구와 전문낚시인구의 출조회수의 중간층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낚시인구(연 5회 이상 50회 이하 즉, 한 달에 한두 번 이하로 출조하는 낚시인구)를 일반낚시인구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출조하는 낚시인구를 전문낚시인구로 분류하였다

#### (2) 출조 대상, 낚시터에 따른 낚시인구의 분류

총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50%이상 민물에 출조하는 낚시인구를 민물낚시인구, 둘째, 50%이상 바다에 출조하는 낚시인구를 바다낚시인구, 셋째, 민물 낚시에만 출조하는 인구를 순수민물낚시인구, 마지막으로, 바다낚시에만 출조하는 인구를 순수바다낚시인구로 분류하였다.

즉, 민물낚시인구와 바다낚시인구 중에는 일부의 낚시인구들이 민물과 바다에 모두 출조하는 형태의 혼합낚시인구가 중간에 존재한다. 하지만 낚시인구의 추정의 목적을 위하여 50%이상, 즉 절반이상 민물과 바다 중 어느 쪽으로 출조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민물낚시인구와 바다낚시인구를 구분하였다. 결국,

- 민물낚시인구 = 민물위주형 낚시인구 +순수 민물낚시인구
- 바다낚시인구 = 바다위주형 낚시인구 +순수 바다낚시인구
- 총낚시인구 = 민물낚시인구 + 바다낚시인구

의 관계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나. 출조빈도별 낚시인구의 추정결과

출조빈도별 낚시인구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년에 낚시를 한두번 가는 경우는 약 215만명, 1년에 서너번 약 108만명, 일년에 대여섯번 131만명, 한달에 한두번 78만명, 일주일에 한두번 31만명, 일주일에 서너번 약 10만명으로 조사되어 적어도 일주일에 1번 이상 낚시를 즐기는 인구는 약 41만명으로 추정되었다.

[표 3-4] 6단계 출조빈도별 낚시인구의 추정치(성별, 연령별,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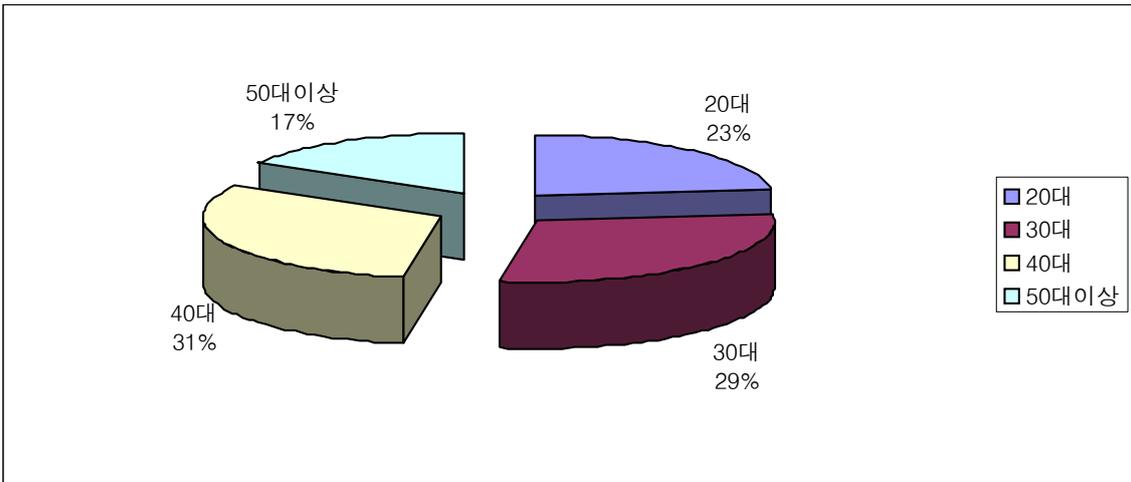
구 분	1년에 한두번	1년에 서너번	1년에 대여섯번	한달에 한두번	일주일에 한두번	일주일에 서너번이상
전 체	2,146,000	1,076,000	1,313,000	783,000	311,000	100,000
남 자	1,403,000	827,000	1,096,000	697,000	280,000	79,000
여 자	741,000	249,000	216,000	87,000	31,000	22,000
20 대	641,000	179,000	312,000	95,000	72,000	32,000
30 대	650,000	366,000	347,000	254,000	84,000	21,000
40 대	527,000	327,000	347,000	188,000	106,000	33,000
50세 이상	334,000	198,000	304,000	243,000	46,000	14,000
남자 20 대	456,000	118,000	267,000	87,000	65,000	24,000
남자 30 대	365,000	259,000	267,000	215,000	75,000	14,000
남자 40 대	336,000	257,000	303,000	164,000	101,000	26,000
남자 50세 이상	248,000	184,000	255,000	224,000	35,000	14,000
여자 20 대	183,000	61,000	46,000	7,000	7,000	8,000
여자 30 대	284,000	105,000	77,000	37,000	7,000	7,000
여자 40 대	191,000	70,000	44,000	25,000	5,000	7,000
여자 50세 이상	85,000	14,000	50,000	18,000	11,000	0
서 울	616,000	250,000	303,000	68,000	27,000	21,000
인천/경기	713,000	274,000	267,000	264,000	54,000	13,000
강 원	60,000	37,000	74,000	50,000	7,000	7,000
대전/충청	143,000	115,000	176,000	46,000	57,000	8,000
광주/전라	184,000	125,000	193,000	147,000	21,000	7,000
대구/경북	137,000	111,000	125,000	60,000	26,000	36,000
부산/울산/경남	268,000	158,000	159,000	143,000	117,000	7,000
제주도	23,000	12,000	14,000	9,000	3,000	1,000

다음으로 출조빈도에 따른 유형별 낚시인구를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총 낚시 인구수 573만명중에서 잠재낚시인구는 약 320만명, 일반낚시인구 210만명, 전문낚시인구는 약 41만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3-5] 출조빈도에 따른 유형별 낚시인구(성별, 연령별,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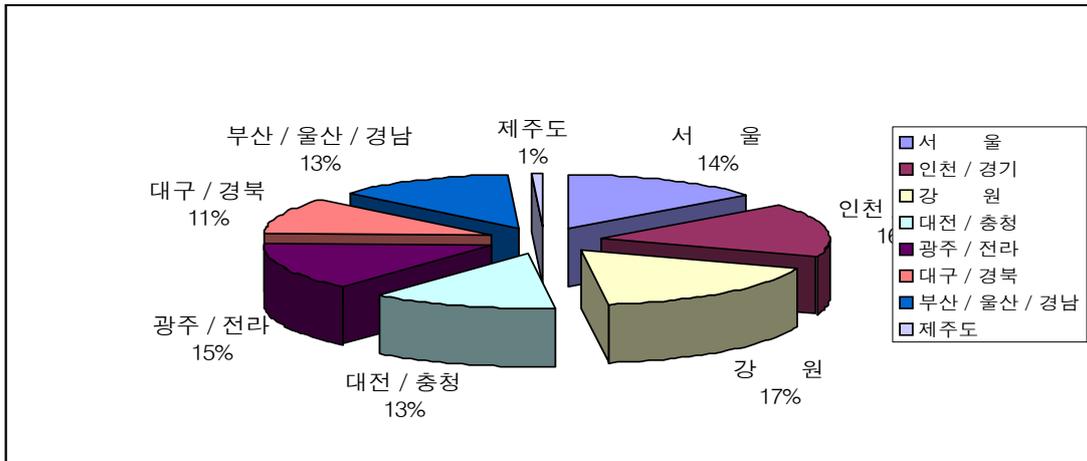
구분	잠재낚시인구	일반낚시인구	전문낚시인구	총낚시인구
전 체	3,222,000	2,097,000	411,000	5,730,000
남 자	2,230,000	1,793,000	358,000	4,382,000
여 자	990,000	303,000	53,000	1,346,000
20 대	820,000	407,000	104,000	1,330,000
30 대	1,016,000	601,000	105,000	1,722,000
40 대	854,000	535,000	139,000	1,529,000
50세 이상	532,000	547,000	61,000	1,140,000
남자 20 대	574,000	354,000	89,000	1,016,000
남자 30 대	624,000	482,000	89,000	1,195,000
남자 40 대	593,000	466,000	127,000	1,186,000
남자 50세 이상	432,000	479,000	50,000	960,000
여자 20 대	244,000	53,000	15,000	313,000
여자 30 대	389,000	114,000	15,000	518,000
여자 40 대	260,000	68,000	12,000	341,000
여자 50세 이상	99,000	67,000	11,000	177,000
서 울	866,000	371,000	48,000	1,285,000
인천/경기	986,000	531,000	68,000	1,585,000
강 원	97,000	124,000	15,000	236,000
대전/충청	258,000	222,000	65,000	545,000
광주/전라	310,000	340,000	28,000	677,000
대구/경북	248,000	185,000	62,000	494,000
부산/울산/경남	425,000	302,000	124,000	851,000
제주도	35,000	23,000	4,000	62,000

참고로, 낚시인의 연령분포와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우선 2004년 1월의 질문인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낚시를 하러 가신 적이 있습니까?」에서는 있다가 17.5%, 2월에는 17.0%, 그리고 5월에는 17.5%로서 전체 우리나라 20세 이상의 성인이 약 17.3%인 약 573만명이 바다 및 민물 낚시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3-1] 유어낭시인 연령분포

유어낭시인의 연령분포를 보면 40대와 30대가 각각 31%, 29%로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3-2] 설문대상자의 주요 거주지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17%, 인천/경기가 16%, 그리고 광주/전라가 15%, 서울 14%, 부산/울산/경남과 대전/충청이 각각 13% 순으로 파악되었다.

#### 다. 출조대상지별 낭시인구의 추정결과

출조대상지에 따른 낭시인구의 추정결과는 민물낭시인구와 바다낭시인구의 비율이 약 66% 대 34%로 총낭시인구 573만명 가운데 379만5천명과 193만5천명을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낚시인구의 추정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들에서 대체적으로 추정되었던 비율인 민물과 바다낚시인구의 비율인 70% 대 30%의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물낚시인구는 순수하게 민물낚시만을 출조하는 인구와 바다낚시에도 혼합하여 출조하지만 출조비율이 민물낚시쪽이 많은 민물낚시위주형 낚시인구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순수 민물낚시인구는 227만9천명으로 전체 민물낚시인구의 약 60%를 차지하였으며 민물낚시위주형 낚시인구도 151만6천명으로 추정되었다. 또, 바다낚시의 경우에도 순수 바다낚시인구는 159만1천명으로 전체 바다낚시인구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과적으로 민물낚시인구의 숫자가 바다낚시인구의 숫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바다낚시인구의 경우가 순수하게 바다쪽으로만 출조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은 눈여겨 볼만한 결과이다.

[표 3-6] 바다 및 민물낚시인구의 추정치

구 분	민물낚시인구	바다낚시인구	총 낚시인구
전 체	3,795,000	1,935,000	5,730,000
남 자	2,855,000	1,527,000	4,382,000
여 자	937,000	409,000	1,346,000
20 대	825,000	505,000	1,330,000
30 대	1,227,000	495,000	1,722,000
40 대	981,000	548,000	1,529,000
50세 이상	753,000	387,000	1,140,000
남자 20 대	661,000	355,000	1,016,000
남자 30 대	851,000	344,000	1,195,000
남자 40 대	713,000	473,000	1,186,000
남자 50세 이상	605,000	355,000	960,000
여자 20 대	162,000	151,000	313,000
여자 30 대	367,000	151,000	518,000
여자 40 대	266,000	75,000	341,000
여자 50세 이상	145,000	32,000	177,000
서 울	1,019,000	266,000	1,285,000
인천/경기	1,128,000	457,000	1,585,000
강 원	193,000	43,000	236,000
대전/충청	396,000	149,000	545,000
광주/전라	517,000	160,000	677,000
대구/경북	345,000	149,000	494,000
부산/울산/경남	160,000	691,000	851,000
제주도	41,000	21,000	62,000

[표 3-7] 민물낚시인구의 추정치(성별, 연령별, 지역별)

구 분	민물위주형낚시인구	순수민물낚시인구	총민물낚시인구
전 체	1,516,000	2,279,000	3,795,000
남 자	1,210,000	1,645,000	2,855,000
여 자	303,000	634,000	937,000
20 대	384,000	441,000	825,000
30 대	442,000	785,000	1,227,000
40 대	347,000	634,000	981,000
50세 이상	334,000	419,000	753,000
남자 20 대	306,000	355,000	661,000
남자 30 대	367,000	484,000	851,000
남자 40 대	261,000	452,000	713,000
남자 50세 이상	250,000	355,000	605,000
여자 20 대	76,000	86,000	162,000
여자 30 대	66,000	301,000	367,000
여자 40 대	83,000	183,000	266,000
여자 50세 이상	80,000	65,000	145,000
서 울	402,000	617,000	1,019,000
인천/경기	299,000	829,000	1,128,000
강 원	87,000	106,000	193,000
대전/충청	247,000	149,000	396,000
광주/전라	251,000	266,000	517,000
대구/경북	185,000	160,000	345,000
부산/울산/경남	32,000	128,000	160,000
제주도	16,000	25,000	41,000

[표 3-8] 바다낚시인구의 추정치(성별, 연령별, 지역별)

구 분	바다 위주형 낚시인구	순수바다낚시인구	총 바다낚시인구
전 체	344,000	1,591,000	1,935,000
남 자	301,000	1,226,000	1,527,000
여 자	43,000	366,000	409,000
20 대	64,000	441,000	505,000
30 대	97,000	398,000	495,000
40 대	96,000	452,000	548,000
50세 이상	86,000	301,000	387,000
남자 20 대	65,000	290,000	355,000
남자 30 대	75,000	269,000	344,000
남자 40 대	86,000	387,000	473,000
남자 50세 이상	75,000	280,000	355,000
여자 20 대	0	151,000	151,000
여자 30 대	22,000	129,000	151,000
여자 40 대	10,000	65,000	75,000
여자 50세 이상	10,000	22,000	32,000
서 울	43,000	223,000	266,000
인천/경기	106,000	351,000	457,000
강 원	22,000	21,000	43,000
대전/충청	32,000	117,000	149,000
광주/전라	32,000	128,000	160,000
대구/경북	32,000	117,000	149,000
부산/울산/경남	74,000	617,000	691,000
제주도	4,000	17,000	21,000

### 제3절 낚시의 특성

#### 1. 행태적 측면

본 연구에서는 2003년 1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직접면담조사와 병행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 낚시인구의 추정에 이용하였던 한국갤럽의 조사연구와 이원화하여 보다 심도 있고 포괄적으로 우리나라 유어낚시에 대한 행태와 사회경제적인 특성을 조사하였다.

자체설문조사의 결과 총 3,90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설문답안에 대한 신뢰성의 검토결과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된 유효설문지는 3,624부<sup>20)</sup>로 나타났다. 민물·바다낚시 각각에 대한 출조지의 선호도, 평균 출조횟수, 출조일수 그리고 평균 밀밥류 투입량, 조력, 조획마리수 및 조획량, 출조비용 등 낚시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표 3-9] 민물낚시 출조지 선호 유형에 따른 이용형태

구 분	출조지 선호도 (%)	평균 출조횟수	평균 출조일수	평균 밀밥류 투입량(kg)
강/하천	204/2082=9.84	36.96	43.36	0.58
댐/호수	239/2082=11.48	28.90	38.90	0.87
저수지	1,477/2,082=70.94	32.39	42.26	0.70
기 타	162/2082=7.78	43.15	53.03	0.91

우선 민물낚시 출조지 선호도를 보면 저수지가 약 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민물낚시에 출조하는 낚시인의 출조지에 따른 평균 출조횟수 및 일수에서는 강/하천, 저수지, 댐/호수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종 떡밥과 미끼 등의 밀밥류 투입량은 기타의 장소에서 가장 높았지만 민물낚시의 분류된 출조장소로서는 댐/호수의 경우에 가장 많은 밀밥류가 투척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평균 0.87kg).

20) 1차 조사에서는 자체 연구원을 이용한 직접설문조사의 경우 260부, 인터넷바다낚시의 사이트를 이용한 설문조사에서 1592부, 포인트낚시의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가 77부로 총 1929부가 회수되었다. 2차 조사에서는 입큰봉어의 사이트에서 1747매, 조은나라의 사이트에서 224부가 회수되어 총 1771매가 회수되었다.

[표 3-10] 바다낚시 출조지 선호 유형에 따른 이용형태

구 분	출조선호도 (%)	평균출조횟수	평균 출조일수	평균 밑밥류 투입량(kg)
갯바위	1229/1533=80.17	28.11	34.66	5.93
방파제	209/1533=13.63	35.44	39.26	3.11
선상	88/1533=5.74	31.94	37.81	3.55
기타	7/1533=0.46	28.00	28.43	2.57

바다낚시 출조지 선호도를 보면 갯바위로 출조하는 낚시인이 약 80%로서 거의 대부분의 바다낚시인구가 갯바위를 단연 가장 선호하는 출조지로 출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갯바위낚시의 경우는 역시 접근성의 제한 때문에 출조횟수나 출조일수에서는 방파제 혹은 선상낚시를 선호하는 인구보다는 그 강도가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유의할 것은 갯바위에서의 평균 밑밥류 투입량은 5.93kg으로서 방파제나 선상낚시에 비해서 2배 이상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갯바위 주변 오염의 강도가 타 지역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1] 바다/민물낚시의 일반적 출조 특성의 비교

구 분	바다낚시	민물낚시
연평균 출조횟수 <sup>21)</sup>	26.9	17.5
연평균 출조일수	27.18	37.77
1회 출조시 평균 조획 마리수	4.33	9.91
1회 출조시 평균 조획량(kg)	2.20	2.77
1회 출조시 평균 출조비용(원)	112,000	58,500
1회 출조시 평균 밑밥류 사용량(kg)	4.54	1.25
평균 조력(낚시경험: 년수)	9.34	15.43

바다와 민물낚시의 경우 연 평균 출조횟수는 각각 26.9회, 17.5회로서 바다가 현저히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1회 출조시 평균 조획마리수와 조획량은 바다낚시의 경우 4.33마리와 2.20kg이고 민물낚시의 경우는 9.91마리와 2.77kg이다. 그리고 1회 출조시 평균 출조비용(교통비, 배삭, 각종 미끼 구입비 등)은 바다낚시가 약 11

21) 여기서의 연평균 출조횟수는 한국갤럽에 의뢰한 설문조사 4559명에서 추출한 것이다.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대상자는 낚시터 및 낚시터인근에서의 직접면담조사와 낚시관련 웹사이트를 통한 결과이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출조횟수를 보이는 대상자들이 표본에 포함됨으로써 출조횟수에 관한한 표본추출오차가 개제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갤럽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만2천원이고 민물낚시는 약 5만8천원이다. 바다낚시가 민물낚시에 비해 출조비용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다낚시의 경우 주로 배를 이동수단으로 하여 갯바위 낚시를 즐기기 때문이다.

바다낚시와 민물낚시에서 투입되는 평균 밑밥류 사용량은 바다낚시가 4.54kg으로 조획량 2.20kg보다 많았고, 민물낚시에서는 평균 밑밥류 사용량이 1.25kg으로 조획량인 2.77kg보다 적었다. 바다낚시의 주요 밑밥류는 크릴새우와 집어제 등이 주를 이루고, 민물낚시의 경우는 떡밥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바다낚시 이용객 중 유어선 이용빈도의 경우는 약 58.7%가 이용하고 있고, 민물 유료낚시터의 연간 평균 이용횟수는 평균 약 9회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민물낚시인구(약 411만명)의 연간 유료낚시터 이용횟수 9회를 적용하면, 유료낚시터의 직접적인 산업규모로는 약 1,110억원이 산출된다. 설문대상자의 낚시장비의 수입품 비중으로는 평균 10%이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12] 바다·민물낚시 출조자체에 대한 만족감의 화폐가치

구 분	1회 출조시 만족감의 화폐가치 평균	1인당 연평균 출조횟수	낚시인구	연 화폐가치 총액	1회 출조시 소비자잉여
바다낚시	365,000원	26.9	1,935천명	약 18조	25만3천원
민물낚시	379,000원	17.5	3,795천명	약 25조	32만원

자체설문조사의 바다·민물낚시 출조자체에 대한 만족감을 화폐가치로 환산할 때, 1회 출조시 만족감의 화폐가치 평균과 1인당 연평균 출조횟수, 그리고 각 낚시인구를 곱하여 바다·민물낚시 자체에 대한 연 화폐가치 총액을 추정하였다. 우리나라의 바다낚시인구들이 1년 동안 낚시라는 레저활동을 통하여 얻는 만족감의 화폐가치는 약 18조, 그리고 민물낚시인구의 연간 만족감의 화폐가치의 총액은 약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낚시인구들을 우리나라의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의 낚시라는 레저활동을 즐기면서 연간 약 43조원에 달하는 화폐가치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추정된 바다·민물낚시의 1회 출조당 만족감의 화폐가치의 추정액에서 각각의 평균출조 비용을 차감하면 바다낚시와 민물낚시의 1회 출조시 소비자잉여를 구할 수 있는데 바다낚시의 소비자잉여는 25만3천원이고 민물낚시의 소비자잉여는 32만원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잉여란 자원·환경경제학적 측면에서 1회 출조하였을 때, 바다낚시터와 민물낚시터의 자연경관이나 환경자체에 대

한 개인의 가치가 포함되어 산출된 것으로서 정신적인 만족감과 스트레스 해소, 가족 또는 동료애를 느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사회경제학적 측면

본 연구에서는 낚시인구의 추정을 통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이외에도 그들의 학력 및 소득수준과 더불어 보유하고 있는 낚시장비의 금액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낚시인구는 전문대 이상의 대졸학력수준이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포의 특성에서는 과반수이상의 낚시인구가 연 소득 2000만원에서 4000만원대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유낚시장비의 경우에는 각 가격수준에 대하여 상당히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 바다낚시인구의 경우가 그 낚시방법의 특성상 민물낚시인구보다는 고가의 장비를 조금 더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3] 유어낚시인구의 학력적 특성 (단위: %)

구 분	바다낚시인구	민물낚시인구	전체낚시인구
무 학	0.34	0.25	0.29
초등학교	0.34	0.70	0.55
중 학 교	1.84	4.28	3.24
고등학교	37.24	34.52	35.69
전문대학	20.34	16.56	18.16
대 학 교	39.59	43.68	41.95
대 학 원	0.27	0.00	0.12
합계(총 응답자수)	100(1465)	100(1987)	100(3452)

[표 3-14] 유어낙시인구의 소득분포의 특성 (단위: %)

구 분	바다낙시인구	민물낙시인구	전체낙시인구
1000만원 이하	4.43	3.84	4.09
1000-1500만원	4.49	3.21	3.76
1500-2000만원	12.63	10.50	11.41
2000-3000만원	26.50	26.19	26.32
3000-4000만원	26.30	27.82	27.17
4000-5000만원	17.06	16.35	16.65
5000만원 이상	8.53	12.09	10.58
합계(총 응답자 수)	100(1536)	100(2085)	(3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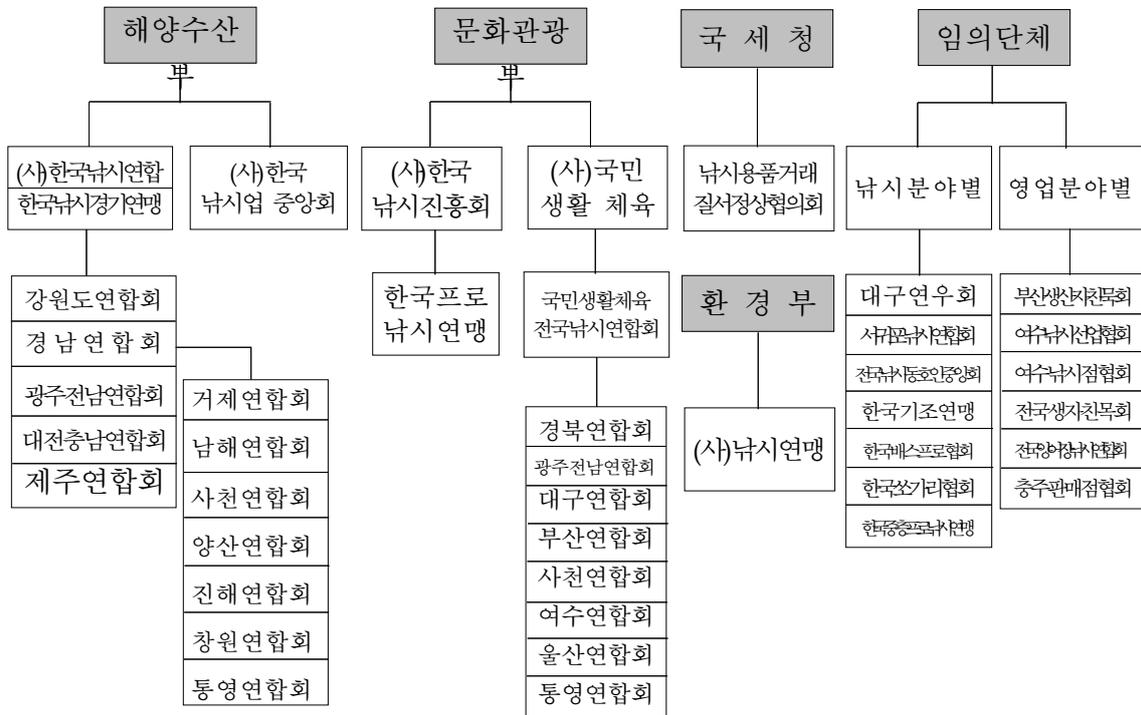
[표 3-15] 유어낙시인구와 보유낙시장비의 금액 (단위: %)

구 분	바다낙시인구	민물낙시인구	전체낙시인구
50만원 이하	7.41	12.09	10.10
50-100만원	17.35	20.43	19.12
100-150만원	15.46	16.64	16.14
150-200만원	13.78	14.58	14.24
200-300만원	20.14	17.84	18.82
300-500만원	14.42	11.22	12.58
500만원 이상	11.44	7.19	9.00
합계(총 응답자수)	100(1,539)	100(2,085)	100(3,624)

## 제4절 낙시관련 단체 및 산업실태

### 1. 낙시단체

낙시관련 단체들은 주로 영리성을 목적으로 그 특성에 따라 현재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4개 부처에 약 5개 사단법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각 사단법인에 지부 내지는 지역협회 형식으로 회원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단법인 아닌 임의단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3-3] 낚시관련 단체 현황

가. 해양수산부 산하단체

(1) 사단법인 한국낚시연합

1976년 서울에서 낚시점을 운영하고 있는 300여 점포 중에서 100여 낚시점주들이 모여 주말출조(버스영업)행사의 담합과 근황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영업목적으로 「전국낚시연합회」 이름으로 임의 친목단체를 구성한 것이 시작점이 되었다. 등록된 회원은 소정의 월회비를 내어 자력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1년 낚시주무관청인 「수산청」(현해양수산부)에 최초의 사단법인 낚시 단체 등록을 하게 되고 이즈음 지방과 일부 뜻있는 낚시인들은 낚시점주 중심의 영리목적 단체 보다는 다양한 낚시계가 참여하여 낚시계 대표성을 갖는 공익단체활동을 원하였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대중레저의 붐을 타고 낚시인구의 기하급수적 증가에서 나타난 낚시터 오염과 낚시터 주민들과의 마찰등 부작용에 의한 사회적 비난 속에 정부의 규제가 강화

되자 유일한 정부공인단체의 이름으로 낚시계의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 역할도 맡아서 하였다.

한때는 서울낚시 점주의 80%까지 회원가입이 늘어났으나 자가용 시대가 도래하면서 개인출조자가 늘어나고 주말 출조행사를 안내하는 각 일간지의 독점게재가 자유롭게 해제되자 회원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단체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999년 명칭을 “한국낚시연합”으로 변경하고 분야별 다양한 장르의 영입과 전국확대를 꾀하였으나 이미 낚시계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타 부처의 새로운 단체탄생과 함께 각 지역별 단체 활동의 분산이 이루어져 기회를 놓쳐버린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단체상황을 자세하게 알 수가 없으나 2003년 21월 기준, 회원은 약60명 정도라는 간접 확인에 불과한 상태다. 겨울과 여름철 2회의 전국낚시대회를 주관하고 있으며 직속에 한국낚시경기연맹을 갖고 있으나 회원1년회비 25만원 납부에 의한 회원자격을 주고 있으며 회원수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산하에 지부형태로 지역별 연합회를 두고 있으나 단체운영의 지원은 전혀 하지 못하며 지역특성에서 나타나는 명분용 법인단체 명칭사용과 상호교류관계에 불과하다. 지역 연합회 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강원도 낚시연합회

춘천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춘천지역을 중심으로 낚시점주와 일반낚시인이 참여하여 임의 찬조에 의하여 어려운 단체 운영을 하고 있는 명분상 존속하고 있는 성격의 단체다.

#### (나) 경남 낚시연합회

경남낚시연합회는 경남통영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도내에 있는 거제낚시연합회(점주중심 52회원), 남해낚시연합회(단위낚시회+점주), 사천낚시연합회(단위회+점주 40), 양산낚시연합회(단위회+점주10),진해낚시연합회(단위회중심), 창원낚시연합회(단위회+점주), 통영낚시연합회(단위회+점주44)로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고 참여회원들의 임의 찬조와 년1회 정도의 낚시대회 행사를 통하여 각 단체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천낚시연합회와 통영 낚시연합회가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하나 독특한 부분은 문화관광부산하의 국민생활체육 전국낚시

연합에 사천과 통영낚시 연합회가 이중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광주·전남 낚시연합회

광주광역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와 인접시의 낚시점주와 개인낚시인이 참여하는 혼합형 관리의 비영리 단체이다. 회원 친목과 각 지역단체간 교류를 하고 있으며 년 2~3회 낚시대회 행사를 주관하고 회원 임의 찬조에 의한 단체 운영을 하고 있다. 하나 특이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산하단체인 국민생활체육 전국낚시연합회에도 소속을 하고 있는 이중소속이 되어 있어, 단체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라) 대전·충청 낚시연합회

대전광역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대전시와 충청권내 지역 낚시점주와 개인단위 낚시회가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다. 년1회의 회원전체 낚시대회와 지역결선 대회를 주관하고 있으며 회원임의 찬조로 어렵게 단체를 운영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제주 낚시연합회

제주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서귀포시를 제외한 제주시와 제주도 전역에 있는 낚시점주와 단위 낚시회 개인중심으로 구성된 임의 비영리 단체다. 제주도의 후원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대표 낚시 단체며 년2회 정도 전체 대회를 주관한다.

(2) 사단법인 한국낚시업 중앙회

경기도 수원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민물 유료 낚시터 운영자들의 영리목적 단체다. 비교적 유료 낚시터의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 경영주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전국 약 800여 업소 중 360곳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매월정기회비 납부에 의한 자력 단체 운영을 하고 있으며, 많은 낚시계 단체 중에 재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년 1회의 전체 낚시대회를 주관하며 회원친목과 개인낚시인들과 유대를 깊게 다지고 있다. 또한 낚시인들의 경기대회 장소를 제공하여 잡는 낚시에서 즐기는 낚시로 선도하며 환경친화 운동에도 동참을

하고 있다.

나. 문화관광부 산하단체

(1) 국민생활체육전국낚시연합회

일반국민의 건강체육 장려운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조직이며, 낚시단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민생체 전국낚시연합회”는 각 지역에 있는 8개 지역의 연합체로 형성되어 있다. 각 단체간 교류와 각 지역에 있는 국민 생활체육 지부의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단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부산 낚시연합회

부산광역시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는 국내최고의 연륜을 갖고 있는 모범단체다. “국민생활체육 전국 낚시연합회”를 사실상 주도하고 이끌며 본부 역할을 맡고 있는 대규모의 단체다. 타 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율참여 임의찬조에 의하여 단체를 자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단체 중 재정상태가 가장 양호한 건전한 단체로 정평이 있다. 부산시장기를 비롯하여 민물, 바다에 이르는 연례행사로 5회의 큰 대회를 주관하며 회원단합과 신뢰를 얻고 있다. 같은 조건의 단체라 하더라도 관리를 맡고 있는 운영진에 따라 얼마든지 자력운영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범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나) 경북 낚시연합회

경북 포항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포항시와 도내지역 낚시 점주와 단위낚시회의 중심단체다. 회원 자율적 참여와 임의찬조 그리고 연례행사로 치러지는 전체회원 대회를 주관하며 자력운영을 하고 있다.

(다) 광주·전남 낚시연합회, 사천 낚시연합회, 통영 낚시 연합회

3개의 지역단체는 「해양수산부」 산하인 “한국낚시 연합”에도 이중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바 있다.

(라) 대구 낚시연합회

대구광역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시내낚시점과 단위 낚시회 그리고 개인 낚시인으로 구성된 단체다. 자율참여와 임의 찬조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례행사로 민물, 바다 2회의 전체대회를 주관하여 회원 친목과 낚시계 현안에 대한 환경보호에도 힘을 쏟고 있다.

(마) 여수 낚시연합회

전남 여수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낚시점주와 단위 낚시회, 개인이 참여하고 있다. 단체가 구성된 지 오래되지 않아 눈에 띄는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 년 1회의 전체 회원 낚시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바) 울산 낚시연합회

울산광역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지역단위 낚시회와 낚시 점주들이 참여하고 있다. 자율참여와 임의찬조로 자력운명을 하고 있으며 전체대회행사를 주관하고 회원 친목을 다지고 있다.

(2) 사단법인 한국낚시 진흥회

1986년은 국내 낚시계를 두개로 갈라놓은 낚시역사의 대란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내 낚시계와 전혀 인연을 맺고 있지 않았던 「문화관광부」에 “한국낚시진흥회”이름으로 법인단체 등록을 하여 낚시계에 정부의 새로운 2개 관리부처로 등장을 하게 하였다.

여기에는 “한국 낚시펜클럽”과 1984년 조선일보사의 “월간낚시”창간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유가 취약했던 시절에 전국의 순수한 낚시인 필진으로 낚시실황에 현신을 해온 각계 유명지인들의 모임체가 “한국낚시 펜클럽”이었다.

1980년에 창립되어 불모지와 같았던 낚시계에 동경의 대상이었고, 그 회원 중에는 변화의 맞춤에 동행 하는 개혁의 소신인도 있었고 신월간지 탄생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한사람도 있었다. 따라서 일부는 신창간 매체에 직접 필진으로 참여하는 회

원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몇몇 회원들을 제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체를 자진해산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재발족을 계획하였으나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집단행동의 해산으로 물고 갔다. 이에 단체존속과 지킴이를 주장하며 남아있는 회원들이 신규 회원을 영입하고 재정비를 하여 이후 5년 넘게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당시에는 경쟁 언론 매체가 없는 상황에서 전문언론 매체의 힘은 막강하였다. 따라서 전문매체의 배경으로 태동한 신단체 「한국낙시진흥회」에는 낙시계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전국 낙시 명사들과 잘나가는 생산유통업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엄청난 찬조금이 모아지고 특히, 국내에 낙시용품을 공급하고 있는 각 업체들은 자사생산 제품마다 낙시환경기금 모음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를 하였고 업체 스스로 기금을 내고 있다는 증표의 대대적 광고까지 해왔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몇 년 동안 엄청난 낙시계의 공익기금이 모아져 있는 것으로 전 낙시인들은 이해를 하고 있다. 낙시단체로서 낙시환경개선 활동의 최적조건에도 불구하고 2~3차례 낙시용품 국제전시회(참가업체 전액자비)행사를 주관하였다.

여기에서 낙시단체들의 특성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할 부분이 있다. 낙시계에 두 개의 공인법인 단체에게 있고 특히, 관리부처가 다른 소속 단체간의 이해관계에서는 낙시계 기득권 우위대립은 첨예할 수밖에 없다. 경쟁적 공익의 진취활동의 확대가 아니라 단체간 견제를 위한 견제가 되풀이 될 때 낙시계 전체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이다.

국내의 사회단체 법인은 부처에 동일 활동업무는 1단체로 제한을 하고 있다. 낙시계의 주무관청은 「해양수산부」(수산청)였고 “전국낙시연합회”가 선 등록되어 두 개의 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한국낙시펜클럽”주체를 잃어버린 주역들의 묘수풀이가 결국낙시계의 양분도 아랑곳하지 않는 무리수를 동원하여 부처가 생소한 「문화관광부」 소속단체로 탄생한 것이다. 결국 두개의 단체 모두가 기로에 서게 되고 낙시인들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 개의 단체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보증금을 기탁해야 하며 그 단체가 해산을 할 때는 기탁금 전액이 국고에 귀속된다. 따라서 “진흥회”는 자진해산 상태까지 왔으나 기탁금에 대한 미련으로 손실보전의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생산업체의 모임단체로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가) 한국 프로 낚시 연맹

짧은 연륜의 탄생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자력운영의 틀을 안고 출발을 한 셈이다. 부산광역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회원의 구성은 낚시점주를 비롯하여 개인낚시인들이 참여한 30~40세대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잡는 낚시에서 즐기는 낚시로 변화하고 있다면 프로낚시연맹의 낚시는 낚시를 즐기면서 이익을 수반하는 철저한 영업낚시라 할 것이다. 명칭답게 낚시의 승부로 상금과 명예를 얻고 기량을 통한 특정영리업소의 홍보 모델을 목표로 하는 직업낚시인의 활동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과 유통업소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영리 목적 단체의 산하 소속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회원은 740명, 연회비 30만원씩의 철저한 납부를 이행하는 회원에 한하여 자체 승부대회의 자격을 갖게 하고 있다. 엄정한 규정 속의 틀낚시를 시도하여 국내낚시의 새로운 낚시 문화를 만들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낚시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의 출현 때문에 일부 문제가 있는 단체로 오해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 다. 국세청 산하단체

##### (가) 낚시용품 거래질서 정상 협의회

이 단체는 국내 낚시 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업체와 유통업체에 국한되어 있다. 영업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성실발행, 세금 탈로업소의 색출과 감시고발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세청 요구로 타의에 의하여 존재한 명칭단체에 불과하다.

#### 라. 임의단체

##### (1) 낚시분야

##### (가) 대구연우회

대구광역시에 본부를 두고 활동을 하는 특이한 환경 단체다. 순수한 낚시인(사업가) 박원규씨가 개인의 자비로 단체를 만들어 매년 전국의 공익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환경운동에 공이 큰사람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비록 임의 단체이지만

법인단체 이상으로 낚시계의 존경을 받는 단체가 되었다. 그 뜻에 감명받은 대구지역 낚시지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

#### (나) 전국낚시 동호인 중앙회

국내 낚시단체 중에서 회원의 수가 가장 많고 유일하게 업계의 협찬을 전혀 받지 않고 있으며 생산과 유통의 업계인을 회원자격에서 배제한 순수한 낚시인들의 모임체다. 낚시정화운동 소비자 보호운동을 목적으로 자의로 결성한 계몽단체다. 1986년에 결성되어 바른 낚시 질서운동과 낚시계 현실정화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하였고 각 부처, 각 도청, 언론사, 관련 청에도 건의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였다. 또 수산청과 일반 관련 업체에 대체미끼 공급과 크릴새우 값 인하운동, 낚시인 낚시금지 관련 불편사항 등 수차례의 건의와 소비자 보호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한때는 전국등록 회원이 8만 3천명에 이르렀고 자체회보 “월간 낚시문화”를 창간하여 회원들에게 연간 무료로 배부를 하였다. 전국회원들의 자발적 찬조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는 순수한 낚시인 비영리 독립계몽단체다. 과대한 회보 발행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회보의 임시 휴간을 하게 되자 그에 따른 계몽운동의 전달 홍보 효과가 약해져 외부활동을 중지하였다. 지금은 회원이 3만 6천명으로 줄어있는 상태이며 회원을 재정비하여 회보를 발간하고 순수낚시인의 권인모임체로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는 조용한 소리가 일어나고 있어 곧 회원 재정리 작업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다) 서귀포 낚시 연합회

제주도 서귀포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지역임의 단체이다. 단위 낚시회와 낚시점주 개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력운동을 하고 있고 제주낚시 연합회와 별개 운영을 하며 산하에 들지 않고 독자 행동으로 매년 전체 행사를 주관한다. 국제 낚시 행사 대회도 유치하여 진행을 하고 있다.

#### (라) 한국기조연맹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바다낚시 전문 단체다. 처음에는 한국프로낚시연맹의 창립 멤버로 일부회원이 참여 하였으나 뜻이 맞지 않아 지금은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에 회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낚시점주와 일부개

인들이 참여하고 있고 승부에 의한 상금과 영리업체의 홍보모델을 목표로 하는 철저한 영리목적의 직업낚시인 단체다.

연회비 30만원의 회비납부자에 회원자격이 부여되고 비교적 안정적인 자력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마) 한국배스프로협회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최근에 새로 구성된 임의 단체다. 한때 배스연맹이 창단되어 상당한 활동을 하였으나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 해산에 가까운 유보 상태에서 재정비를 한 신설임의 단체다.

#### (바) 중충프로낚시연맹

경기도 안성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중충낚시 용품 전문업체의 주축으로 각 지역에 있는 낚시점주들로 구성된 임의 단체다. 중충낚시 개발과 경기진행의 활성을 도모 영리성을 함께하고 있으며 회원확대에 주력을 하고 있다. 현재 회원은 70명 입회비 20만원과 연회비 12만원을 내면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 (2) 업계분야

#### (가) 전국생산자 친목회

국내에 낚시용품을 공급하고 있는 생산업체의 유일한 구심체다. 국내에 낚시용품을 전문공급하고 있는 업체는 약 200여 곳이 된다. 그러나 친목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회원은 30여 업체에 불과하다. 그나마 한때는 정기모임도 자주 있었으나 지금은 년 1회의 정기모임에도 성원이 되지 않아 모임이 연기되는 경우가 많다. 업체간 정보교류와 낚시계 현황에 대한 협의기구 역할을 하였으나 지금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따라서 국내 낚시용품관련 업계의 구심체가 전혀 없는 공백상태이며 낚시단체를 비롯한 각종매체, 낚시인들과의 대화창구가 없는 실정이다.

#### (나) 부산 생산자 친목회

부산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업주들의 유일한 친목 모임체다. 부산에는

약 120여개의 국내공급 전문 생산업체가 있다. 이중에 14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월1회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그러나 매회 성원미달이 이어지고 있다.

(다) 전국양어낚시연합회

경기도 시흥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영리업 목적을 고기를 기르면서 낚시터를 유향화하는 양어장 낚시터 업체의 모임체다. “한국낚시업중앙회”와 영업목적은 같이 하고 있으나 낚시터 허가권 관계에 의한 갈등으로 결별하여 별도로 조직한 단체다.

「해양수산부」 산하 사단법인 환경보호 국민연대 소속으로 활동을 하게 되며 단체내에 “전국양어낚시 경기연맹”을 두고 월1회 정기회원 추천대회를 관리한다. 회원의 월회비 5만원으로 자력운영을 하며 현재 회원은 70명이다.

(라) 기 타

여수낚시선협회, 여수낚시점주협의회, 충주판매점협회, 등 소개된 이외도 업종분야별 친목 형태의 모임체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 2. 낚시산업

낚시산업이란 이러한 각종 낚시용품의 제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각 유통과정에서 행하여지는 관련 업종을 의미한다. 이러한 낚시와 관련한 산업으로 낚시용품인 조구를 생산하는 업체, 도소매업체, 낚시터 주변의 기타 편의시설 관련업체 등을 들 수 있다.

### 가. 조구업체 현황

낚시용품은 낚시행위를 함에 있어 사용되는 각종 도구(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낚시대, 낚시줄, 찌, 낚시바늘, 미끼, 봉돌, 태클박스, 뜰채 등의 낚시대 세트 및 소모품과 낚시복, 낚시모자, 낚시장갑, 신발, 낚시가방, 쪼기 등의 보호장비, 이외 집어제, 미끼통, 아이스박스, 낚시의자, 망치, 칼, 랜턴 등의 기타장비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낚시대와 낚시릴 및 낚시용구 등에 대해 1991년부터 2002년까지의 조구업체수와 생산액을 살펴보면, 낚시대의 경우는 업체수는 1991년에 72개소에서 2002년도에 50개소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생산액도 1991년 1,700억원에서 2002년 1,120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6] 연도별 조구업체수 및 생산량

(단위 : 천개, 백만원)

구분	합 계		낚시대		낚시릴		낚시용구	
	업체수	생산액	업체수	생산액	업체수	생산액	업체수	생산액
1991	240	313,270	72	169,400	23	56,716	145	87,154
1992	232	303,208	73	174,057	22	46,726	137	82,425
1993	245	301,462	77	159,406	27	68,684	141	73,372
1994	238	323,213	70	163,664	30	75,509	138	84,040
1995	261	393,851	79	179,981	40	107,066	142	106,804
1996	252	486,475	82	234,511	36	144,523	134	107,441
1997	255	445,010	71	209,114	36	127,226	148	108,670
1998	224	433,867	61	203,977	40	138,204	123	91,686
1999	235	343,810	52	185,456	33	50,333	150	108,021
2000*	246	362,012	60	133,812	19	96,854	167	131,346
2001**	242	325,958	55	129,427	36	73,645	151	122,886
2002***	221	287,069	50	117,902	34	46,438	137	122,729
연평균	240.92	359,933	66.83	171,726	31.33	85,994	143	102,215

\*) 낚시용구 : 낚시바늘+ 기타 낚시용구 및 수렵 용구

\*\*),\*\*\*) 낚시용구 : 낚시바늘+ 낚시 인조찌+ 기타 낚시용구(뜰채, 포충망 등)

자료 :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1991~2002)

다음으로 낚시릴 관련 업체는 1991년에 23개업체에서 2002년에는 34개업체로 증가하였으나, 생산액은 570억원('91)에서 460억원('02)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낚시용구(낚시바늘, 낚시용조끼, 뜰채 등)의 경우는 해당 업체수가 1991년에 145개소에서 2002년에도 137개소로 줄어들었으나, 생산액은 872억원('91)에서 1,227억원('02)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2002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조구업체수는 약 220개소이고, 생산액은 약 2,870억원 정도로 조사되었고, 최근 11년동안('91-'02) 연평균 조구업체는 약 240개소, 생산액은 3,599억원으로 파악되었다.

#### 나. 지역별 낚시용품 판매

지역별 낚시용품 판매 업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낚시도구도매업체 약 750개소, 낚시용품판매(소매)업체는 약4,000개소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낚시도구도매업체는 주로 부산과 수도권인 서울·경기지역이 전체 업체의 약 55.5%이상 집중되어 있으나, 낚시용품판매점은 경남이 16.2%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남이 15.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부산과 전남이 10.2%,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9.8%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낚시도구 도매의 경우는 부산이 2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 인천, 서울 등의 순이며, 낚시용품 판매의 경우는 경남이 16.2%로 가장 많고, 전남이 11.1%로 조사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낚시 도매의 경우는 대도시, 낚시용품은 낚시터가 많은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에 많이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기타

그 이외에도 낚시관련 산업에는 낚시관련 잡지 및 방송 등에 넓은 의미에서 포함되나, 본 연구에서는 낚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정확한 낚시산업의 추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낚시에 대한 통계가 구축된다면, 좀더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3-17] 지역별 낚시용품 관련업체 현황

(단위 : 업체수)

구 분	낚시도구도매		낚시용품판매		합 계	비 율
	개 수	비 율	개 수	비 율		
합 계	754	100	4,040	100	4,794	100
서 울	71	9.4	193	4.8	264	5.5
부 산	159	21.1	329	8.1	488	10.2
울 산	10	1.3	69	1.7	79	1.6
경 남	99	13.1	654	16.2	753	15.7
인 천	91	12.1	137	3.4	228	4.8
경 기	97	12.9	374	9.3	471	9.8
대 구	44	5.8	157	3.9	201	4.2
경 북	38	5.0	392	9.7	430	9.0
광 주	16	2.1	133	3.3	149	3.1
전 남	41	5.4	448	11.1	489	10.2
전 북	11	1.5	190	4.7	201	4.2
대 전	9	1.2	98	2.4	107	2.2
충 남	26	3.4	277	6.9	303	6.3
강 원	22	2.9	253	6.3	275	5.7
충 북	7	0.9	173	4.3	180	3.8
제주도	13	1.7	163	4.0	176	3.7

자료 : 전화번호부(한미르, <http://WWtel.hanmir.com>)

## 제4장 낚시관리 실태 및 유형과 법체계

### 제1절 낚시관리 실태

#### 1. 민물낚시의 관리실태

##### 가. 민물낚시의 관리구조

우리나라 유어낚시의 관리는 내수면의 민물낚시와 해면과 해안의 바다낚시로 나누어진다. 내수면의 민물낚시의 대상 수역은 육지내의 수류(水流) 또는 수면(水面)이 된다. 즉 하천, 댐, 호소, 저수지 및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내수면과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혹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1항). 내수면은 해수면과는 달리 직접 소유·점유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수면관리자가 존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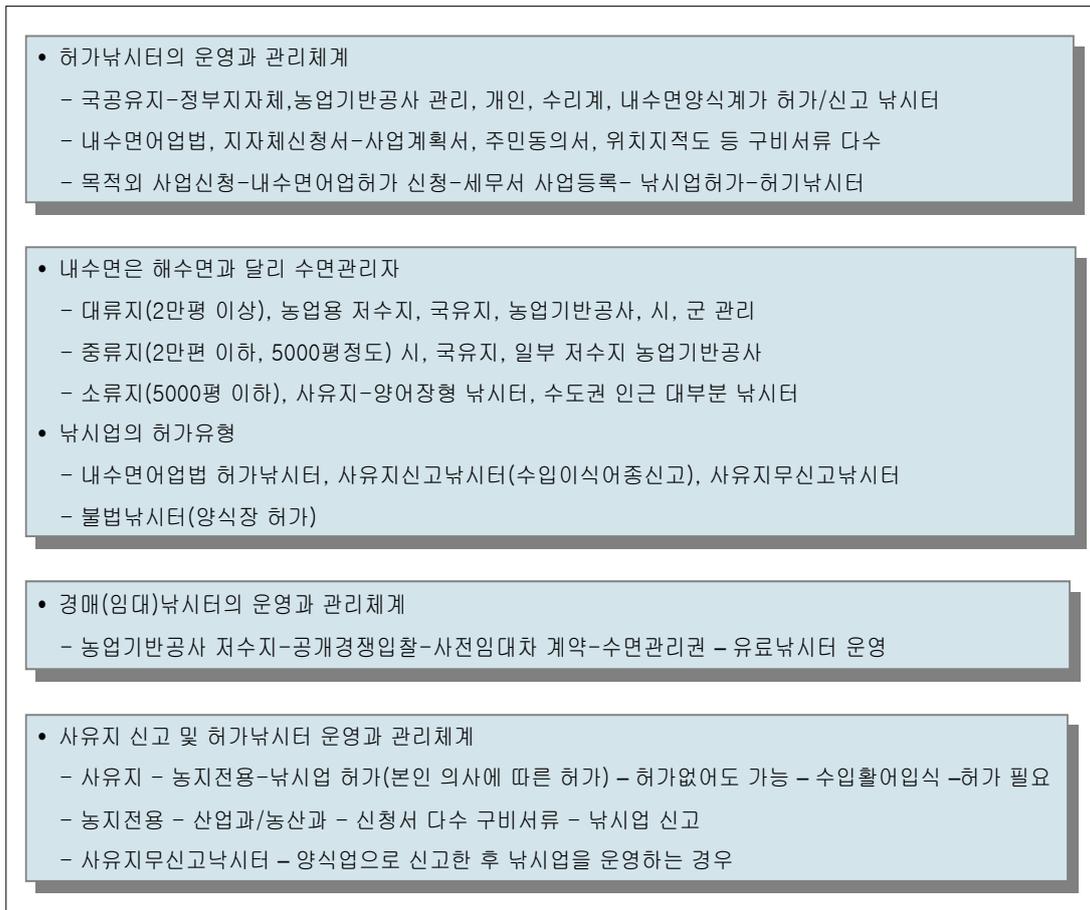
특히, 수면관리자가 있는 유료낚시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며, 크기로 분류하는 형태와 허가방법에 따른 분류의 형태, 수면의 형태에 따른 분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규모로 분류하는 형태에는 대류지, 중류지, 소류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류지의 경우는 2만평 이상으로 자연지의 성격을 띠면서 주로 농업용저수지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대류지의 경우는 거의 국유지로서 농업기반공사나 시, 군에서 관리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중류지의 경우는 수면적이 2만평이하 5000평 정도의 규모로서 대부분 시, 군유지이거나 일부 기반공사의 관리저수지의 경우로 농업용저수지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소류지형태에서 사유지형의 경우는 양어장형 낚시터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한다. 주로 5,000평 이하의 한 눈에 보이는 낚시터로 수도권 인근지역의 대부분의 낚시터에 해당한다.

허가방법으로 분류하는 형태로 볼 때, 낚시업을 허가업으로서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사유지의 경우에는 신고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로 허가낚시터, 사유지신고낚시터, 사유지무신고낚시터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유지 낚시터는 미신고상태로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입어종인 이식 승인 어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므로 최근에는 신고할 수

없는 불법낙시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고를 필하고 있다. 불법낙시터는 양식장으로 신고하고 낙시업을 영위하는 곳으로서 각종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형태로 구분하는 분류에서는 저수지의 지형에 따라 계곡형 낙시터, 평지형 낙시터, 인위적 조성낙시터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림 4-1] 내수면 민물낙시의 관리구조

#### 나. 허가낙시터의 운영과 관리체계

현행 우리나라 내수면에서의 유료낙시터의 운영<sup>22)</sup>은 기본적으로 낙시터(강, 호수, 저수지 등)가 될 수 있는 곳이 국, 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에 따라 다르며, 관리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허가권과 단속권을 가지고 있다.

22) 상수원특별대책권역, 절대농지, 절대녹지(그린벨트) 그리고 군사보호구역은 신규허가불가지역으로 되어 있다.

우선 국, 공유지의 저수지는 대부분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공공용수면인 경우에 수면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이를 개인, 내수면양식계, 수리계가 유료낙시터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수면어업법 제3, 4, 5, 9, 11, 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11조, 시행규칙을 근거로 낙시업을 허가 또는 신고하여 할 수 있다. 즉 국, 공유지의 경우의 낙시업 허가절차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수혜주민동의서, 위치도, 지적도, 토지대장, 현황사진, 구적도, 현황측량도, 시설물배치도 등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목적외사용승인<sup>23)</sup> 신청을 한 후 내수면어업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절차를 거치면 최종으로 낙시업허가를 득할 수 있다.

특히 저수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농업용수로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때 공개경쟁입찰원칙에 따라 사전임대차계약<sup>24)</sup>을 통해 수면관리권을 받게 된다.

#### 다. 사유지 신고 및 허가낙시터의 운영과 관리체계

공공수면과 연결하지 않은 개인수면의 사유지 낙시터는 낙시업을 목적으로 농지법에 의해 농지전용<sup>25)</sup>을 득하고(전용부담금납부) 낙시업 허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허가를 득할 수 있고, 아니하여도 내수면어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활어를 낙시터에 입식할 경우에는 반드시 낙시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전용의 신청은 산업과나 농산과 등에서 신청서, 지적도, 토지대장, 배치도, 설계도, 현황측량도, 구적도, 현황사진, 대체농지조성금, 지역공채의 납부 및 구입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낙시업신고를 하게 된다.

#### 라. 사유지 무신고낙시터

사유지 무신고낙시터라 함은 소위 양식을 목적으로 양식업으로 신고한 후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낙시업을 하는 경우로서 낙시업 행위가 불법이다. 이러한 무신고낙시터는 사용목적은 양식업으로 하여 대체농지조성비는 납부하지 않지만, 고발당하면 그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어 낙시업을 못하게 된다. 이

23)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저수지, 유지, 구거,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 및 그 부지를 시설의 설치목적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4) 임대료는 낙찰금액으로 하고 기반공사와의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매년 갱신계약 체결시 변동된 정수율에 의해 재조정된다. 또한 사용기간은 목적외사용 승인기간으로 하며, 임대료 이외에 부가세가 별도 관련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러한 양어장낙시터는 개발제한구역지정에관한법률 위반과 농지형질변경 면적에 20% 해당하는 침전저(정화시설)를 설치해야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30조의2항 위반과 양어장은 20cm 미만의 고기(수입, 국내산포함)만을 양어용으로 입식하여야 하지만, 이식승인규칙을 위반하여 정밀 검역되지 않은 식품으로 수입되는 20cm이상의 중국 산붕어, 잉어, 향어를 무차별 방류하는 등 여러 가지 위법행위 및 생태환경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등의 유료낙시터로 허가나지 않은 곳에 양어장으로 허가를 받아 유료낙시터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영업하는 곳이 전국낙시업중앙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500여곳으로 불법유료낙시터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2. 바다낙시의 관리실태

### 가. 바다낙시 관리의 기본체제

우리나라 현행 해면 낙시관리의 기본체제는 유료낙시터 및 체험어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35개소로서 어촌계(마을어장), 지구별 조합(협동양식업)의 면허어업으로 되어 있고, 낙시어선업의 낙시로서는 낙시어선법에 의한 낙시어선업자의 낙시선 이용 및 안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기존의 소규모 상업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들이 개별 낙시어선업자로서 임대료를 받으며 실질적인 유료 선상낙시업에 종사하고 있다.

- 유료 낙시터(및 체험어장)지정(수산업법 제55조 유어장의 지정)
  - 어촌계(마을어장), 지구별조합(협동양식업)의 면허어업- 유료 낙시터, 체험어장 지정
  - 유료낙시터체험어장의지정관리에관한규칙, 관리 및 이용료, 이용증 교부
  - 관리자 규정, 이용자 제한/금지, 불법유어장 과태료, 수자보호령의 포획/체취제한 등
- 낙시어선업의 낙시
  - 낙시어선법에 의한 낙시어선업자의 낙시선 이용 및 안전-낙시어선업자에 대한 규정
  - 개별 낙시어선업자의 유료낙시

[그림 4-2] 해면 바다낙시의 관리구조

바다낙시의 관리는 현재 해양수산부가 유료낙시터 지정 및 낙시어선 허가 등의 관리수단을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바다낙시 관리에 대한 법적인 주요 근거는

수산업법 제55조 1항이다. 수산업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어촌계의 마을어장, 지구별협동조합의 협동양식업 면허어업의 어업권자는 어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유료낙시터 또는 체험어장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다낙시의 유료낙시터 운영에 대해서는 유료 낙시터 체험어장의 지정·관리에 대한 규칙이 있으며, 이는 주로 관리와 이용료에 대한 제반 조건과 이용증 교부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다. 주어진 어업권자로서의 유료낙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관리자에 대한 규정, 이용자의 제한 및 금지, 불법어장의 과태료, 낙시자원의 보호를 위한 조획 및 채취의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바다낙시 관리에 있어 유어낙시터의 운영이나 낙시인들의 낙시행위에 대한 규정은 어느정도 정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낙시인들의 이해와 주어진 관리규정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위한 관리주체의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다.

낙시어선업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바다낙시는 주로 낙시어선상의 선상낙시와 갯바위로 이동하여 갯바위에서 행하는 갯바위 낙시가 있다. 기본적으로 낙시어선업 바다낙시는 선상낙시를 의미한다. 그래서 동법의 주된 내용도 낙시관리에 대한 내용보다는 낙시인들의 안전에 대한 내용이다. 낙시어선업자는 승선한 낙시인들의 안전 및 기타 사고발생의 방지하기 위한 제반 요건에 대해서만 규정을 지킨다. 낙시관리의 기본이 되는 조구사용의 제한, 채장이나 마리수, 대상어종의 제한, 대상수역의 제한과 같은 문제는 낙시어선업 낙시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변 바다낙시는 연안의 유료낙시터나 체험어장을 제외하고는 낙시관리에 대한 기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나. 바다낙시터 이용 및 관리 현황

현재 우리나라 바다낙시 및 바다낙시터를 둘러싼 제반 관리 현황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적인 관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현지 어촌계나 청년회 등이 주도하여 입어료 명목으로 낙시인에게 현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어료 수익이 낙시환경 개선에 잘 반영된 지역의 경우에는 초기 입어료 징수 시 발생했던 낙시인들 반발이 점차 사라져 저항 없이 입어료의 운용이 활성화 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1] 낙시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사례

지역	주요내용
기장군 길천 방파제	· 낚시인 1일당 1천원씩 청소비 명목으로 출입료 징수(오전5시~오후7시) → 초기에는 낚시인들의 반발이 심하였으나 환경개선으로 낚시인들도 동의하고 있음
연화도, 미륵도	· 낚시배와 양식장이 연계된 새로운 낚시 모델 개발 (1인당 2만원 : 배삐 포함 5만원) · 양식장 낚시 : 양식장 주변을 지나가는 물고기 대상 ·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양식장 낚시' 안전시설 보강 필요
충남 태안	· 무인도 하선금지 조례 폐지 요구 · 양식장 부근의 좌대 낚시(일인당 3만원) 발달
군산 어청도	· 1인당 5천원으로 입어료를 규정하였으나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 금액이 지불되고 있음(갯바위 청소와 어자원 증대 사업에 쓰임)
기장군 학리 방파제	· 청소비 명목 2천원씩 받음 → 낚시인들과 마찰 발생
거제 이수도	· 섬 전체가 유료 낚시터화 된 상태로 '입어료' 존재 → 낚시인들과 마찰 발생 · 무인도 낚시금지 구역 해제 요구 · 상판낚시(뗏목 설치 유료 낚시터)의 바람직한 활성화 방안 수립 요구 · 낚시배의 출항시간 철저히 단속 요구
완도	· 뺑치기를 비롯한 각종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자원 감소 · 황제도/여서도에서 입어료(1인당 5천원)를 징수하였으나 현재는 없어짐
노대도 단항 /산등 마을	· 고성낚시어선협회에 입어료를 요청한 상태 · 한달에 한번 갯바위 환경 운동 실시 · 응급환자 육지 수송에 기동성이 좋은 낚시배 활용
충남 서천	· 입어료 징수 의견이 있으나 현재 확정된 바 없음

그러나 입어료의 운용에 대한 투명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나 정책적 뒷받침 없이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에서는 낚시인들의 반발로 인하여 마찰이 발생한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낚시터 개발과 병행하여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낚시 쿠폰제, 낚시 전용 종량제 봉투 제도 등과 같은 종합적인 낚시 발전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3. 낚시관리에 대한 불명확한 행정 및 법체계

#### 가. 낚시관리 행정 체계

현재 우리나라의 낚시관리는 불완전한 체계다. 먼저 관리주체인 정부부서가 한 부서에 획일화되지 못하고 해양수산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등

에서 낚시관리에 대한 부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낚시인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관련 법규 항목에 대해 파악하기 힘들다. 예를 들면, 수산해양관련법하에는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유어선법 등이 있고, 자연환경보전법하에는 수질환경보전법, 호소수질관리법, 문화재보호법 등 여러 항목에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이다.



[그림 4-3] 낚시관리에 대한 불명확한 행정체제

이와 같이 부처간의 특성과 상이한 규정 그리고 관리의 상충으로 낚시자원관리의 통합적 관리체제의 미비와 불완전한 실행과 정책난맥, 그리고 자원 및 환경보전의 목표접근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낚시진흥 및 관리에 대해서 총합적인 이행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 나. 불완전한 낚시관리 법체계

우리나라의 현재 낚시와 관련한 기존 법·제도를 살펴보면,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내수면 어업법, 낚시어선법으로 각각 낚시터 지정, 낚시질서확립과 낚시행위의 제한, 그리고 낚시어선의 안전에 대한 관리목적을 지니고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 호소수질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으로 낚시행위의 제한, 생태계 보전이라는 목적으로 가지고 시행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하천법과 수도법의 제정으로 낚시행위의 금지 및 상수원 보호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재보호법으로 포획금지어종을 설정하고 있다.

[표 4-2] 낚시관리 관련 불완전한 법체계

해 당 부 처	법 령
해 양 수 산 부	수 산 업 법
	내 수 면 어 업
	수 산 업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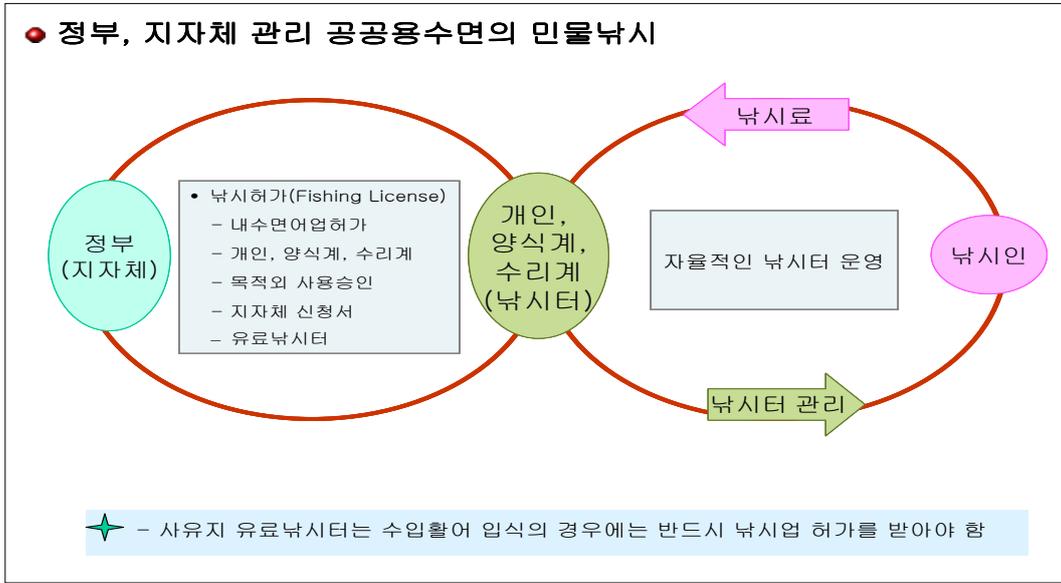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법령들은 각 부처마다 조금씩 상이하거나 중복으로 인하여 혼돈의 소지를 줄 뿐만 아니라 감시 및 감독 그리고 처벌체계가 미약하여 형태만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의 일원화와 통일성을 갖추고, 감시요원의 확충과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

## 제2절 낚시의 관리유형과 제도체계

### 1. 민물낚시

#### 가. 민물낚시의 관리유형과 제도체계

현재 우리나라의 민물낚시 운영체계는 크게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공용수면의 민물낚시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대규모 저수지의 경우로 이분화 되어 있다. 우선 정부 및 지자체 관리의 공공용수면의 경우는 개인, 양식계, 수리계 등으로 내수면어업허가, 목적 외 사용승인을 내어주고, 허가받은 개별관리자들이 유료낚시터로서 운영하게 된다. 이들 개별 관리자는 일반낚시인으로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낚시료를 받고 낚시터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관리한다.



[그림 4-4] 공공용수면의 민물낚시 관리유형과 제도체계

대규모 저수지의 경우는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목적 외 사용승인을 수면관리권 소유자에게 공개입찰원칙의 경매를 통해서 낚시터 운영을 허가해주고 있다. 이때 수면관리권 소유자는 일반낚시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낚시료를 받고 자율적인 낚시터를 운영하고 관리하게 된다.

나. 민물 낚시터 현황

1) 내수면어업의 특성

우리나라의 내수면은 전체 국토면적의 5.7%인 5,692km<sup>2</sup>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하천의 면적은 전 국토면적 대비 2.8%, 댐·호, 저수지 등의 유지는 1.1%, 수로가 1.8%를 점하며 그 외 양어장이 0.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우리나라 내수면 현황

(단위 : km<sup>2</sup>)

국 토 면 적	내 수 면								
	총 면 적	하 천		유 지 (담·호, 저수지)		구 거(수로)		양 어 장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99,585 (100)	5,692 (5.7)	3,886	2,800 (2.8)	17,820	1,108 (1.1)	17,913	1,770 (1.8)	3,124	13.7 (0.01)

주: ( )는 국토총면적에 대한 비중을 표시한 것임

자료: 하천, 유지, 구거 면적은 지적통계연보(2003, 행정자치부), 양어장 면적 및 개소는 수산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2004년도, 해양수산부), 하천개소는 하천일람(2004년도, 건교부), 유지개소는 물관리통계자료집(2004, 수질개선기획단)

이처럼, 내수면의 면적은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지만 내수면이 가지는 산업적 자원의 가치는 다양하며, 우리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즉, 내수면 자원은 수산생물자원, 생태자원, 공간자원, 수자원, 관광자원 등으로 구분되며, 이들 자원들을 이용하는 대상은 수산생물자원에는 수산업, 유어양식, 관상산업, 종자산업 등이 있고, 생태자원에는 연구, 교육, 체험, 근린공원이 포함된다. 또한 공간자원에는 수상레저, 수상교통이 있고, 수자원에는 먹는 물, 생활용수, 산업용수, 농업용수 등이 포함되며, 관광자원에는 레크리에이션, 관광 등으로 각 자원의 세부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내수면의 수산생물자원에 대한 이용도가 가장 높은 것이 내수면어업이다. 내수면어업(내수면어업법 제2조)은 하천, 담, 호소,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다.

내수면어업은 해면어업과는 지형적, 자원적인 측면에서나 이용자들을 고려한 측면에서 그 성격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특성을 가진다. 즉, 해면어업에 비해 어업의 전업도가 낮으며, 농업 및 요식업 등과의 겸업 비율이 높다는 점, 상업적 어업이 아닌 유어자 등에 의한 비어업적에서 수산동식물의 채포비율이 높은 점, 내수면의 자원특징으로서 수산자원의 관리 및 보호·조성이 매우 요구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내수면 활어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생산량을 초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인허가는 있으나 실제로는 어업을 영위하지 않는 유희인허가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점 등도 들 수 있다.

## 2) 내수면어업의 현황

### (1) 내수면 면허·허가·신고

내수면어업의 종류는 크게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으로 나누어진다. 면허어업에는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어업이 포함되며, 허가어업에는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이 있다. 신고어업은 투망, 어살, 통발, 외줄낚시, 육상양식, 관상어양식을 포함한다.

연도별로 내수면어업의 면허, 허가, 신고건수의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허가 및 신고건수는 증가추세에 있지만, 면허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4] 연도별 내수면어업의 면허, 허가, 신고 추이

(단위 : 건)

항목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4,955	6,210	7,134	7,910	8,198	8,856	8,558
면허어업	631	455	228	219	211	199	166
허가어업	2,811	3,344	4,155	4,889	4,712	4,991	4,973
신고어업	1,513	2,411	2,751	2,802	3,275	3,666	3,419

주: 면허어업 : 양식, 정치망, 공동, 조류채취

허가어업: 자망, 종묘채포, 연승, 패류채취, 낚시업, 낭장망, 각망 신고어업 : 투망, 어살, 통발, 외줄낚시, 육상양식, 관상어양식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행정기본자료 각 연도

즉, 허가어업은 1990년 2,811건이 2004년에는 4,973건으로서 77%의 증가를 보였고, 신고어업에서도 동기간 1,513건에서 126%나 늘어난 3,419건이 되었다. 이에 비해 면허어업은 1990년 631건이 양식어업 규제 등에 기인하여 계속 감소하였으며 2004년에는 166건으로 급감하였다.

[표 4-5]는 2004년 업종별 지역별 내수면 면허, 허가, 신고 현황이다. 인허가 전체 건수는 8,558건으로서 지역별로 경기, 전북, 강원, 경남, 충북, 전남, 경북, 충남 등의 순이다.

[표 4-5] 2004년 업종별 지역별 내수면 면허, 허가, 신고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b>합 계</b>	<b>8,558</b>	<b>19</b>	<b>336</b>	<b>29</b>	<b>59</b>	<b>8</b>	<b>4</b>	<b>19</b>	<b>1,903</b>	<b>982</b>	<b>921</b>	<b>668</b>	<b>1,051</b>	<b>911</b>	<b>673</b>	<b>942</b>	<b>33</b>
<b>면허어업</b>	<b>166</b>	-	<b>1</b>	-	<b>1</b>	<b>3</b>	-	<b>1</b>	<b>7</b>	<b>1</b>	<b>3</b>	<b>33</b>	<b>30</b>	<b>55</b>	<b>9</b>	<b>22</b>	-
양식어업	124	-	1	-	1	3	-	1	2	1	3	26	21	40	9	16	-
정치어업	-	-	-	-	-	-	-	-	-	-	-	-	-	-	-	-	-
공동어업	42	-	-	-	-	-	-	-	5	-	-	7	9	15	-	6	-
조류채취	-	-	-	-	-	-	-	-	-	-	-	-	-	-	-	-	-
<b>허가어업</b>	<b>4,973</b>	<b>2</b>	<b>281</b>	<b>19</b>	<b>27</b>	-	-	<b>4</b>	<b>1,418</b>	<b>805</b>	<b>549</b>	<b>295</b>	<b>141</b>	<b>422</b>	<b>346</b>	<b>648</b>	<b>16</b>
자망어업	2,070	-	90	6	-	-	-	-	480	286	248	104	80	273	189	313	1
종묘채포	151	-	-	-	-	-	-	-	128	-	-	5	-	-	3	-	15
연승어업	610	-	81	4	-	-	-	-	238	75	10	14	3	38	24	123	-
패류채취	760	-	110	-	-	-	-	-	153	199	31	-	29	51	25	162	-
낙시업	640	-	-	9	27	-	-	4	215	69	114	104	13	17	55	13	-
낭장망	57	-	-	-	-	-	-	-	51	-	-	-	-	2	3	1	-
각망어업	683	-	-	-	-	-	-	-	153	176	146	68	16	41	47	36	-
기 타	2	2	-	-	-	-	-	-	-	-	-	-	-	-	-	-	-
<b>신고어업</b>	<b>3,419</b>	<b>17</b>	<b>54</b>	<b>10</b>	<b>31</b>	<b>5</b>	<b>4</b>	<b>14</b>	<b>478</b>	<b>176</b>	<b>369</b>	<b>340</b>	<b>880</b>	<b>434</b>	<b>318</b>	<b>272</b>	<b>17</b>
투망어업	251	-	-	-	-	-	-	-	11	-	28	3	4	18	141	43	3
어살어업	20	-	-	-	-	-	-	-	-	-	-	20	-	-	-	-	-
통발어업	325	-	-	6	-	-	-	-	110	17	88	66	1	5	27	4	1
외줄낙시	8	-	-	-	-	1	-	-	-	-	-	-	-	4	-	3	-
육상양식	2,537	-	53	4	30	4	3	13	218	155	225	235	852	391	135	208	11
관상어	81	17	1	-	-	-	-	-	43	-	5	5	4	1	3	2	-
기 타	197	-	-	-	1	-	1	1	96	4	23	11	19	15	12	12	25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면허어업은 전체 166건 중 양식어업이 압도적이며, 지역별로는 전남, 충남, 충남, 전북, 경남에 집중되어 있다. 허가어업은 4,973건 중 자망이 42%, 다음으로 패류채취, 각망, 낙시업, 연승, 종묘채포, 낭장망의 순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강원, 경남, 충북, 전남, 경북, 충남, 부산 등지에 분포한다. 신고어업은 전체 3,419건 중 육상양식이 74%로 가장 많고 통발, 투망이 뒤따르며, 지역별로는 전북, 경기, 전남, 충북, 충남, 경북, 경남, 강원 등의 순이다.

## (2) 어선세력

내수면어업의 어선수는 1990년 3,057척에서 1996년 2,366척이었으나, 그 이후 증가로 돌아서 2000년 3,664척, 2003년에는 4,510척을 기록하였다.

[표 4-6] 내수면어업 어선세력 추이

(단위: 척, GT, 백마력)

연도	합계			동력선					무동력선		
	척수	톤수	마력	척수	톤수	마력	척당톤수	척당마력	척수	톤수	척당톤수
1990	3,057	2,559	324	1,307	1,619	324	1.24	0.25	1,750	940	0.54
1995	2,399	1,653	561	1,651	1,344	561	0.81	0.34	748	310	0.41
1996	2,366	1,608	600	1,689	1,378	600	0.82	0.36	677	230	0.34
1997	2,558	1,665	703	1,855	1,421	703	0.77	0.38	703	244	0.35
1998	2,624	1,703	724	1,913	1,453	724	0.76	0.38	711	250	0.35
1999	2,742	1,589	766	1,967	1,330	766	0.68	0.39	775	259	0.33
2000	3,664	2,874	2,022	2,797	2,591	2,022	0.93	0.72	867	283	0.33
2001	4,330	3,490	2,241	3,527	3,232	2,241	0.92	0.64	803	258	0.32
2002	4,683	4,112	2,658	3,882	3,858	2,658	0.99	0.68	801	254	0.32
2003	4,510	3,941	2,580	3,737	3,697	2,580	0.99	0.69	773	244	0.32

자료 : 통계청(<http://kosis.nso.go.kr>) 업종별어선세력 통계

### 3) 수계별 어업 실태

#### (1) 수계별 지역별 어업 특징 및 문제점

우리나라 내수면의 각 수계별로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현황을 정리한 것에 따르면 한강 12개, 낙동강 19개, 금강 13개, 영산강 7개, 섬진강 9개의 자치단체가 중복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지자체들이 행정구역 내의 하천을 부처별로 상이한 목적으로 이용과 보전 등의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수계별의 관리를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선, 각 지자체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7] 각 수계별 관할 자치단체

수계별	관할 자치단체	
한 강	1개 특별시, 8개 시, 3개 군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 서울시, 구리시, 하남시, 남양주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군, 충주시, 단양군
낙동강	2개 광역시, 8개 시, 9개 군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문경시, 상주시, 구미시, 칠곡군, 달성군, 대구광역시, 성주군, 고령군, 합천군, 창녕군, 의령군, 함안군, 창원시, 밀양시, 김해시, 양산시, 부산광역시
금 강	1개 광역시, 4개 시, 8개 군	군산시, 서천군, 익산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공주시, 연기군, 청원군, 대전광역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영산강	1개 광역시, 1개 시, 5개 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나주시, 장성군, 담양군, 광주광역시
섬진강	4개 시, 5개 군	광양시, 하동군, 구례군, 순천시, 곡성군,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정읍시

한편, [표 4-8]은 수계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수면어업의 현황 및 특징을 어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를 사례로 하여 정리, 분석한 것이다.

각 수계 공통적인 특징은 면허어업의 경우 하천 보다는 하천에 연계된 지류의 저수지 등에서 조방적 양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허가어업은 낚시어업, 자망어업, 주낙어업 등이 많고, 신고어업의 경우는 투망, 통발, 육상양식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상류 보다는 하류가 전업도가 높고 패류채취는 겸업의 비율이 높으며, 방류사업은 하천 보다는 저수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상류에는 어업인허가에 추가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하류에서는 어업인허가 정한수의 설정을 요망하고 있다.

종묘방류는 시군별로 국비와 지방비로, 지방비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내수면연구소에서 생산된 종묘를 무상 방류하는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해수면에 비해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 이유는 사업이 연속적이지 못하고 수계별로 다양한 종묘가 생산되지 않고 있는 등 해면 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지자체 행정력의 미약하고 타 부서와의 협조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유어객의 규제와 불법어업의 단속, 정치성어구의 방치를 꼽는 것이 많았다.

[표 4-8] 수계별 어업 현황 및 특징

구 분	상류	중·하류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허어업 : 강의 본류 보다는 지류 혹은 저수지에서 양식을 하는 경우가 多</li> <li>· 허가어업 : 낚시, 자망, 주낙 多, 신고어업 : 투망, 통발, 육상양식</li> <li>· 패류채취의 경우 겸업비율이 높음</li> <li>· 방류사업이 하천보다는 저수지 중심으로 운영</li> <li>· 문제점 : 행정력 미약, 타 부서와 비협조, 유어객 규제, 불법어업 단속, 정치성어구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겸업(농업, 요식업) 비율이 높음</li> <li>· 어업인허가 추가에 부정적</li> <li>· 잉어, 붕어 + 잡어(동자개, 메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업비율이 높음</li> <li>· 어업인허가 정수의 설치 요망</li> <li>· 잉어, 붕어 + 기수대 어종</li> </ul>
한 강 (김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어법 : 자망, 종묘채포</li> <li>· 대상어 : 송어, 붕어, 잉어, 실뱀장어</li> <li>· 상·중·하류에 걸쳐 모두 어선어업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li> <li>· 방류사업도 활발히 이루어짐</li> </ul>	
낙동강 (밀양시/ 부산 강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어법 : 자망, 각망</li> <li>· 대상어 : 잉어, 붕어, 장어, 메기, 동자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망, 연승, 통발</li> <li>· 누치, 붕어, 잉어, 배스, 블루길, 끄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선어업 주, 패류(재첩)채취 비율 증가, 유어객 및 불법어업과의 분쟁</li> </ul>	
금 강 (나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어법 : 자망</li> <li>· 대상어 : 잉어, 붕어</li> </ul>	
영산강 (함평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어법 : 자망, 각망</li> <li>· 대상어 : 잉어, 붕어, 가물치 등</li> <li>· 삼각망 철거 문제 해결을 위해 "수면사용 보증료" 부과(함평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패류(다슬기) 채취 多</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선어업 활발</li> </ul>
섬진강 (하동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어법 : 자망, 종묘채포(각망 없음-수계특성)</li> <li>· 대상어 : 다슬기, 재첩, 참게</li> <li>· 섬진강 환경 협의회 구성 : 자원관리, 자원보호를 위해 6개 시군이 공동관리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선어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li> <li>· 다슬기 등 채취 비율이 높아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어업 재첩, 참게 증심</li> <li>· 방류사업 활발</li> <li>· 불법어업 및 유희어업 비율이 높음</li> </ul>

자료 : 현장조사 결과 정리한 것임

한편, 수계별 지자체별 내수면어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강의 경우, 어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상류, 하류 모두 어선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포시는 주 어업종류는 자망과 종묘채포이며, 어획어종은 송어, 붕어, 잉어, 뱀장어 치어 등이다. 방류사업도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군사보호구역의 설정으로 군 당국으로부터 조업을 제한받고 있으며, 행정인원이 부족하고 다른 부서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며, 타 지자체와도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충분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인허가는 원칙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업인간 어선매매에 의해 허가가 부여되는 등 제도와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sup>26)</sup>.

낙동강의 경우, 어선어업이 주력이고 패류 채취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상류는 자망과 각망을 이용하여 잉어, 붕어, 장어, 동자개를 어획하며, 하류는 자망, 주낙,

26)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의하면 어업의 면허 및 허가는 우선순위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통발이 누치, 붕어, 잉어, 배스, 블루길, 꼬리 등을 어획하고 있다. 방류사업도 비교적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밀양시의 경우에는 1999년부터 은어를 꾸준히 방류하고 있고, 부산 강서구에서도 잉어를 방류하였던 적이 있다. 문제점은 다른 수계와 마찬가지로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고, 김포시와 마찬가지로 어선 매매를 통한 어업허가의 취득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어객에 의한 쓰레기 투기, 불법어구(잠수기 및 삼중자망) 및 낚시제한구역의 위반 등이 있고, 어업인에 의한 정치성어구의 방치 등의 문제가 있다.

금강의 경우, 하류는 하구둑의 공사 이후 어업폐업 보상이 이루어져 어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주시는 현재 70여척이 붕어, 잉어 등을 어획하고 있지만 생산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 어선어업의 허가조건은 농업기반공사의 수면사용동의서를 우선 득해야 되며 70척에서 100척으로 늘릴 계획으로 아직 신규 참여의 여지는 있다. 문제점으로는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유어객의 불법어구 설치로 인해 치어의 남획이 일어나고 있으며,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어객을 규제할 수 있도록 면허제 등의 도입의 검토를 요망하고 있다.

영산강은 함평군의 사례로 조업실태를 살펴보면, 면허와 신고어업에서는 뱀장어 순환여과식 양식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이 외에 메기, 참계, 은어, 가물치 등의 양식이 병행되고 있다. 허가어업에서는 자망, 각망으로 붕어, 잉어, 가물치를 주로 어획한다. 또한 2004년, 2005년 잉어, 붕어 치어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유어객의 불법어업 및 쓰레기 투기, 어업인의 삼각망 무단방치가 심각하다. 함평군에서는 2003년 하반기부터 치어 남획, 폐어구 망치 등 각망어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수면사용 보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어업인은 허가취득 시에 150만원을 수면사용 보증료로서 납부한 다음 허가만료 시 폐어구를 가져오면 보증료를 반환받는 제도이다. 이러한 각망어구 문제는 비단 함평군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군의 내수면 관리에서 똑같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보증료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지속적인 내수면 관리방안을 위한 하나의 대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섬진강의 경우 상류는 어선어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다슬기 등의 채취를 많이 하고 있으며, 하류는 재첩, 참계의 생산량이 많다. 수계의 특성으로 인해 각망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특징적인 것은 6개 시군이 '섬진강 환경 협의회'를 조직하여 자원관리, 자원보호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동군의 경우, 양식어업권이 18건/44ha가 있고 어선척수는 120여척이 존재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재첩 채취, 연승, 자망을 하고 있으며, 재첩의 생산량이 2002년 632톤에서 2004년 352톤으로 격감하였다. 또한 잉어, 은어, 참계, 붕어, 메기, 동자개 등 다양한 어종에 대해 자체방류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문제점은 재첩 채취의 경우 체장금지를 1.5cm로 규제

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재첩 생산량이 격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어객의 불법어업으로 인해 어업인과의 마찰도 심각한 실정이다.

## (2) 내수면 유어낚시의 실태

수산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捕獲·採取)하는 행위를 말한다. 내수면에서 유어행위는 낚시, 쪽대, 집게, 맨손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유어낚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유어행위의 질서확립을 위해 내수면어업법 제18조에 의해 해양수산부장관 혹은 시도지사가 어구, 시기, 대상 및 지역 등을 제한하고 있다<sup>27)</sup>.

현재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유어낚시는 댐, 호소, 저수지, 강, 유료낚시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어실태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다.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어업인과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유료낚시터의 경우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않고 있으며, 매우 자유로운 여가 생활로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아직 전국 내수면 (강, 못, 저수지 등) 유어낚시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거나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어려운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4-9] 내수면 낚시 관련 단체 현황

(사)전국낚시 연합회	낚시정화운동 협의회	부산낚시 연합회	광주 낚시 번영회
부산시 연합회	전국 낚시동호인 중앙회	부산 낚시점 협회	전주 낚시점 협회
광주·전남도 연합회	전국 낚시판매업자 친목회	부산 조구생산 친목회	울산시 낚시연합회
대전·충청도 연합회	한국 견지낚시 클럽	생활체육대구낚시연합회	마창 낚시 연합회
경북도 연합회	(사)한국 낚시 진흥회	대구 낚시 연우회	사천 낚시 연합회
경남도 연합회	(사)한국 낚시업 중앙회	대구 조구 상조회	통영 낚시 연합회
강원도 연합회	전국 낚시생산업 친목회	대전 낚시점 협회	제주시 낚시 연합회
낚시용품거래질서정상협의회		광주 낚시점 협회	서귀포 낚시 연합회

27) 遊漁秩序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내수면 자수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표 4-10] 전국 플라이낚시 포인트

지 역	포 인 트
서울·경기	한탄강 전곡
강원도	홍천강(모곡유원지), 간성(북천), 오색천, 어성전천, 갈천(후천), 내린천(창촌), 미산(상남), 주문진(연곡천), 평창강, 동강, 기화천, 정선골지천, 조양강 옥계(북동계곡), 삼척(대이리계곡), 덕풍계곡
충청북도	삼탄(제천천), 단양(남한강), 금강(지수리)
충청남도	공주(금강), 신탄진(눈불개 포인트)
경상북도	(안동)안동호
경상남도	밀양(밀양강)
전라북도	무주(덕산저수지)
전라남도	구례(섬진강)

한편, 내수면 플라이낚시<sup>28)</sup>의 경우, 각광을 받고 있는 낚시터는 전국적으로 모두 26개 로 파악되었다(표 3-11). 이 중에서 전체의 약 65%에 해당하는 17개 포인트가 서울, 경기, 강원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외에도 루어낚시, 내수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민물낚시, 배스낚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대상어종은 잉어, 붕어, 쏘가리, 배스 등 이다.

### (3) 내수면 유어낚시의 관리 실태<sup>29)</sup>

#### (가) 내수면 낚시터의 분류

내수면의 유어낚시의 대상 수역은 하천, 댐, 호수, 저수지 및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내수면과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혹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30)</sup>. 내수면은 해수면과는 달리 직접 소유·점유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수면관리자가 존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면관리자가 있는 유료낚시터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데, 크기로 분류, 허가방법에 따른 분류, 수면의 형태에 따른 분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규모로 분류하는 형태는 대류지, 중류지, 소류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류지의 경우는 20,000평 이상으로 주로 농업용저수지의 경우가 이에 속하는데, 대부

28) '플라이낚시'란 모조 미끼를 사용하는 스포츠 피싱으로 낚시줄을 날리기 때문에 플라이(fly)라는 이름이 붙었다.

29) 한국수산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시행방안 연구, 2004. 8, pp. 53~56.

30)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1항

분 국유지로서 농업기반공사나 시, 군에서 관리한다. 중류지의 경우는 5,000~20,000 평 정도의 규모로 대부분 시, 군유지이거나 일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소류지는 5,000평 이하의 사유지 양어장형 낚시터에 해당하며, 수도권 인근지역의 대부분의 낚시터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허가방법으로 분류하는 형태로 볼 때, 낚시업을 허가어업으로서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사유지의 경우에는 신고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로 허가낚시터, 사유지신고낚시터, 사유지무신고낚시터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유지 낚시터는 미신고상태로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입어종인 이식승인 어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거쳐야 하므로 최근에는 신고를 할 수 없는 불법낚시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고를 필하고 있다. 불법낚시터는 양식장으로 신고하고 낚시업을 영위하는 곳으로서 각종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표 4-11] 내수면 민물낚시의 관리구조

<p>■ 내수면은 해수면과 달리 수면관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류지 : 20,000평 이상, 농업용 저수지, 국유지, 농어기반공사, 시·군 관리</li> <li>· 중류지 : 5,000~20,000평, 시·국유지, 일부 저수지 농업기반공사</li> <li>· 소류지 : 5,000평 이하, 사유지-양어장형 낚시터, 수도권 인근 대부분 낚시터</li> </ul> <p>■ 낚시업의 허가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수면어업법 허가낚시터, 사유지신고낚시터(수입이식어종신고), 사유지무신고낚시터</li> <li>· 불법낚시터(양식장 허가)</li> </ul>
<p>■ 허가낚시터의 운영과 관리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유지-정부지자체, 농업기반공사 관리, 개인, 수리계, 내수면양식계가 허가/신고 낚시터</li> <li>· 내수면어업법, 지자체신청서-사업계획서, 주민동의서, 위치지적도 등 구비서류 다수</li> <li>· 목적의 사업신청-내수면어업허가 신청-세무서 사업등록-낚시업허가-허가낚시터</li> </ul>
<p>■ 경매(임대)낚시터의 운영과 관리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기반공사 저수지-공개경쟁입찰-사전임대차 계약-수면관리권-유료낚시터 운영</li> </ul>
<p>■ 사유지 신고 및 허가낚시터 운영과 관리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유지-농지전용-낚시업 허가(본인 의사에 따른 허가)-허가 없어도 가능-수입활어입식-허가필요</li> <li>· 농지전용-산업과/농산과-신청서 다수 구비서류-낚시업 신고</li> <li>· 사유지무신고낚시터-양식업으로 신고한 후 낚시업을 운영하는 경우</li> </ul>

형태로 구분하는 분류에서는 저수지의 지형에 따라 계곡형 낚시터, 평지형 낚시터, 인위적 조성낚시터로 분류하기도 한다.

#### (나) 허가 낚시터의 운영 및 관리체계

현행 우리나라 내수면에서는 유료낚시터의 운영은 낚시터(강, 호수, 저수지 등)가 될 수 있는 곳이 국, 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에 따라 다르고, 관리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허가권과 단속권을 가지고 있다.

국·공유지의 저수지는 대부분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공공용수면인 경우에 수면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이를 개인, 내수면양식계, 수리계가 유료낚시터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수면어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낚시업을 허가 또는 신고하여 할 수 있다. 즉, 국, 공유지의 경우의 낚시업 허가절차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수혜주민동의서, 위치도, 지적도, 토지대장, 현황사진, 구적도, 현황측량도, 시설물배치도 등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을 한 후 내수면어업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절차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낚시업허가를 득할 수 있다.

#### (다) 사유지 신고/허가, 무신고 낚시터의 운영과 관리체계

공공수면과 연결하지 않은 개인수면의 사유지 낚시터는 낚시업을 목적으로 농지법에 의해 농지전용을 득하고 낚시업 허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허가를 득할 수 있고, 아니하여도 내수면어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활어를 낚시터에 입식할 경우에는 반드시 낚시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전용의 신청은 산업과나 농산과 등에서 신청서, 지적도, 토지대장, 배치도, 설계도, 현황측량도, 구적도, 현황사진, 대체농지조성금, 지역공채의 납부 및 구입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낚시업 신고를 하게 된다.

한편, 사유지 무신고낚시터라 함은 소위 양식을 목적으로 양식업으로 신고한 후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낚시업을 하는 경우로서 낚시업 행위가 불법이다. 이러한 무신고낚시터는 사용목적은 양식업으로 하여 대체농지조성비는 납부하지 않지만, 고발당하면 그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양어장낚시터는 개발제한구역지정에 관한 법률 위반과 농지형질변경 면적 20%에 해당하는 침전저를 설치해야 하는 수질환경보전법의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양어장은 20cm 미만의 고기(수입, 국내산 포함)만을 양어용으로 입식하여야 하지만, 이식승인규칙을 위반하여 검역되지 않은 식품으로 수입되는 20cm 이상의 중국산 붕어, 잉어, 향어를 무차별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생태환경적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등의 유료낚시터로 허가

나지 않은 곳에 양어장으로 허가를 받아 유료낚시터로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약 500여곳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 (라) 하천 유어낚시 관련 규제

현재 하천(강)에 이루어지는 유어낚시를 관리 및 규제하는 것으로서 유어행위제한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한강에서의 이루어지고 있는 유어낚시 관련 규제를 검토한다. 현재, 한강 유역에서의 낚시는 상수원 보호구역인 광나루지구를 제외한 8개 지구에서 낚시가 가능하다. 1999년 8월 하천법의 개정 시행으로 떡밥·어분낚시, 야영, 취사행위는 금지되고 있으며, 2003년부터 한강유역에 대해 낚시 등 유어행위 제한 구역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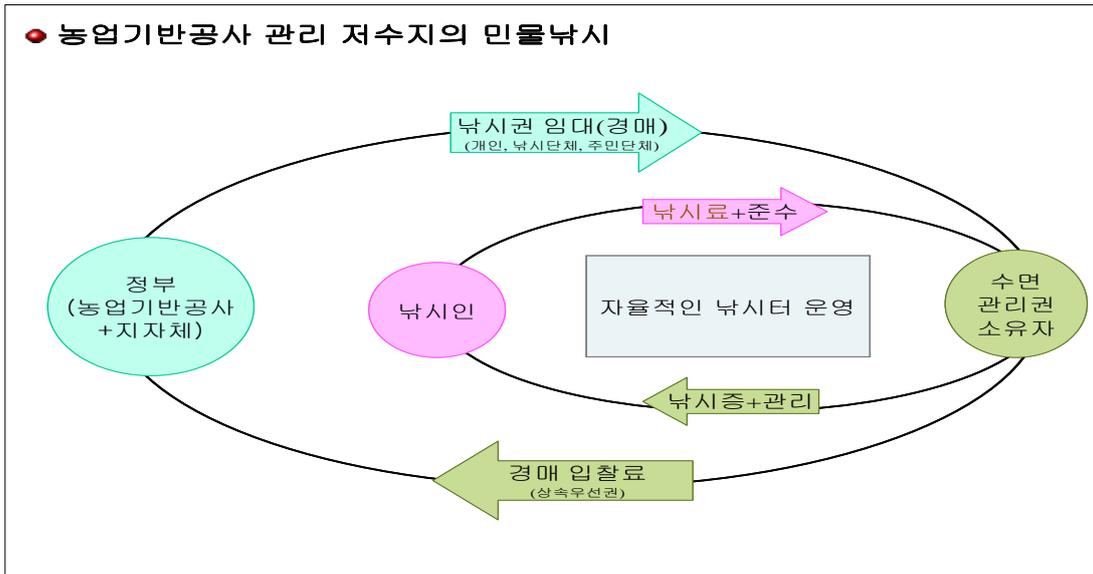
한강의 유어행위제한의 근거는 내수면어업법 제18조(유어질서)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sup>31)</sup>에 의한다. 유어행위를 제한하게 된 배경은 한강에 인접한 생태공원 또는 생태계 보전지역 등 어류 산란처 보호, 낚시투척시 안전사고 방지, 낚시 등 유어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등이 목적이다.

낚시 등 유어행위 제한내용을 보면, 유어행위 제한지역은 서울시 관할 한강의 잠실수중보 하류지역이며, 제한하고자 하는 시기는 2003년 9월 1일부터 2008년 8월 31일(고시 시행일로부터 5년간 제한)까지 이다. 유어행위 제한지역에서 제한되는 사항은 우선, 유어행위 금지구역에서는 유어행위를 전면금지한다. 현행 법령으로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 어종 외에 우리 서울시에서 방류하고 있는 은어가 다량 번식하여 어족자원이 풍부해지는 시기까지 연중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리고 많은 수의 낚싯대를 늘어놓아 주변에 다른 사람의 건전한 낚시행위를 방해하므로, 낚싯대 등을 1인당 4개 이상 동시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정상적인 낚시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갈고리모양의 도구(어구)를 사용한 낚시행위(일명 훔치기)를 금지한다.

한편, 유어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생태계의 보전·복원행위, 구청장이 인정하는 학술조사, 생태계의 보전·복원행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수 서식지 조사 등이 있다.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제27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금지행위 위반 등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한지역 관리기관은 각 관할구청(지역경제과 또는 산업환경과),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사업소이다.

31) 유어행위 등 제한에 대한 내수면어업법 관련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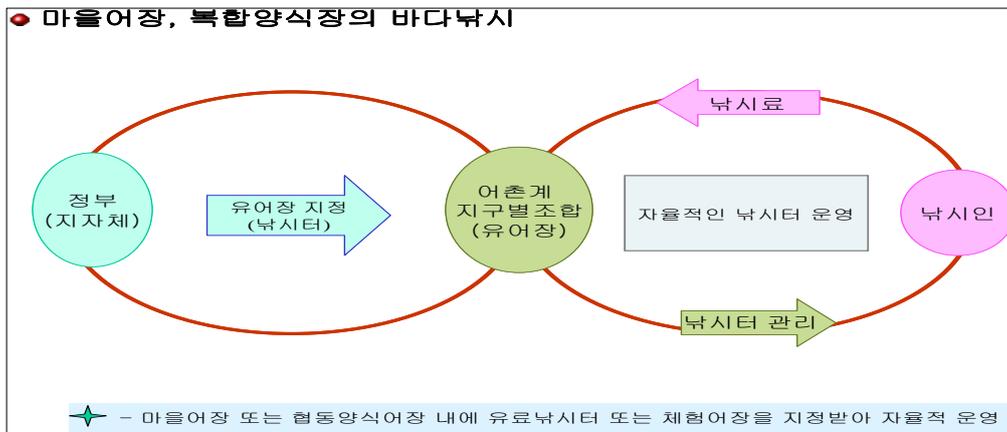


[그림 4-6] 농업기반공사 저수지의 민물낚시 관리유형과 제도체계

## 2. 바다낚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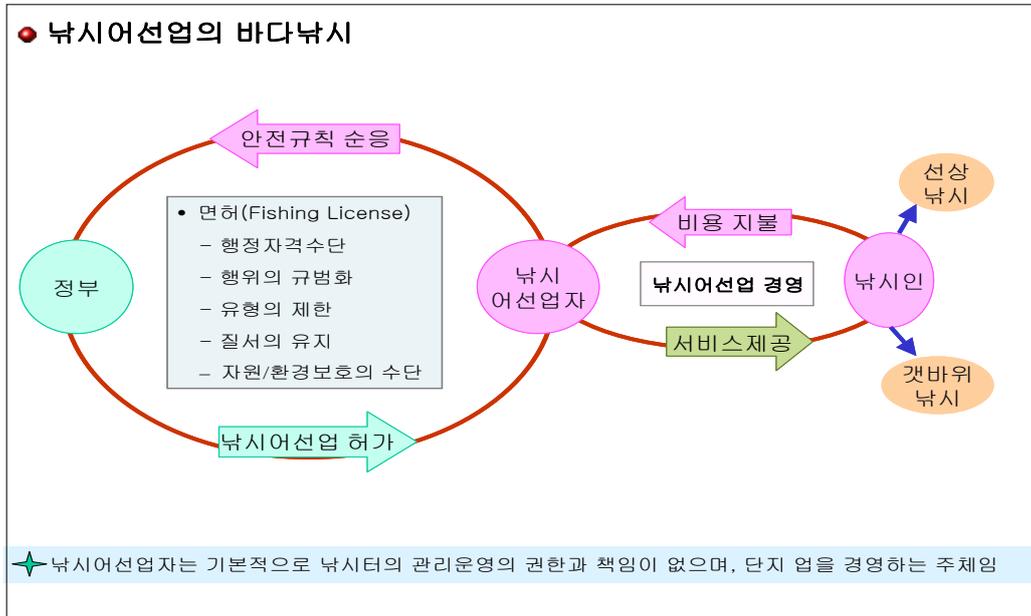
### 가. 바다낚시의 관리유형과 제도체계

현재 우리나라의 바다낚시 운영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어촌계, 지구별조합하에서 관리되고 있는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낚시어선업에 의한 선상낚시나 갯바위낚시에 관한 것이다.



[그림 4-7] 마을어장, 복합양식장의 바다낚시 관리유형과 제도체계

우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촌계, 지구별 조합에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곳에서 낚시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낚시터를 지정하게 되고, 이를 관리주체는 일반 낚시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낚시료를 받고서 낚시터를 관리하게 된다.



[그림 4-8] 낚시어선업의 바다낚시 관리유형과 제도체계

낚시어선업의 바다낚시의 경우는 정부의 낚시어선업자에게 낚시어선업 허가를 내어주어 규정된 안전규칙을 순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낚시어선업자는 일반낚시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배 값을 지불하고 갯바위 낚시 또는 선상낚시를 하도록 한다. 그러나 바다낚시의 관리측면에서 볼 때, 낚시어선업자는 기본적으로 낚시터 관리운영의 권한과 책임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책임이 필요하다.

#### 나. 바다낚시의 유어장지정 현황

##### 1) 관련규정

유어장의 지정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55조에는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어업인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당해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구역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 또

는 낚시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제주도의 경우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4조(유어장의 지정등)에 근거하도록 되어있다.

## 2) 유어어장 지정현황

2004년 기준, 어촌계 단위의 유어장은 46개소(979ha), 유료낚시터는 21개소(545ha), 25개소(434ha) 등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 모두의 개수는 총 92개소로 나타났다. 이들 유어장등은 개소당 이용인원은 36명~10,500명, 평균 1,445명으로 1회 이용료 2,000원~50,000원에 대한 연간 수입액은 개소당 640천원~94,245천원 (평균 11,259천원)의 정도로 나타났다.

2001년 32개소, 1,304ha, 2002년 41개소, 1,398ha, 2003년 50개소, 1,531ha, 2004년 46개소, 979ha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4년도 들어 감소하였다. 그러나 개소당 년도별 평균인원은 이와 무관하게 2001년 912명, 2003년 668명, 2004년 1,445명으로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년도별 평균수입액도 2001년 6,500천원, 2003년 3,996천원에서 2004년에는 11,259천원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유어장 면적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수와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다.

[표 4-12] 유어장등의 지정현황(2004년)

(단위 : 건, ha)

구분	계	경기도	강원도	충남도	전남도	경남도	제주도
유어장	46개소 (979ha)	3개소 (30ha)	2개소 (47ha)	8개소 (75ha)	10개소 (59ha)	17개소 (348ha)	6개소 (203ha)
· 유료낚시터	21개소 (545ha)	-	-	-	8개소 (241ha)	13개소 (304ha)	-
· 체험어장	25개소 (434ha)	3개소 (30ha)	2개소 (47ha)	8개소 (75ha)	2개소 (35ha)	4개소 (44ha)	6개소 (203ha)

2004년 12월 현재, 시·도별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유료낚시터는 경우는 전남도가 8개소에 241ha, 경남도 13개소 304ha로 이들 지역에만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험어장의 경우는 경기도 3개소, 강원도와 전남도 2개소, 충남도 8개소, 경남도 4개소, 제주도 6개소 등으로 총 25개소가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2년 기준, 이용객수를 살펴보면, 유어장의 경우 약 3만명, 체험어장은 3만5천

여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이용객수는 점차적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표 4-13] 유어장 지정 및 이용현황

시·도 (시·군)	유료납시터		면적 (ha)	지정일	만료일	관리선 (척)	이용료 (천원)	'02년실적		비고
	명칭	지정위치						인원 (명)	금액 (천원)	
<b>계</b>		<b>21개소</b>	<b>545</b>			<b>21척</b>		<b>30,518</b>	<b>345,542</b>	
<b>전남도</b>	<b>소 계</b>	<b>8개소</b>	<b>241</b>			<b>9척</b>		<b>5,710</b>	<b>38,022</b>	
목포시	바다유어장	목포시 외달도	10	'03.8.7	'05.9.5	1	15	990	4,222	
여수시	조발유어장	화정면 조발리	22	'02.7.26	'07.11.25	1	5	2,000	10,000	
	적금1유어장	화정면 적금리	23	'03.4.30	'07.12.1	1	5	800	4,000	
	적금2유어장	화정면 적금리	11	'03.4.30	'08.12.8	1	5	900	4,500	
고흥군	우두유어장	영남면 우두리	33	'00.2.2	'05.11.3	1	10	510	5,100	
보성군	선소유어장	보성읍 선소리	15	'04.7.15	'13.11.12	-	5	-	-	
장흥군	사금1호유어장	관산읍 사금리	12	'02.7.2	'11.10.18	1	20	210	4,200	
	대리1호유어장	관산읍 회진리	115	'02.7.2	'06.11.3	3	20	300	6,000	
<b>경남도</b>	<b>소 계</b>	<b>13개소</b>	<b>304</b>			<b>12척</b>		<b>24,808</b>	<b>307,520</b>	
마산시	실리도납시터	구산면 심리	3	'03.8.7	'05.2.26	1	-	1,541	21,380	
사천시	산분령유료납시터	실안동 산분령	3	'95.5.6	'08.11.30	1	10	2,000	20,000	
	저도어촌계 유료납시터	마도동 저도	6	'03.4.11	'07.8.24	1	10	1,500	15,000	
거제시	근포어촌계유어장	남부면 저구리	10	'04.3.11	'05.10.13	1	개인20 단체200	700	16,000	
	장승포어촌계 유어장	장승포동	10	'04.3.11	'05.9.26	1	"	960	19,200	
	이수도어촌계 유어장	장목면 시방리	23	'04.4.14	'06.3.18	1	"	324	8,200	
	대곡어촌계 유어장	하청면 대곡리	22	'04.9.1	'05.8.27	1	"	510	11,000	
남해군	노도납시터	상주면 양아리	16	'97.9.19	'14.12.30	1	3	1,667	5,000	
	왕지납시터	설천면 수원늘	7	'00.4.20	'05.4.19	-	좌대15 갯바위2	2,265	4,530	
	왕지납시터	설천면 왕지리	52	'00.4.20	'05.4.19	1	"	1,385	10,570	
	지족납시터	삼동면 지족리	1	'04.1.7	'13.12.30	1	10	540	5,400	
하동군	대도유료납시터	금남면 대도리	64	'97.11.14	'07.10.16	1	15	6,283	94,245	
	대치유료납시터	금남면 대치리	87	'98.3.17	'07.11.2	1	15	5,133	76,995	

[표 4-14] 체험어장 현황

시·도 (시·군)	체험어장		면적 (ha)	지정일	만료일	관리선 (척)	이용료 (천원)	'02년실적		비고
	명칭	지정위치						인원 (명)	금액 (천원)	
<b>계</b>		<b>25개소</b>	<b>434</b>			<b>20척</b>		<b>35,933</b>	<b>172,377</b>	
<b>경기도</b>	<b>소 계</b>	<b>3개소</b>	<b>30</b>			<b>-</b>		<b>2,500</b>	<b>-</b>	
안산시	탄도체험어장	단원구 선감동	15	'04.4.23	'05.4.30	-	5	-	-	개발중
	선감체험어장	"	7	'04.6.14	'05.4.18	-	5	-	-	"
	종현동체험어장	단원구 대부북동	8	'04.6.14	'05.4.18	-	5	2,500	-	무료
<b>강원도</b>	<b>소 계</b>	<b>2개소</b>	<b>47</b>			<b>2척</b>		<b>1,000</b>	<b>-</b>	
강릉시	정동지인망 체험어장	강동면 정동진리	11	'99.9.6	'05.6.15	1	-	-	-	-
	소돌어촌계 유어장	주문진읍 주문리	36	'04.8.12	'05.6.15	1	-	1,000	-	해수 육장
<b>충남도</b>	<b>소 계</b>	<b>8개소</b>	<b>75</b>			<b>3척</b>		<b>29,900</b>	<b>99,500</b>	
서천군	월하성유어장	서면 월호리	10	'02.7.30	'10.12.23	-	3	10,500	31,500	갯벌
		"	5	'02.7.30	'10.7.6	-	3			
	송석유어장	마서면 송석리	15	'03.9.9	'04.8.23	-	3	3,700	11,100	"
태안군	몽산1유어장	남면 몽산리	6	'04.2.25	'06.2.28	-	5	3,600	10,800	"
	누동1유어장	고남면 누동리	5	'04.11.5	'14.6.29	-	5	-	-	"
당진군	당진수협 도비도유어장	석문면 난지도리	1	'03.6.14	'07.7.7	3	20	1,100	21,900	"
	장고항어촌계 용무지유어장	석문면 장고항리	9	'03.6.14	'12.8.12	-	대인5 소인2	4,200	17,000	"
	당진수협 망누리유어장	신평면 매산리	24	'03.8.18	'05.8.12	-	대인4 소인2	6,800	7,200	"
<b>전남도</b>	<b>소 계</b>	<b>2개소</b>	<b>35</b>			<b>2척</b>		<b>396</b>	<b>7,920</b>	
완도군	여서 스킨스쿠버어장	청산면 여서리	16	'04.12.14	'14.8.29	1	20	318	6,360	스킨 스쿠버
	당리 스킨스쿠버어장	청산면 당리	19	'04.12.14	'14.8.29	1	20	78	1,560	
<b>경남도</b>	<b>소 계</b>	<b>4개소</b>	<b>44</b>			<b>1척</b>		<b>1,267</b>	<b>13,000</b>	
남해군	송남체험어장	미조면 송남리	2	'00.11.21	'05.10.12	-	-	-	-	지인망
	지족체험어장	삼동면 지족리	23	'04.1.7	'13.12.30	-	20	-	-	땃목식
	문항체험어장	설천면 문항리	17	'04.9.13	'10.1.18	-	소인1 대인2	867	13,000	갯벌
하동군	대치체험어장	금남면 대치리	2	'02.2.19	'07.10.16	1	무료	400	-	"
<b>제주도</b>	<b>소 계</b>	<b>6개소</b>	<b>203</b>			<b>12척</b>		<b>870</b>	<b>51,957</b>	
서귀포시	거문여코지 유어장	도평동	14	'04.6.23	'06.6.22	5	작살30 기타15	203	2,897	제주국제 자유도시 특별법
북제주군	애월어촌계 유어장	애월읍 애월리	71	'04.7.14	'14.6.10	1	50	377	42,620	
	수원어촌계 유어장	한림읍 수원리	40	'04.2.26	'14.5.22	1	50	-	-	
남제주군	상모리유어장	대정읍 상모리	17	'04.7.26	'06.7.25	1	50	36	640	
	위미1리유어장	남원읍 위미리	29	'04.7.27	'06.7.26	3	50	215	4,800	
	온평리유어장	성산읍 온평리	32	'03.4.10	'07.3.8	1	50	39	1,000	

### 3) 바다낚시유어장의 운영

#### (1) 근 거

수산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한다.

수산업법 제55조(유어장의 지정 등)에는,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어업인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당해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정치성구획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구역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체험학습 또는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함)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음(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 (2) 지정대상, 유효기간, 지정권자 및 지정절차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을 그 지정대상으로 하며 당해 어장에 대한 면허·정치성구획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삼는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을 바다낚시 유어장의 지정권자로 한다. 지정절차는 총 세 단계로, 지정신청을 하면 현지조사를 거쳐 지정서 교부 및 공고를 하게 된다.

#### (3) 지정요건

바다낚시 유어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첫째, 수산자원이 풍부한 수면일 것. 둘째, 인접한 다른 면허·허가어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셋째,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넷째,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일 것. 다섯째, 면적이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어장구역의 1/2 미만일 것. 여섯째, 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보호, 이용자안전,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합할 것의 여섯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4) 유어장의 시설, 입간판 및 표지시설

간이화장실, 폐기물의 처리 또는 저장시설, 입간판, 경계표지, 기타 유어장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유어장의 시설로 규정한다. 특히, 입간판 및 표지시설은, 유어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입간판(100×80cm) 설치, 입간판에는 유어질서유지와

수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기재, 유어장의 각 모서리와 각변에 100m마다 직삼각형(30×20cm) 붉은색 깃발 설치라는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5) 유어장관리선, 관리·운영자의 의무

면허어업의 어장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어선, 연안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또는 유선및도선사업법에 의하여 유선사업의 유선으로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선박을 유어장 관리선으로 할 수 있다. 유어장관리선의 관리·운영자는 수명동의, 구명부환, 구명줄, 통신기기, 소화기, 비상용 구급약품 등을 비치하고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에 의한 검사 실시하며 선박검사증서상 최대탑재인원 범위내의 승선인원 준수와 선박검사증서상 최대탑재인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의무를 진다.

### 제3절 낚시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낚시 관련 법률은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 낚시어선업법 및 그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으로 유어장의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으며, 환경부소관의 수질환경보전법, 호소수질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건설교통부소관의 하천법, 수도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과 문화관광부 소관의 문화재보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다.

해양수산부 소관의 낚시관련 법률은 대체적으로 유어장의 지정과 유어질서의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환경부소관의 낚시관련 법률은 수질환경이나 그 주변 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낚시행위의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소관의 법률은 하천이용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낚시행위를 규제하며, 문화관광부소관의 법률은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낚시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 1. 수산업법

수산업법상 낚시관련 규정을 보면, 동법 제2조에 유어라 함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수면어업법 제9조(허가어업)에서 낚시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에서 1본조(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외줄낚시<sup>32)</sup>라는 용어를 사용함은 물론, 낚시어선업법이라는 법률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유어와 낚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그 뿐만 아니라, 놀이의 목적으로 작살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경우에는 유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유해어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

수산업법은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어장에 대하여 그 일부를 체험학습 또는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인 유어장으로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어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어장의 지정, 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의 조성, 포획·채취 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포획·채취방법 기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5조).

과거의 수산업법(2001년 1월 29일 개정) 제56조는 행정관청은 수산자원 및 수질의 보호와 어업자 및 낚시인등 유어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역, 방법·시기 및 포획량을 정하여 낚시행위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고, 낚시행위 등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낚시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놀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한 낚시행위 등을 하는 자가 수산자원보호령에 규정된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등을 준수하고, 금지체장 이하의 어린수산생물이 포획되었을 경우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 고시된 어류가 포획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방류하여야 하며, 어업권이 설정된 수역에서는 미리 어업권자의 동의를 얻어 낚시행위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개정전 수산업법시행령 50조)하였으나, 2001년 1월 29일 관련규정이 삭제되고, 관련 내용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이동하였다.

문제는 수산업법 제56조의 규정은 유어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바다와 바닷가에서 일반인의 낚시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으나, 이를 삭제함으로써 일반인의 낚시를 규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낚시를 장려하거나 낚시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어떠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일반인의 낚시는 수산업법의 영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

32) 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 제2항의 외줄낚시는 근해어업의 일종이지만, 여기서는 어업자가 아닌 자가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업으로 볼 수 없다.

## 2. 내수면어업법

낙시와 관련하여 내수면어업법 제9조(허가어업)에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기타 시설을 설치하여 낙시터를 경영하는 업”을 낙시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낙시터의 운영 및 이용료의 징수는 자율에 맡겨지나, 시·도의 「낙시터관리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수산업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유어장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제18조는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낙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하고자 하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자원량 등 수중생태계현황, 제한하고자 하는 수면에서 유어행위로 인한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현황,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 등 기타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수산자원의 산란·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하는 때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제한하고자 하는 시기·대상 등 제한사항,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기타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당해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유어행위를 하는 자는 외줄낙시(대낙시 또는 손줄낙시), 쪽대·반두·4수망(四手網), 가리·외통발, 집게·갈구리·낚·호미, 손 등의 어구 또는 방법 외의 수단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안된다(시행령 제14조).

내수면어업법은 내수면에서의 일반 유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수면의 수산자원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낙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시기·대상·지역 등의 제한 등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3. 낙시어선업법

낙시어선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낙시어선에 승선시켜 하천·호소 또는 바다의 낙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船上)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토록 하는 영업을 말하고, 낙시어선업자라 함은 어선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동법은 유어자의 유어행위를 규제하기보다는 낚시어선업자들에 대한 불법영업(미신고 영업행위), 인명 안전에 관한 설비, 낚시어선의 검사, 안전점검, 사고발생보고, 낚시어선업 폐쇄 및 정지 이후 위반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률이다.

다만, 이 법은 낚시어선의 이용 및 안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낚시어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어가(漁家)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유어를 장려하고 유어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이 많은 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시·도의 관할수역과 연접한 다른 시·도의 관할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정된 구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유어를 제한하거나 또는 유어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유어와 관계가 깊은 법률이라 할 수 있다.

#### 4.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4(낚시행위의 제한)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의 방법·시기 등 환경부령(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쓰레기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호소의 이용목적, 오염원 현황, 수질오염도,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현황 및 처리여건, 호소의 연도별 낚시인구 현황, 서식 어류의 종류·양 등 수중생태계 현황,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3조의5).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낚시시기·방법 등 제한사항(낚시제한구

역에 한한다), 낚시금지 및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의 부과금액·납부방법·납부장소, 낚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방법, 낚시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시·군·구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공고한 때에는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당해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낚시제한구역에서의 낚시방법에 관한 제한사항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어선을 이용한 낚시 행위 등 낚시어선업법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 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똥·오줌을 누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식물을 짓는 등 호소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축전지·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에 의한 포획금지에 관한 사항과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57조).

낚시금지구역 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낚시의 방법·시기 등의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어질서의 확립이나 유어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수질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서 수질관리와 관계가 먼 낚시행위까지 규정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5. 호소수질관리법

호소수질관리법은 호소수질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호소수(湖沼水)의 이용 목적에 따른 수질보전 대책의 수립·시행을 통하여 깨끗한 호소수의 보전·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낚시와 관련하여 동법 제13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안의 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방법·시기 등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오물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낚시금지구역 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호소수질관리법시행령은 2000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6945호로 폐지되고, 호소수질관리법시행규칙은 2001년 7월 4일 환경부령 제110호로 폐지됨으로써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낚시 규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질환경보전법과 동일하다.

## 6.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며,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낚시행위와 관련된 것은 생태계보전지역 등에서의 행위제한이다. 동법 제20조에는 누구든지 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야생동식물(생태계특별보호구역 안에서는 모든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울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등 생태계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멸종위기어종(감돌고기, 흰수마자, 미호종개, 통사리, 꼬치동자개)과 보호어종(다묵장어, 묵납자루, 모래주사, 두우쟁이, 부안종개, 쯤수치, 꺾지기)의 포획·채취가 낚시행위인지 어업행위인지가 불명확하다. 판단컨대, 동법에서의 어업행위제한은 낚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자연환경보전법도 낚시관련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 7. 하천법

이 법은 하천의 우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과 하천환경의 정비·보전을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 제71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의 야영, 취사와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하천법시행령 제50조에서는 시·도지사는 야영·취사 및 낚시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천의 이용목적, 오염원의 현황, 수질오염도, 인근지역의 쓰레기발생 및 처리현황, 서식어류의 종류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낚시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85조(벌칙)제6항에서 동법 제71조제4호(하천에 관한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을 제외하고 있음으로 불법낚시행위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없다.

## 8. 수도법

이 법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 제5조(상수원보호구역지정 등)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어업과 관련하여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가 금지되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경우 당해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까지는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낚시행위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 9.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낚시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동법 제20조에는 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문화재 보호법 제6조에 의거, 문화재 청장이 지정하는 천연기념물의 어종은 4종으로 무태장어, 어름치, 열목어, 황쏘가리 등이다.

동법 제90조(행정명령위반 등의 죄)제5항에서는 천연기념물(시·도 지정문화재 중 기념물 포함)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동물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 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동법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어종의 포획·채취와 보호구역 안에서의 동물·식물·광물의 포획·채취 및 반출행위의 허가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유어나 낚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 제4절 낚시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낚시관리 용어사용의 문제

수산업법에 허가어업의 일종이 아닌 레저로서의 낚시라는 용어는 1971년 1월 22일 개정에서 처음 규정하고 있다. 동법 개정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산자원이 조성된 공공수면인 내수면에 대하여 낚시터를 지정할 수 있고, 낚시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낚시터의 지정과 해제, 낚시터의 시설, 낚시요의 징수 및 사용, 낚시의 허용기간 및 방법, 기타 낚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의6). 수산업법에 내수면에서의 낚시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내수면에 관한 사항을 수산업법에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수산업법이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유어라고 정의하고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12월 30일 개정(법률 제5131호)에서부터다. 제2조에서 유어를 정의하면서도 동법 뿐만 아니라, 그 하위법령에서도 낚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아닌 다른 중앙부처 소관 법률에서는 유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낚시행위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일반인들도 유어라는 용어보다는 낚시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또한, 유어라는 용어는 낚시도구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상업적 목적이 아닌 여타한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포함시킬 목적으로 수산업법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는 낚시라는 용어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 낚시는 유어의 정의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낚시를 유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수산업법 제55조에서 유료 낚시터를 유어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그 유어장에서는 낚시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말하는 낚시와 수산업법상의 유어는 구별되어야 한다.

일본의 어업법상 유어는 내수면의 제5종 공동어업의 어장에서 그 조합원 이외의 사람이 행하는 수산 동식물의 채포라고 규정함으로써 바다낚시를 포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이나 수단을 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2조에서 유어를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라고 정의함으로써 어업자나 어업종사자가 면허나 허가 내용과는 다른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 유어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모호하다. 예를 들어, 오징어채낚기 어선의 승무원이 주간에 표류하면서 놀이 목적으로 줄낚시를 이용하여 오징어를 포획·채취했다면 유어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로행위라 할 것인지 모호하며, 선망이나 트롤어선의 승무원이 선망이나 트롤 이외의 방법으로 고등어를 포획·채취했다면 유어라 할 것인지 어로행위라 할 것인지 모호하다.

이와 같이 유어에 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업자나 어업종사자가 허가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어업활동을 하다가 어업감독공무원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 수산업법의 위반이 아니라, 유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어업자들이 더욱 수산업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 2. 낚시관리-유어에 관한 법률의 부재

현행 수산업법은 제2조에서 유어를 정의하고, 제55조에 유어장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유어의 범위나 또는 낚시방법, 낚시방법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다. 또한 제55조의 유어장 지정·운영은 어촌계 또는 지구별 조합이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을 위하여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정치성 구획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역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체험학습 또는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법상의 유어 규제는 유어장에 한정된다.

전국일원에 마을어업권이나 협동양식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산업법 시행규칙에는 마을어업이나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수심의 한계를 정하고 있고, 정치성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심의 한계를 벗어나는 바다에서의 낚시는 규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어장수심한계안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원거리에 위치한 낙도 또는 무인도와 연결된 수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을어업의 면허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어업권이 설정되지 않은 낙도나 무인도에서의 낚시도 규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낚시어선업법은 낚시어선의 이용 및 안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낚시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낚시어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어가(漁家)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나 내수면에서의 낚시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

국민생활 향상과 더불어 여가문화가 정착되면서 유어인구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의 부재는 낚시문화의 건전한 발전과 수산자원의 이용에 관한 질서는 소원하다고 할 수 있다.

### 3. 낚시인의 책임(권리·의무)규정 부재

유어장이 지정되지 않은 바닷가의 유어는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을어업이란 일정한 수심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서, 일반인이 마을어업권이 설정된 바닷가에서 낚시를 할 경우에는 환경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놀이 목적으로 양식대상 패류나 해조류를 채취할 경우에는 사법적인(권리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바다와 바닷가는 공유수면으로서 모든 국민은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어업권이 설정된 수면일지라도 어업권에 손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의 이러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을 개인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어업권자와 바다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어업권자와 바다 이용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낚시에 관한 법률이나 또는 유어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규정의 신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바다의 이용권을 행사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어선업법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 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똥·오줌을 누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식물을 짓는 등 호소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축전지·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

위 등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이용의 원칙을 정하여 건전한 낚시여가를 장려하고 또한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낚시자의 의무를 정하여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낚시행위가 수산자원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상응하는 자원이용료를 부담하도록 하여 자원조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4. 낚시관리 관련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 부재

우리나라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문화의 발전으로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낚시를 여가수단으로 생각하는 인구 또한 급증하면서 이에 부응하여 관련 산업이 급신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낚시관련 법률의 부재는 물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산업을 지원하거나 또는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산업을 지원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낚시인구의 급증으로 낚시관련 시장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련 산업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그 영세성은 낚시관련 신제품의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낚시관련 제품의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낚시도구를 보면, 고급으로 분류되는 것은 대부분 일본산이고, 국내산은 낚시인들로부터 외면당함으로써 막대한 외화가 유출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낚시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낚시관련 제품의 고급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낚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강구 등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낚시관련 단체의 지원을 통하여 관련단체를 육성하고, 이러한 단체로 하여금 일반인을 대상으로 낚시와 관련된 교육이나 필요한 홍보 및 계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가그룹(프로, 아마츄어낚시인연합체)의 낚시인들 뿐만 아니라, 단체에 소속되지 않아도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낚시대상 자원이 풍부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요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리 먼거리의 지역일지라도 출조한다. 다른 지방의 낚시인들이 관할지역에 내방하여 낚시하게 되면, 관할지역의 수산자원이 감소할 수 있고, 쓰레기의 발생 및 처리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는 문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낚시인들이 관할지역에서 각종 소비활동은 물론, 낚시어선의 이용 등 어업인의 어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한다는 장점도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가 외래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문화행사를 개최하거나 각종 이벤트행사를 주관하고도 목적달성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낚시인들

의 자발적인 내방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외래객의 유치라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낚시인들이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수산 자원을 적극적으로 조성·관리·홍보의 책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낚시관리 관련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문제

우리나라의 바닷가는 공유수면으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출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바닷가가 낚시터로, 주말이면 낚시가능 지역에는 낚시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 들 중에는 수산업법상의 금지행위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낚시인이 있는가 하면, 음주로 만취한 상태에서 낚시터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낚시인도 있으며, 각종 법률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고의로 위반하는 낚시인이 있다.

그러나 낚시관련 법률의 위반에 관한 단속은 현행 우리나라 법체계상 수산업법상의 어업감독공무원만이 행할 수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어업감독공무원은 대부분 1-2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1-2명의 어업감독공무원이 자치구의 수산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관할해역에서 불법어업을 하는 어선의 단속뿐만 아니라, 관할 바닷가에서의 낚시행위 등 수산자원 이용자를 감시·감독하여야 하는 등 그 업무범위가 방대하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어업감독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으나, 권한없는 자가 낚시관련 법률을 집행함으로써 낚시인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어업감독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 6. 낚시관리 관련 법·제도의 개선책

### 가. 낚시관련 법률의 제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바닷가에서의 낚시에 대한 규제나 진흥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낚시가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지만, 낚시가 주로 이루어지는 바다와 바닷가의 공유수면에는 어업권과 같이 사권(私權)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업권자와 바다 이용자 사이에 종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수산업법 제57조의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어업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낚시인은 현행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된다.

법치국가인 우리나라가 낚시인구의 급증과 관련 산업의 급신장함에도 불구하고 낚시에 관한 사항을 제도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바다나 자원이용자 사이에 갈등이나 분쟁을 유발할 수 있고, 관련단체나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현행 낚시와 관련된 법률들은 그 제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낚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각 개별 법률의 제정목적 때문에 일부 법률의 개정만으로는 낚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수산업법의 경우에는 어업의 규제와 진흥, 수산자원의 조성·보호, 어민의 소득 증대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낚시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여도 낚시의 건전한 발전과 관련된 목적 달성에 는 미흡할 수 밖에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목적에 따라 전문화·세분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낚시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낚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자원이용 질서를 확립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이용 뿐만 아니라, 관련단체나 기업의 육성, 관찰수면에 대한 자원조성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낚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나. 낚시관리 법률제정에 선행된 인식전환 도모

일반 낚시인들의 인식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바다나 내수면에서 자유로이 낚시할 수 있고, 낚시인들이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자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법률을 제정하여 낚시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낚시산업이 급신장하고 있는데,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는 관련 산업이 침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률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낚시 등의 여가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소관인 것을 왜 해양수산부와 앞장서서 규제하려고 하느냐, 해양수산부의 규제조치를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낚시인들이 현행 법률이나 법체계를 잘 모르고 또한 낚시관련 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낚시가 규제된다고만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낚시관련 법률에는 낚시행위를 규제하는 내용도 있지만, 낚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단체나 산업의 국가지원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낚시가 지속 가능하도록 장려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낚시관련 법률의 제정과 낚시인의 법률준수를 위해서는 낚시관련 법률에 관한 내

용의 홍보를 통하여 일반인의 잘못된 인식을 전환시키고 공청회를 통하여 낚시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의 제정에서부터 준수까지 낚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낚시와 관련된 기초연구나 분석과정에서 낚시인의 주장이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법률의 초안을 먼저 만들어서 낚시인에게 배포하여 검토하게 하고, 낚시인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방법을 진행함으로써 문제해결이 한층 쉬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낚시인의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낚시관련 법률의 제정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여 낚시 관련 법률의 좋고 나쁨을 낚시인이 직접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법률이라 할지라도 준수해야 할 국민 대다수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법제정을 위한 기초단계에서 다수의 의견을 하나로 통일시키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낚시관련 법률에 구성되는 개개의 조문에 대해 낚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여 낚시인의 인식 전환은 물론, 낚시인이 낚시관련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법률 제정의 소기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낚시관련 법률의 조문구성이 선행되고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제5장 주요국의 낚시관리제도 고찰

### 제1절 일본의 낚시관리

#### 1. 유어낚시 현황

##### 가. 유어낚시 인구 및 낚시 문제

일본의 유어낚시 인구는 여가시간의 증가와 낚시의 붐으로 시작되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평년 5년에는 낚시 인구를 약 5천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제9차어업조사). 이는 해면유어자, 즉 바다낚시인이 약 3천7백만명, 내수면 낚시인은 약 1천3백만명인 것이다.

소화 58년에 약 3천만명이었던 유어낚시인구가 그간 10년동안 1.6배 증가한 셈이다. 이후에는 크게 변동 없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바다의 유어어선을 이용한 조획량은 평년 9년에는 2만9천톤인 것으로 나타났다(유어조획량 조사: 농림수산부통계정보부).

[표 5-1] 일본의 유어낚시 인구추이

7 차 , 1 9 8 3	A . 1 0 , 0 0 1
8 차 , 1 9 8 8	A . 1 1 , 8 5 0
9 차 , 1 9 9 4	A . 1 1 , 1 7 7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어업자와 유어낚시인간의 어장이용의 경합문제가 발생하고 유어낚시인들의 조획장비 및 조획능력의 향상으로 자원관리나 재배어

업 대상종에 대한 조획문제, 그리고 블루길이나 배스종 등의 유해어종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표 5-2] 일본 해면유어자 수와 분류(1996)



[표 5-3] 일본 유어낚시의 경제적 효과와 관리체제

일본 유어 낚 시 의	
항 목	
A .	유 어 인 구 ( 만 명 )
B .	1 인 당 연 조 획 비 용 (
C .	유 어 총 지 출 비 용 ( 억

바다에서 유어선업의 바다낚시와 민물유어낚시에서 발생하는 자원 및 환경이용의 경합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업자와 유어자간에는 어장이용을 둘러싸고 경합(특히 근년에는, 플레저 보트의 경합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어업자와 유어자간에는 자원이용에 관한 경합문제는 특히 유어자의 어구, 장비의 향상으로 어획능력이 확대되고, 자원관리나 재배어업 대상어종의 유어에 대

한 채포가 문제시되고 있다.

셋째, 어업조정규제등과 현실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유어낚시 실태에서 어업조정 규제상은 어법이 제한되고 미끼를 이용하는 유어낚시가 일반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등의 문제이다.

넷째, 낚시터에 외래어종의 위법적 이식이 빈번히 일어나고, 유어선업이 어촌지구 에 있어 주요한 겸업 업종이지만, 유료낚시터의 시설운영을 어협이 주도하고 있어 생태환경적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유어낚시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공헌하 는 면도 있으나, 유어낚시로 인한 자연생태환경의 왜곡문제는 보다 체계화된 유어 낚시의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나. 일본의 유어관리

### 1) 해면유어 관리 현황

#### (1) 해면유어의 관리제도

해면에 대한 유어는 어업법 제65조 및 수산자원보호법 제4조 제1항과 도도부현어 업조정규칙 및 어업법 제67조 기초하여 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관리되 고 있다.

도도부현어업조정규칙에는, 「비어민등의 어구어법의 제한」이 설치되어있지만, 체 장제한, 금지구역, 유해물의 방치 금지 등의 어업과 같은 규제가 있다. 해구어업조 정위원회지시에는, 각 지역의 실태에 응하는 각종의 규제가 있고, 배치에 유어자의 의견을 반영하며, 사전에 유어자 대표도 참가한다. 또한, 「해면이용협의회」에 대 한 협의와, 해구어업조정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조정규칙 이나 위원회지시는, 유어자가 불특정 다수로 행동범위가 넓고, 규제의 내용을 유어 자가 십분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어업조정규제 등, 직접 유어선업자를 규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 의논이 있다.

이런 중에, 해면에 대한 유어는 유어자가 증가하고 행동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유어를 관리하는 규제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자원의 관리나 어장의 이용조정 등을 실시하는 유어관계자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욱, 재배어업대상어종을 채포하는 유어에 관해서는, 유어자에게 응 분의 부상을 요구하는 어업관계자로부터의 의견도 있으며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 도부현어업조정규칙 예(소화 38년수산부장관 통보)의 어업관계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 34조 유해물의 유기누설의 금지, 제 35조 보호수면에 대한 채포의 제한, 제 36조 금지기간, 제 37조 체장 등의 제한, 제 41, 42조 금지구역 등, 제 47조 하구부근에서 채포의 제한, 제 51조 비어민 등의 어구어법의 제한, 제 61~64조 별칙.

## (2) 어업과 해면유어 조정

어업과 해면유어와의 조정을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도부현 해면어업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은 비어민의 어구어법의 제한, 선박을 사용하는 유어 어업조정, 수산자원의 보호 증식 및 배양상 필요하는 것과 채수기 등을 사용하는 유어 등이 된다. 둘째, 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한 사항은 조정규칙에 따라 유어자가 사용 가능한 어구어법에 대한 일시적 그리고 지역적 규제를 하는 것이다. 셋째, 유어행위의 지도 및 단속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한 사항은 유어선 및 채수기 유어 이외의 유어는 유어자의 안전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이 된다.

## 2) 내수면 유어 관리제도

내수면 유어는, 어업법 제 65조 및 수산자원보호법 제4조 제1항에 기초한 내수면 어업조정규칙, 어업법 제 130조 및 제 67조에 기초한 내수면 어장관리위원회의 지시 및 제5종 공동어업권에 기초한 유어규칙에 따라 관리가 행하여진다.

내수면어업조정규칙은, 어구 또는 어법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채포의 허가」가 정해지지만, 체장제한, 금지구역, 유해물의 유기누설의 금지 등의 규칙등의 규제가 행하여진다. 또한, 제 5종 공동어업권에 관해서는, 면허를 받는 어협에 대응하여 수산동식물의 증식의무를 따른다. 한편으로 어협은 유어규칙을 정하며, 유어에 대한 각종의 규제를 행한다.

유어규칙에는 유어에 대한 제한의 범위와 유어료의 금액 및 납부의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납부 방법은 유어자가 어업권을 관리하는 내수면의 어협 유어료를 지불하고 승인을 받는 형식이다(일종의 라이선스제). 유어료는 수산동식물의 증식과 어장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데 쓰인다.

### (1) 어업법 제 129조(유어규칙)

내수면에 있어서의 제 5종 공동 어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당 어장의 구역에

있어 그 조합원 이외의 사람이 하는 수산 동식물의 채포(이하 「유어」라고 한다)에 대한 제한을 하려고 할 때는, 유어 규칙을 정해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유어규칙 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유어의 승인 및 유어료의 납부의무, 제 3조 어구어법의 제한, 제4조 유어기간, 제5조 금지구역, 제6조 전장제한, 제7조 유어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제8조 유어 승인정 관한 사항, 제9조 유어자 수 사항, 제 10조 어장 감독자, 제11조 위반자에 대응한 조치 등이다.

## 2. 유어관리 방법

### 가. 해면유어의 자원관리

#### (1) 총어획가능량(TAC) 관리와 유어의 관계

유어 조획량은 기본적으로 TAC 수역에서 하는 어호기량 어업관리와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유어의 실태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획량의 관리에 대해서는 도도부현 지사가 지역의 실정을 잘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의 TAC 대상어종에 대한 유어의 조획량은 아직 낮은 수준이나 전국적으로 구체적인 조획량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도도부현에서 유어 조획량을 TAC 제도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조획량 관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점차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유어 조획량을 TAC 제도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양적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유어인의 조획 결과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여 조획량의 집계·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획량 관리에는 막대한 제도적 행정력과 관리비용이 필히 수반된다. 우선 유어 조획량을 TAC 제도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수량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어인의 개별관리를 행하는 관리수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유어선업을 이용하는 유어인의 개별 조획량을 유어선업자에 의해서 유어인의 개별 조획량을 총괄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 (2) 유어선을 사용하는 유어 관리 - 유어선업 유어

일본의 대부분 현에서는 허가된 유어선에 승선하여 낚시(이하 「유어선조(낚시배)」라고 한다.)를 하는 유어자의 경우에도 연안 갯가에서 유어선을 사용하지 않고

유어(이하 갯가늑시 등」 이라고 한다.)를 행하는 유어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 (3) 플레저 보트에서 하는 유어

플레저 보트(마이 보트, 개인 레저보트)을 사용하는 유어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보트는 어탐이나 GPS등의 기구를 갖추고 낚시의 포인트를 확실하게 찾는 것이 가능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좁은 해협 내해의 조용하고 평온한 수역은 마이 보트 유어가 많고, 일반 상업적 어선의 어장경합 등으로 어장에서 문제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레저용 소형 마이 보트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등록제도 등이 있으나 마이 보트 자체를 유어선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유어에 관한 규제 등을 알리거나 지도·단속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마이 보트 유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출제도 등과 같은 출구관리제도가 필요하다.

### 나. 일본의 내수면 유어관리 과제

내수면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유어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는 지역 어협에서 자체적으로 자율규정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수면 어협이 약체화된 지역에서는 관리상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내수면 유어에 대한 필요한 관리는 현재 대체로 잘 행해지고 있다.

최근의 내수면 유어관리의 과제는 남획방지와 함께 다수의 유어자에게 낚시를 즐기게 한다는 관점에서의 캐치릴리스 지역(조획방류 지역)의 설정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캐치릴리스를 하는 경우 유어가 금지되고 있는 지역의 개방이 요구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배스 등과 같은 유해종의 경우 외래종의 번식에 의해서 재래 생물자원의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는 수면에서는 낚시에 의해 어획되는 외래종의 조획방류를 금지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내수면 어업규정이나 유어규칙의 정비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재생산에 필요한 어미 물고기를 확보한 후의 남은 잉여분이 된 연어에 대한 유효 이용의 일환으로 내수면 연어의 유어를 시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북해도 하꼬다테). 이런 경우 연어의 유어를 승인 받기 위한 유어자부터 요청이 지역진흥이라는 측면에서 강력히 요구되기 때문에 수산자원보호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 되고 있는 내수면 연어의 유어에 대해 검토이며, 유어자가 연어증식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며 연어의 증번식사업의 환원 등을 전제하고 있다.

(1) 수산자원보호법 제25조 (내수면 근처에서의 포획의 금지)

어업법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내수면에서는 연어와 같은 소하성 어종은 체포할 수 없다. 단지 어업면허를 취득한 어민은 어업법 제65조 제1항에 의해 법률의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한 소령 혹은 규정에 의해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허가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다.

연어자원의 증식용으로 공급되지 않은 연어자원의 유어이용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북해도 하꼬다테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당 하천의 위치하는 정촌(조사협력: 북해도립 수산부화장)을 중심으로 낚시방법별, 체포일, 지구, 시간 등을 조사했으며, 조사를 위해서 낚시인을 광범위하게 일반에서 공모하였다. 이용료는 설비이용료(설비)로 해서 1일당 2,500엔 정도가 소요 되었다.

(2) 수산자원보호법 제21조(수익자의 비용부담)

농림수산대신은 연어와 같은 소하성 어종의 범위에 속하는 어종중에서 송어를 목적으로 하는 어업을 하는 자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는 인공부화 방류사업의 이익을 받은 때는 이러한 사업의 실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 유어자의 자원이용 등에 대한 비용 부담

어업자는 어족자원 관리나 양식업에 관해서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유어자가 어족자원 관리의 대상어종이나 방류대상 어종을 조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업 관계자등으로 부터 유어자나 유어선업자에 대해서도 어족자원 관리에 대해서 응분의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유어자가 어족자원 이용의 명목으로 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낚시면허제에 의한 면허료의 추징이나 낚시어구의 과징금 제도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연안어업의 실정이 이들 국가와 다소 차이가 있고 또한 수산자원의 대해서 국민의 사고방식이 일부 다르기 때문에 미국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낚시면허제를 일본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유어자가 방류 어종의 상당부분을 조획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유어선업자가 어업자에게 방류비용에 상회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유어관계 단체가 어업단체와 협력하거나 또는 독자적으로 치어를 방류하고, 낚시 어장의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어자들이 어족자원 및 환경관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점점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어업자의 자원이용이나 자원증식에 대해서 부담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경우, 유어자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자원이용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유어 대상 어종의 증식이나 낚시어장의 형성에 필요한 부담을 유어자나 유어선업자에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또한, 어족자원의 방류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어종에 대해서는 증식비용의 일부를 어업자나 유어자가 적정하게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의 회복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 (1) 낚시 단체에 종묘방류의 현황

일본낚시 진흥회에서는 평성 9년도의 5천 3백만엔의 비용을 투입해서 감성돔, 넙치, 참돔 등의 해수어 59만 마리와 산천어와 옥새송어 등의 담수어 50만 마리의 종묘를 방류했다.

#### (2) 육성수면제도, 방류효과 실증사업

연근해 어장정비개발법 제7조 2항에는 수산동물에 관해서 육성수면과 방류효과 실증사업의 제도가 규정되었다. 육성수면에서는 육성수면이용규칙에 기초하여 유어자 등에 대하여 자원의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또한 방류효과 실증사업을 실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종묘방류에 관련해서 유어자에 대해서는 수산생물의 어획에 관해서 필요한 협력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 라. 유어선업의 적정한 영업의 확보

유어선업(낚시배)의 적정화에 관해서 법률(소화 63년 법령 제99호)는 유어선업의 건전한 개발을 지향하며 유어선 이용자의 안전확보와 함께 편리한 유어어장의 안전한 이용관계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제도의 변화이다. 동법에는 유어선업의 신고의 의무화,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지정, 전국유어선업협회의 지정, 적정영업규정의 허가 등에 관하는 규정이 결정되었다.

유어선업을 신고제로 규정한 것은, 지금까지 파악이 곤란했던 유어선업자의 실태가 상당히 많이 밝혀졌고, 유어선업자의 조직화가 진전됨에 따라 해면이용에 관한 조정이 전보다 쉽게되는 효과로 이해된다.

그러나 유어선의 정원수나 항해거리 및 범위에 관해서 일률적으로 신고제를 채택하는 것은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용객의 안전확보나 손해보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만 유어선업의 영업을 인증하자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손해보상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과 일정 규모 이상의 유어선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다.

### 3. 유어증 발급 행정절차 및 집행

#### 가. 유어증 관리주체와 유어료

일본에서의 내수면에 해당하는 강 낚시의 경우에 있어서 유어증(遊漁証, Fishing Ticket or Fishing License)이라는 이름으로 낚시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어증 또는 티켓을 발부하는 곳으로는 강 낚시의 경우에는 유어증 판매소이라는 깃발을 달고 있는 강 인근 낚시가게에서 구입가능하다. 이러한 유어증 판매소는 지역 민간 어협에서 지정한다. 원칙적으로는 지역 민간 어협에서 낚시티켓을 발부하며, 지정된 편의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유어 낚시권(Fishing Ticket)은 일종의 강에 대한 입장료(Admission Fee)로서 간주하고 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일본에서는 주로 Fishing Ticket이라는 말이 통용화되고 있으며, Fishing License를 잘 쓰지 않는 점이다. 이는 미국에서는 주(State)에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의 Fishing License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고스란히 정부로 귀속되는 반면에 일본에서의 Fishing Ticket은 해당 지사의 민간 어협(Local Fishermen's union or Fishery Co-Operatives)에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어협의 소득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에서는 License와 Ticket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Fishing Ticket은 대상어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민물낚시 유어증은 첫째, AYU-fish(sweety fish)를 포함한 모든 어종에 대한 유어증 둘째, AYU-fish(sweety fish)를 제외한 송어류에 대한 유어증 셋째, AYU-fish(sweety fish)와 송어류를 제외한 모든 종에 대한 유어증으로 구분한다.

또한 기간별로 일일면허와 연간면허가 주를 이루고 있다. 요금은 일일면허의 경우 1000-2500엔(단, 특정지역에만 낚시가능), 연간면허의 경우는 4500-5500엔(단, 특

정지역에만 낚시가능), 그리고 연간 Common 티켓은 약 12500엔으로서 이는 해당 지역의 모든 강에 대해서 낚시행위를 할 수 있다.

#### 나. 유어증 제외 대상자

해수면의 바다낚시 경우에는 대부분 유어선 선상낚시가 주를 이루고 있어, 개별적인 낚시면허증이 아닌 유어선에 한정하여 낚시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다.

#### 다. 유어증 수익금 사용

유어료는 민간 어협에서 가지게 되며, 주로 수산동식물의 증식과 어장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데 쓰여진다.

#### 라. 주요 낚시규칙 및 보호어종

대부분의 내수면 낚시는 생미끼를 이용한 낚시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플라이 피싱의 경우는 생미끼의 이용을 금하는 낚시행위로서 홋카이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특별한 면허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에서는 강낚시가 금지된 것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금어기에 들어간다.

일본에서의 바다낚시는 대개 규칙이 느슨한 반면, 내수면의 강낚시 경우에는 지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몇 가지 규칙을 정해 놓고 있다. 여기서는 니가타 지사에서 규정하는 규칙을 살펴보도록 한다.

##### (1) 송어낚시

송어낚시는 게임낚시로 가장 성행하는 어종으로 낚시시즌은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9월 30일 이후 금어기에 들어가며, 최소체장길이는 15cm이며, 일일마리수 제한은 없다.

##### (2) 연어낚시

연어낚시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낚시인들은 은밀하게 연어낚시를 즐기고

있다.

### (3) 배스낚시

일본에서는 배스종을 유해한 어종으로 간주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 토속어종과 여타 살아있는 종을 포식하기 중이기도 하고, 생태적 환경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배스어종은 강이나 호수에 방생하거나 Catch & Release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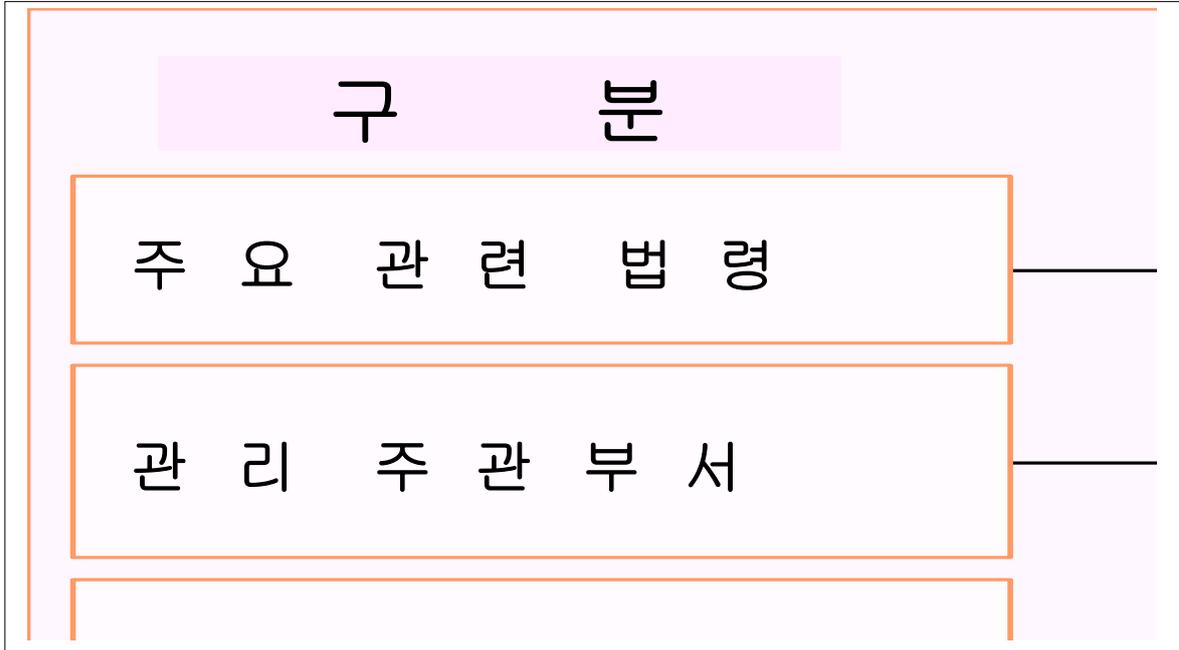
일본에서는 유어낚시가 점차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어업자와 유어자등 어장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 협의를 하는 해면이용협의회를 설치하고, 새로운 실질적인 어업과의 조정 때문에 해구어업조정위원회에 유어자 대표 등을 위원에 가입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 4. 면허의 감시체계 및 처벌수단

일본의 강은 정부의 관할이라기보다 민간 어협에 소속되어 있는 관계로 유어증을 관리하는 이도 역시 민간 어업협동조합(fishery co-operatives)에 소속되는 사람이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Kiyotake 지사에서의 민간 어업조합이 강에서의 방류사업 및 어족자원을 모니터를 하고 지역 유어증을 발급하고 있다. 그리고 유어증을 구입하지 아니한 자가 적발되었을 시에는 특정 벌칙이 주어지기보다는 유어증 요금의 50~100%의 요금을 더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상의 일본 유어낚시관리와 면허제를 바다유어낚시와 민물유어낚시로 나누어 관련법령, 주관부서, 관리유형, 운영체계, 단속 및 지도체계, 그리고 유어수입료 운용 등에 대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5-4] 일본 유어낚시관리와 면허제



#### 5. 한·일간 낚시관리 제도 비교

일본의 유어낚시관리 제도는 그 개념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수산동식물을 채포하는 행위 가운데 조사 및 시험연구를 제외한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일본은 해면유어와 내수면 유어로 구분하여 낚시관리제도를 운영한다. 해면은 어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법에 의거 도도부현어업조정규칙 및 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지시에 따라 관리되는데, 체장제한·금지구역·유해물의 방치 금지 등의 어업과 같은 규제 및 각 지역의 실태에 응하는 각종의 규제사항 이외에도 어업과 해면유어간의 갈등시이의 조정사항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다.

이와는 다르게 내수면의 경우엔 어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조정규칙과 내수면 어장관리위원회의 지시, 제5종 공동어업권에 기초한 유어규칙에 따라 관리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체장제한, 금지구역, 유해물의 유기누설의 금지, 유어에 대한 제한의 범위, 유어료의 금액 및 납부의 방법 등이 있다.

일본 유어낚시관리 제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지자체 중심의 수산자원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유어낚시와 어업권의 공존을 위한 정책 발굴을 한다. 어업법과 어업권으로 여가낚시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어업조정규칙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자체에 위임하는 형식이다. 자율규제를 통한 어촌과 도시민의 공존을 유도, 어관련 각종 통계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기초자료 제공하며 낚시 티켓

제도를 운영(지역별 어협에 승인을 받은 판매소를 통해 공급)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유어낙시관리 제도는 유어행위가 하나의 단일한 정책대상으로 자리를 잡지 못 했으며, 현재 5개부처에 직간접적으로 17개 법률에 해당 법률의 목적에 따라 상이하게 부분적으로 유어행위에 대한 규제가 규정되어 있는 현실이다. 즉, 유어관리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5-5] 한·일간 유어낙시제도 비교

구 분	일본		우리나라
	바다낙시	민물낙시	
낙시인구	약 5,200만명 (바다 1,330만명, 민물 3,870만명)		약 573만명 (바다 194만명, 민물 379만명)
낙시단체 역할	- (재)일본낙시진흥회가 대표 - 공익법인화 추진		- 대표단체 없음 - 영리목적에 따라 5개부처 약 4개 사단법인 등록
관련 법령	-어업법, 수산자원보호법 -유어선업법, 선박안전법	-어업법, 수산자원보호법 -내수면조정규칙, 제5종공동규칙	- 5개부처에 17개 법률 - 낙행위규제 사항 규정
관리주관 부서	-도도부현	-도도부현, 어협(제5종어업권자)	- 없음
유어관리 유형	-도도부현 해구어업조정위원회 -해면이용협의회의(어업+레저)	-내수면어업관리위원회 -제5종공동어업어장관리	- 없음 ※ 해양수산부 유어장 운영 규정
관리운영 체계	-유어선 등록 운영체계 -안벽유어와 보트유어 관리체계	-유료허가 부분적 운영체계 -제5종어업권자 자율적 운영	없음 ※ 해양수산부 낙시어선어업 및 유어장 운영
단속/지도 체계	-도도부현해면어업조정규칙 -어업감시공무원	-내수면어업조정규칙, 유어규칙 -어협의 어장감시원	없음 ※ 5개부처별 목적에 따라 상이
유어수입료 운용	-무료(안벽유어), 유어선유어	-고동어장 자원 환경관리비용 -어협의 유어환경 개선	없음
불법어업 처벌체계	-낙시행위과태료 규정 -판매 및 이동금지	-유어중지, 거질 -유어비 환불없이 퇴장	없음 ※ 5개부처별 법률사항 위반 제재 수준
관리대상 및 범위	-등록된 유어선 유어, 안벽유어 -하구, 연안 연어유어 제한	-제5종공동어업어장 -연어유어제한(일부 허용)	없음 ※ 5개부처별 목적에 따라 상이

## 가. 한·일간 유어낚시 비교

### 1) 한국의 유어 낚시 인구

한국갤럽의 3회에 걸친 오피버스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유어낚시인구는 573만명(바다낚시 194만명, 민물낚시 3,795천명)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는 2004년도 1, 2, 5월의 3차례에 걸쳐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4,559명을 대상으로 직접방문에 의한 면담설문조사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표 5-6] 한국의 유어낚시인구

(단위: 천명)

구분	합계	민물낚시인			바다낚시인		
		소계	순수형	위주형	소계	순수형	위주형
인원	5,730	3,795	2,279	1,516	1,935	1,591	344

표에서 위주형이란 민물과 바다에 모두 출조하는 형태의 혼합낚시인구로서 절반 이상 민물과 바다 중 어느 쪽으로 출조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민물낚시인과 바다낚시인으로 구분되는 것을 말한다.

### 2) 일본의 유어낚시 인구

일본은 5년 단위로 어업센서스 조사를 실시하며 유어낚시 인구는 5,191만명(바다 3,868만명, 민물 1,323천명)으로 파악된다. 특히, 1983년에 약 4천만명이었던 유어낚시인구가 1998년에는 약 5천2백만으로 약 28% 증가 했지만 조사 회차별로 보면 회차별 증가폭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나. 한·일간 낚시단체 비교

### 1) 한국 낚시단체 현황 및 특성

낚시관련 단체들이 주로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며, 그 특성에 따라 현재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4개부처 5개 사단법인이 등록되어 있다. 각 사단법인에는 지부 내지는 지역협회 형식으로 회원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단법인 아닌 임의단체도 다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정부부처의 낚시관리주무부처를 한곳으로 모으는 결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2) 일본 낚시단체 현황 및 특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환경성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재단법인) 일본낚시진흥회 결성하였는데, 진흥회는 본부, 9개 지구지부 및 46개 현지부로 조직화되어 있다. 어족자원의 보호증식, 낚시터 환경의 정비 보전, 낚시해에 관한 지식의 보급, 계몽등에 필요한 사업을, 낚시해에 관한 제단체(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환경성)와 어업관계 단체와 연락 협조를 하면서 행해, 레크리에이션으로서의 낚시의 건전한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방류사업, 낚시환경 보전사업, 낚시장 조성사업, 낚시진흥을 위한 사업, 낚시보급사업, PR사업, 조사연구사업, 조직강화사업,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제휴사업 등이 있다.

구체적인 일본 낚시업계의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 세대에도 건전한 낚시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낚시도구업계, 낚시단체도 함께 협력하고 낚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낚시진흥회의 관할관청이 농림수산성, 문부과학성, 환경성이며, 어족자원의 보호배양, 낚시장환경의 정비보전, 낚시와 안전대책에 관한 지식의 보급 계몽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레크리에이션으로 낚시의 건전한 진흥과 밝고 풍요로운 사회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그 내용과 이후의 조직(계획), 과제에 대해서는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낚시인의 매너 문제로 수변에 낚시관계와 일반쓰레기의 폐기, 지역, 주변주민과 어업관계자에게 미치는 피해 등이 문제시 되고 있다. 낚시도구업계에 있어서 낚시인의 매너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일본 낚시진흥회는 사단법인 전일본낚시단체협의회와 함께 낚시인 선언(宣言)을 발표하였고, 계몽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1) 배스, 파랑볼우럭의 이식에 대해서

배스, 파랑볼우럭의 불법이식금지에 있어서 당해어업권(當該漁業權)이 면허하지 않고, 하천호조에 이러한 물고기를 이식방류하는 것은 도도부현(都道府縣) 내수면어업 조정(調整)규제 등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을 목표로 하는 당회의 취지에 반하며, 생물생태계와 생물의 다양성 보존에 반하는 것이다. 도도부현과 지구(地區)의 지부(支部)에 통보를 하고, 자연환경보전에 있어서 「생물생태

계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철저히 하고, 조직을 통한 광고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 도도부현, 어협 등이 작성하여 발행하는 포스터, 스티커, 리플릿 등을 가게 앞에 게시, 배포 협력하는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 (2) 생식역구분(生息域區分)에 대해서

어업의 입장(立場)을 존중하고 조화로운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재래어종의 보전과 생태계보전에 대한 불법방류금지의 계발활동과 감시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큰입우럭(large mouth bass, 라지마우스 배스)의 건전한 낚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폐쇄성 수역의 일정 조건 수역하에서 적절한 관리에 의한 공인낚시장을 설정하고, 큰입우럭을 어업권어종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식역구분을 요청하고 있다.

### (3) 낚시장의 유지관리

방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일본 전국의 내수면, 해수면 시설, 내수면에 방류하는 어종은 잉어, 메기, 떡붕어, 피라미, 산천어(일본에서는 야마메), 이와나, 은어, 옥새송어(니지마스, 무지개송어), 연어, 빙어, 우다이(돔의 일종) 등이다. 한편 해수면에 방류하는 어종은 감성돔, 참돔, 광어, 볼락, 조피볼락, 농어, 카사고(カサゴ), 이시가키돔(イシガキダイ) 등의 다양한 어종을 방류하고 있다. 또한 방류하기 위한 모금함을 설치하고, 어종방류의식의 고양을 도모하고 있으며, 환경사업단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에게 「물고기 방류체험」을 실시하여 방류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환경문제와 어종보호를 학습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 (4) 낚시환경의 정비보전

낚시장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상으로는 낚시공원, 하천 등의 낚시터 조성, 정비보전, 공원과 항만 등의 시설개방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국가적인 조직에서 낚시의 진흥을 추진하고, 낚시터 증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앞서 서술한 바 있는데, 그 과정으로 혼란기에 국민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하여 낚시를 장려하였다. 미국은 청소년의 마약복용, 중국은 전국민의 도박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낚시를 장려하였으며, 과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낚시에 주목하고 낚시터를 증설하고 있다.

일본의 낚시인구의 남녀비율에서 남성이 79%, 미국의 경우 74%, 그 외 국가에서

도 뉘시는 압도적으로 남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뉘시에 관심이 있는 여성은 많지만, 뉘시하러 가지 않는 원인 중에서 특히 화장실 문제이다. 그리고 뉘시를 위해서 식사와 식재 제한의 어려움을 감소해야 한다는 것은 여성이 뉘시를 즐기기 위한 경우에 곤란하다. 업계에서는 여성의 뉘시활동 참여는 중요한 과제로써, 여성이 가볍게 뉘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정비로 남여별 화장실의 설치관리, 뉘시장과 안전한 뉘시장의 증설과 이를 위한 활동이 중요하다.

#### (5) 환경미화활동

뉘시업계는 각 관련단체, 뉘시인과의 연계하여 환경미화에 노력해야만 하기 때문에 뉘시장, 수변 청소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수변(자료에는 水近)감사의 날(10월3일 일요일 개최)에 일본 뉘시진흥회 각지부가 중심으로 하여 전국에서 일제히 수변에서 지방 뉘시인, 뉘시클럽, 뉘시 주요업계, PTA, 일반 참여자 등이 협력하여 21,000 이상이 참여하였다. 청소에 필요한 쓰레기봉투 2종(소각 여부에 따라), 목장갑, 부집계를 참여자에게 배포하고 뉘시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쓰레기가 참여자에 의해 회수되었다. 뉘시대회 개최 축제에는 쓰레기봉투를 배포하고 뉘시장의 청소 및 쓰레기 되가지고 가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어장 clean-up사업(수산정보조사사업)으로 수역환경미화를 위한 다이버가 투입되어 해저폐기물 회수를 진행하여 수변의 근본적인 보전을 도모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 뉘시진흥회 埼玉縣 지부에서는 지역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문제에 대해서 협력하고, 불법투기방지에 뉘시인들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포스터, 전단지 작성, 뉘시인이 불법투기를 발견하였을 경우 환경관리사무소에 통보하는 의뢰를 시작하였다. 리싸이클법에 따른 대형가전제품의 폐기유료화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 산과 계곡, 하천호조에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행정도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쓰레기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의 유출 등에 의해 해당 지역의 수변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환경파괴로 이어져 오염이 발생하고, 통보에 의한 이러한 피해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뉘시인에게 인식활동의 협력을 호소하고 있다.

#### (6) 뉘시 보급활동과 병행한 뉘시윤리 계몽활동

뉘시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증가시켜 가고, 또한 뉘시윤리 향상을 도모하는 뉘시

보급활동과 병행한 낚시매너 의식향상의 계몽활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낚시도구 견본시(見本市)와 낚시세미나, 낚시대회를 많이 개최하고,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일본낚시용품공업회는 「JISPO 국제낚시전」을, 大阪낚시협동조합에서는 「낚시쇼 OSAKA」를 주최하고 있는데, 양낚시도구 견본시에서 내외 10만명 이상의 업계관계자와 낚시애호가들이 입장하기 때문에 거기서 신제품발표와 보급촉진활동과 병행하여 환경미화, 낚시윤리 향상 계몽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 낚시진흥회에서는 국제 스포츠낚시 평의회 행사로 WFW JAPAN이 개최하는 WFW(세계낚시조간)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 스포츠 낚시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세계통일(統一)사업으로 하여 주로 소년소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낚시이벤트인 WFW를 시작하고 있다.

또한, 2003년도는 4개소가 추가되어 일본 전국 47개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수산청 위탁사업으로 낚시교육지도 테스트 「Hello! Fishing」을 계획 제작하고, 낚시교실, 방류, 작문, 그림의 모집을 통해 물고기의 생태와 낚시의 올바른 지식, 낚시매너를 지도하고, 건전한 낚시의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낚시도구 주요업계와 낚시단체, 공공단체 등에서도 청소년 가족, 커플 대상의 낚시대회와 낚시교실, pool에서의 낚시체험교실이 개최되고 있고, 즐거운 이벤트를 통해 초보자, 여성층에도 참여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낚시를 할 때의 감동의 체험을 잊지 않고 싶다는 것, 청소년의 낚시 어려움이 낚시인구 감소의 큰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낚시활동의 유지와 새로운 신규 참여자를 불러들이는 것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즐겁게 낚시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된다.

## (7) 교육과 낚시

낚시도구업계는 과거에는 문제시되지 되었던 사항인 낚시인의 매너준수와 쓰레기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어자원 보호·보전,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개발 등 환경과 조화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더욱이 낚시의 효용연구를 심화하는 시스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낚시인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좋은 날의 일(업무)보다는 나쁜 날의 낚시가 낫다.”고 하는 것이 사회인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낚시가 보다 효과 적이라는 것을 표현한다.

그리고 청소년 교육 가운데 낚시를 도입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부모는 자식들에게 원하는 물건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낚시를 하러 가는 것이 살아가는 방법과 생명을 경외하는 것, 자연과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낚시를 통해 가르

칠 수 있다. 또한 교육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제재가 있는데 특히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지식과 체험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는 생활 가운데 교육현장에서는 커리큘럼 가운데 캠프 등의 야회활동을 통해서, 화재방지와 낚시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플라이낚시를 시작하는 낚시에서는 기후와 기압, 지형, 수류, 기류, 생물 등 자연조건과 환경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낚시를 통해서 이러한 지식을 체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살아있는 교육으로 야회 활동과 낚시가 국가 정책으로 교육에 도입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낚시업계와 낚시를 쉽게 가르치는 인재와 시설, 기회의 제공 등을 지원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 제2절 기타 주요국의 낚시관리와 면허제

### 1. 미국

#### 가. 유어낚시현황

미국의 유어낚시에 대해서 우선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주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민물낚시 면허제나 바다낚시 면허제를 개별 혹은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낚시면허제의 배경은 1950년초에 자연자원보호 기본법인 Dinkel-Johnson법을 시작으로 하여 입법화된 이후 낚시면허제도가 오늘날 까지 시행되고 있다. 2001년 16세이상, 년 16일 이상 출조한 바다와 민물 낚시인구는 약 3천 5백여만이며, 전체 미국 인구의 약 16%에 해당한다<sup>33)</sup>. (USFWS, 2001)

33) 상당수의 순수 낚시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낚시단체들이 있어 이들 단체는 정부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낚시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는데, 여타의 상업적 또는 직업형 어로단체에 비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훨씬 영향력이 크다.

[표 5-7] 미국 유어낚시의 경제적 효과와 관리체제

미 국 유 어 낚 시 의	
항 목	
A .	유 어 인 구 ( 만 명 )
B .	1 인 당 연 조 획 비 용 (
C .	유 어 총 지 출 비 용 ( 억
D .	유 어 경 제 효 과 ( 억 \$ )

유어낚시에서 민물낚시 면허제의 경우 미국의 50개 모든 주가 유사 야외 레저의 면허제와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바다낚시의 면허제의 경우에도 22개 연안 주의 대부분인 17개주가 상업적 어업관리의 체계속에서 바다낚시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다. 바다낚시 면허제를 실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는 5개 연안 주인 캘리포니아, 로드 아일랜드, 뉴욕, 뉴저지, 하와이에서는 비록 낚시면허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허가제와 같은 면허제와 유사한 낚시 관리체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개인용 보트를 이용하여 3해리 밖의 원거리 바다낚시일 경우 연방정부의 해양대기청(NOAA)산하 해양어업국의 유어관리부서로부터 낚시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미국의 바다낚시는 일부 연안 바다낚시는 면허제를 실시하고, 원거리 보트낚시는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바다낚시의 규모를 보면 바다낚시인은 전체 낚시인의 약 25% 정도이며, 연간 약 7천 5백만 출조로 약 4억 2천 9백만 어류의 조획이 바다낚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USF\$WS, 2001).

바다낚시 면허제를 포함한 유어낚시에 대한 관리는 주로 주정부의 소관이다. 주(州)정부에서는 수산부와 유어부가 같은 비중으로 낚시에 관한 행정, 조사연구, 번식, 보호시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면허료는 번식, 보호시설, 조사연구, 규제 등의 비용에 사용된다. 낚시의 규칙이 엄하며, 산란기와 산란장에서의 금어, 유어의 포획금지, 낚시량의 제한 등 엄격한 규제가 가해진다. 강가나 바닷가의 어족보호를 위해 자갈, 모래의 채취, 공장폐수의 방류, 선박의 항행, 제방 또는 수중 축조물의 건설 등을 단속하기도 한다.

미국에서의 낚시면허제도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한 낚시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바다, 강, 호수, 계곡 등 내수면과 해면에서 낚시를 할 수 있다. 낚시에 대한 별도의 교육은 없지만 면허증을 구입시에 유어낚시의 각종 규칙을 포함한 어족 보호 등에 대한 기본 준수사항 지침서를 받게 되고, 유어자는 이 지침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이에 준하여 유어낙시를 하여야 한다.

낙시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는 각 주정부마다 면허제의 시행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낙시관리부서와 면허증 발급체계, 거주자, 비거주자별, 그리고 낙시의 유형, 어종별로 달리한 여러 종류의 낙시면허증이 있으며, 각종 규제안들을 정해 두고 있다. 미국의 대부분 주정부에서 낙시와 관련한 부처 및 정보기관들의 명칭은 조금씩 다르나 역할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사냥을 포함한 낙시행위와 게임을 야생동식물 및 어류에 관한 자원의 이용 및 환경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면허증 정보에 대해 일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5-8] 미국의 낙시면허제 전담부서 및 시행조직

낙시(사냥, 게임)면허제 및 관련 정보부서	낙시(사냥, 게임)면허제 실시 50개 주
Division(or Dept) of Game & Fish	Alabama, Alaska, Arizona, California, Georgia, Idaho, Indiana, Kentucky, New Hampshire, North Dakota, Wyoming
Dept. of Natural Resources	Iowa, Maryland, Michigan, West Virginia, Wisconsin
Division Fish & Wildlife	Colorado, Delaware, Minnesota, Oregon, Rhode Island, Vermont
Dept. of Wildlife & Marine Resources	South Carolina
Dept. of Environment Protection	Connecticut
Game & Freshwater Fish Commission	Florida
Division of Forestry & Wildlife	Hawaii
Dept. of Conservation	Illinois, Missouri
Dept. of Wildlife & Parks	Kansas, Texas
Dept. of Wildlife & Fisheries	Louisiana, Massachusetts
Dept. of Inland Fisheries & Wildlife	Maine
Dept. of Wildlife, Fisheries & Parks	Mississippi
Dept. of Fish, Wildlife & Parks	Montana
Game & Parks Commission	Nebraska
Dept. of Wildlife	Nevada, Ohio
Division of Fish, Game & Wildlife	New Jersey
Wildlife Resource Commission	North Carolina
Dept. of Environment & Conservation	New York
Dept. of Wildlife Conservation	Oklahoma
Fish & Boat Commission	Pennsylvania
Dept. of Game, Fish & Parks	South Dakota
Division of Wildlife Resources (Agency)	Tennessee, Utah
Dept. of Fisheries	Washington
Dept. of Game & Inland Fisheries	Virginia

## 나. 유어낚시 관리주체

미국 유어낚시 면허제의 관리주체는 바다낚시의 경우는 일부 연방정부가 관여하나 원칙적으로 주정부의 소관이다. 일부 주에서는 주정부의 낚시관리 프로그램이 없거나 낚시인에 대한 기본관리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는 연방정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직접 주정부 관할수역에 대한 낚시관리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정부가 유어낚시에 대한 관리체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각 주 정부의 입법부에서는 사냥 및 낚시행위에 대한 제반 규정을 정하고, 행정부의 자원 및 환경관리부서가 낚시면허제의 제도적 관리주체가 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각 주의 내수면은 물론 3해리 이내의 연안의 해면도 주정부의 관할수면으로 되어 있다<sup>34)</sup>. 따라서 유어낚시를 포함한 자연자원의 이용에 대한 관리는 당연히 주정부의 책임과 규제하에 놓이게 된다. 각주가 주어진 자연환경에 따라서 자연환경의 관리체제가 다르듯이 각주마다 유어낚시 관리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나 낚시면허제의 운영 시스템도 각각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주가 시행하고 있는 낚시인의 관리를 포함 한 면허제 관련 제반 규정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한편, 바다낚시중에서 먼바다 개별보트낚시의 경우에는 주정부의 유어낚시 규정과는 관계없이 연방정부의 해양대기청(NOAA)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낚시보트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허가낚시의 주체는 낚시인의 주정부와는 관계없이 연방정부의 해양대기청이 된다. 해양대기청은 해양경비대(Coast Guard)와 함께 개별보트 유어낚시를 관리하고 감시 감독하게 된다.

## 다. 면허증 발급 행정 절차 및 집행

각 주정부의 입법부에서는 사냥 및 낚시행위(민물낚시, 바다낚시)에 대한 면허료를 책정하게 되고, 면허면제자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면허비용은 어디서 낚시를 할 것인지, 어디서 면허증을 구매한 것인지, 해당 주의 거주자인지 그리고 면허증 면제대상자인지에 따라서 다양하다.

플로리다 주를 예를 들자면, 정상적인 낚시면허증발급은 우편으로 48시간내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온라인상에서 즉각적인 면허발급으로는 원래 면허비용의 2.5%에

34) 미국의 해면은 기본적으로 3해리 이내는 주정부 관할수역, 3해리에서 12해리 영해 해면은 연방정부의 관할수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물론 12해리에서 200해리는 배타적경제수역(EEZ)도 연방정부의 관할수역이다. 따라서 연안 3해리 해면에서 행하여지는 바다낚시에 대한 관리주체는 각 주정부의 자원 및 환경관리부서가 된다.

해당하는 한 사람당 2.25달러로 총면허 발급비용이 된다. 또한 무료전화를 통해서 임의면허증도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각 군의 조세 담당국이나 낚시미끼나 낚시도구를 판매하는 가게, 스포츠 용품점 등지에서 추가적인 요금을 (0.50~1.00달러) 내고 구입할 수 있다.

추가적인 요금으로 제외한 순수 낚시면허요금으로는 최적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해당 주의 어족자원을 포함한 야생동식물의 방류사업 및 각종 증식사업에 쓰여지게 된다. 그리고 각 주들은 낚시인들로 하여금 낚시면허증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자원의 보전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유인책을 펼친다. 예를 들면, 비록 16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노령자, 또는 낚시면허증이 필요없는 특별한 지역 거주자가 면허증을 1매라도 구매함으로써 주의 재정수입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러한 면허소지자들에 한해서 낚시용품의 할인가격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낚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2003.6.7 & 9.27) "Free Fishing Days"가 있다.

남 캐롤라이나 주에서는 굴을 채취한다거나 개인소유어선으로 낚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엔 바다레저낚시면허가 있어야 한다. 요금을 지불한 전세어선이나 교각에서 낚시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바다낚시면허가 있어야 한다. Piers and Charter Vessel License 신청은 찰스톤에 있는 DNR사무실에서 가능하다. 수산관련 생산품을 판매하고자하는 자는 해양자원부(Marine Resources Division)에서 면허를 받아야 한다.

최근 각 주정부의 낚시면허증의 발급업무가 주로 온라인 체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개인 온라인 회사에서 종합온라인 낚시면허증 발급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로 발전되고 있다.

#### (1) 면허 대상 낚시인과 면허료

면허증은 각 주의 생태적, 지리학적 특성, 거주자(비거주자), 대상어종, 낚시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플로리다 주, 와이오밍 주, 캘리포니아 주 그리고 버지니아 주를 중심으로 면허증의 종류와 면허요금 그리고 각 주별로 거주자의 개념 및 유어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에 대해서도 각 주마다 다르지만 플로리다 주에서는 거주자의 개념을 「원 주소지로서 플로리다이며 면허증 신청당시 까지 최근 6개월 동안 플로리다에서 거주하는 자」 또는 「낚시면허증을 구매할 당시, 플로리다에서 부인과 자녀를 지닌 군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와이오밍 주에서는 거주자란 「낚시면허 신청시까지 계속해서 사실상 1년이상 와이오밍주에 거주한 사람」을 의미한다.

다음은 각 주에서 담당하고 있는 면허증의 종류와 면허요금, 그리고 각 면허 대상자 및 면허제외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5-9] 플로리다 주의 면허증 종류와 면허요금

	면허의 종류	기간 및 나이	면허요금
거주자	-Florida Resident License(거주자 면허)	1년	\$13.50
		5년	\$61.50
	-Lifetime Saltwater Fishing License (평생 바다면허)	4세 미만	\$126.50
		5~12세	\$226.50
		13~64세	\$301.50
		65세 이상	무료
	-Combination Saltwater/Freshwater Fishing*	1년	\$25.50
	-Combination Saltwatr/Freshwater&Hunting**	1년	\$35.50
	-Lifetime Sportsman License*** (평생스포츠면허)	4세 미만	\$401.50
		5~12세	\$701.50
13~63세		\$1,001.5	
비거주자	-Three-Day License	3일	\$6.50
	-Seven-Day License	7일	\$16.50
	-One-Year License	1년	\$31.50
추가 허가증	-Snock Permit (농어류 허가증)	1일	\$2.00
	-Crawfish Permit (가재류 허가증)		\$2.00
유어선장	-낚시인 11명 이상 승선시	1일	\$801.50
	-낚시인 5~10명 승선시		\$401.50
	-낚시인 4명 이하 승선시		\$201.50

\* Combination Saltwater/Freshwater Fishing 은 바다 및 민물낚시 모두를 허용

\*\* Combination Saltwatr/Freshwater&Hunting 은 바다와 민물낚시 그리고 게임낚시 및 사냥포함

\*\*\* Lifetime Sportsman License 은 바다, 민물낚시, 게임낚시 그리고 사냥, 활궁 등의 모든 스포츠 면허로서, 야생관리지역(Wildlife Management Area)에서도 입장하여 활동가능

[표 5-10] 버지니아 주 바다낚시 면허증 종류와 면허요금

rod, reel, handline, spear 또는 gig 바다낚시에 대한 면허종류	면허요금
1년 면허	\$7.50
10일 면허	\$5.00
1년 유어선장면허	\$30.00
거주자 신체장애 평생바다면허	\$5.00

[표 5-11] 캘리포니아 주 낚시면허증의 종류와 면허요금

거주자구분	면허의 종류	면허요금
거주자	스포츠낚시면허	\$30.45
	태평양 바다전용 스포츠낚시면허	\$7.85
비거주자	스포츠낚시면허	\$81.65
	10일 스포츠낚시면허	\$30.45
구분없음	2일 스포츠낚시면허	\$11.05
	1일 태평양 낚시면허	\$6.55
	콜로라도 강 특별사용인지	\$3.00
	무지개 송어카드	\$3.40
	줄무늬농어인지	\$3.70
	전복류 카드면허	\$12.60

[표 5-12] 와이오밍 주 낚시면허증의 종류와 면허요금

면허증의 종류	면허요금	
	거주자	비거주자
1년 낚시면허	\$15	\$65
평생낚시면허	\$250	-
낚시/게임/새사냥면허	\$400	-
1일 낚시면허	\$3	\$6
청소년 낚시면허(14세 ~18세)	\$3	\$15/10일 \$10
소형어 그물업 면허	\$25	
소형어 거래면허	\$45	

## (2) 면허 제외 대상자

플로리다 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포함하는 자는 면허증이 없이도 낚시행위를 할 수 있다.

- 보트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육상에 인접한 곳에서 낚시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구조물(항구, 다리, 부두) 등지에서 낚시활동을 하는 플로리다 주민
- 65세 이상의 플로리다 주민이나 16세 이하 청소년
- 플로리다 출신으로 타지에서 군 생활을 하며, 30일 미만의 휴가를 나온 군인 (가족은 제외)
- 플로리다 민물낚시면허증을 소지하고 민물에서 송어를 잡는 플로리다 거주자
- 육상에 고정된 구조물이나 육상에서 민물에 바닷고기를 낚는 플로리다 거주자
- 유어선박 면허증을 소지하면서 보트낚시를 하는 자
- 바다낚시면허증을 소지하면서 항구에서 낚시행위를 하는 비거주자
- 플로리다 주민이면서 장애증명서를 소지하는 자

버지니아 주 역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증이 없이도 낚시행위를 할 수 있다.

- 16세 이하 청소년 또는 65세 이상 노인
- 낚시터의 실질 소유자 또는 배우자 그리고 자녀
- Virginia Marine Resources Commission으로부터 상업적 피싱 장비 면허를 받는 자
- 신체 장애자, 정신 지체자, 퇴역 군인
- 해양유어보트의 개별구입자

## (3) 면허 수익금

면허 수익금은 주로 어족자원의 서식지 회복 및 환경을 위해 어족자원 보존이나 수질보호경비로 쓰인다. 또한 낚시용구에도 가격의 10%를 물품세로 부과하여 미국 연간 세수가 약 3,000~3,200만 달러에 이르는데, 이중 80%는 연방정부의 수입으로 20%는 낚시관련 연구 및 사업비등을 포함하여 법 시행 및 공공교육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주 정부소속의 사냥관리국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각 공원 시설물과 내수면을 관리하고, 수 백개의 양식장에서 멸종위기종을 부하시켜 강이나 호수, 바다에 방류하는 어족자원 보존사업의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다.

(가) 플로리다 주

플로리다 주의 어류 및 야생동식물보존위원회(Fish and Wildlife Conversation Commission, FWCC)내 낚시면허·허가부의 조사에 의하면, 낚시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며, 민물낚시산업이 매년 거의 10억불(2000년)의 경제이득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비거주낚시인들의 역할이 크다고 한다. 민물낚시인 수가 미국 전체 주중에서 8번째이며 비거주자 낚시면허판매액(770만 달러, 2000년)은 총 바다낚시세입의 40%를 차지한다.

(나) 남 캐롤라이나 주

South Carolina 주에서는 낚시면허수익금으로 낚시를 위한 인공구조물, 연구조사 활동, 낚시위법사항 법집행, 유어자원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표 5-13] South Carolina 주의 낚시면허수익금 사용

	낚시면허 수입금('01.5.1~'02.4.30, 단위 \$)
낚시면허	589,081
연허가증	52,570
총 인쇄	16,578
계	658,229
	면허료 사용방법(단위 \$)
지느러미 고기관리 / 조사활동	212,019
인공구조물	130,000
법집행	129,646
조개관리 / 조사활동	104,153
교육	40,000
관리	32,411
출판/예술가 로얄티	11,000
계	659,229

(다) 캘리포니아 주

면허발급에 따른 수익금은 주정부 사냥보고관리국의 예산으로 편성돼 각 공원시설물을 관리와 내수면을 관리하고. 또 수백개의 양식장에서 멸종위기의 일부 어종을 부화를 시켜 강이나 호수, 바다에 방류하는 비용으로 전액 쓰여지고 있다(예 일년에 700만마리 이상의 송어 양식).

라. 면허 낚시인의 감시체계 및 처벌 수단

플로리다 주의 경우에는 해양관리국(The Bureau of Marine Enforcement; BME)에서 바다 낚시와 보트 관련법규 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를 감시하는 순시선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플로리다 해안에 걸쳐 낚시하는 사람들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기도 하고 낚시관련 행위와 보트 그리고 환경에 저해하는 활동에 대해서 소환장도 발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 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핫라인(hot-line)도 운영하고 있다.

[표 5-14] 불법낙시인의 단속과 처벌규정

위반행위	벌점	위법 적용법	정지기간
조수보호구역에서 사냥 또는 낙시	14	낙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방해	1년
금지기간동안 낙시	10	천연자원법 위반	1년
조획한 고기 판매	14	불법면허취득	1년
체장제한미만 조획	8	면허대여, 유효기간조작 및 변경	1년
무면허 낙시	6	권총 등 소형화기 부주의한 취급	1년
뎃, 예인망 등의 불법그물사용	10	음주 어선운항	1~5년
개인벌점이 18점 이상인 자는 면허정지하고 위반행위에 정지를 범으로 규정하고 있음			

정지위반시

- 1) 면허정지를 위반시 원래 정지기간에 3~5년 추가정지
- 2) 교도소에 감금될 수 있으며, 권총소유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3) 각종 면허증, 허가증, 인지 소지불능
- 4) 정지기간중 면허증구입시 부정행위에 속하며, \$1,025의 벌금과 추가 1년 정지기간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면허증은 모자나 겹옷에 반드시 부착하고, 잠수하는 사람은 배에 부착해야 하며, 환불은 불가능하다. 특히 호수나 강낙시는 법규가 까다롭기 때문에 관리인들이 수시로 법규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인 불법낙시인의 단속과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기를 불법으로 밀어하거나, 수질오염시키는 사람을 발견시 누구나 365일 언제든지 무료신고전화(1-888-DFG-CalTip) 가능

둘째, 낙시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면허증 취소가 되고, 무면허로 낙시할 경우 최소 \$250 벌금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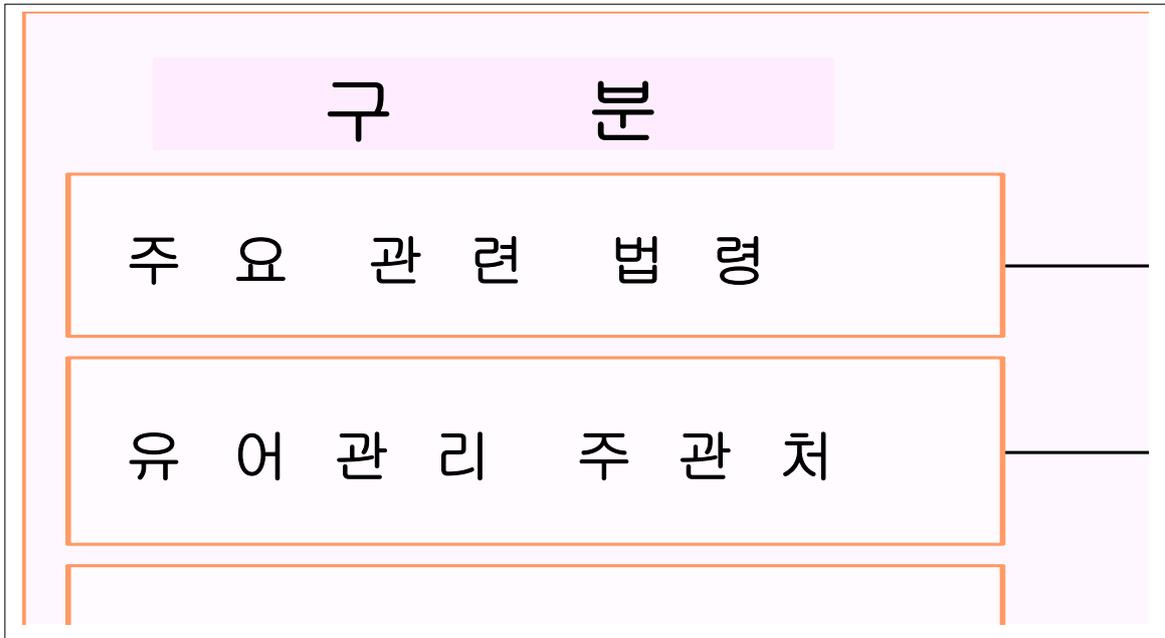
셋째, 바다낙시에 비해 호수낙시의 규칙이 엄격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1대의 낙시대만 사용가능하다. 이를 어길시 \$699 정도의 벌금과 동시에 관할 재판소로 소환되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잠시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낙시대를 접어놓고 가야하는데, 이를 어길시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699 정도의 벌금형

넷째, 호수낙시의 경우, 바늘수는 3개 초과금지과 추의 무게는 3온스를 초과금지이므로 이를 어길시 \$50 이상의 벌금 등이다.

또한, Pennsylvania 주의 단속 및 처벌규정은 불법으로 낙시고기와 불법낙시장비를 몰수하게 된다. 각종 낙시면허를 취소 및 정지하게 되고, 12개월안에 다시 불법행위 적발시 \$200의 추가벌금이 부과되며, 무면허낙시 경우 기본 범칙금 \$50에 불법으로 낙시고기 한 마리당 \$20의 추가벌금을 내야 한다.

이상 미국의 유어낚시관리와 면허제 실태에 대해서 바다유어낚시와 민물유어낚시로 나누어 관련법령, 관리주관처, 관리유형, 운영체계, 감시 및 단속체계 그리고 면허수입료 운영과 불법낚시 처벌수단 등에 대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5] 미국의 유어낚시관리와 면허제 실태



## 2. 독일

### 가. 독일의 유어낚시현황과 낚시면허제

독일의 유어낚시는 주로 내수면에서 활성화되어 있다<sup>35)</sup>. 강과 호수에서 이루어지는 독일의 어업은 유어어업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낚시인은 약 130만명이며, 거의 600여개의 낚시관련기업에 등록되어있다. 그리고 상업적 어업은 대부분 부업적인 생계유지형 어업인들이 점유하고 있으며, 단지 지역 산업적인 중요성을 띠고 있을 뿐이다.

한편 환경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낚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각 주마다 유어낚시규제안들이 상이하며, 또한 낚시장비에 있어서 렌트하는 형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낚시가 극도로 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35) 독일에서는 민물낚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바다낚시 또한 낚시를 하기 위해서 유효한 낚시면허증 (valid fishing license)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강에서 이루어지는 내수면 어업은 여러 가지 어업 장애요소들, 예를 들면 오염이나 부영양화로 인해 제대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내수면에서는 양식을 비롯한 어업의 규모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내수면 어업은 주로 어획물을 지역적인 판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족적인 소규모 생계유지 형태를 띠는 어업들이 집중되는 추세이다.

내수면 어업은 감소하는 반면에 유어낚시는 증가하고 있다. 구 동독 지역에서도 점차적으로 내수면에서의 유어낚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유어낚시의 성장추세에 대한 유어낚시에 대한 관리체계는 엄격하다.

독일에 있어서의 유어낚시는 엄격한 자연자원 및 환경보호의 법체계하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유어낚시도 원칙적으로 규범적인 자원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중적 서류절차를 거쳐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유어낚시를 위한 이중적 서류절차란 먼저 주정부의 주도하에 주정부와 낚시단체에서 실시하는 낚시교육을 통해 일정 자격을 취득한 후 주정부로부터 낚시면허를 받게 된다. 그리고 난 후에 낚시터 소유 및 관리자 또는 단체로부터 일정 유어료를 지불하고 낚시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유어낚시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독일에서 유어낚시 면허증은 어느 주에 관계없이 규범적인 낚시면허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정부가 주는 것이고, 낚시허가증은 낚시터의 소유 관계자 또는 단체로부터 낚시를 하기 위한 입장료로서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sup>36)</sup>.

독일의 경우 주정부 별로 발급하는 낚시면허제는 매우 엄격하여 일정 기간 어종 판별, 수질 및 자연환경보호, 치어보호, 어자원보호, 채포 금지된 고기를 낚았을 때 고통없이 보내는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는 상당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은 정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하며, 일종교육을 마친 사람에 한해 면허 취득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취득시험은 성인에 한해 시험(test)을 치른 뒤 면허를 내주며, 청소년의 경우는 낚시허가증을 받아 면허를 소지한 성인과 동행해야 낚시행위를 할 수 있다.

면허시험 때는 물고기와 수질보호에 대한 상식을 묻고, 낚시도구 조작법에 관한 실기 테스트도 한다. 시험을 볼 때는 약간의 수수료를 낸다. 면허의 유효기간에도 매년 4~20마르크 정도의 공과금을 부과하여 기금을 만들어 어족자원보호와 어업발전에 사용하고 있다.

한 주정부의 면허 취득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다른 주의 낚시행위를 할 수 있는

---

36) 낚시면허증(license)은 정부가 발급하는 것이고 허가증(permit)은 개인소유의 강, 저수지, 호수 및 개울가의 관리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이다. 정부가 낚시권을 임대해 주고 난 이후에 개인, 낚시단체 및 주민단체가 임대 낚시권자가 되어 허가증을 낚시를 하고자 하는 이에게 판매한다. 또한 낚시권을 갱신시에는 정부가 경매시스템화하여 임대해 주고 있다.

자격이 주어진다. 낚시터 현장에서는 감시원이 요구할 경우 항상 면허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처럼 규율이 엄격한 것은 그들의 역사적 전통에 따른 것으로, 강과 바다에서 독일인들은 어로권을 국가가 장악, 통제하면서 토지에 대한 세금과 마찬가지로 수면에 대한 세수원으로 삼았던 데서 기인한 것이다. 그리하여 세수관리 측면에서 낚시분야도 후에 어업과 더불어 면허제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독일의 낚시면허제는 낚시를 제한, 규제하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라 위와 같은 배경에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나. 면허증 발급 행정 절차 및 집행

##### (1) 낚시면허증의 유형과 성격

독일에서의 license 취득은 크게 두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낚시관련시험이 없이 취득하는 낚시면허증과 그에 반해 전형적인 독일방식인 일정한 교육을 받은 이후에 시험에 통과한 자에 한해 낚시면허증을 발급받아 낚시행위를 할 수 있는 방식이다. 낚시를 위해서는 주에서 발급받은 낚시면허증이 필요로 한다.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종, 낚시도구 및 미끼, 규율과 규칙, 어병 및 수중생태를 포함한 낚시코스를 이수한 이후에 시험에 응하여야 한다. 시험은 1년에 1회이며, 응시자의 10~20%가 시험에 떨어지고 있다.

##### (가) 무시험 낚시면허증(license without fishing exam)

낚시를 위한 시청의 부서에 문의하여 시험을 치루지 아니하고 낚시면허증을 취득한다. 이는 일종의 평생면허(lifetime license)로서 입장료(administration fee)로서 발급되는 것이다. 또한 시청에서 낚시규칙과 조획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어류학, 낚시장비를 비롯한 낚시와 관련한 규율과 규칙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 (나) 유시험 낚시면허증(license with fishing exam)

유시험 낚시면허증은 시험 없이 취득하는 낚시면허증과의 차이로서 국내 및 해외에 더 많은 수역에서 낚시행위를 가능케 한다는 점이 큰 차이이다. 즉 내수면과 여타 일부 유럽권의 국가에서 더 많은 지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수 있다.

낚시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개의 부문(어류학, 수리학, 민물 및 바다낚시어종, 낚시장비 및 미끼, 자연보전과 동식물보호, 낚시의 규율과 규칙)으로 이루어진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선택형 문제로서 각 부문당 30문항씩 시험을 치루게 되며, 각 부문당 1개의 오답을 허용한다. 이를 통과 할 시 증명서가 즉시 발급된다. 그러나 이는 낚시관련시험을 통과했다는 증명서에 불과할 뿐 낚시면허증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낚시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시험통과 증명서와 함께 시청에서 행정비용의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한편 면허증이 없는 초보자는 낚시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동행해야 낚시행위를 할 수 있다.

## (2) 완전한 낚시면허증

독일에서의 낚시행위는 2중 문서화로 되어 있다. 이는 낚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유효한 연방 주 낚시면허증(fishing license)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낚시와 관련한 코스나 시험을 이수 내지는 통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에 해당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허가증(permit)에 관한 것으로, 이는 기본적으로 특정기간 동안에 특정 수역에서 낚시를 허용하는 비용지출을 요구하는 것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독일에서는 공유지로서의 낚시터가 없다. 이는 모든 개울가, 강, 호수 및 연못에 낚시권을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허가증은 강, 개울, 호수에 대한 권리를 가지거나 임대한 개인들에 의해 발급된다. 독일에서는 개인 소유 및 낚시클럽 소유의 연못 및 저수지와 강이 많이 있고, 이는 일일 티켓(day ticket)으로 낚시행위를 할 수 있다. 종종 이러한 개인들은 지역낚시클럽(regional fishing clubs)이 되지만, 사유지 소유자, 호텔 또는 낚시도구점이 되기도 한다. 종종 작은 마을에 한해서는 해당 수역에 대한 권리가 낚시클럽에 있지만 허가증은 지역 시청 등과 같은 외부에 의해 발급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허가증(permit)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주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허가증은 일반적으로 일일낚시허가증(day ticket)이라고 한다. 하지만 연령과 기간에 따라 주허가증(weekly permits)내지는 월허가증(monthly permits)도 있다. 허가증에는 해당 수역에서 낚시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낚시규율에 대해서는 독일의 각 주마다 고유의 구체적인 규율과 규칙을 담고 있다.

낚시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낚시규율을 담고 있는 팜플렛을 지닌다. 또한 각 주마다 그에 적합한 관리수단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금어기 및 금어지, 최소체장 길이제한 등이 있으며,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강부근 따라서는 낚시행위가 대부분

금지되어 있다. 이는 표기판에 산란지역이라 표기하여 낚시가 1년내내 금지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편 플라이 피싱(fly fishing)의 경우에는 일일코스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fly fishing license이라 불리는 추가적인 면허가 요구된다.

따라서 낚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주 면허증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낚시인은 자기가 낚시를 하고자 하는 수역의 권리소유자로부터 permit(허가증/티켓)을 구매하여야 한다.

#### 다. 면허 대상자와 종류

##### (1) 미 정부 고용자/미군소속 대상

독일에서 거주하는 군인이거나 미 정부에서 종사하는 이 또는 그와 같은 사람의 가족구성원들은 가까운 Rod & Gun Club(낚시 및 총포 클럽)을 통해서 낚시코스과 시험을 치루기 위해 등록할 수 있다. 이를 통과할 경우에 한해서 표준독일낚시면허증을 취득하게 된다. 1년간 유효기간을 가지며 독일에서 계속 거주하는 한 갱신 가능하다.

##### (2) 관광객 대상

관광객으로서 독일에 방문한 경우에는 낚시코스 및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이 단기면허(temporary license)로서 90일짜리 방문객낚시면허증을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면허비용은 표준낚시면허증(45DM)과 동일하다. 방문객낚시면허증은 표준낚시면허증에서 발급되는 곳과 같은 곳에서 발급된다. 님베르크주에서는 방문객낚시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방문객의 본국에서의 발급된 유효한 낚시면허증과 독일어로 번역공증된 것을 함께 제시할 것과 여권 및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확인서 지참, 방문객낚시면허증을 위해 쓰여질 여권사진 1매 그리고 45DM(약 28\$)을 요구한다.

다음은 각 주마다 외국관광객이 낚시를 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사항 및 관련한 정보들이다.

##### (가) Mecklenburg-Vorpommern

관광객은 반드시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나 낚시와 관련한 코스 및 시험을 치를 필요는 없다.

(나) Lower Saxony

관광객 단독으로 낚시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어업인을 동행해야 한다. 이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지방에 있는 낚시스포츠클럽의 관광객정보부서에서 얻을 수 있다.

(다) Berlin

낚시인의 본고장에서 사냥 및 낚시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낚시면허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곳에서 낚시행위를 할 수 없다.

(라) Schleswig-Holstein

외국 관광객으로서 낚시면허증 없이 40일간 낚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약 15달러의 비용으로 면허증 면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의 관광객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마) Thuringia

외국 관광객은 15일간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지방의 관광객부서에 문의하여 15일간 유효한 임시낚시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바) Bavaria

외국 관광객은 15일간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지방의 관광객부서에 문의하여 15일간 유효한 임시낚시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사) Saarland

외국관광객은 시내 경찰서에서 지방낚시면허증을 얻을 수 있다.

(아) Rhine land Paletinate

외국관광객은 전혀 낚시면허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 Bremen

이 주에는 낚시를 할 수 있는 저수지 및 호수가 사적재산이기 때문에 외국관광객은 낚시면허증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사유지 소유자로부터 허가증을 구입해야 한다. 또한 관광객은 Weser 강에서는 낚시를 할 수 없다.

(차) Baden- Wuerttemberg

1개월 미만으로 독일에 방문중인 외국관광객은 1년동안 유효한 낚시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정보는 지방 관광객정보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카) North Rhine-Westphalia

외국관광객이 본국에서 낚시전문가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이에 준하는 낚시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 주에서는 낚시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한다.

(타) Saxony- Anhalt

North Rhine-Westphalia 주와 동일

(파) Hesse

North Rhine-Westphalia 주와 동일

Hamburg, Brandenburg, Saxony 주에서는 외국관광객은 낚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3) 표준독일낚시면허증

이 면허증은 독일 현지 지역인이 주 면허증을 취득하는 것이지만, 오직 현지 지역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미 정부 종사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않는 다거나 3개월마다 방문객낚시면허증을 구매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표준독일낚시면허증을 구매할 수 있다. 물론 적어도 낚시코스 및 시험을 치루기 위한 독일어 실력은 상당히 요구된다. 낚시코스는 연간 1-2회, 저녁에 개설되며,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30시간을 이수한 이후에 낚시시험을 치루게 된다. 이를 위한 코스, 서적 및 시험비용은 약 350DM(약 200\$)로 꽤 비싼 편이다. 코스는 일반적으로 민간낚시클럽에서 제공하고 있다. 일단 표준독일낚시면허증을 취득했다면 매년마다 45DM 비용을 지불하고 갱신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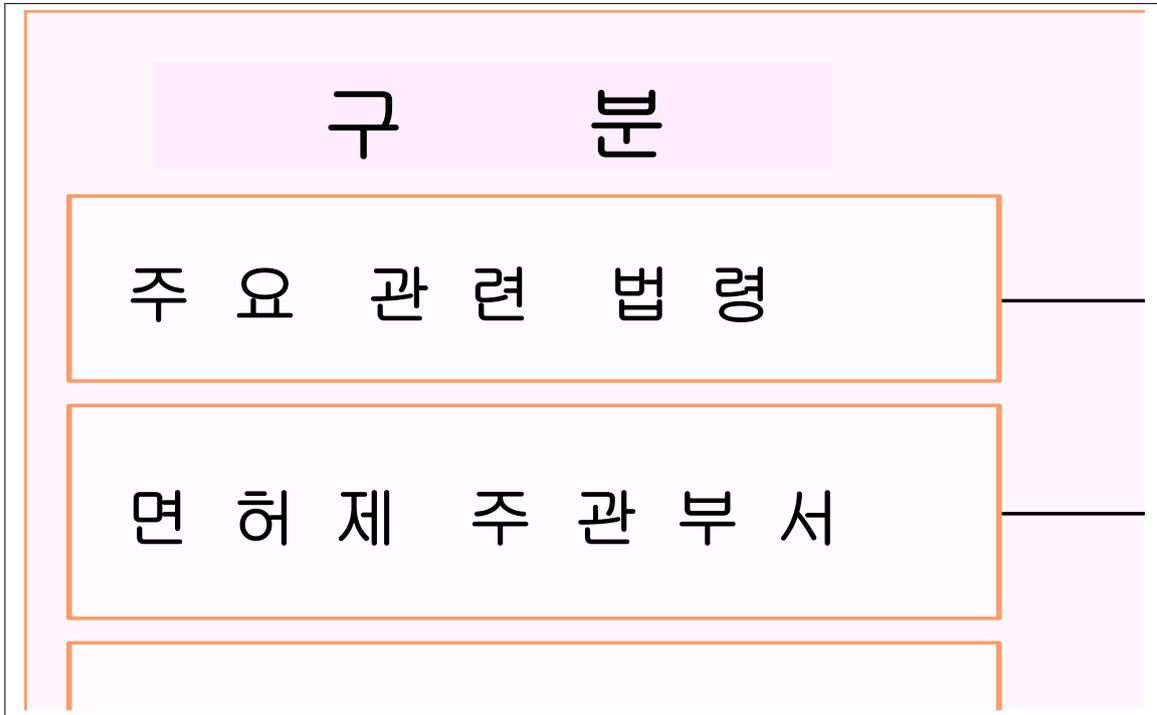
#### 라. 유어낚시 규제 및 감시체계

최소체장제한 등의 규제법으로 인해 크기가 미만의 고기는 잡으면 즉시 놓아주어야 하고, 4월 중순부터 6월상순까지 금어기에는 낚시가 금지되며, 하루 중 일몰 1시간 30분부터 일출 1시간 30분전까지 낚시가 금지(뱀장어, 큰메기 등은 밤 12시까지 가능)된다.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독일도 고기 종류별로 잡을 수 있는 크기가 제한되어 있는데, 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송어는 25센티미터, 붕어는 15센티미터, 잉어는 30센티미터 정도다.

낚시의 규제내용은 주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낚시대는 1인당 3개까지만 허용되고, 보조자나 가족들은 낚시대에 손대서는 안되며, 낚시구역에서도 물고기 성장에 방해가 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독일시민이나 독일에서 평생 거주하는 외국인이 낚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낚시면허증을 소지하는 것이 강제적인 조항이다. 낚시면허증의 감시는 해당 주의 관청직원이 하고 있으며, 이들이 낚시면허증을 제시 요구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최소한의 낚시와 관련한 규칙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낚시규율을 어길 시에는 상당한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상의 독일 유어낚시의 관리와 면허제를 바다유어낚시와 민물유어낚시로 나누어 관련 법령, 면허제 주관부서, 관리유형, 운영체계, 감시 및 단속체계, 그리고 면허수입료 운용에 대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6] 독일 유어낚시의 관리와 면허제



### 3. 캐나다

#### 가. 유어낚시 면허체계

천연자원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에서 낚시 및 야생동물에 관한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으며, Fisheries Act(수산업법)과 Fish and Wildlife Conservation Act(야생동식물보전법)에 근거하여 연방법(국법)과 지방 주법이 유어낚시에 관해서 규율을 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캐나다(7개주, 1개 독립지역)에서의 낚시면허증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국세 7%가 포함된 3년짜리 야외카드<sup>37)</sup>(Outdoor Card, 다양한 레저의 야외활동을 위한 기본면허로서 6달러에 해당)를 먼저 구입한 뒤 그에 맞게 연방해양수산부(Federal Department of Fisheries and Oceans)에서 발급하는 바다낚시면허증과 지역적 환경토지공원부서(Ministry of the Environment, Lands & Parks)에서 발급하는 민물낚시면허증을 자동판매기, 스포츠가게, 리조트, 마리나, 유어선 및 용선운영자나 백화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37) 야외카드는 완전한 낚시면허증이 아니다. 그러나 야외카드가 없어도 카드를 발급받을 때까지전국에 산재해 있는 구매처에서 종이로 된 임시낚시면허증(스포츠낚시면허증이나 보호면허증만 가능)으로 낚시를 할 수 있으며, 나중에 야외카드에 낚시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표 5-17] 캐나다 주정부와 영의 유어낚시의 관리에 대한 책임

지방주 및 영	관리책임
<i>Newfoundland</i>	연방정부가 해면 및 민물어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i>Newfoundland</i> 주정부는 민물어업에 대한 책임을 하고 있음
<i>Northwest Territories, Nunavut</i>	<i>Nunavut</i> 와 <i>NWT</i> 주에서는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각 주의 할당량을 정하고 있고, 자원의 보전, 어업관리 및 과학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으며, <i>Order-in Council</i> 하에 스포츠어종의 면허를 총괄하고 있음
<i>New Brunswick, Nova-Scotia, Prince Edward Island</i>	연방정부가 회유성어종 및 여타 해면어종을 관리하고 있고, 각 주정부는 민물어종의 내수면수역에 대해 관리하고 있음
<i>Quebec</i>	주정부가 민물낚시의 관리와 면허시스템 및 회유성 어종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연방정부에서는 여타 해면어종에 대해 관리하고 있음
<i>Ontario, Manitoba, Alberta</i>	연방정부는 <i>Ontario</i> 와 <i>Manitoba</i> 지역에서의 해면어종을 관리하고 있고, 주정부는 민물어종의 관리 및 면허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음
<i>Saskatchewan</i>	1995년 주정부가 <i>Saskatchewan Fisheries Act &amp; Regulations</i> 로 어업수정안을 제정하였고, 서식지 환경보호는 연방정부의 법안에서 담당하고 있음
<i>British Columbia</i>	연방정부에서 해면과 민물에서 연어자원을 관리와 조수수역에서의 면허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고, 또한 조수수역에서 비연어어업자원에 관리 및 면허담당. 주정부는 내수면의 연어스포츠낚시의 관리 및 면허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음
<i>Yukon</i>	이 지방에서는 민물어업을 관리하고 있고, 연방정부에서는 해면어업을 담당하고 있음

주: 1. 연방정부가 내수면어업에 대하여 법적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Saskatchewan*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주와 지방에서는 수산업법(할당량, 시즌, 금어기, 장비 등)하에 있는 모든 규제안에 맞는 수정안들을 제출하여 Governor-in Council 승인을 받는다.  
 2. 면허를 발급하는 각 주는 징수된 수수료(fee)를 보유하게 된다.

유어낚시어업에 대한 법적인 관리와 책임들이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어낚시에 관한 책임들은 해당 관할권에 근간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연방(federal)동의서, 주(provincial)동의서 그리고 영(territorial)동의서와 상호각서에 의한다. 민물어종에 대해서는 각 주정부와 영에서 일반적으로 관리책임을 두고 있으면서, 면허와 법집행 및 감시 그리고 낚시관련산업의 홍보 및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 전역에 걸쳐 유어어업의 각기 다른 접근방식은 지역적 다양성의 필요에 따라 반영된다. 주정부가 유어어업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있을 시에는 연방정부는 민물어업부분에 대해서 그 방침에 대한 위임동의서를 계속해서 따르게 된다. 이러한 동의서는 어류서식지의 관리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의무와 책무를 존중하는 것이다.

나. 유어낚시에 대한 역할과 책임

(1) 연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비록 민물낚시의 관리책임은 관리상의 동의서를 통하여 일부 주와 영이 담당하고는 있으나 연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어업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 모든 연안의 바다낚시관리에 대해서 책임

이는 정책과 법제도의 개발, 면허시스템, 어자원의 평가 및 법집행과 감시를 포함

· 캐나다의 민물 및 바다수역에서 어류서식지관리에 대한 책임

다음 표는 수산해양부의 유어낚시관리프로그램과 이를 지원하는 활동에 대한 것을 요약한 것이다.

[표 5-18] 캐나다 수산해양부의 유어낚시에 대한 역할

해 양	과 학	어업관리	캐나다 연안관리	정 책	통합서비스
-서식지 보전과 보호	-어자원의 평가	-IFMPs -법집행	-보트안전	-제도적 규제의 최신화	
-해양관리	-연구조사	-평가와 면허 -지역조정과 실행	-항해지원	-통계처리	-소형선박의 정박지원
-바다환경질	-서식지에 대한 과학연구	-CCFAM 지원 -국가적 회의	-구조활동	-유어낚시설문	
-통합관리		-국가적 재정프로그램	-해양환경보전	-자발적 부문과의 교섭	

여타 연방부서과 정부기관 특히 관광과 지역의 경제적 개발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곳에서도 유어낚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산업부, 관광위원회, 서부 경제부, 대서양캐나다부서와 Quebec 지역의 경제개발부서에서는 캐나다의 유어낚시의 번영을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수산해양부의 역할과 책임

아래 5개의 주요 지도지침은 유어어업의 정책, 프로그램과 목적을 실행 및 개발하기 위해서 수산해양부(Fisheries & Oceans)가 추진할 것에 대한 것이다.

첫째, 유어낚시는 사회 경제적으로 상당히 가치있는 것이며, 어업자원의 이용을 적법화한다.

캐나다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계절과 지역에 상관없이 유어낚시를 즐기는 낚시인은 5백만명이 넘는다. 스포츠낚시는 캐나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땅과 자연자원이 풍부한 환경을 이용하도록 한다. 또한 유어낚시는 관광, 레크리에이션 산업 또는 여타 활동 등으로 인해 매년 지역사회에 49억달러의 경제적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활동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수산해양부는 반드시 낚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낚시인 뿐만 아니라 상업적 어미, 스포츠낚시인과 비스포츠 낚시인들 모두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부서의 자원관리 정책은 레저의 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수산해양부는 정책과 일관할 수 있도록 통합된 관리계획부분으로서 지속가능한 유어낚시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자원보전이라는 측면은 우선시되어야 한다. 수산해양부는 자원의 보전을 강제화하여야 하고, 주정부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민물낚시의 어업보전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자원보전의 효과적인 실행은 예방적인 접근법과 생태시스템에 근간으로 하는 관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유어낚시의 기회제공을 위하여 유어낚시와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자원과 생태환경의 보전을 비롯한 어류서식지의 복원에 힘써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다양하면서도 굳건한 어업자원을 확보하는 것이야 말로 지속가능한 유어자원을 지속하는데 초석이 되며, 이러한 스포츠와 관련한 경제적 활동의 성장을 키우는데 중요하다.

동시에 캐나다의 유어낚시에 대한 부서의 체계 틀은 토착민 그룹과 연방정부간에 도달하게 될 합의서와 현존하고 있는 의무 및 토착민의 권리 모두에 대해서 토착민들에 대한 합법적이고 신탁에 근거한 책임들에 일관성을 갖게 된다. 유어낚시어업의 이용은 정부부서에 의해 설정된 구체적인 어종별, 지역별 정책들을 근간으로 하는 통합된 어업관리계획을 통해 관리될 것이다. 더욱이 First Nations에 맞는 의무를 다한 이후에, 자원의 최적이용이라는 개념 하에 유어낚시의 이용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유어낚시인들은 자원의 보전과 증가를 위하여 공유된 사회적, 도덕적 책무를 다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정부와 자원이용자들은 자원의 보전에 대한 책임과 어업자원이 캐나다인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 등에 대한 책임들을 공유해야 한다. 미래세대가 이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나은 편익을 가질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 역시 정부와 자원이용자들이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건강

한 자원에서부터 직접적으로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자원이용자들과 스포츠낚시산업들은 정부와 협조하여 자원과 서식지를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의사결정과정상에 참여하는 것이 권고된다. 상기와 같은 편익을 얻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이용료의 부담형태로 지불되는 것이다.

또한 자원의 보전과 복원 그리고 자원의 증가 및 서식지의 복원 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이 책임을 공유하는 기회도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에 근간으로 하는 여러 가지 목적과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자발적 조직들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국가, 주, 그리고 지역단위의 수준에서 결정된다.

넷째, 공유 관할권하에 있는 지역상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 설정 및 강화될 것이다.

캐나다의 어업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간의 효과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들은 어업자원의 보전과 관리상에서 각기 다른 측면들에 대하여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수산해양국은 각각의 노력들을 통합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일례로 캐나다 어업위원회와 양식부처간의 유어낚시를 위한 실무그룹의 협력과,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상호각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수산해양부는 유어낚시와 관련한 연방정부와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정하기 위한 리더쉽을 갖추고 있다.

유어낚시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정하기 위한 업무상에서, 수산해양부는 유어낚시부문상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정부와 관련부서들의 정책들이 각 부문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을 확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유어낚시부문에 적용될 수 있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다. 온타리온 주의 유어낚시

### (1) 유어낚시 면허증의 종류와 면허요금

낚시면허증의 종류로는 계절면허(15달러), 보호면허<sup>38)</sup>(7.50달러), 7일면허, 1일면허(10달러)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 이외에도 일반낚시면허증으로는 국립공원에서 낚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면허증을 필요로 하며, 연어낚시에 대해서는 면허증 구입이후에도 별도의 연어보호인지(비용추가부담형태)를 사서 부착하여야 한다. 이러한 면허종류도 거주자와 비거주자와 나뉘며 비거주자에게는 더 비싸다. 거

38) Conservation License(보호면허)는 정규면허증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격으로 조획량 허용치가 더 적으며, 이는 어자원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주자의 개념은 예를 들어, 온타리온 주의 경우 면허증을 구입하기 전까지 최근 1년 동안 캐나다에 거주한 자로, 장애자와 18세 미만 65세 이상자를 제외하고(무료) 거주자면허증을 구입할 수 있다.

비거주자의 경우는 낚시면허증을 구입하기 위해서 야외카드는 구입할 필요는 없다. 18세 미만의 비거주자는 낚시면허증을 소지한 그의 가족이 동반하면, 면허증 없이도 가능하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낚시관리계획(Angling Management Plan)의 일환으로 특정 강에 대해서 각 쿼터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시 비거주자 이용자의 허용치를 정하여 금하고 있다.

[표 5-19] 온타리온 주의 낚시면허증의 종류와 면허요금

	면허 종류	면허구입처	면허요금
거주자	3년 <i>Sport Fishing Licence Tag</i>	정부 <i>outdoors</i> 부서 (우편/전화/인터넷) 재발급 가능	\$69
	1년 <i>Sport Fishing Licence Tag</i>		\$27
	3년 <i>Conservation Fishing Licence Tag</i>	각 지방 발매처	\$43.50
	1년 <i>Conservation Fishing Licence Tag</i>		\$18.50
	1일 <i>Fishing Licence</i>		\$10
비거주자	<i>Sport Fishing Licence</i>	각 지방 발매처	\$58
	<i>Conservation Fishing Licence</i>		\$35
	7일 <i>Sport Fishing Licence</i>		\$37
	7일 <i>Conservation Fishing Licence</i>		\$22
	1일 <i>Sport Fishing Licence</i> ( <i>Great Lake</i> 내)	<i>Great Lake</i> 근처발매처	\$15
	어린이 단체 낚시캠프	자연자원부 부서	\$4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면허증을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감시원이 낚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한편 일반인에게 낚시에 대한 관심과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낚시규정에 대해 상업광고를 하고 있다. 낚시를 일반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National Fishing Week(2003.7.5-13)와 Ontario Family Fishing Weekend(2003.7.4-6)가 있는데 이 기간동안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Free Fishing Days"와 마찬가지로 면허없이 무료로 누구나 낚시를 할 수 있지만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유어낚시의 각종 규제안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낚시도구, 어종별 크기 및 시기제한, 보호어종 등으로 거의 비슷하다.

## (2) 유어낚시규제법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어업은 연방법과 주법의 규제를 받는데, 캐나다 어업법의 주 내용은 물고기의 저장과 운반, 보관에 대한 것이고, 온타리오 주법은 유어낚시면허제에 관한 행동의 규제를 담고 있다. 양법 모두 온타리오 주에서 수산업을 규제하고 여가나 합법적인 상업적 어업은 허용하되, 모든 어민들이 지켜야할 법이다. 면허 없이 고기잡이, 잡으려는 행위, 저장하는 행위는 어업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불법으로 고기를 잡았으면, 즉시 방류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고기 서식지(알이 자라고, 새끼를 키우며, 이동하는 등 자신들의 생명유지를 위한 지역)를 파괴하는 행위도 불법에 속한다.

수산업에서는 유어낚시행위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 벌금형 내지는 구금 또는 구속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General (일반적인 어법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500,000의 벌금이나 2년의 징역을 받게 되고 Habitat Related (서식지와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000,000의 벌금이나 3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 (가) 낚시도구 규제사항

낚시바늘과 줄은 빙어낚시를 제외하고는 1인당 낚시대 하나에 4개이하의 낚시바늘만 허용되며, 인공류어낚시에는 한 낚시대에 2~3개의 낚시바늘만 허용되는데, 2개 바늘은 낚시대 두 개로 간주한다.

미늘없는 낚시바늘만 사용가능지역은 주로 자연보호지역이나 보호어종이 사는 지역은 모두 미늘없는 바늘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미늘없는 낚시만 사용되는 지역에서는 한 낚시대에 하나의 미늘없는 낚시바늘만 허용되며, 어업법에서도 미늘없는 바늘을 낚시로 규정한다.

인공류어만 허용되는 지역은 수질보호구역과 자연보호등이 있음. 인공파리미끼만 허용되는 구역도 있다. 작살, 올가미와 나무뿔 중 작살은 민물고기잡이에 낚시대용으로 사용돼 왔으나, 스프링 장치가 붙은 작살은 불법이며, 나무뿔과 올가미는 어떤 것을 사용하여도 불법이다.

스포츠 낚시인들은 둘레 127센티이상, 길이 51센티 이상의 저인망을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게임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

작살과 작살총은 정부의 해제시기에 지정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작살총을 사용할 수 없다. 인공 썬치라이트는 낚시 끝에 설치된 것이나 청어나 송어잡이 그물에 설

치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고기를 잡거나 파괴하기 위해 다이나마이트 등 폭발물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 (나) 고기잡이와 소유제한 규정

어업법에서는 잡는 고기와 소유고기에 숫자제한이 있으며, 종류에 따라서는 크기에 제한이 있음은 물론, 하루에 점심때 먹은 고기를 포함한 잡을 수 있는 고기수와 보관고기수의 기준이 있는데, 이는 먹고, 보유하고, 가져가는 모든 양을 합한 개념으로 고기를 낭비하지 않기 위함 것이다.

표준면허는 각 구역별로 잡을 수 있는 고기수가 제한되고, 보호면허는 제한이 더 심하다. 국경지대나 주 접경지대에서도 마리수와 종류의 제한이 있다.

어떤 종류의 고기는 최소 크기제한은 물론 최대크기 제한도 있는데, 이를 벗어난 고기를 잡으면 즉시 방류해야 한다.

#### (다) 보호어종

야외카드 뒷면에 보면 Conservation Fishing Licence Tag가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특정 어종을 잡았을 때 투기행위 내지는 크기 제한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 muskellunge (강꼬치고기)
- Atlantic salmon(대서양 연어)
- sturgeon(철갑상어)
- aurora trout(오로라 송어)

#### 라. 브리티쉬 콜럼비아(BC) 주의 유어낚시

태평양 수역에 위치한 브리티쉬 콜럼비아(British Columbia)에서는 바다낚시를 위해서는 바다스포츠낚시면허증(Tidal Waters Sport Fishing Licence)을 산 이후에 낚시를 할 수 있다. BC 지역의 바다낚시규정은 British Columbia Sport Fishing Regulation 1996 에 의하여 캐나다 태평양 어업수역과 BC 지역에 적용되며, 이 규정은 금어기, 조획쿼타량, 체장제한 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국립공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바다수역(예를 들면 내수면)에서의 낚시인들은 야생동식물법하에 있는 BC 주에 의해 제정된 규정에 따라야 한다.

[표 5-20] BC 지역의 바다스포츠낚시면허증의 요금

면허 유형	거주자	비거주자
성인 연간 면허	\$22.47	\$108.07
5일 면허	\$17.12	\$34.17
3일 면허	\$11.17	\$20.33
1일 면허	\$5.62	\$7.49
연장자 면허(65세 이상)	\$11.77	\$108.07
청소년 면허(16세 이하)	무료	무료
연어보호인지	\$6.42	\$6.42

거주자란 BC지역에 거주하는 자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연간낚시면허는 면허증 발급일자를 시작으로 익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며, 단기면허의 경우에는 유효 만기일자의 24시간까지이다. 면허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면허소지자의 서명이 없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 면허증은 16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신하여 부모가 구입하는 경우와 배우자가 대신하여 구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구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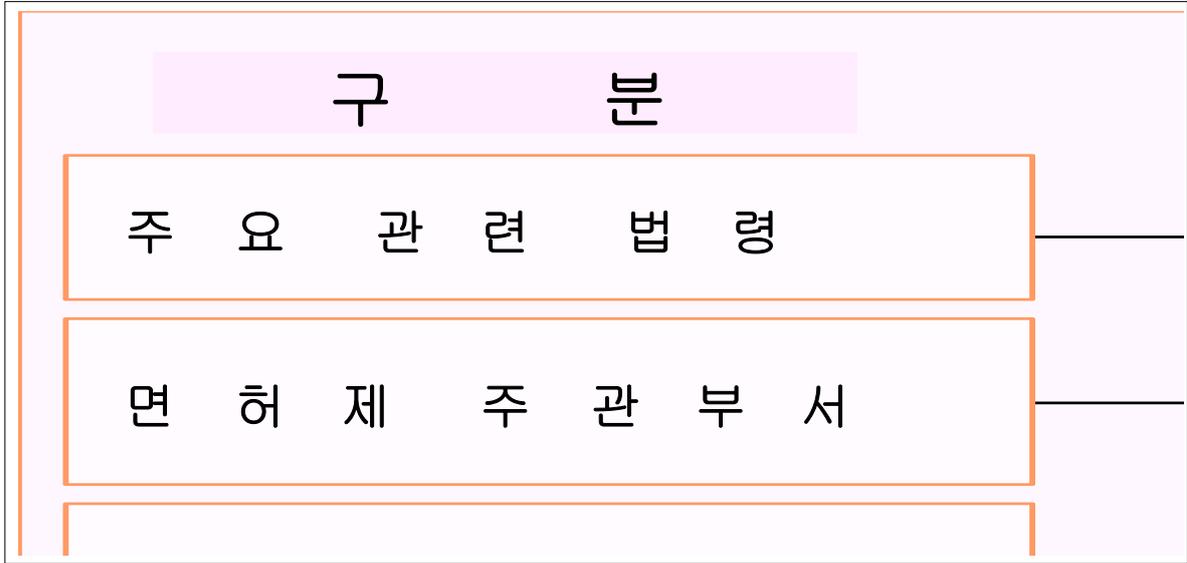
어업공무원이나 보전과공무원 또는 낚시감시인이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기 때문에 낚시를 하는 중에도 항상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연어보호인지는 연간 개념으로서 태평양 연어를 잡기를 원하는 낚시인이 자신의 면허증에 부착하도록 되어있다. 낚시면허증은 스포츠 용품점, 리조트, 마리나, 용선업자 및 백화점을 포함한 주 전역의 500여 곳에서 구입가능하다. 면허증은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할 수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유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청한 후 면허증을 프린트하여 얻을 수 있다.

만약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사고로 훼손되었을 시에는 낚시를 재개하기 전에 대체면허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면허증 판매업소에서 원면허증의 처분을 위해서 분실신고와 더불어 서명을 하고 난 이후에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얻을 수 있다. 또한 면허증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찾았을 경우에는 원면허증을 잊어버리 이유설명과 함께 대체면허증을 수산해양부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1개 이상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을 시에는 불법에 해당한다.

이상의 캐나다의 유어낚시관리와 면허제를 바다유어낚시와 민물유어낚시로 나누어 관련법령, 주관부서, 관리유형, 운영체계, 단속 및 지도체계, 그리고 유어수입료 운용 등에 대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5-21] 캐나다의 유어낚시 관리와 면허제



#### 4. 호주의 낚시관리와 면허제

##### 가. 유어낚시면허제

호주에서는 낚시가 일반인 사이에 굉장히 인기 있는 대표적인 레저 활동이다. 그 인구는 약 500만명으로 인구 4명중 1명이 낚시를 즐기고 있으며, 두 가구중 한가구가 낚시도구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on G. Sutinen, 2003). 특징적인 것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금지어종이나 최소크기제한에 위해 되는 어종을 조획하였을 때, 생존 확율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방류하기 위해서는 벤치 등의 도구를 항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호주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유어낚시 면허제를 채택하고 있다. 최초의 유어 낚시면허제의 배경으로는 1880년대 이후로 Fisheries Royal Commission 소속 유어 낚시인들이 유어낚시의 질적 개선과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로 하여금 낚시 관리제도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유어낚시 및 스포츠낚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1983년 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National Code of Practice for Recreational and Sport Fishing 2001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다 지속적인 어업법의 시행과 유어낚시를 향한 국가적 기준의 동의에 대한 인식은 1996년 국가적 시행범위의 발달을 이끌었다. 초기단계에선 5년 동안 국가에서 유어낚시면허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오늘날과 같은 제도가 구축되었다.

## 나. 유어낚시 면허제의 원칙

호주의 유어낚시면허제 규범은 4개의 주요 어업지역에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산업의 보호, 환경보호, 어류의 인도적 취급과 타인의 권리존중에 관한 것이고, 이 네 가지 목표는 여기에서 설명되는 12개의 주요원칙에 대한 기본틀이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수산업의 보호

- 필요이상의 조획금지
- 모든 어업규제에 대한 이해와 관찰 그리고 불법활동에 대한 보고
- 어업자원 조성 및 서식지 보호활동의 지원과 장려

### (2) 환경보호

- 오염방지와 쓰레기 제거를 통한 야생생물보호
- 자연보호구역 및 해변길에 관한 보호
- 환경과괴와 오염의 관련기관보고
- 멸종위기종과 서식지의 보호

### (3) 어류의 인도적 취급

- 규정에 어긋나는 어종 및 크기 조획시 방류
- 합법적인 조구사용과 조획물처리

### (4) 타인의 권리존중

- 민물과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예의
- 수역관리자 및 소유자로부터의 허가
- 낚시 행위 중 안전 주의

한편, 정부는 유어낚시인들이 제도적 요구하는 바를 위해 폭넓은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다. 2000년 1월 19일, 수산부 장관과 수상이 소위 지속가능한 어업(Sustaining

Our Fisheries)이란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유어낚시인들은 낚시행위를 하는데 입어료를 지불하고 그러한 기금은 유어기금으로 쓰여진다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는 법으로도 그러한 유어기금은 유어낚시인들을 위한 자원조성사업과 장기간의 어자원보전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그리하여 2001년 3월 23일부로 호주에서는 민물낚시와 바다낚시에 대해서 유어낚시면허제<sup>39)</sup>가 시작된 것이다.

호주의 수산부(Department of Fisheries)에서는 상업적 어업 뿐만 아니라 유어낚시관리의 주무부서로서, 관련법령으로는 어업관리법(Fisheries Management Act)에 기초하여 모든 규율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유어낚시 면허증과 면허대상자 및 대상면제자

##### (1) 면허증의 종류

낚시면허증은 수산부에서 발급하게 하며, 각 지역의 우체국(Post Outlet) 등에서 구입가능하고, 개인의 정보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산부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면허증은 Spear fishing, Hand fishing, Hand gathering, Trapping and bait collection, Prawn netting 과 같은 낚시행위를 하는데 필요하며, 민물 및 바다낚시 중에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표 5-22] 호주의 낚시면허증의 종류와 면허요금

면허종류	면허요금
Rock Lobster(바위서식 바닷가재류)	\$25
Abalone(전복류)	\$25
Marron(가재류)	420
Freshwater Angling(민물낚시)	\$15
Net Fishing(투망낚시)	\$20

- 주: 1.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로 계산된 것이며 1년 단위  
 2. 동시에 위 5개 면허증을 구입시 \$60 할인 혜택  
 3. 16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는 민물 낚시(Freshwater Angling)에 관한 면허증을 가질 필요 없음  
 4. pensioners에 해당하는 자가 senior card를 소지하거나 16세이하 청소년은 면허 요금의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pensioners: 고령자, 장애인, 과부 등에 준하는 자)

39) 호주에서는 Recreationl Fishing License가 민물 및 바다낚시 모두에 통용된다.

면허증의 종류와 연 면허료는 크게 갯바위가재(25달러), 전복류(25달러), 민물낙시(15달러), 투망낙시(20달러)로 나뉘고, 그러한 면허 속에서 기간별로 연 면허(25달러)를 비롯한 3일 면허(5달러), 월 면허(10달러), 3년 면허(70달러)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유어선 및 용선업자는 낙시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을 4명을 승선시키는데 연간 100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4명을 초과시에는 한 사람당 25달러의 추가적인 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최대 250달러에 해당하는 만큼 승선시킬 수 있다.

낙시를 가이드 하는 사람은 낙시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4명에 대해서 연간 100달러의 요금을 지불한다.

(가) Rock Lobster(바위서식 바닷가재)

크기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잡은 즉시 5분내에 풀어 주어야 하며, 면허증당 8마리 초과할 수 없고, 배 한척당 16마리를 초과할 수 없다.

[표 5-23] 바위서식 바닷가재의 채취 제한

	<i>Western rock lobster</i>	<i>Southern rock lobster</i>	<i>Tropical rock lobster</i>
최소 크기	77mm	98.5mm	76mm
채취금지기간	① 11월 15일부터 3월 31일 저녁 7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4시 30분 ② 4월 1일부터 6월 30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나) Abalone(전복류)

[표 5-24] 전복류의 채취 제한

<i>Abalone</i> (전복류)종류	<i>Roe Abalone</i>	<i>Abalone Greenlip</i>	<i>Brownlip Abalone</i>
그림			
갯수와 크기제한	1일 20마리/60mm	합쳐서 10마리/140mm	
채취가능시간대	Greenough 지역과 Metropolitan 지역에서는 11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일요일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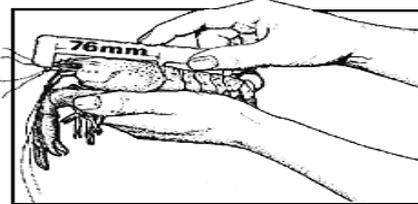
만약 채취금지시간대에 채취하거나 크기제한 및 어획가능마리수를 초과시에는 5,000달러의 벌금과 잡은 어획량의 10배가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유

어낚시인이 어획물을 매매할 경우에는 2,500달러에 해당하는 벌금과 함께 해당 어획량의 10배에 준하는 벌금을 부가한다.

(다) Marron(가재류)

옆 그림의 측정법으로 76mm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잡은 가재가 암놈이면서 꼬리 아래쪽을 살펴봐야 알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방류하도록 해야 한다.

채취가능시간대는 2002년 1월 5일 토요일 낮 시간(매년 수정됨)에서 2월 28일 목요일 낮시간에 가능하며 1인당 10마리 가능하고 면허비용으로는 기간에 따라 각각 3일 \$5, 1개월 \$10, 1년 \$25 그리고 3년은 \$75이다.



[그림 5-1] 가재류 크기 측정

(2) 면허대상어와 크기제한 및 금어기간

[표 5-25] 면허대상어와 제한사항

종류	<i>rainbowtrout/ browntrout</i>	<i>redfin Perch</i>	<i>freshwater cobbler</i>
제한사항	최소30cm/1일 4마리	1일 40 bag	제한없음

general trout(일반 송어류)에 한해서 개방기와 금어기로 구분되는데, 송어시즌으로는 9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그리고 송어가 알을 부화하는 기간동안에는 송어가 서식하는 개울이나 강수역 주변에는 금어기로 지정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연중 개방기에 해당한다.

(3) 면허제외 대상자

다음 범주에 해당하는 자는 낚시면허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18세 이하 청소년
- 조획강도가 약한 한 개의 대낚시를 하는 18세 이하 청소년을 도와주는 성인
- 2헥타르 미만 수면의 개인 소유 댐에서 낚시를 하는 자
- 민물 및 바다낚시를 하는 현지 토착주민
- 경로우대증이나 이에 준하는 증을 소지한 자 또는 퇴역군인

## 라. 낚시면허료 수익금 및 벌칙조항

주요 규제안들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제한량, 금어기 및 시간대, 크기제한 및 어종별 제한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만약 입어금어기 및 시간대에 조획하거나 크기제한 및 일일 조획가능 마리수를 초과시에는 5,000 달러의 벌금과 조획량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시키며, 조획물의 매매행위에 있어서는 2,500달러 벌금과 마찬가지로 10배의 벌금을 물게 된다.

낚시면허료로 발생한 수익금은 유어낚시를 위해 상업적어업면허권 구매, 유어낚시수역 확보, 서식지보호 및 개선, 책임있는 낚시도모, 낚시대상어 방류, 연구조사활동의 지원, 어자원 보전에 관련된 자발적 프로그램 활성화지원, 어자원 보전 및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지원 등에 쓰여진다.

현재 250만 달러의 민물낚시수익금 뿐만 아니라 매년 추가적으로 600만달러의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다. 면허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바다와 민물유어낚시기관으로 분배되어야 한다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물낚시기금은 민물낚시면허료로 충당되며, 바다낚시기금은 바다낚시면허료로 충당되고 있다. 각 낚시의 수익금 지출은 각 낚시지출위원회(Recreational Fishing Freshwater(Saltwater) Trust Expenditure Committee/ RFFTEC, RSTTEC)를 통해 쓰여지게 되며, 정부는 그 낚시면허료의 수익금의 10%를 각종 행정비용으로 쓴다.

각 위원회는 각 해당지역과 기관에서 지출우선권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에 관련한 조언과 권고사항들은 유어낚시조언위원회부(Minister's Advisory Council on Recreational Fishing)로부터 받게 된다. 위원회의 상세한 지출내역 및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완전히 공개된다. 한편 낚시면허료 수익금을 유어낚시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대한 우선권문제에서는, 낚시인들은 어자원보호를 위해서 각종 유어낚시 및 어업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 및 감시활동을 하는 감시원들(Fisheries Officers)을 더 많이 현장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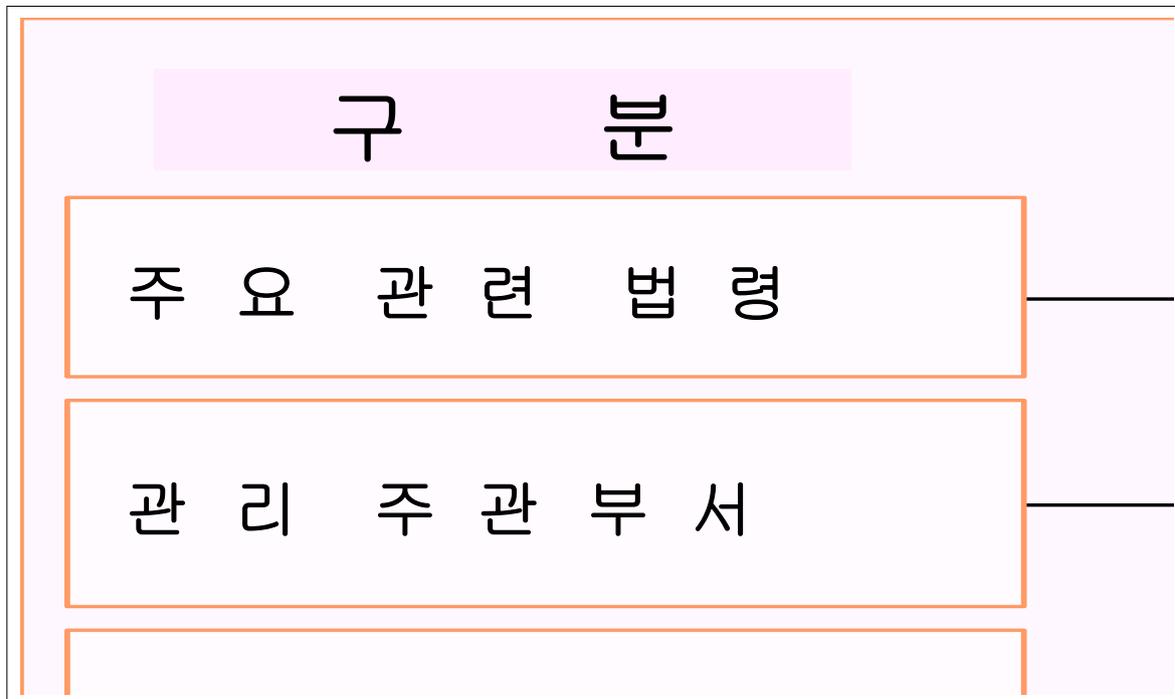
호주에서는 낚시윤리관에 대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낚시클리닉프로그램을 많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낚시클럽들은 어린이들이 지속가능한 유어낚시를 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낚시규율에 대해 일반국민을 교육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수고를 다 하고 유어낚시를 보전하려 하는 자발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서식지를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 구체적인 보전과 교육들에 대한 지원이 많고, 유어낚시가 생물학적 그리고 중요한 유어어종의 생태주기 및 경제적 가치에 관한 효과과 영향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위해 해당지역에 자금지원책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어족자원증식 및 방류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유어낚시인들이 말하는 바로는 적절한 환경평가가 이루어질 때, 상업적 어업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 지역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유어어업관리계획과 어족자원증식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조획량을 원하는 유어낚시인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호주의 유어낚시관리와 면허제를 바다유어낚시와 민물유어낚시로 나누어 관련법령, 주관부서, 관리유형, 운영체계, 단속 및 지도체계, 그리고 유어수입료 운용 등에 대해서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26] 호주의 유어낚시 관리와 면허제



## 5. 뉴질랜드의 낚시관리와 면허제

### 가. 뉴질랜드의 유어낚시와 관리주체

뉴질랜드는 전체 인구 3백 70만명에서 약 40만의 바다낚시인이 있으며, 이들의 조획량이 전체 해수면 어획량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어 바다낚시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Jon G. Sutinen, 2003).

뉴질랜드에서의 유어낚시에 대해서는 바다와 민물로 나눠 각각 담당부서를 달리

하고 있다. 바다는 수산부(Ministry of Fisheries)에서 민물은 자연보존부(Ministry of Conservation) 소속에서 관할하고 있는 행정법인(government's agency)인 Fish & Game in New Zealand가 담당한다. 민물낚시행위에 관해서 Conservation Act 1987(자연보호법)과 Freshwater Fisheries Regulation 1983(내수면 낚시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준수해야 하는 전국규정(National Regulation)과 북섬(North Island)과 남섬(South Island)의 13개(1개 보존지역) 낚시지역별로 달리하는 지역규정(Regional Regulation)으로 나뉘어져 규제하고 있다.

[표 5-27] 바다/민물 낚시별 부서와 관련법규

구 분	바다 낚시	민물 낚시
주관 부서	-수산부 (Ministry of Fisheries)	-자연보존부(Ministry of Conservation) 관할하의 행정법인인 Fish & Game New Zealand
관련 법령	-Fisheries Act 1996	-Conservation Act 1987, Freshwater Fisheries Regulations 1983
낚시 면허제	-일반적인 바다낚시에 대해서는 특별한 면허증(licence)이 필요하지 않음.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 면허제 실시(가족면허증, 일반면허증)
규제 내용	-어종에 따라 1일 어획량, 크기, 낚시 도구 등에 제한이 있음 -전국을 North, Central, South의 3개 어업관리지역(FMAs)으로 나누어 규제내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전국을 12개지역 1개보호구(Taupo)로 구분하여 어종 및 지역에 따라 1일 조획량, 어종별크기, 낚시도구 등에 제한 -낚시대는 1개만 사용하며, 추 및 우끼는 사용할 수 없음
면허증 구입처		-낚시용구 및 스포츠점 또는 Fish & Game New Zealand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구입가능

#### 나. 면허증의 종류와 감시제도

우선 연어와 송어류 등에 해당하는 Sports fish를 대상으로 하는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낚시면허증이 필요하다. 기간별로 나눈 낚시면허증은 10월 1일부로 시작되는 1년면허, 1주면허, 1일면허, 2일면허가 있고, 매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루어지는 겨울면허증 등이 있다. 면허요금은 어린이(11세 미만)는 무료, 12세에서 15세, 16에서 19세, 그리고 만20세 이상으로 크게 4개로 분류하고 있고 가족단위의 면허도 있다. 또한 Rotorua나 Taupo 지역에서와 같이 별도의 면허가 필요한 곳도 있다.

[표 5-28] 낚시면허대상자와 면허료

뉴질랜드 낚시 면허료					
면허종류	1년 1999 10.1부터 2000 9.30까지	1주일	24시간	48시간	겨울시즌2000 4.1부터 2000 9.30까지
어른 만20세이상	\$65.00	\$25	\$13	\$20	\$39
<i>Young Adult</i> 16-19세	\$32.50	\$12.50	\$6.50	\$10.00	\$19.50
<i>Junior</i> 12-15세	\$13.00	\$5.00	\$3.00	\$4.50	\$8.00
<i>Child</i> 0-11세	Free				
가족	\$85 (명의자를 제외한 partner와 20세이하의 가족은 발급지 Fish&Game 지역의 동반낚시만 허용)				

민물낚시 면허증은 전국 22개 낚시지역의 인근 낚시점이나 스포츠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유어낚시에 대한 규정이나 규칙은 전국을 12개 지역, 1개 보호구로 나눠 지역에 따라 어종, 마리수, 크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을 117명의 레인저가 나누어 감시하고 있으며, 면허없이 낚시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1주일간의 면허증구입 기회를 주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이 가택수사를 해서 낚시도구를 모두 압수하고 추가로 벌금형에 처하는 엄청난 제재가 가해진다.

#### 다. 유어낚시 규제사항

뉴질랜드에서는 전국에 공통된 유어낚시규제법, 일명 전국규정(First Schedule)이 있고, 북섬(North Island NZ Fishing Districts)과 남섬(South Island NZ Fishing Districts)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 따라 민물낚시규정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한편 바다낚시규정에서는 크게 북지역바다낚시규정(North Region Sea Fishing Regulations)과 중앙지역바다낚시규정(Central Region Sea Fishing Regulations)으로 나누어져 민물낚시규정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 (1) 전국규정(The First Schedule of NZ National Regulations)

##### (가) 용어상의 해석

"All year"란 10월 1일부터 그 다음해 9월 30일을 말하며, 해당일도 포함 된다.

"Artificial fly"란 그것을 만드는데 사용된 모든 종류의 털, 깃털, 양모 또는 그밖의 재료로 만든 루어를 뜻하나, 바늘귀를 제외하고 길이가 14mm를 넘지 않으며 gape(바늘 침과 기둥사이의 거리)는 6mm이하인 바늘을 제외한, 납이나 다른 무게를 달아 만든 루어는 포함하지 않는다.

"Bait"란 미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은 낚시행위에 있어 미끼에 해당한다.

- ① Natural fly - 파리
- ② Natural insect - 곤충
- ③ Natural spider - 거미
- ④ Natural worm or worms - 벌레
- ⑤ Natural crustacea - 게, 새우등
- ⑥ Natural fish - 생선알, 생선조각, 조개류를 제외한 생선
- ⑦ Uncoloured bread dough - 무색의 빵조각

"Bait Assembly"란 여러 개의 bait를 끼운 외바늘 또는 하나의 bait 를 낀 여러개의 바늘을 뜻한다.

"Bait Fishing"란 bait를 써서 Sports fish를 잡는 것을 뜻한다.

"Boat"란 인공의 모든 부력기구를 뜻한다.

"Fishing"과 "Fish"란 Sports fish를 잡거나 소유, 또는 양식으로 연결되는 모든 행동, 준비, 지원, 이러한 것의 시도등을 포함하여 뜻한다.

"Foulhook"란 Sports fish의 입안 이외 다른 부분을 이용하는 낚시행위를 뜻한다.

"Length"란 주둥이끝에서 꼬리 지느러미의 갈라진 부분까지를 뜻한다.

"Lure"란 허가된 artificial fly, spinner, bait를 말한다.

"Spinner"란 artificial fly를 제외한 모든 artificial lure를 뜻한다.

"Spin Fishing"란 spinner로 sports fish 를 잡는 것을 말한다.

"Sports fish"는 Freshwater Fisheries Regulations 1983의 전국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서 민물어종의 Sports fish는 다음과 같다.

- ① Brown Trout (갈색송어)
- ② Rainbow trout (무지개 송어)
- ③ American brook trout or char( 냇가송어 또는 곤들매기류)
- ④ Lake trout or char (호수송어 또는 곤들매기류)
- ⑤ Atlantic salmon (대서양 연어)
- ⑥ Quinnat or chinook salmon (치누쿠 연어)
- ⑦ Sockeye salmon (소키이 연어)

- ⑧ Perch (농어)
- ⑨ Tench (잉어류)
- ⑩ Rudd(Auckland/Waikato Fish & Game 지역)(잉어과 민물고기)

(나) 허가된 낚시도구

대낚시, 줄낚시와 허가된 루어낚시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는 스포츠어종을 잡아서는 안된다. 스포츠어종을 대상으로 할 때, 뜰채는 그러한 어종을 양륙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비 연어어종을 살려두기 위해서는 Keep net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물조항도 있다.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는 1개 이상의 대낚시나 줄낚시를 할 수 없고, 대낚시 길이가 15m이내가 아니라면,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는 스포츠어종을 대상으로 낚시할 수 없다. 또한, 스포츠어종을 대상으로 낚시할 경우에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는 1개이상의 bait assembly을 이용할 수 없다.

(다) Foul Hooking 낚시

면허소지자는 어떠한 스포츠어종에 대해서도 Foul hook를 할 수 없다. 스포츠어종을 Foul hook로 낚는 면허소지자의 경우에는 그 어종이 상처를 최대 한 입지 아니하도록 즉시 그 수역에 풀어주어야 한다.

(라) 최소 및 최대 길이제한

스포츠어종을 조획하는 면허소지자들은 그 대상어종이 최대길이에 초과하거나, 최소길이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한 상처를 주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간에 잡은 수역에서 풀어주어야 한다.

(마) 개방시즌

개방시즌을 제외하고는 면허소지자는 스포츠어종을 대상으로 낚시할 수 없다.

(바) 일일 제한 마리 수

면허소지자는 특정 스포츠어종을 대상으로 제한된 마리수를 초과하여 낚을 수 없지만, 한 지역에서 규정된 마리수보다 적은 것과 다른 지역에서 규정된 초과한 마리수의 차를 보충한다는 것은 가능하다.

(사) 허가된 루어

허가된 루어는 Artificial fly, Spinner, Bait의 세가지다.

## (2) 뉴질랜드의 민물낚시규정

(가) 북섬지역의 민물낚시규정

북섬지역은 다시 7개 지역(Northland, Auckland and Waikato, Eastern Region, Hawkes Bay, Taranaki, Taupo District, Wellington)으로 나뉘어 민물낚시규정을 달리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중 2개 지역(Northland, Auckland and Waikato)에 관한 규정을 다뤘다.

먼저, Northland 지역의 민물규정은 용어상 해석으로는 First Schedule 과 동일하다. 모든 호수지역에서는 연중 낚시가 가능하며, 반면 모든 강과 개울가에서는 매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만 낚시가 가능하도록 기간 제한을 두고 있다. First Schedule과 동일한 종류의 낚시 도구를 쓸 수 있으며, Fly Fishing과 미끼낚시지역은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보트를 이용한 견질낚시를 하는 낚시인은 해안에서 낚시하는 자리부터 최소한 50m 떨어져서 낚시하여야 한다.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는 하루에 5마리 이상의 스포츠고기를 잡어서는 안 된다. 송어의 최소체장은 300mm이며 여타 스포츠어종의 최소체장은 제한이 없다.

다음으로 Auckland/Waikato 지역의 민물규정은 Northland 지역과는 상이하다. 아래 표는 Auckland와 Waikato 지역내의 호수에서 적용되는 낚시시즌과 송어에 대한 최장제한 및 마리수 그리고 낚시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표 5-29] 뉴질랜드 Auckland/Waikato 지역 각 호수에 대한 낚시규정

호수명	낚시시즌	송어체장(cm)	일일제한량	낚시방법
Arapuni	연중가능	30	5	all legal lures/baits
Karapiro	연중가능	30	5	all legal lures/baits
Mangatangi	연중가능	30	5	artificial fly & lures
Mangatawhiri	연중가능	30	5	artificial fly & lures
Moana-nui	연중가능	30	5	all legal lures/baits
Otamatearoa (Muir)	연중가능	30	5	all legal lures/baits
Ototoa	연중가능	30	5	all legal lures/baits
Parkinson	연중가능	30	5	all legal lures/baits
Pupuke	연중가능	30	5	no bait restrictions
Tomarata	연중가능	30	5	all legal lures/baits
Waipapa	연중가능	30	5	all legal lures/baits
Whatihua (Thomson)	연중가능	30	5	all legal lures/baits
All other lakes/ponds	연중가능	30	5	no bait restrictions

이 외에 Hydro 호수의 각 지류지점들에 대한 낚시시즌과 송어의 체장제한 및 일마리수 제한과 낚시방법 등이 있으며, 모든 지류들을 포함하는 강과 개울가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규정을 정해 두고 있다.

특히 이중, Artificial Fly Fishing는 플라이 대낚시, 줄낚시 그리고 인공적인 플라이낚시로 스포츠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다.

몇 가지 불법 사항을 정해두고 있는데, 2개의 루어이상을 사용하거나, 1개 이상 내지는 복합낚시갈고기 또는 고정된 다단갈고기를 사용한 루어이용, 낚시바늘대의 가장인접한 곳과 포인트간의 간격이 14mm를 초과하는 낚시바늘이용, 인위적인 플라이낚시부유물을 이용함에 있어 화학적인 작용을 하는 것의 이용, 루어 또는 미끼 아래부분에 납이 장착된 갈고리의 사용 등이 그것이다.

연어류를 제외한 담수어 낚시수역에서 면허소지자가 농어와 잉어류를 대상으로 하는 대낚시와 줄낚시의 개수 제한이 없다. 하지만 하루에 5마리 이상의 농어 및 잉어를 잡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한, 만약 낚시배가 안전하게 정박한 상태가 아닌 경우에 Karapiro 호수의 상류 지역에서 배낚시를 이용하여 스포츠어종을 잡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

#### (나) 남섬지역의 민물낚시규정

남섬지역은 다시 6개의 지역(Nelson & Marlborough, Westcoast, North Canterbury, Central South Island, Otago, Southland)으로 나뉘어 각각 민물낚시규정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조금씩 다르다 해도 남섬지역의 공통된 낚시인 규범(Angler's Code)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낚시인으로서 이상적인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것은 준수한다.

- ①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용가능한 면허증을 소지하고 이와 관련한 낚시규칙을 준수한다.
- ② 낚시행위 방법상에서 허용하는 한 입어기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낚시하는 권리를 존중한다.
- ③ 사유지에서 낚시하는데 있어서는 관리자의 작물과 어종자원 및 주차장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어떠한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항상 조심한다.
- ④ 낚시로 인한 조획량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 환경을 보전하는데 따른다.
- ⑤ 낚시장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제거하도록 힘쓴다.
- ⑥ Catch & Release를 하는 동안에는 고기에서 외형상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⑦ 해상에서 또는 유어보트를 이용하는 다른 낚시인들에게 예의를 표하도록 한다.
- ⑧ 왜 사람들이 낚시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유와 그들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 ⑨ 일반적으로 공유지에서 낚시하는 것과 또한 여타 레저 이용자들이 해양레저를 즐길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 (다) Westcoast 지역의 민물규정

Westcoast 지역의 민물규정에 관한 용어상의 해석은 First Schedule과 Freshwater Fisheries Regulations 1983을 참고한다.

아래 수역에서는 송어와 농어를 대상으로 연중내내 낚시가 가능하다.

- Karamea River, downstream of cableway at the mouth of the lower gorge.
- Little Wanganui River downstream of S/H No. 67 bridge
- Mokihinui River, downstream from the cableway
- Martin's Creek downstream of Welcome Creek bridge

- Bullet River, downstream of Lyell confluence
- Nile River, downstream of Awakere confluence
- Grey River, downstream of Clarke confluence
- Lake Brunner (Note clause 3)
- Arnold River
- New River Estuary downstream of NZSH 6 at Stanley
- Taramakau River, downstream of Gooseman Bridge at Jacksons
- Kumara Reservoir
- Kapitea Reservoir
- Kokatahi River, downstream of Styx
- Hokitika River, downstream of swingbridge at lower gorge
- Lake Kaniere
- Lake Mahinapua and Mahinapua Creek
- Kaniere river
- Big Wanganui River
- Poerua River (Sth. Westland)
- Whataroa River
- Lake Wahapo
- Karangarua River
- Lakes Mapourika. Paringa, and Moeraki
- Lake Ellery

Lakes Mapourika, Paringa, 그리고 Lake Moeraki 지역은 10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이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10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연어낚시에 대해 개방한다. Lake Mapourika의 McDonalds 시내가에는 연중 낚시금지수역이다.

일일제한량(First Schedule 6.1 참고)에 관련한 내용으로는, 면허소지자는 하루에 4마리 이상의 스포츠어종을 잡어서는 아니되며, 다음과 같은 수역에서는 2마리 이상의 송어를 포획해서는 아니된다.

- ① Murray Creek
- ② Harris Creek
- ③ Duck Creek
- ④ Ohikanui River
- ⑤ Waitahu River

- ⑥ Larrys Creek
- ⑦ Stony Creek
- ⑧ Rough River
- ⑨ Haupiri River
- ⑩ Crooked River
- ⑪ Orangipuku River
- ⑫ Bruce Stream
- ⑬ Big River
- ⑭ Moonlight River
- ⑮ Karamea River and tributaries
- ⑯ Mokihinui River and tributaries (upstream of cableway below Welcome Creek)

일일제한량이 없는 농어지역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수역에서는 면허소지자는 4마리 이상의 스포츠어종을 포획해서는 아니되며, 1마리 이상의 연어와 2마리 이상의 무지개 송어를 포획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수역에서는 송어와 연어의 최소길이가 250mm 되어야 한다.

- ① Lake Mapourika
- ② Lake Paringa
- ③ Lake Moeraki
- ④ Lake Ellery

이외에 여타 수역에서는 최소체장길이 제한이 없다.

### (3) 뉴질랜드 바다낚시규정

뉴질랜드의 바다낚시공통 사항에 해당하는 자원보전을 위한 역할이 있다. 매년 상당량의 고기와 바위가재 그리고 조개류를 비롯한 어패류가 유어낚시인들에 의해 채취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지역어업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자원을 보전하는데 있어 유어낚시인들의 역할이 크게 요구된다.

#### (가) 제한사항의 준수

현재 상업적 어업인들은 어획의 허가를 지니고 있고, 이들이 얼마만큼을 어획하

는지에 대해서 켄타 및 여러 가지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어낚시인들이 지켜야 할 규제사항은 단순해서, 일일제한량을 초과해서 포획하지 말 것, 체장이하의 고기를 포획하지 말 것, 조획한 것을 팔거나 사지 말 것의 세 가지만 준수하면 된다. 이외에 낚시장비 및 낚시방법상에 규제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 (나) 포획물의 비가해

일일제한량을 초과하거나, 체장길이미만 또는 최소그물망을 어겨 불법적으로 포획한 고기는 반드시 해당 수역에 즉시 되돌려 보내야 한다. 살아있는 고기를 내보낼 시에는 젖은 손이나 고무장갑을 낀 상태에서 수면에 인접한 곳에서 조심스레 풀어주도록 한다. 고기와 특히 어패류 및 바위가재는 가능한 포획한 장소에서 보내주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적으로 포획한 죽은 고기 역시 해당 수역에 보내야 한다. 만약 상당수의 체장제한미만의 소형어가 잡힐 경우 낚시장소를 옮기거나 더 큰 낚시갈고리로 교체하여야 한다.

#### (다) 북지역 바다낚시규정

각 지역의 어업관리지역(Fishery Management Areas)에서는 낚시가 허용되지 않는 금어지역과 제한지역이 있다. 이러한 지역은 수산부(Ministry of Fisheries) 또는 해양보전부서(Department of Conservation)에서 정해진다.

북지역 바다낚시규정은 지느러미 고기에 대한 제한사항과 어패류에 대한 제한사항, 바위가재에 대한 제한사항의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지느러미 고기에 대한 제한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ine fishing (줄낚시-주로 배에서 길게 늘어뜨리는 낚시)는 handline이나 릴에 달린 줄을 제외하고, 하나 이상의 줄낚시를 사용하거나 소지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줄에 연결된 모든 부표에는 본인의 이름을 표기해야하며, 25개 이상의 바늘을 달아서는 안 된다. 또한, 배에서 1명이상이 줄을 사용할 때, 2줄 이상을 사용, 설치 또는 배에서 소지하고 있어서는 안 되며 동시에 한 개 이상의 drag net, set net, fyke net, 또는 다른 어떤 종류의 그물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물은 반드시 손으로 당겨야 하며 하나 또는 여러개를 이어서 사용하는 그물은 강, 지류, 만등의 폭을 1/4 이상 넘겨서는 안된다.

(fyke 그물을 제외하고) 미끼를 단 그물을 쓸 수 없고 (fyke 그물을 제외하고) 그

물을 말뚝에 달아서는 안 된다. 또한 고기를 썰물에 갇히게 하는 방법으로 그물을 사용할 수 없다. 그물의 양단은 본인의 이름을 표시한 부표를 달아야 하고, fyke 그물은 1개의 부표만 요구 된다.

Drag net restrictions ('drag' 그물의 제한)는 drag net의 길이는 40m이하로 하고 전체길이는 200이하로 하며, 'drag' 그물의 코 크기는 100mm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et net restrictions ('set' 그물의 제한)는 배에서는 오직 한 개의 'set' 그물을 쓰거나 보관 할 수 있지만 10m 이하이고 코의 크기가 50mm 이하인 미끼용 그물을 추가로 허용한다는 것과 길이는 60m 이하로 다른 그물로부터 6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Minimum mesh sizes (최소 그물코 크기)는 특정 어종에 관해서만 그물코 크기의 제한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set' 그물 최소 코크기 제한은 'drag' 그물이나 다른 그물의 그것과 다를 수 있다.

Protection of spotted black groper ('spotted black groper'의 보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spotted black groper'를 어느 누구도 잡아서서는 안된다.

[표 5-30] 뉴질랜드 북지역의 지느러미 고기에 대한 체장제한 및 일일조획량

어종	최소체장길이	최소그물코길이
Blue cod	33 cm	100 mm
Blue moki	40 cm	114 mm
Bluenose	-	160 mm
Butterfish	35 cm	108 mm
Elephant fish	-	150 mm
Flatfish(except sand flounder)	25 cm	100 mm
Garfish(piper)	-	25 mm
Groper/hapuku/bass	-	160 mm
Grey mullet	-	100 mm
Herrings	-	25 mm
John dory	-	100 mm
Kahawai	-	100 mm
Kingfish	65 cm	100 mm
Pilchard	-	25 mm
Red cod	25 cm	100 mm
Red moki	40 cm	115 mm
Rig	-	150 mm
Sand flounder	23 cm	100 mm
School shark	-	150 mm
Snapper	27 cm	100 mm
Tarakihi	25 cm	100 mm
Trevally	25 cm	100 mm
All others	-	100 mm

어패류는 크기, 수량, 장비, 계절의 제한을 가진다.

첫째, 크기 및 수량의 제한을 살펴보면, 어패류는 종류에 따라 척량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Puna(전복)은 길이를 재며 가장 자리를 척량하고 Scallops(부채조개)는 넓이로 크기를 잰다. Dredge oyster(해저 준설 굴)은 58mm 구경의 원형 고리안으로 통과될 정도의 크기이면 채취해서는 안 된다는 조금씩 상이한 규정을 갖고 있다.

둘째, 장비의 제한은 어느 누구도 스쿠버 잠수장비를 동원하여 전복이나 홍합을 채취할 수 없으며 또한 잠수장비를 소지한 상태로 전복이나 홍합을 몸에 지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차량안에 있는 장비도 포함한다.

셋째, 채취시기의 제한을 살펴보면, 바위 굴이나 태평양 굴은 Hauraki gulf,

Whangaruru Harbourm Bay of Islands를 제외한 북섬 전역에서 연중 채취가 가능하며, 남섬에서는 3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굴채취가 가능하다.

[표 5-31] 뉴질랜드 북지역의 어패류에 대한 1일 채취제한량 및 크기

어패류종류	개인당 1일 채취한도	최소 허용크기
Cockles(새조개)	50	없음
Kina(Sea egges) 해란	50	없음
Mussels(홍합)	25	없음
Oyster-dredge(해저굴) Rock & Pacific(바위굴)	50(해저굴) 100(바위굴)	58mm (일반)없음 (바위굴)
Puna- 일반, 전복, 황족, 전복	10/10	125mm (일반)/ 80mm(황족)
Pipi (피피조개)	50	없음
Scallops(가리비)	20	100mm
Toheroa(토헤로아조개)	금지됨	
Tuatua(투타투아조개)	50	없음
기타 종	50	없음

바위가재에 대한 제한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일반 제한 사항은 외부에 나타난 알이나 배란 상태의 생식기를 제거하지 말 것, 포획시에 살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거나 살에 맞은 가재를 소유하지 말 것,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부표를 사용하지 말고 가재 채취 덩을 놓지 말 것, 덩의 탈출구가 최소한 54 x 200mm 정도의 크기를 갖출 것의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 1일 포획한도도 정하고 있는데 종류를 막론하고 바닷가재는 한 사람이 1일에 6마리 이상을 포획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크기는 꼬리의 넓이가 54mm 이내의 수컷 spiny rock lobster나 꼬리의 넓이가 60mm 이내의 암컷 spiny rock lobster, 혹은 길이가 216mm 이내의 packhorse rock lobster는 성구분 없이 포획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암수 구별은 간단하다. 후미 쌍다리에 작은 집게(pincers)가 달려 있는 것이 암컷이다. 크기에 미치지 못하는 바닷가재, 알을 외부에 지닌 바닷가재, 아직 각질이 완성되지 않은 유연한 바닷가재, 일부의 손상 등으로 정확한 크기를 잴 수 없는 바닷가재도 종류별로 제한하고 있다.

(라) 중앙지역 바다낚시규정

중앙어업관리지역에서는 아래 어종을 조합하여 일일제한량을 20마리로 규정하고 있다.

- ① blue cod
- ② elephant fish
- ③ kahawai
- ④ rig blue moki
- ⑤ flatfish
- ⑥ red cod
- ⑦ school shark bluenose
- ⑧ grey mullet
- ⑨ red gurnard
- ⑩ tarakihi buttertish
- ⑪ John Dory
- ⑫ red moki
- ⑬ trevally

또한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각각에 상이한 규정이 있다. 첫째로 줄낚시의 경우엔 낚시줄에 부착된 모든 부유물에는 개인낚시인의 성과 이니셜이 적혀 있어야 하고, 손낚시와 대낚시 또는 릴 낚시대 이외에 1개 이상의 줄 사용과 25개 이상의 낚시바늘이 부착된 장비 소지 및 사용을 금하며, 낚시인 1명 이상이 유어선에서 한 개의 낚시줄을 이용하는 곳에서는 2개 이상의 낚시줄의 사용을 금한다.

둘째, 뱀장어에 관하여서는 Resources & Other Lands Disposal Act 1956 Section 18 에 근거한 어업권을 지니지 아니한 자는 Lake Horowhenua 또는 Hokio Stream 지역에서 뱀장어를 잡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일반적인 그물망의 경우 한번에 drag net, set net, fyke net 또는 여타 유형의 그물에 대해서는 1개 이상을 소지 및 사용을 금하며, 그물은 손에 의해서만 이용하여야 하고 개인적이든 공동으로 하든지 그물은 어떠한 강이나 개울 및 만의 폭 1/4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끼를 단 그물을 설치하거나 이용해서도 안 된다.

넷째, 그물설치에 관한 경우 1개의 그물설치는 선상에서만 사용될 수 있고 추가적으로 baitfish 그물이 허용되나, 이는 10m 이하가 되어야 하고, 그물코 크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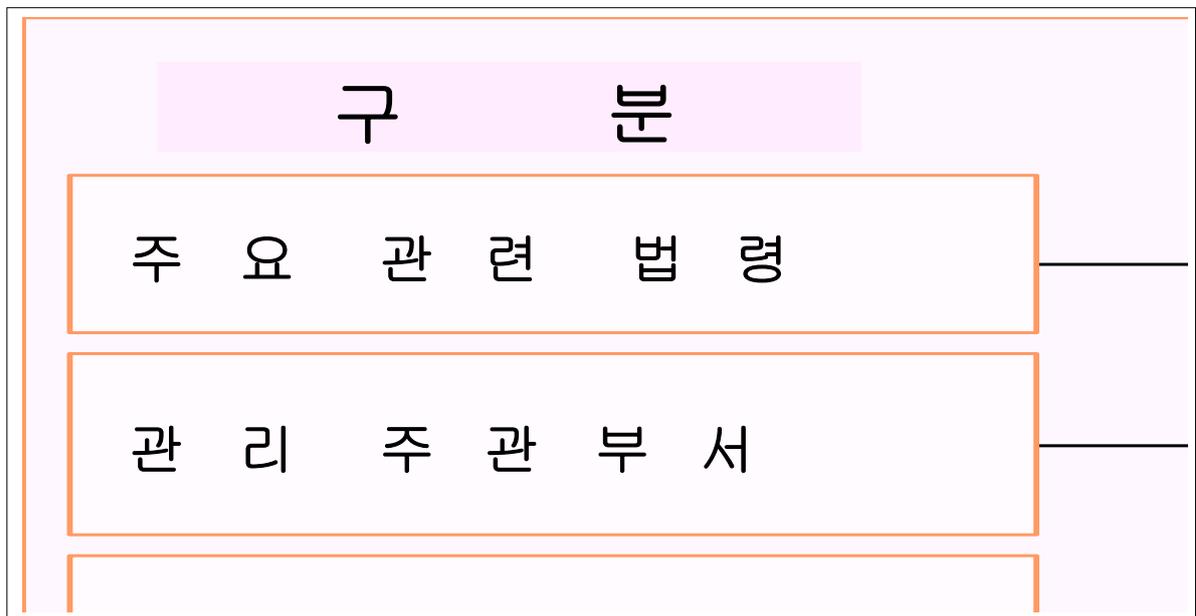
50mm 이하여야 한다. 길이가 60m를 초과하거나, 여타 그물과의 거리 60m 이내에 설치하거나 말뚝에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 그물의 각 끝단은 물표면에 떠오르는 부유성 물질로 되어야 하며, 그곳에 사용자의 성과 이니셜이 적혀 있어야 하며 그물이 조수에 의해서 꼬여서는 안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Drag nets의 경우 길이가 40m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끄는 밧줄이 200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여섯째는 금지지역의 경우인데, Pauatahanui inlet 지역에서는 그물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며, Cape Runaway 근방에는 그물설치 제한구역이 있다. 구체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지역이 몇 군데 있으므로 정확한 위치나 자세한 사항은 수산부에 문의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상의 뉴질랜드의 유어낚시관리와 면허제를 바다유어낚시와 민물유어낚시로 나누어 관련법령, 주관부서, 관리유형, 운영체계, 단속 및 지도체계, 그리고 유어수입료 운용 등에 대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5-32] 뉴질랜드의 유어낚시 관리와 면허제



## 6. 유럽 주요국

### 가.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공공 및 대부분의 개인수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에는 면허증이 요구된다. 일부 개인소유 지역에서는 전혀 면허증이 요구되지 않는 지역도 있다. 면허증을 소지하는데 있어서 독일과 같은 시험제도는 없다. 프랑스의 면허비용은 약 100DM(환율적용시 약 \$60)이며, 각 지역 낚시사무소에서 구입가능하다. 각 지역 프랑스관광사무소(French Tourist Office)에서는 면허를 구입할 수 있는 인접한 사무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완전한 지역낚시면허증의 비용은 약 60유로이다. 다른 지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에도 완전한 지역낚시면허증이 통용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상호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지역) 여분의 입어비용을 약 15~30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많은 지역에서는 2주간 유효한 휴일면허증(holiday license)을 판매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약 25~30유로이다. 통상 휴일면허증은 6월 1일 날짜로 판매된다. 또한 프랑스 남부지역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낚시를 할 수 있게 끄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는 "half country's license"이다. 이러한 면허증은 여러 다른 지역에서 낚시를 즐기고자 하는 낚시인들에게 인기있는 면허증이다.

낚시시즌으로는 법적으로 송어낚시는 3월 20일에 시작된다. 일부지역에서는 조금 빨리 시작되는 곳이 있으나 dry fly 낚시는 늦은 4월이나 5월부터 시작되어 7월 중순이나 말까지 지속된다. 8월에는 건조한 지역에서는 낚시하기에 좋지 않지만, Normandy 지역이나 고산지역에서는 낚시조건이 좋다. 일반적인 금어시기는 9월 셋째주 일요일부터이다. Normandy 과 같은 일부지역에서는 10월 3일까지 지속된다.

낚시인이 잡을 수 있는 마리수와 크기 제한이 있으며, 낚시가 금지되는 강구역이 있다. 강낚시의 경우는 두가지 분류로 나뉘게 되는데, 1급 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998년을 기준으로 하여 3월 14일에서 9월20일까지 낚시가 가능하며, 연어와 바다송어의 경우에는 7월 31일까지이다. 2급 강낚시의 경우에는 연어와 바다송어가 서식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연중 낚시가 가능하다.

일부 어업권 소유자들은 고기들이 부화할 시기에 토대로 하여 낚시시작 일자를 조정한다. Verdun 근방의 Club Mouche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는 연중 낚시가 가능한 지역도 있다. 비록 낚시시즌과 낚시규정이 전국규정과 주규정이 있으나, 개인수역권자는 자신의 관리수역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Catch & Release 낚시가 점차 일반화되고 있으나, 일몰 30분 뒤부터 일출 30분 전까지는 낚시를 금지한다. 야간낚시를 허용하면 음식쓰레기나 폐건전지 등 쓰레기

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지 이유이다.

낚시규정은 상당히 복잡하므로 항상 낚시구역에서는 이러한 낚시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 강이나 개울 그리고 많은 호수지역에서는 낚시가 가능하다. 일단 면허증을 구입한 이후에는 대부분 어느 지역에서든 낚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소유의 강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송어 또는 연어낚시를 위한 공공수역이 흔하지 않다. 그러나 Pike, Walleye 그리고 Catfish와 같은 어종들이 서식하는 운하와 강이 즐비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개인이나 공동으로 어업권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프랑스 낚시면허증을 구입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루 단위, 주단위 또는 월단위의 낚시허가증(Permit)을 개인 또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룹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일일허가증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수면관리자에게 구입할 수 있다.

[표 5-33] 프랑스 낚시면허증 유형 및 비용

면허의 종류	요 금
송어 면허	334FF
연어 면허(2마리 가능)	200FF
바다송어 카드	100FF
청소년 카드	150FF
관광객 카드	150FF

#### 나.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수로의 내수면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Sportvisakte 라고 하는 대낚시면허증은 네덜란드 정부에서 발급하고, Vergunning 이라고 하는 허가증이 있는데, 이는 해당 낚시터의 소유권자로부터 발급되는 것이다.

[표 5-34] 네덜란드 낚시면허

낚시를 하기 위한 요건 사항		면허증 및 허가증의 필요유무	
연령별	낚시의 유형	15세 이상	14세 이하
공공수면	지정된 미끼와 1대의 대낚시유형	필요없음	<i>Sportvisakte</i>
	미지정된 미끼와 2대의 대낚시유형	<i>Sportvisaskte + Vergunning</i>	
비공공수면	지정된 미끼와 1대의 대낚시유형	<i>Vergunning</i>	<i>Sportvisaskte + Vergunning</i>
	미지정된 미끼와 2대의 대낚시유형	<i>Sportvisaskte + Vergunning</i>	

지정된 미끼는 빵조각, 감자, 밀가루, 치즈, 옥수수 및 각종 씨앗류를 포함한 벌레와 참새우 그리고 1인치 미만의 곤충, 애벌레 등을 말하는 것으로 농림부와 자연관리 및 어업부서에서 지정하고 있다.

비공공수면인 사적소유의 낚시터에 대해서는 낚시인의 나이와 상관없이 낚시터 소유자로부터 허가증을 받은 상태에서 낚시를 할 수 있다. 낚시클럽이나 낚시도구점에서 허가증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 낚시권은 낚시클럽의 소유로 되어 있다. 지방의 허가증을 구매하여 낚시할 경우에는 각 낚시터에서 규정한 특정 미끼의 금지를 비롯한 체장제한에 걸리는 경우에 놓아주어야 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상기 두 가지 종류의 면허증 이외에도 3대의 낚시대 사용과 여타 특별히 허가된 낚시장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Grote Visakte* 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낚시면허증과 *Vergunning* 이라고 하는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낚시면허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낚시면허증을 소지할 필요는 없게 된다.

낚싯대에 연결되어 여러마리의 낚시미끼인 벌레를 달아 사용하는 낚시찌의 경우에는 *Sportvisaskte* 뿐만 아니라 *Peurvergunning* 이라고 하는 낚시찌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낚시찌허가증의 발급은 수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구멍낚시와 3대의 낚시대 허용면허증은 허가된 수로가 수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면허증이 허용되는 수로에 대한 정보는 각 지방의 낚시클럽이나 전문적인 낚시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다.

#### 다. 덴마크

덴마크에서 어업행위가 이루어지는 호수 및 강은 일반적으로 개인소유의 사유지로 되어 있다. 남획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어자원보호는 내수면어업법(*Inland*

Fisheries Act)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유어낚시면허제로 인해서 연간 3천만 DKK 이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중 약 75%가 Baltic 지역에서 나온다. 이렇게 거두어진 기금은 방류사업, 연구·조사 및 호수의 질적회복을 위해 쓰여지게 된다. 유어낚시 어업의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상업적 어업은 점차 중요성이 퇴색되어가고 있는데, 현재 내수면어업에 전일직업(full-time)으로는 10명도 채 되지 못하고, 부업(Part-time)으로는 200명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 라. 에스토니아

상업적어업과 부업으로 하는 어업은 두 개의 큰 호수(Peipsi-Pihkva, Vortsjrv)에서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수면에서의 총어획량은 Batic 지역에 비해 매우 적은 편으로서, 약 5% 미만에 속한다. 한편 유어어업은 어업규율(Fisheries Rules)에 의거하여 규제되고, 추가적인 규제들은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에서 관할하고 있다. 주로 금어기, 금어지, 장비, 부수어종(bycatch) 및 최소체장크기제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에스토니아에서는 개인 단위의 단일 낚시인들(single anglers)이 낚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낚시면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연어와 바다송어자원의 양육에 주로 방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어업기금(Fisheries Fund)은 방류프로그램의 재원뿐만 아니라 어업연구조사 및 감시활동을 위해 주로 쓰여지게 된다. 이러한 기금의 주 소득원은 어업면허제 및 권리판매를 통해 창출된다.

#### 마. 핀란드

낚시권리는 사유지 소유자 또는 주의 관할하게 있다. 물론 지역적으로 어업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기관이 있다. 어느 정도는 이러한 기관이 국가적인 낚시법과 병행하여 자체적으로 지역에 맞는 낚시규율 및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전형적인 관리수단으로서의 최소그물코크기와 최소체장제한, 금어지 및 금어구 설정 등이 있다.

생물학적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강 서식지회복과 같은 수단과 점차 감소하는 어자원에 대해서 방류사업을 지원하며, 여러 가지 지역 및 중앙 관리수단을 동원하여 호수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바다와 민물에서 이루어지는 유어어업의 총조획량은 약 56톤이다(1994년 기준). 그리고 유어낚시에 참여하는 수는 약 2백만명이다. 상업적인 어업인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유어어업과 낚시로 인한 관광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내수면의 상업적 어업인의 수는 대략 250명이고 총어획량은 약 3,400톤이다.

바. 라트비아 공화국

내수면의 상업적 어획량은 발틱지역에서의 총조획량의 1%미만에 불과하다. 전문적인 상업적 어업 또는 부업어업은 자망과 연승어업으로 연간 500톤 정도로 안정적인 어획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어어업으로 인한 조획량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지만, 대략 호수에서 조획량의 60%, 인공저수지에서 10%, 그리고 강에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강꼬치고기류, 잉어과류 및 여타 어종들의 유어어업은 주로 생계유지형태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업적 어획량에 비해 수배이상을 초과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내수면에서의 어업은 어업법(Law on Fisheries)에 해당하는 내수면 상업적어업규제법(Regulation on Commercial Fishing)과 낚시규제법(Angling Regulations)에 의거하여 규제되고 있다.

자. 스웨덴

1996년 내수면에서 비전문적인 어업인에 의한 총어획량은 1786톤을 차지하고 있다. 총가치는 4천40만 SEK이다. 약 350명이 상업적 내수면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100여명은 부분적으로 농업과 삼림에 종사하기도 한다. 낚시인의 70%에 해당하는 대부분은 4대 호수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 유어어업 및 그로 인한 관광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총조획량과 지역사회의 경제적 가치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정보가 없다. 인터뷰에 의거한 연구에서는 유어낚시로 인한 총조획량은 대략 18,000톤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스웨덴에서는 유어낚시로서의 연어와 송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종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무지개송어를 비롯한 강꼬치고기류 및 잉어과류 또한 상당량 조획되고 있다. 내수면에서의 송어류는 점차적으로 동부와 서부연안에서 증가하는 반면에 내륙지역과 산악지역에서의 송어류는 지난 20년간 변동이 거의 없었다. 이 지역간의 차이는 어업관리, 즉 연안지역에서의 낚시제한과 서식지개선 등과 같은 어업관리의 주요 관심지역이 되고 있다. 방류사업이 크게 중요시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낚시의 부분적 제한과 금어지역의 확대 등과 같은 수단이 어자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Torne 강에 대해서는 스웨덴과 핀란드간의 경계구역이어서 구체적인 어업규제법

은 경계위원회(Board Commission)에 의해 채택되고 있다.

스웨덴의 내수면과 연안어업의 관리는 내수면관리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행동계획등을 관장하고 서식지보호 및 연구조사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어업국제위원회(National Board Fisheries)와 공조하여 장기간의 조사연구와 개발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스웨덴의 낚시관리제도로는 낚시면허제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강 및 호수에서 낚시를 할 경우에는 「낚시카드」를 구입하여 낚시를 할 수 있으나, 바다 및 5대 호수에서는 낚시카드 없이 자유롭게 낚시할 수 있다. 낚시카드 구입료는 2일권 20 크로나(약 1.9달러), 1년권은 150 크로나(약 14달러)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낚시장소, 어종, 크기 등 낚시관련 규제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살아있는 물고기를 미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스웨덴 낚시협회의 권고사항은 치어는 방류하며, 낚시로 잡은 물고기 매매를 금지한다. 일일조획제한은 3마리로 하고 있으며 어종별 최소크기제한(강꼬치고기 40cm, 뱀장어 53cm, 연어 60cm, 바다송어 50cm, 민물송어 35cm)과 보호어종의 조획금지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 자. 벨기에

왈롱지역에서 낚시하기 위해서는 낚시면허증이 필요하며, 지역 우체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면허증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type "A"는 BEF 500이고 type "B"는 BEF 1500이다. "A"는 낚시대 2개까지 허용(독)되고, "B"는 낚시대는 2개가 허용(독)되며 부두나 보트에서 낚시가 가능하다.

벨기에는 강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선박운항이 가능한 강(可航, Navigable)과 선박운항이 불가능한 강(不可航, Non-Navigable)이다. 항해 가능한 수역은 왈롱지역 낚시면허증이 필요하며, 우체국에서 구입 가능한 낚시지도에 빨간색(red)이 표시되어 있다. 항해 불가능한 수역은 왈롱지역 낚시면허증뿐만 아니라 지역 낚시클럽에서 발급하는 낚시허가증이 추가로 필요하고, 낚시지도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3월 셋째 주 토요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송어(trout) 시즌이고 6월 셋째 주 토요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살기(grayling) 시즌이다.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 낚시가 가능하고 밤 낚시는 금지하고 있다.

다음은 1995년 12월 한 달 동안 낚시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내용이다. Walloon지역은 낚시인 대부분이 남자로 92.9%이고, 여자는 단지 2.8%이다. 연령별로 보면 31세-50세가 44%이다. 낚시인을 학생, 퇴직한 사람, 무직, 주부, 공무원,

개인회사원, 육체노동자, 소매상인, 그리고 기타 (9개)로 분류해보면 주부는 단지 1% 이고 , 대부분의 낚시인(29.3%)은 직장인이다. 낚시경력은 10년 이하가 25% , 11-20년이 21.5% , 21-30년이 21% , 31-50년이 26.5% , 50년 이상이 6%이고 10년 이상이 75%를 차지한다. 낚시를 하는 장소는 35.5%가 공공수역에서, 12.4% 가 비공공수역 강에서, 4.5%가 개방이 안된 개인소유 수역에서, 2.2%가 외국에서 낚시를 했다. 단지 0.8%만이 바다에서 낚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낚시인들은 87%가 독(bank), 14%가 강에서 낚시를 하였다. 나머지 낚시인들은 8%는 배에서 7%는 고정된 플랫폼에서 낚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에 낚시를 즐기는 사람은 23%이고 주중에는 9%이며, 나머지 68%는 주중, 주말 모두 낚시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낚시인 4명중 1명은 연간 낚시일수가 20일보다 적은 일시적인 낚시인이며, 1995년 평균 총 낚시일수는 55일로 나타났다. 낚시인의 어획량 제한에 대해서는 48%는 찬성, 36%는 반대, 13%는 중립, 3%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고기크기 제한에 대해서는 45%가 찬성, 23%는 반대, 12%는 모름, 나머지 중립이라고 했다. 처음 낚시를 시작하는 사람중에 65%는 낚시경험이 있는 부모나 친구와 동행, 47%는 책이나 잡지를 참고해서 스스로 낚시법 터득, 단지 2%만이 낚시학교나 그 과정에 참여한다고 했다.

#### 차. 체코

낚시인들은 반드시 정부가 발행하는 낚시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강, 댐, 저수지인 경우는 1990년 이후로 낚시협회(체코 낚시협회와 모라비안 낚시협회)에 의해 관리되어 오고 있다. 통계조사를 보면 1994년에 못(pond)에서 고기 생산량은 21,000톤이고, 3,300톤이 거의 대부분 낚시에 의해서 어획되었다.

1994년에 체코 낚시협회의 회원수는 227,000명 (171,000명 남자, 4,000명 여자, 15,000명 연소자, 37,000명 어린이)이고, 모라비안 낚시협회의 회원수는 61,320명 (44,390명 성인, 4,250명 연소자, 12,680 어린이)이었다. 체코 낚시협회는 총 34,965 ha를 관리 (비연어 수역 31,512 ha, 송어 수역 3,453 ha)하고, 모라비안 낚시협회는 총 7,290 ha를 관리 (비연어 수역 6,720 ha, 송어 수역 570 ha)했다. 비연어 수역과 송어 수역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증 소지해야하며, 그 판매비율은 10 : 1로 나타났다. 비연어 수역에서는 낚시대 2개 허용, 송어 수역은 1개 허용된다.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 또는 더 짧은 기간이 있다.

낚시면허증을 구입함과 동시에 조획통계 및 보고서를 받게된다. 이 용지에 자가 조획한 고기의 종류와 무게를 기입해야 한다. 만약에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경

우 다음해에 낚시면허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조획된 고기의 허가수는 송어 수역과 비연어수역이 다르다. 송어수역에서는 1주일에 3일 동안 연어 4마리 허가되고 비연어수역에서는 7kg 허가된다.

체코의 낚시면허증은 100 - 200 CZK이고, 낚시협회의 낚시허가증은 1일 - 600 CZK 2일 - 1,100 CZK 1주일 - 2,500 CZK 1년 - 6,000 CZK이다. ( 1 USD = 34.53 CZK)

#### 카. 노르웨이

산란중인 연어(바다송어와 바다곤들매기류 포함)와 내수면 낚시에 대해서는 주정부와 지역규칙으로 통제되고 있다. 또한 사유지소유자와 수면낚시관리권자에 의해 제정된 지방낚시규칙도 있다. 낚시규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낚시면허증을 판매하는 사람들로부터 또는 관광정보부서 및 각 군의 환경부서에서 얻을 수 있다. 낚시면허증을 구매시에 낚시규칙사항을 받게 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면허증의 뒷면에 적혀 있기도 하다.

연어, 바다송어 또는 바다곤들매기류의 어종을 잡기를 원하거나 내수면낚시를 하고자 하는 16세 이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주정부에 낚시수수료(fishing fee)를 지불하여야 한다. 낚시수수료는 노르웨이의 우체국에서 지불가능하다. 노르웨이에서는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낚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조건이지만 특정지역 또는 특정수역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낚시를 하기 전에 수면관리소유자의 허가(permission)가 필수적인 사항이 된다. 낚시수수료의 수익금은 지역의 프로젝트, 관리계획 및 연구조사활동을 위해 쓰여지게 된다.

노르웨이 수로의 낚시권은 통상 사유지소유권자에 있고, 수로가 개별적으로 소유된 것이든, 공동소유의 것이든 또는 주정부 소유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낚시규칙이 적용된다.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낚시면허증 또는 사유지소유권자로부터의 허가증이 요구된다. 낚시면허증은 낚시터와 인접한 사유지소유권자 또는 스포츠용품 상점, 관광정보부서 그리고 캠프지에서부터 구입가능하다. 낚시면허증으로 낚시할 수 있는 각 지방의 낚시터가 목록화되어 있고, 여러 지역과 주에서 이용가능하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낚시를 할 것이지에 관한 정보는 낚시면허증의 뒷면에 통상 적혀 있다. 그리고 낚시가능 유효기간에 따라 하루, 이틀 단위, 주단위에서 연중가능 낚시면허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낚시면허증이 있다. 바다낚시에 대해서는 낚시면허증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다.

노르웨이 모든 땅의 약 3분의 2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낚시면허증의 판매는

사유지소유권자 또는 소유권자로부터 임대 받은 사냥 및 낚시협회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공동왕실재산의 가장 큰 지역들은 대부분 산악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낚시권은 지방권한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상기 지역에서는 1년이상 노르웨이에 거주한 자 또는 낚시면허증에 대해서 지불한 자에 한해 대낚시와 줄낚시를 할 수 있다. 외국인들도 대부분의 공동왕실재산 지역에 있는 곳에서는 낚시면허증을 구입할 수 있다.

Nordland와 Troms 지역에서 주재산에 대한 낚시권은 Statskog 의 지방부서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Finnmark 군에서의 주재산에 대한 모든 낚시권은 노르웨이 시민들은 모든 수로에서 대낚시와 손낚시를 할 수 있다. 외국인들도 군단위의 도로 양쪽에 5km 내에 있는 수로 또는 내수면낚시터에서 대낚시와 손낚시를 할 수 있다. Finnmark에서 낚시행위에 대한 팜플렛은 Statskog Finnmark에서 요청이 가능하다. 북노르웨이에서의 낚시면허증은 북노르웨이의 500개여가 넘는 호수를 포함한 주재산 낚시터에서 적용가능하다. 그리고 낚시면허증은 우체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16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은 매년 1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무료로 대낚시와 손낚시에 한해 민물낚시를 할 수 있다. 면허증이 요구되는 수로에서 어린이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낚시면허증이 요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사유지의 관리자로부터 허가증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항들은 연어와 바다송어 그리고 바다곤들매기류와 가재가 서식하는 수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낚시권에 대한 규제들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낚시연못터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군청의 환경부서에서는 특정한 호수에 대해서 낚시를 규제하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 어린이를 동반한 성인들은 일반적인 낚시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16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모든 정부낚시규제법을 따라야 하며 지방낚시규제법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 타. 이탈리아

내수면낚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포괄하는 면허증은 존재하지 않지만, 각 주와 군에서는 면허증을 포함한 각종 낚시규제법과 규율들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 낚시면허증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tipo B" 면허증은 이탈리아 사람에 한해 발급되는 낚시면허증이며, "tipo D" 면허증은 외국인에게 3개월간 이탈리아 화폐 단위인 16.500 Lira의 비용을 지불하여 받을 수 있는 낚시면허증이다.

낚시면허증은 어떠한 도시에서도 "Comune(주 행정기관)"의 부서에서 주면허증을

구입할 수 있다. 이는 "Locenza di Pesca"라고 불리우는 면허증이지만, 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원하는 어종을 대상으로 낚시를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각 수로에서는 특별한 면허증을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북동지역에 위치한 Friuli 에서는 추가적인 지방면허증이 요구된다. 이 면허증은 "water licenses"라 하여 해당 주의 관청이나 낚시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각 지방의 어업관리에 근간으로 하여 다양한 낚시면허증이 요구된다.

#### 파. 슬로베니아

Soca 강에는 사적으로 관리되는 영역과 주에서 관리하는 영역을 가지고 있다. 낚시를 하고 싶은 자는 각 영역에 대해서 개별적인 낚시면허증이나 허가증을 구매해야 한다. 사적영역에 대해서는 Soca 강 수로의 120km를 지방의 플라이피싱조직 (Club Tolmin)에 관리하고 있으며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증이. 주가 관리하는 영역으로는 Club Tolmin이 관리하는 수면끝에서부터 산악지방에 이르는 지역까지는 면허증을 구매하여 낚시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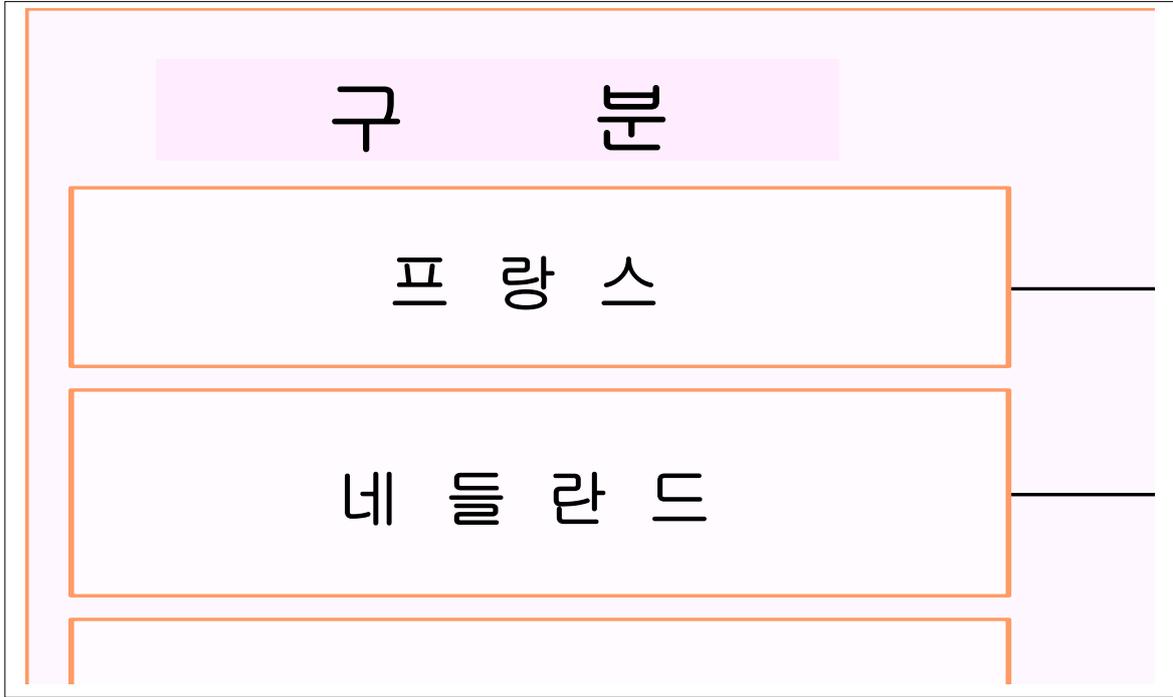
#### 하. 헝가리

헝가리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낚시면허증과 지방의 허가증 모두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면허증과 허가증을 낚시도구점과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소도시에서는 낚시도구점에서 허가증을 구입할 수 있고, 우체국에서 면허증을 구매한다.

그리고 18세이상의 낚시인은 낚시대 2대를 이용하여 낚시할 수 있으며,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낚시대 1대만을 사용할 수 있다. 각 어종별 금어시기가 있으며 체장제한이나 특별한 낚시규칙들은 지방의 허가증을 판매하는 자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낚시를 위한 정보는 지역마다 매년마다 바뀔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유럽 몇 개국의 유어낚시관리와 면허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5-35] 유럽국의 유어낚시 관리와 면허제



## 7. 아시아 일부 국가

### 가. 말레이시아의 유어낚시 면허제

말레이시아는 호수나 호소들이 많고 연안의 자연적 조건이 풍부한 유어낚시 자원의 조건을 구비한 국가이다. 따라서 민물낚시와 바다의 스포츠 낚시가 발달되어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낚시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모든 낚시지역에서 실시하지 않고 일부 국가 관리 공원 내에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 관리 공원내의 호수나 강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유어낚시 면허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나. 브루나이의 유어낚시 면허제

브루나이는 지역에 한정된 유어낚시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낚시면허는 수산관련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황색 또는 연두색 주민증을 소지한 내국인에 한하여 면허증을 발급한다. 즉 외국인은 브루나이에서 유어낚시의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유어낚시에서 바다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 낚시의 경우 스포츠낚시 면허증이 필요 없다.

#### 다. 태국의 유어낚시 면허제

태국은 전체 유어낚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일부 지역에서 유어낚시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다.

#### 라. 타이완의 유어낚시 면허제

타이완은 바다유어낚시에 대해서 1993년도에 처음 오락어업관리법을 공고한 후 1995년 1차 수정, 1996년 2차 수정, 1999년 3차 수정을 거쳐서 바다낚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타이완의 오락어업관리법에는 선상낚시 활동뿐만 아니라 육상낚시 활동에 대한 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민물낚시의 경우 조획량 40마리를 제한하는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일 낚시허용에는 허가료, 즉 낚시 입어료를 부과하고 있다.

## 제6장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 관리 모델 검토

본 장에서는 낚시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낚시관리에 대해 현행 체제와 발전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관리 모델 제시를 위하여 주요 선국들의 관리 유형 비교 분석과 더불어 우리나라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 제1절 낚시관리제도 필요성

낚시관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으나, 본 고에서는 자운관리적인 측면과 더불어, 환경적인 측면, 낚시인들의 안전 측면, 현행 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접근하였다.

#### 1. 자원관리 측면

최근 소득과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여가낚시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출조 횟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동 연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여가낚시 인구수는 약 570만(동 연구의 조사결과)으로 추정되나 여가낚시에 의한 어획량은 정확하게 조사된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여가낚시의 비중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본의 대표적 연안어종인 돛류는 이미 여가낚시에 의한 어획량이 상업적 어획량을 훨씬 넘어선 지역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최근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도 여가낚시가 어업자원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해양대기청(NOAA) 수산국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여가낚시에 의한 어획량은 미국 전체 어획량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유어낚시 행위에 대해 바다와 민물로 크게 구분할 경우, 바다낚시는 다시 갯바위, 선상, 트롤링, 원투 낚시로, 민물낚시는 호소대, 루어, 계류, 견지낚시로 각각 세분화된다. 이러한 낚시유형별로 주요 어획어종을 살펴보면 바다낚시에서는 낚시유형(트롤링 제외)에 관계없이 감성돔, 돌돔, 참돔, 뽕에돔 등 돛류가 주요 조획대상 어종인데 반해서 민물낚시는 낚시유형에 따라 주요 조획 어종이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주로 호소대 낚시를 많이 즐기는 것을 감안할 경우 붕어와 잉어에 조획이 편

중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6-1] 유어행위에 의한 주요 조획 어종

순위	바다낚시				민물낚시			
	갯바위	선상	트롤링	원투	호소대	루어	계류	견지
1	자바리	참 돔	돗새치	감성돔	붕어	쏘가리	산천어	누치
2	참 돔	감성돔	새치	황어	잉어	송어	은어	마자
3	돌돔	우럭	재명어	보리멸	향어	배스	누치	꼬리
4	감성돔	능성어	참치	가자미	누치	격지	꼬리	모래무지
5	벵에돔	농어	상어	게르치	꼬리	꼬리	강준치	피라미
6	흑돔	넙치	방어		빙어	메기	마자	
7	벤자리	노래미	삼치		초어		모래무지	
8	농어	가자미	만세기		마자			
9	불락	보구치	넙치		메기			
10	노래미	쏨뱅이	부시리		피라미			
11	학꽂치	열기	가다랭이		모래무지			
12	망상어	고등어			가물치			
13	우럭	갈치			동자개			
14	쏨뱅이	전갱이			뱀장어			
15	쥐치	양태			구구리			

제2장에서 언급한 설문조사에 의한 낚시로 인한 조획량 기초자료를 살펴보면, 연평균 출조횟수는 바다낚시가 많으나, 1회 평균 조획마리수는 민물낚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조획량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 설문조사에 의한 바다/민물낚시의 조획량

구분	바다낚시	민물낚시
연평균 출조횟수	26.9	17.5
1회 출조시 평균 조획 마리수	4.33	9.91
1회 출조시 평균 조획량(kg)	2.20	2.77

위 표의 내용을 토대로 총 어획량의 추정치를 구해보면 먼저, 민물낚시의 경우는 연간 총어획량의 중량은

$$= 1\text{회 출조시 평균조획량(kg)} \times \text{연평균출조횟수} \times \text{민물낚시인구}$$

$$= 2.77 \times 17.5 \times 3795000 = 183962625\text{kg} = \text{약 } 18\text{만 톤으로 추정되었으며,}$$

연간 총 어획 마리수는

$$= 1\text{회 출조시 평균조획 마리수} \times \text{연평균출조횟수} \times \text{민물낚시인구}$$

$$= 9.91 \times 17.5 \times 3795000 = 658147875(\text{마리}) = \text{약 } 6\text{억}6\text{천만}(\text{마리}) \text{ 이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바다낚시의 경우는 연간 총어획량의 중량은

$$= 1\text{회 출조시 평균조획량(kg)} \times \text{연평균출조횟수} \times \text{바다낚시인구}$$

$$= 2.20 \times 26.9 \times 1935000 = 114513300\text{kg} = \text{약 } 11\text{만 톤}$$

연간 총 어획 마리수

$$= 1\text{회 출조시 평균 조획 마리수} \times \text{연 평균 출조 횟수} \times \text{바다낚시인구}$$

$$= 4.33 \times 26.9 \times 1935000 = 225382995(\text{마리}) = \text{약 } 2\text{억}2\text{천}5\text{백만}(\text{마리}) \text{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바다/민물 총 어획량은 연간 약 30만톤으로 나타났으나, 추정에 이용된 기초 자료가 설문조사 내용에 근거하여 계산되어 객관적이고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낚시로 조획되는 것으로 추정된 30만톤은 2004년도 12월 현재, 총 어획량 1,102만톤(연근해어업(일반해면어업) 1,077만톤, 내수면 25만톤)중에서 27.2%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과잉 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보다도 낚시가 더욱 성행하고 있는 미국 및 일본의 경우가 상업적 어획량 대비 조획량이 약 10%정도임을 감안하면, 너무 높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료의 한계를 고려하고, 낚시인들의 개별적인 면담조사, 관련 외국 문헌 및 국내 자료 등을 참고하여 추정하면, 적어도 상업적 어획량의 약 4-5%(약 5만톤 내외)정도는 낚시로 인하여 조획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치는 정확한 것이 아니며, 좀더 정확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관련 자료가 전무한 상황임으로 향후 낚시관련 통계가 구축된다면 현실을 반영한 추정치가 계산될 수 있을 것이다.

조획량의 규모를 떠나, 향후 낚시로 인한 조획량은 자원관리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으로 동 추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조획대상이 되는 물고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낚시관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 할 수 있다.

## 2. 환경관리 측면

여가낚시에 의한 해양생태계 오염 역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가낚시로 인해 발생하는 낚시추, 유실 낚시줄, 떡밥, 기타 쓰레기 등은 연안어장의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들 오염물질 배출량은 현재 연간 9,000톤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향후 여가낚시인구 및 활동 증가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그 심각성이 우려된다.

전체 해양환경오염원의 단순비중에서는 상업적 어업인에 의한 오염, 육상기인으로 인한 오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낚시행위는 제한된 곳에서 그 단위당 오염의 강도가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갯바위나 무인도는 낚시인만이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들 낚시인들에 의한 오염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반 해양환경 오염은 비점원 형태이나 낚시는 그렇지 않다. 즉, 낚시행위 오염은 그 원인이 명확히 보이고 책임소재 또한 뚜렷한 점원형태라는 것이다. 결국 낚시관련 행위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낚시발전을 위한 제도 운영의 원활화를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낚시제도를 실시해야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이 중에서 주요 오염원인 중 하나인 낚시추의 사용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낚시추 사용 일반현황

##### (1) 낚시추 사용 현황

낚시 인구는 약 5백만명으로 추정되며, 낚시터는 전국적으로 약 6천개소(허가업소 570여개소 포함) 산재해 있으며, 낚시용 추의 연간 사용량은 약 1,220톤으로 낚으로 만든 낚시추(납추)가 대부분을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생산업체 현황은 조사 결과, 거의 5인이하 영세 사업장이며 약 50여개의 업체에서 생산·공급(시장규모 연간 약 720억원) 조사되었다.

##### (2) 낚시추 관련 제도 현황

내수면어업법(제9조 및 제18조)에는 유료낚시터의 경우 허가어업으로 관리하고 공공수역에서의 낚시행위는 유어질서(游漁秩序) 확립차원에서 어로시기, 대상, 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수질환경보전법(제38조의 4)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낚시금지구역은 38개, 낚시제한구역은 7개가 있다.

현재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수질 오염과 관련해 떡밥·어분 등의 사용은 제한되고 있으나 납추에 대한 제한은 없다. 하천법(제71조)에는 하천의 이용목적, 수질상황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의 떡밥·어분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미

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제5조) 및 한강 특별법(제6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팔당댐~잠실수중보 구간의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3) 국내외 동향

국내에선 일부 지자체, 환경단체에서 낚추 사용 자제 캠페인 및 공청회 등을 전개한 바 있으며, 낚시추에 대한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2001년 1월 8일에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독일, 캐나다에서 낚 대체 제품에 대해 환경마크를 부여하고 있고, 대부분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일부 선진국에서는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제한이유는 낚성분의 용출로 인한 수질오염보다는 1온스 이하의 작은 낚추를 물새 등이 모래와 함께 섭취하여 체내에 낚성분이 농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미국 뉴햄프셔주는 1998년부터 사용 규제, 뉴질랜드도 1987년부터 낚추 사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외국의 낚시용 낚추 규제 현황을 국가별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경우 1998년부터 뉴햄프셔(New Hampshire) 주에서는 낚이 함유된 1온스 및 1인치 이하의 낚시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25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메인(Maine) 주는 2002년부터 뉴욕(New York) 주는 2004년부터 1/2온스 이하의 낚성분이 함유된 낚시추의 판매·사용 금지했으며, 미네소타(Minnesota) 주에서는 2002년 낚성분이 함유된 낚시추의 판매·사용을 금지하는 환경보전법 수정안을 고려하였으나, 의견수렴 후 낚시인들의 교육을 통한 사용 자제로 방향 선회하였다.

영국에서는 1987년부터 낚성분이 함유된 낚시추의 판매·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1997년부터 국립공원 지역에서 낚이 함유된 50그램 이하의 낚시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에서는 1987년부터 낚성분이 함유된 낚시추로 인한 물새의 납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8.3그램 이하의 낚시용 낚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나. 문제점

##### (1) 낚추로 인한 수질오염 가능성

납은 금속 성분으로 용해성이 없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 납시용 납추로부터 납 성분이 용출되어 수질을 오염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2002년 수질측정망 측정결과 국내 하천·호소에 납 성분이 검출된 사례는 없으며, '02년도에 370여개 유료납시터를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납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납시터에서 납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납추의 납성분 용출 가능성 등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조사·분석한 결과 자연수에서는 납용출이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산성화된 물에서는 납의 용해속도가 빠르게 일어나 용출 등으로 인한 유해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다량의 납추가 호소 바닥 등에 퇴적될 경우 장기적으로 동·식물 등에 영향을 주어 잠재적인 수질오염원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충청남도 실태조사 자료('00. 1)를 근거로 살펴보면, 연간 추정 사용량 1,220톤 중 약 67%인 816톤이 유실되어 공공수역(바다, 하천, 호소)으로 배출되고 있다. 특히 민물납시의 경우엔 5g정도의 납시추를 사용하나, 바다납시의 경우 20g 이상의 납시추를 사용하고 있어 유실되는 양이 민물납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 (2) 친환경 제품의 활용도 저조

국내 개발된 친환경 납시추 제품의 종류가 매우 적고 홍보·인식 부족으로 판매자·소비자 모두 사용을 외면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내 일부업체에서 납 제품을 대체하여 세라믹, 황동금추, 야광추 등의 재질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가격·비중·가공성 등이 납추에 비해 불리하여 활용도는 저조한 실정이다.

[표 6-3] 납시용 납추와 세라믹 추의 비교

구 분	납 추	세라믹추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이 저렴(4~5백원)</li> <li>· 마찰계수가 작고 내식성 우수</li> <li>· 녹는점이 낮고 가공이 용이</li> <li>· 비중이 크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식성, 내열성, 내마모성 우수</li> <li>· 환경친화적 재료 사용</li> </ul>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사용단계에서 환경오염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이 다소 비쌈(납추의 2~3배)</li> <li>· 납추 제조설비에 비해 많은 설비를 요함</li> <li>· 정교한 무게조절 불가능</li> </ul>

자료: (사)환경마크협회

## 다. 개선대책

### (1) 법·제도 개선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낚시발전 방안 마련시 낚추 사용을 규제하는 규정을 마련토록 건의하여 낚시인들의 낚추 사용 자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낚추가 수질오염과 인과관계가 미미하므로 수질환경보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내수면어업법시행령(제14조 유어행위 등의 제한)에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수 있는 어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에 낚추 사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나, 선진국처럼 조류 등의 보호를 위하여 낚추 사용을 제한할 경우는 자연환경보전법이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령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 (2) 친환경적인 제품 사용을 위한 홍보 강화

낚시업 중앙회, 낚시 동호회, 환경단체, 지자체 등과 함께 낚시인들을 대상으로 낚추 사용 자제 홍보 강화하고 친환경적 제품 사용의 권장, 필요량 이상의 낚시추 사용 자제, 납성분 낚시추의 유실방지 계도를 추진하여야 한다.

### (3) 친환경적 낚시추에 대한 소비자 사용 유도

현재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세라믹 추 외에 다양한 친환경적인 제품을 개발시, 환경마크를 적극 부여하여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 (4) 납성분에 의한 하천·호소 수질오염실태 주기적 감시

하천수, 호소수, 상수원수 수질측정망 측정지점에 대한 정기(연 4회) 수질측정을 통해 납오염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 3. 낚시인의 안전관리 측면

낚시관리제 도입의 필요성 중에서 낚시인들의 안전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낚시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으나, 해양경찰청의 낚시어선 사고 현황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02-'04) 사망 및 실종이 29명이고, 낚시어선들의 충돌, 좌초침몰, 부두충돌 등이 24건으로 나타나 낚시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낚시로 인한 안전 사고는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실정이고, 기존의 자료도 모든 낚시인들의 사고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낚시인들의 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낚시 행위시 주의 사항에 대한 지침 등이 없는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낚시어선 사고현황('02~'04)

연도	원인별(건)				인명피해(명)		
	계	충돌	좌초침몰	부두충돌	계	사망/실종	구조
계	24	15	8	13	156	29	127
'02	2	2	-	1	37	21	16
'03	8	4	4	1	57	2	55
'04	14	9	4	1	62	6	56

자료: 인천해양경찰청

### 4. 낚시관리 제도 측면

낚시(낚시터/낚시선 포함)행위의 규제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중앙부서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 5개부가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중에서 낚시관련 해당되는 법령은 해양수산부가 8개법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각각 3개, 농림부 2개, 문화관광부가 1개로 나타났다.

[표 6-5] 낚시관련 현행 법규 현황

소관부처	법률명	낚시관련 연관성 정도	법령개수
총 계	5개부, 직/간접 17 법령 해당		
해양수산부	낚시어선업법	직접	8개법 (직접: 3개) (간접: 5개)
	내수면어업법	직접	
	수산업법	직접	
	어선법	간접	
	어항법	간접	
	연안관리법	간접	
	항만법	간접	
	해상교통안전법	간접	
환경부	수질환경보전법	직접	3개 (직접3개)
	자연환경보전법	직접	
	호소수질관리법	직접	
	수도법	직접	
건설교통부	하천법	직접	3개 (직접:2개) (간접1개)
	댐건설주변지역지원등 에관한법	간접	
	농지법	간접	
농림부	산림법	간접	2개
	문화재보호법	직접	
문화관광부	문화재보호법	직접	1개

주) 직접 : 낚시관련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제하는 법

간접 : 낚시관련 조항이 있거나 연관되어 있는 법

자료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낚시면허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2002, p.66

이중에서 낚시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중앙부처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건교부, 문화관광부 등 5개 기관이 해당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양수산부의 경우는 낚시터(해면/내수면), 낚시어선업자, 낚시행위 규제 등 낚시관련 총괄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나머지 3개 기관들은 수질환경/천연기념물 보전 및 보호 등의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수면에서의 낚시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낚시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4개 부처를 중심으로 해당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낚시관련 법/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 가. 부처별 낚시관련 법/제도

##### (1) 해양수산부

##### (가) 수산업법

수산업법 제2조(정의)에서 "유어"라 함은 낚시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55조(유어

장의 지정 등)에서는 ①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어업인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당해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역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 또는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지정 받아 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40) ②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기타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③유어장의 지정, 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의 조성, 포획·채취 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포획·채취방법 기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는 제8조·제41조 및 제44조의 규정에서 정한 어업외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유어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료낚시터및체험어장의지정·관리에관한규칙에서는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 어장안의 유료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수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40)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 어장안의 유료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자연실습장·관광어장)임

[표 6-6]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의 지정요건

근 거 법	지 정 요 건
유료낚시터및체험어장의지정·관리에관한규칙 제2조	1.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 이용대상 수산자원이 풍부한 수면일 것
	2. 해당수면과 연결한 육지의 지형이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 이용자가 장시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것
	3. 다른 면허어업의 조업에 지장이 없는 수면일 것

관리자<sup>41)</sup>는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6-7]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의 시설기준

근 거 법	시 설 기 준
유료낚시터및체험어장의지정·관리에관한규칙 제2조	1.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자 및 도구 2. 간이화장실시설 3. 폐기물을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시설 4. 입간판 5. 기타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 이용자의 편의시설

또한 관리자는 동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에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표 6-8]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의 수산자원조성 등

근 거 법	주 요 내 용
유료낚시터및체험어장의지정·관리에관한규칙 제10조	1. 연 1회이상 수산종묘의 방류등의 수산자원 조성 2. 월 1회이상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과 그 주변 수면에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오물의 제거 3. 주 1회이상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주변 해안에 대한 청소

다음으로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의 관리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이용증을 교부하여야 한

41) 수산업법상 낚시터 및 체험어장의 관리자는 어촌계 또는 지구별 조합을 가르킴(수산업법 제55조)

다. 이용료 사용에 있어 관리자는 징수한 이용료를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표 6-9]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 이용료 사용용도

근 거 법	사 용 용 도
유료낚시터및체험어장의지정·관리에관한규칙 제12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낚시터의 유지·관리</li> <li>2.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안의 수산자원의 조성 및 해적생물 없애기</li> <li>3.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의 공동기금조성 및 복지시설</li> <li>4.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li> </ol>

또한, 관리자는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수산자원보호와 이용자의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용의 제한·금지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6-10]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 이용의 제한/금지

근 거 법	이용의 제한/금지
유료낚시터및체험어장의지정·관리에관한규칙 제14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어린고기의 포획금지 및 이의 포획시 방류</li> <li>2. 수산자원보호령에 규정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의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의 준수</li> <li>3. 이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의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 이용의 금지</li> <li>4. 폭풍우등으로 인하여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이용에 위해가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의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 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li> <li>5. 음주자의 야간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이용 금지</li> </ol>

동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30일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표 6-11] 불법 유어장 운영시 과태료 부과 현황

근 거 법	위반내용	과태료	과태료 부과 주체
수산업법 제98조	불법 유어장 운영한 자	500만원 이하	행정관청 부과·징수

물고기자원 보호측면에서 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비어업자의 포획·채취의 제한)에서는 어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외의 어구 또는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업자가 아닌 자는 밀양강·남강 및 덕천강에서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섬진강·탐진강의 본류에서는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외줄낙시 또는 두리그물을 사용하여 은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영 이외의 어업자가 아닌 자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표 6-12] 일반인들이 내수면/해면에서 포획/채취 가능 및 금지한 종류

근 거 법	포획/채취 가능 종류	금 지
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	1. 투망 2. 쪽대·반두·4수망 3. 1본조(대낙시 또는 손줄낙시) 5. 가리·외통발 6. 낫대(비료용 해조에 한함) 7. 집게·갈구리 8. 손	- 6.1~10.31 : 밀양강, 남강 및 덕천강 - 6.15~9.15 : 섬진강본류에서 외줄낙시, 두리그물 이용 은어 포획 금지 섬진강 본류에서 외줄낙시 두리그물 이용 은어 포획 금지

지금까지 살펴 본바와 같이, 수산업상에서 낙시와 관련된 조항은 유어장(遊漁場) (체험학습 또는 낙시 등 관광용 어장)에 한정하여 관리자에 대한 규정, 유료낙시터 이용자에 대한 제한/금지, 불법유어장 운영에 대한 과태료 등 있으며, 수산자원보호령에서는 물고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일반인들에게 포획/채취가 가능한 종류와 일정기간 금어기를 규정하고 있다.

(나)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내수면"이라 함은 하천·댐·호소·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내수면어업"이라 함은 내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내수면어업의 종류는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자망어업 등이며,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수면어업에서 유료낚시업을 허가하고 있는 사항이다. 유료낚시터는 허가에 있어 지역어업인들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법인·기타단체에 우선순위가 있으며, 운영 및 낚시료는 자율에 맡겨지나, 시·도의 「낚시터 관리규칙」은 준수토록 되어 있다. 무료낚시터의 경우도 「내수면어업법」 제 18조(유어질서)의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표 6-13] 내수면어업의 종류

종 류	내 용
자망어업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종묘채포어업	양식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채포하는 어업
연승어업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패류채취어업	형망 또는 기기를 사용하여 패류 기타 정착성동물을 채취 또는 포획 하는 어업
낚시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기타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업
낭장망어업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각망어업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또한, 동법 시행령 제18조(유어질서)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42)</sup>

동법 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제1항에서는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遊漁行爲)를 하는 자는 해당하는 어구 또는 방법외의 수단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42) 동법 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에 대해서도 금지시키고 있음

[표 6-14] 내수면에서 유어행위(遊漁行爲)가 가능한 종류

근 거 법	유어행위 가능 종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1.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2. 쪽대·반두·4수망(四手網) 3. 가리·외통발 4. 집게·갈구리·낫·호미 5. 손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6-15] 유어행위를 제한할 경우 고려사항

근 거 조 항	고 려 사 항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1. 제한하고자 하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자원량 등 수중생태계 현황 2. 제한하고자 하는 수면에서 유어행위로 인한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현황 4.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 등기타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5. 수산자원의 산란·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하는 때에는 고려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당해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 6-16] 유어행위 제한시 고시사항

근 거 조 항	고 시 사 항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1.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제한하고자 하는 시기·대상 등 제한사항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기타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어행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관할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

어 있고, 제5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의 규격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는 수산업법 제98조의 불법유어장 운영시와 거의 유사하며, 과태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동법 시행령 제18조(과태료) ①행정관청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부과금액은 30만원이며,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표 6-17] 유어질서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제3항관련)

위반 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 금액
내수면어업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유어질서위반한 자	법 제27조제1항제2호	30만원

주) 행정관청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 기준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내수면어업법에서는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낚시행위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낚시장소, 고기크기, 낚시수 제한, 시간제한 등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 낚시어선업법

낚시어선의 이용 및 안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낚시어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어가(어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낚시어선업법이다(동법 제1조).

"낚시어선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하천·호소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토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낚시어선"이라 함은 어선법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말한다. "낚시어선업자"라 함은 어선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동법에서는 낚시인들에 대한 규제보다는 낚시어선업자들에 대한 불법영업(미신고 영업행위), 인명 안전에 관한 설비, 낚시어선의 검사, 안전점검, 사고발생보고, 낚시어선업 폐쇄 및 정지이후 위반 등에 대하여 규정한 법이다. 즉,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기타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규정한 법으로써, 위반시 다음과 같은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sup>43)</sup>

[표 6-18] 낚시어선업법 위반시 벌금 현황

근거법	위 반 내 용	벌 금
낚시어선업법 제22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1백만원이하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	
	낚시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사고발생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낚시어선업이 폐쇄 또는 정지된 후 낚시어선업을 한 자	

(2) 환경부

(가) 수질환경보전법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

43) 낚시어선업법 제22조(벌칙)

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표 6-19] 낚시제한 관련 수면의 용어 정의

용어	내용	비고
공공수역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4항
호소	만수위(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구역안의 물과 토지 - 댐·보 또는 제방(砂防사업법에 의한 砂防시설을 제외)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7항
상수원 호소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밖에 있는 호소 중 호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취수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호소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호소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곳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9항

수질환경보전법에 정한 공공수역, 호소, 상수원 호소 등에서는 동법 제38조의4에 의하여 낚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낚시금지 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수면관리자와 협의).<sup>44)</sup>

또한, 낚시제한구역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의 방법·시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쓰레기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4) 낚시금지구역 : 일정기간 낚시행위 전면금지

낚시제한구역 : 원칙적으로 낚시를 허용하되, 낚시방법·시기·어종등을 규제하며 쓰레기 수거·처리비용 징수

[표 6-20] 낚시제한구역에서의 낚시인에게 쓰레기 처리비용 수수료 징수

근거법	내 용	비 고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4	쓰레기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낚시인에게 수수료를 징수	일부지자체 시행중

동법 시행령 제43조의4(낚시금지구역의 지정 등)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동법 제38조의4제1항의 규정<sup>45)</sup>에 의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표 6-21] 낚시 금지/제한구역의 지정시 고려 사항

근거법	지정시 고려 사항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4의 제1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호소의 이용목적</li> <li>2. 오염원 현황</li> <li>3. 수질오염도</li> <li>4.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현황 및 처리여건</li> <li>5. 호소의 연도별 낚시인구 현황</li> <li>6. 서식 어류의 종류·양 등 수중생태계 현황</li> <li>7.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li> </ol>

또한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은 낚시방법 제한 행위, 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에 의한 포획금지에 관한 사항,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sup>45)</sup> 시장·군수·구청장은 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낚시금지 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

[표 6-22] 낚시터 제한구역에서의 제한 사항

근거법	제한 사항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낚시방법 제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li> <li>-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어선업법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낚시 제외)</li> <li>-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li> <li>-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 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li> <li>-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똥·오줌을 누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식물을 짓는 등 호소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li> <li>-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축전지·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 제외)</li> </ul> </li> <li>2. 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에 의한 포획금지에 관한 사항</li> <li>3.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li> </ol>

동법에서는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에서의 낚시행위를 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동법 제57조에서는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60조에서는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6-23] 수질환경보전법상 낚시금지/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시 벌칙 및 과태료

근거법	위반 행위	벌칙 및 과태료
수질환경보전법 제57조 제10항3	낚시금지구역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수질환경보전법 제60조 제2항7	낚시제한구역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나) 호소수질관리법

동법은 호소수질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호소수의 이용목적에 따른 수질보전대책의 수립·시행을 통하여 깨끗한 호소수의 보전·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호소, 공업용으로 이용되는 호소, 상수원·농업용 및 공업용의 이용목적 중 두 가지 이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호소, 이외 호소의 수질관리를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동법 제3조).

동법 제13조에서는 낚시금지구역·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항은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 4(낚시행위의 제한)에 규정한 내용과 동일하다(낚시금지구역 : 14개소, 낚시제한구역 : 3개소가 지정).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동 조항도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4의 규정과 동일하다.

동법에서도 낚시금지구역·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 행위를 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 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표 6-24] 낚시금지/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시 벌칙 및 과태료

근 거 법	위 반 행 위	벌칙 및 과태료
호소수질관리법 제18조 제2항	낚시금지구역 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호소수질관리법 제20조 제2항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다) 자연환경보전법

동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며,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낚시행위와 관련된 내용은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특정어종들의 낚시행위 금지라고 할 수 있는데, 동 지역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로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표 6-25] 생태계보전지역의 구분

구 분	내 용
야생동·식물특별 보호구역	멸종위기야생 동·식물 또는 보호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생태계특별 보호구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해양생태계특별보호구역외의 지역으 로서 자연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또 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지역
해양생태계특별 보호구역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동법 제20조 (생태계보전지역등에서의 행위제한)에서는 ①누구든지 생태계보전지  
역안에서는 생태계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  
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  
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행위제한시 내용중 낚시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야생동·식물(생태계특별보호구역안에서는 모든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이다.

[표 6-26] 자연환경보전법상 멸종위기/보호어종 현황

구 분	대상 어종
멸종위기종	5종(감돌고기, 흰수마자, 미호종개, 통사리, 꼬치동자개)
보호어종	7종(다묵장어, 묵납자루, 모래주사, 두우쟁이, 부안종개, 줍수수치, 꺾지기)

자료 : 자연환경보전법의 제46조 규정

[표 6-27]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위반 시 벌칙 현황

근거법	위반사항	벌칙
자연환경보전법 제62조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자연환경보전법 제63조	멸종위기야생식물을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사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500만원이하의 벌금
자연환경보전법 제65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덧·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등을 살포·주입한 사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3) 건설교통부

(가) 하천법

이 법은 하천의 우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과 하천환경의 정비·보전을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 제71조(하천에 관한 금지행위)제4호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의 야영, 취사와 떡밥·어분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하천법시행령 제50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에서는 시·도지사는 법 제7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야영·취사 및 낚시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천의 이용목적, 오염원의 현황, 수질오염도, 인근지역의 쓰레기발생 및 처리현황, 서식어류의 종류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낚시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85조(벌칙)제6항에서 동법 제71조제4호(하천에 관한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불법낚시행위에 대한 벌칙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없다.

[표 6-28] 하천법에 의한 낚시행위 위반 시 내용

근거법	위반내용	과태료 및 벌칙금
하천법제85조제6항	낚시행위 금지	제외(없음)

(나) 수도법

이 법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동법 제5조(상수원보호구역지정 등)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 규정이 있으나, 낚시행위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고, 다만 동법 제5조 제2항에 「기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두고 있을 따름이다.

(4) 문화관광부

(가)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낚시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동법 제20조에는 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천연기념물 지정 어종은 문화재 보호법 제6조에 의거, 문화재 청장이 지정하며, 지정된 어종은 4종으로 무태장어, 어름치, 열목어, 황쏘가리 등이다.

[표 6-29] 천연기념물 지정 어종

구 분	대상 어종
천년기념물 지정	4종(무태장어 및 서식지, 어름치, 금강의 어름치, 열목어 및 서식지 2개지역, 한강의 황쏘가리)

동법 제90조(행정명령위반등의 죄)제5항에서는 천연기념물(시·도지정문화재중 기념물 포함)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동물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6-30] 문화재보호법상 벌칙 규정

위반사항	벌칙	비고
천년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동물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를 한 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문화재보호 법제90조제5항

나. 낚시관련 법/제도 문제점

(1) 일정한 분야에 제한적 규제

현행 낚시관련 법/제도로써 먼저, 해양수산부 소관 법규인 수산업법/내수면관리법/낚시어선업법 등으로 이들 법에서의 낚시관련 규정들은 물고기 자원관리를 위한 낚시규제와 유어질서(낚시행위)를 위한 규제, 낚시어선업자(내수면/해면) 규제 등이 목적이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낚시행위에 대한 내용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유어장관리자/유료낚시터운영자/낚시어선업자 등에 대한 규제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경부의 경우는 낚시관련 법규는 수질환경보호법/호소수질관리법/자연환경보전법 등 3개 법률이 있으며, 이들 법률의 낚시에 대한 규제의 목적은 대부분 내수면(내수면 중심)에 대한 수질관리와 생태계 보존을 위한 것이다. 특히 수질환경보전법과 호소수질관리법에서의 낚시행위에 대한 규제는 거의 동일하고, 동 법들에서는 낚시행위 금지/제한 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으며, 수질관리를 위하여 매우 세부적인 낚시행위에 대한 규제조항은 있으나, 대상어종 등 어족자원관리에 대한

제한(포획대상어종, 1인당 몇마리, 크기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건설교통부 소관 낚시 관련 법령으로는 하천법과 수로법에서 낚시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하천법의 경우는 낚시 등의 금지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벌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보호수역에서 포획/채취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의 벌칙규정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낚시행위에 대하여도 소관부처의 업무특성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낚시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해양수산부는 물고기자원을, 환경부는 수질환경보전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법들과 물고기자원보호를 위한 관련법들이 다양하게 제정되어 있지만, 각각의 규제법들의 내용이 수환경 보호나 물고기자원 등 일정분야에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모호하다. 따라서 관련 기관들 간의 정책의 난맥상이 상당부분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도 요망된다.

[표 6-31] 낚시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해당부처	법령	낚시규제 목적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	수산업법	- 어족자원관리 - 유어질서 유지	- 유어장 관리자에 대한 규정 - 이용자에 대한 제한/금지 -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낚시 금지
	내수면어업법	- 어족자원관리 - 유어질서 유지	- 낚시행위 제한지역의 위치 - 낚시행위 제한시기/대상 - 위반자에 대한 벌칙
	낚시어선업법	- 유어질서 유지	- 낚시어선업자들에 대한 규정
환경부	수질환경보전법	- 수질관리	- 낚시행위 금지/제한구역 설정 - 낚시행위 제한 - 제한 낚시행위시 벌칙 및 과태료
	호소수질관리법	- 수질관리	- 수질환경보전법 거의 유사
	자연환경보전법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지역에서 행위 제한 - 위반시 벌칙 조항
건설교통부	하천법	- 하천관리	- 낚시등의 금지지역 지정
	수로법	- 상수원보호	- 대통령령으로 금지규정, 과태료 없음
문화관광부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 보호	- 보호구역안에서의 포획채취 행위 - 위반시 벌칙규정

자료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낚시면허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2002, p.89

(2) 낚시행위 가능/금지에 대한 감시

낚시관련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낚시행위 가능/금지 내용을 살펴보면, 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에서는 해면에서 가능한 행위를 8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는 내수면에서 가능한 행위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낚시행위의 금지 및 제한의 경우는 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에서 금어기와 금지 장소를 규정하고 있고,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낚시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공익요원들의 감시의 전문성 부족과 인식의 결여 등으로 인해 제대로 감시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종류는 많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있다. 또한 일부의 시민단체들이 관리를 맡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시민단체들의 예산, 인력, 관심 등의 부족으로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런 법률상의 각종규제들은 형식적으로 존재할 뿐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낚시터 환경보호나 물고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에 있다.

[표 6-32] 일반인들의 낚시행위 가능/금지 내용 분석

근거법	가능	금지/제한
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	1. 투망 2. 쪽대·반두·4수망 3. 1본조(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5. 가리·외통발 6. 낚대(비료용 해조에 한함) 7. 집게·갈구리 8. 손	- 6.1~10.31 : 밀양강, 남강 및 덕천강 - 6.15~9.15 : 섬진강본류에서외줄낚시, 두리그물 이용 은어 포획 금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1.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2. 쪽대·반두·4수망(四手網) 3. 가리·외통발 4. 집게·갈구리·낚·호미 5. 손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	1. 낚시방법 제한 행위(낚시제한구역) -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 바늘을 떡밥과 묶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2. 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에 의한 포획 금지에 관한 사항 3.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불법 낚시행위 위반시 법집행 실효성

불법 낚시행위에 대한 법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리를 공무원·공익근무요원 등을 통해서 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3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 1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 징역은 1년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등이다.

가장 많은 과태료의 경우 부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또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낚시행위 위반 시 과태료, 벌금, 징역에 대하여 국민들이 특히, 낚시인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법 집행의 실효성에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표 3-33] 낚시인에게 이용료 및 처리비용 수수료 부과 근거 분석

근 거 법	내 용	비 고
유료낚시터및체험어장의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의 관리자는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이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용료사용은 관리자는 징수한 이용료를 일정한 용도에 사용	수산업법 제55조 근거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4 (호소수질관리법 제13조)	쓰레기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낚시인에게 수수료를 징수	일부지자체 시행중

[표 3-34] 불법 낚시행위시 벌칙/과태료 부과 현황

근거법	위반내용	벌칙/과태료
수산업법 제98조	불법 유어장 운영한 자	과태료 500만원이하
내수면어업법제27조	유어질서 위반한 자	과태료 30만원
낚시어선업법 제22조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 - 낚시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 사고발생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낚시어선업이 폐쇄 또는 정지된 후 낚시어선업을 한 자	벌금 1백만원이하
수질환경보전법 제57조 제10항3	낚시금지구역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수질환경보전법 제60조 제2항7	낚시제한구역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	50만원이하의 과태료
호소수질관리법 제18조 제2항	낚시금지구역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호소수질관리법 제18조 제2항	낚시제한구역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자연환경보전법 제62조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자연환경보전법 제63조	멸종위기야생식물을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사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하천법제85조제6항	낚시행위 금지	제외(없음)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5항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동물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를 한 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자료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낚시면허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2002, p.92

#### (4) 낚시행위에 대한 법률적 용어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에서는 낚시행위를 수산업법 제2조(정의)에서 "유어"라 함은 낚시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유어 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하여 환경부 소관 법률에서는 낚시행위로 언급되어 있다.

이와 같이 낚시에 대한 법률적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해양수산부의 경우는 상업적어업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그 외의 부처는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낚시 행위에 대하여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법 체계상이나 낚시라는 레저에 대해 「유어행위」라는 용어 자체가 낚시인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3-35 해당되는 법규의 낚시행동에 대한 용어 분석

해당부처	법 규	해당법률상 용어
해양수산부	낚시어선업법	-
	내수면어업법	유어행위
	수산업법	유어행위
환경부	수질환경보전법	낚시행위
	자연환경보전법	-
	호소수질관리법	낚시행위
건설교통부	수도법	-
	하천법	낚시행위
문화관광부	문화재보호법	-
농림부	산림법	-

자료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낚시면허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2002, p.94

## 제2절 낚시관리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낚시관리제도에 대하여 2003년 1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전국 유·무료 낚시터를 대상으로 한 직접 면담조사와 인터넷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총 3,900부의 설문지가 회수 되었으나, 설문답안의 신뢰성 검토 결과, 최종 3,623명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 1. 현행 낚시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현재의 낚시여건이나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낚시

인구의 4분의 3이상인 77%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 낚시여건에 대하여 불만족의사를 표시한 2,781명에 대하여 낚시관리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질문한 결과, 이들의 65%에 달하는 1806명이 찬반의견을 표시하였는데, 그 중에서 절반을 조금 넘는 54%가 찬성의견을 나타내었다.

한편, 낚시관리제도가 도입된다는 전제하에서 관리주체가 누가 되어야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65%에 달하는 절대다수가 정부와 낚시업계 등의 낚시단체와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정부라는 답변은 13%에 불과하였다. 또한 현행 낚시여건에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불법낚시(뺑치기, 밧테리질 등)의 규제가 39%, 낚시인의 소양교육이 28%, 그리고 과도한 조획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19%로 대부분의 의견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지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낚시관리제도의실시로 수익금이 발생한다면 그 재원의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과반수(56%)가 주대상어종의 어족자원 방류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다음으로 현재의 낚시여건에 대하여 불만족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에 달하는 응답자(50.06%)가 낚시터의 환경오염 및 편의시설이 미비한 점이라 답하였으며, 낚시터의 입어료 등 과도한 낚시비용(25.36%), 어자원의 부족에 따른 조과의 부족(14.85%)도 그 뒤를 따랐다. 또한, 어자원의 고갈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역시 불법어구를 동원한 남획이라고 생각하는 낚시인구가 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앞서의 질문에서 현 낚시여건에서 시급하게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일관성 있는 답변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불법적인 낚시행위 뿐만이 아니라 외래어종의 확산에 따른 생태계의 교란 현상이 어자원고갈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낚시인도 40%에 달하였다. 낚시터 수질오염의 원인에 대해서는 59%가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축산 및 공장 오폐수를, 그리고 25%가 인근 주민들의 생활쓰레기나 생활하수의 유입이 원인 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낚시인의 떡밥이나 쓰레기의 투기와 같은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12.54%만이 긍정하는 대답을 하였다.

이제까지 낚시터의 어자원확보와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57%가 낚시인 및 낚시단체를, 28%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를 지적한 반면, 지방자치단체(10.84%)나 중앙정부(4.4%)의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낚시가 주 5일 근무시대에 국민의 근전한 여가선용의 수단으로 발전하기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이 필요한 것은 정부 부처 내에 낚시전담부서의 설립을 통한 국민의 건

전한 레저문화육성이라고 답한 의견이 49%에 달하고 낚시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의 재정 및 개정이 2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관리제도의 모형에 대한 설문에는 유료낚시터의 면허권자에게 낚시터를 관리할 권한과 수질 및 어자원보전의 책임을 부여하는 일본식의 제도를 낚시면허증을 구입한 후에 지정된 모든 낚시터에서 무료로 낚시하는 미국식 라이선스제도보다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낚시면허제의 실시를 도입한 이후의 유료낚시터의 운영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완전히 무료로 개방되어야한다는 의견이 63%, 낚시면허제와는 별개로 계속해서 돈을 받아야한다는 의견이 36%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낚시관리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낚시면허제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8%, 낚시가 수질오염 및 어자원고갈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올바른 레저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캠페인이 오히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이라는 의견도 25%씩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6] 낚시관리제도에 대한 인식도

설문내용	응답자수(명)	응답비율(%)	
현 낚시여건에 대한 만족도	만족	842	23.24
	불만족	2,781	76.76
낚시여건 개선사항	조획량 제한	332	18.78
	출조일수 제한	32	1.81
	낚시인 소양교육	492	27.83
	금어기 및 금지지역 설정	175	9.9
	미끼(밑밥)사용 제한	36	2.04
	불법낚시 규제	693	39.2
	기타	8	0.45
낚시관리제도 도입	찬성	970	53.71
	반대	836	46.29
낚시관리제도 도입 반대 이유	수질오염 및 자원고갈과 무관	460	25.30
	면허제의 관리적 실효성 없음	510	28.05
	현 낚시제도 보완으로 충분	206	11.33
	올바른 낚시태저 문화 선행(정부주도)	450	24.75
	기타	192	10.56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관리제도 유형	일본식 제도	805	44.28
	미국식 제도(쿠폰제+무료)	628	34.54
	독일식 제도(면허제+유료)	175	9.63
	기타	210	11.55
낚시관리제도 수익금 사용방안	방류사업	950	55.85
	낚시터 시설 및 여건 확충	194	11.41
	불법낚시 감시비용	217	12.76
	환경 및 수질오염 개선	331	19.46
	기타	9	0.53

## 2. 종합적인 낚시 발전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낚시인구의 여론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통한 우리나라 유어낚시의 종합적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005년 9월 10일에서 20일까지 낚시 관련 웹사이트 ([www.dinak.co.kr](http://www.dinak.co.kr))를 이용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719명의 응답자 가운데 546명의 유효응답을 설문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설문조사를 통하여 유어낚시의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단기, 중기 및 장기의 시기적인 구분을 통하여 낚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급한 정책과제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도출하려 하였으며 유어낚시의 발전방안과 관련한 홍보수단과 그 내용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어낚시관리제도와 관련한 주무부서의 설치 및 역할과 그 소속부처에 관한 낚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고, 유어낚시관리제도의 법적 토대 마련과 관련한 낚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표 6-37] 정부의 단기정책의 우선순위

정부가 단기 대책으로 추진할 사항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단기 대책이란 지금 당장 서둘러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빈도수	백분율
① 유어핸드북(교육·홍보 및 조희 대상 어종, 지역별 정보 등을 포함)의 발간	302	18.44%
② 정부차원의 낚시관련 사이트 운영	120	7.33%
③ 낚시단체의 단일화 및 역할분담을 위한 낚시단체의 육성	146	8.91%
④ 전국 낚시대회 등의 정부차원 후원 및 지원	113	6.90%
⑤ 낚시터의 개발 및 환경조성	384	23.44%
⑥ 낚시관련 통계자료 수집체계의 개발	136	8.30%
⑦ 환경친화적 낚시용구 기준 작성 및 제시	437	26.68%
합 계	1,638	100%

정부의 단기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기 대책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환경 친화적 낚시용구 기준 작성 및 제시(26.68%)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낚시단체의 단일화 및 역할 분담을 위한 낚시단체의 육성(24.44%), 유어핸드북(교육·홍보 및 조희 대상 어종, 지역별 정보 등을 포함)의 발간(18.44%) 순으로 선택을 하였다.

[표 6-38] 정부의 중기정책의 우선순위

정부가 중기 대책으로 취해야 할 아래 사항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중기대책이란 향후 2, 3년 안에 완성해야할 사항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빈도수	백분율
① 낚시인을 위한 유어규칙의 제정	258	15.75%
② 낚시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208	12.70%
③ 유어장 지정운영의 확대	59	3.60%
④ 낚시전용 종량제 봉투 실시	251	15.32%
⑤ 낚시관련 통계자료 체계 구축 및 실시	93	5.68%
⑥ 낚시터 안전보장 시스템의 개발 및 확보	221	13.49%
⑦ 주요 낚시어종별 생태환경 및 지속적인 자원조성	400	24.42%
⑧ 낚시관련단체와 지자체 등과의 협조를 위한 낚시업무 전담과 개설	148	9.04%
합 계	1,638	100%

정부의 중기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기 대책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주요 낚시어종별 생태환경 및 지속적인 자원조성(24.42%)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낚시인을 위한 유어규칙의 제정(15.75%), 낚시전용 종량제 봉투 실시(15.32%) 순으로 선택을 하였다.

[표 6-39] 정부의 장기정책의 우선순위

정부가 장기 대책으로 취해야 할 아래 사항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장기 대책이란 향후 4, 5년 안에 완성해야할 사항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빈도수	백분율
① 신뢰성 높은 통계자료구축을 통한 낚시인/낚시산업 지원방안 검토	334	20.39%
② 낚시티켓제, 전용종량제 봉투, 수익금 기금화 방안 등의 낚시관리제도 도입	204	12.45%
③ 올바른 낚시 문화 홍보 및 지도를 위한 선도그룹 결성 및 지원 방안 검토	361	22.04%
④ 낚시관련업무 관련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4	133	8.12%
⑤ 낚시인을 위한 낚시관련 현행 법령의 통합/제반제도 정비 방안 검토	337	20.57%
⑥ 낚시관련 종합 웹 사이트를 구축하여 낚시인들의 통합된 의견 수렴	269	16.42%
합계	1,638	100%

정부의 장기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장기 대책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올바른 낚시 문화 홍보 및 지도를 위한 선도 그룹 결성 및 지원 방안 검토(22.04%)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낚시인을 위한 낚시 관련 현행 법령의 통합/제반제도 정비 방안 검토(20.57%), 신뢰성 높은 통계자료 구축을 통한 낚시

인/낙시산업 지원방안 검토(20.39%) 순으로 선택을 하였다.

[표 6-40] 유어핸드북의 내용

유어낙시 발전방안에서 유어핸드북에 포함될 아래 내용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빈도수	백분율
① 낙시유형별 어구, 어법의 소개	208	12.70%
② 조획대상 어종 및 지역별 정보 소개	375	22.89%
③ 낙시규제사항 및 가능수역소개	329	20.09%
④ 낙시환경 및 자원보호를 위한 홍보	440	26.86%
⑤ 유어규칙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209	12.76%
⑥ 각 지역별 낙시 단체 및 관련site 연락처	77	4.70%
합 계	1,638	100%

유어핸드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유어낙시 발전방안에서 유어핸드북에 포함될 내용으로 낙시환경 및 자원보호를 위한 홍보(26.86%)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조획대상 어종 및 지역별 정보 소개(22.89%), 낙시규제사항 및 가능수역소개(20.09%) 순으로 선택을 하였다.

[표 6-41] 웹사이트의 콘텐츠

낙시관련 통합 웹 사이트의 운영에 있어 콘텐츠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빈도수	백분율
① 낙시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게시판 운영	431	26.31%
② 낙시관련 정부정책자료 및 관련제도의 수시 업데이트	227	13.86%
③ 환경조성과 자원관리를 위한 홍보 및 계몽	398	24.30%
④ 친환경조구업체리스트 등록 및 홍보	222	13.55%
⑤ 낙시 대회 등 낙시 단체 행사 홍보	93	5.68%
⑥ 바다 낙시터 및 내수면 낙시터 정보 제공	267	16.30%
합 계	1,638	100%

웹사이트의 콘텐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낙시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게시판 운영(24.30%)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환경조성과 자원관리를 위한 홍보 및 계몽(24.30%), 바다 낙시터 및 내수면 낙시터 정보 제공(20.09%) 순으로 선택을 하였다.

[표 6-42] 홍보 및 계몽 활동방안

낚시관련활동의 홍보 및 계몽 활동방안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빈도수	백분율
① 전국적인 낚시대회 개최	152	9.28%
② 정기적인 국제교류낚시대회 개최	57	3.48%
③ 정기적인 낚시 교실 운영	289	17.64%
④ 가족단위의 낚시캠프 운영	415	25.34%
⑤ 낚시를 통한 청소년 현장 체험 학습시설 구축	273	16.67%
⑥ 낚시터와 생태공원을 결합한 레저시설 개발	452	27.59%
합 계	1,638	100%

홍보 및 계몽 활동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낚시터와 생태공원을 결합한 레저시설 개발(27.59%)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가족단위의 낚시캠프 운영(25.34%), 정기적인 낚시 교실 운영(17.64%) 순으로 선택을 하였다.

[표 6-43] 해수면 낚시터

귀하께서는 낚시터의 개발 및 환경조성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바다 낚시터는 각각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수	백분율
① 갯바위	262	47.99%
② 무인도서	34	6.23%
③ 방파제	205	37.55%
④ 어촌계일대	45	8.24%
합 계	546	100%

낚시터환경조성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낚시터의 개발 및 환경조성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바다 낚시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갯바위(47.99%)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방파제(37.55%), 어촌계 일대(8.24%) 순으로 선택을 하였다.

[표 6-44] 내수면 낚시터

귀하께서는 낚시터의 개발 및 환경조성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내수면 낚시터는 각각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수	백분율
⑤ 저수지5	277	50.73%
⑥ 댐/호수6	92	16.85%
⑦ 강/하천7	177	32.42%
합 계	546	100%

낙시터환경조성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낙시터의 개발 및 환경조성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내수면 낙시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수지(50.73%)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강/하천(32.42%), 댐/호수(16.85%) 순으로 선택을 하였다.

[표 6-45] 감시와 지도의 방법

내수면 낙시터와 해수면 낙시터에 관리제도가 도입될 때, 불법낙시의 감시 또는 지도는 어떠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수	백분율
① 낙시인 자율에 맡김	131	23.99%
② 일정한 교육 후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또는 공익요원 배치	193	35.35%
③ 일정한 교육 후 낙시단체 소속의 감시인 배치	65	11.90%
④ 일정한 교육 후 해당 지역소속의 주민(청년회 또는 어촌계) 배치	82	15.02%
⑤ 일정한 교육 후 낙사업자(내수면관리자 또는 낙시어선업자)에게 위임	75	13.74%
합 계	546	100%

감시와 지도의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낙시 관리제도가 도입될 때 불법낙시의 감시 또는 지도의 바람직한 방법으로 일정한 교육후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또는 공익요원 배치(35.35%)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낙시인 자율에 맡김(23.99%), 일정한 교육 후 해당 지역소속 주민 배치(15.02%) 순으로 선택을 하였다.

[표 6-46] 주무부서의 설치여부

귀하께서는 낙시 관련 정부 부처에 낙사업무를 전담하는 주무부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수	백분율
① 주무부서를 설치해야함	355	65.02%
② 주무부서 설치의 필요성을 못 느낌	191	34.98%
합 계	546	100%

낙시 관리 주무부서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낙시인이 찬성(65.02%) 의견을 나타내었다.

[표 6-47] 주무부서가 설치될 정부부처

낙시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주무 부서를 설치하게 된다면 그 운영은 어떠한 부처에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수	백분율
① 해양수산부	335	61.36%
② 환경부	147	26.92%
③ 문화관광부	61	11.17%
④ 농림부	3	0.55%
합 계	546	100%

낙시 관리 주무부서가 설치될 정부부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낙시인들이 해양수산부(61.36%)에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표 6-48] 주무부서의 주된 역할

낙시 관련 주무부서의 역할 중 집중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수	백분율
① 낙시관련법/제도화를 통한 종합적인 지원체제 구축	88	16.12%
② 낙시터 환경관리 및 어자원관리	337	61.72%
③ 낙시단체 지원 및 홍보활동	9	1.65%
④ 낙시산업육성방안	12	2.20%
⑤ 낙시터 안전시설 구축 방안	36	6.59%
⑥ 낙시인-어업인간 윈-윈(win-win)전략 구상	64	11.72%
합 계	546	100%

주무부서의 주된 역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부분으로 낙시터 환경관리 및 어자원 관리(61.72%)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낙시관련법/제도화를 통한 종합적인 지원체제 구축(16.12%), 낙시인-어업인간 윈-윈 전략 구상(11.72%) 순으로 선택을 하였다.

[표 6-49] 친환경 낙시용구 제작 활성화 방안

친환경적인 낙시용구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떠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수	백분율
① 친환경 낙시 용구에 환경 마크를 부여	155	28.39%
② 친환경 낙시 용구를 제작하는 조구업체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원	266	48.72%
③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낙시인들에 대하여 낙시터 이용 할인 혜택을 제공	125	22.89%
합 계	546	100%

친환경 낙시용구 제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친환경 낙시 용구를 제작하는 조구업체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원(48.72%)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친

환경 낚시 용구에 환경 마크를 부여(28.39%),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낚시인들에 대하여 낚시터 이용 할인 혜택을 제공(22.89%) 순으로 선택을 하였다.

[표 6-50] 홍보 및 계몽수단

낚시 관련 정책 및 제도의 홍보 및 계몽 활동방안으로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수	백분율
① 낚시 전담부서를 통한 낚시제도 홍보	172	31.50%
② 낚시인 안전지식교육 및 홍보 활동 개최	234	42.86%
③ 통합된 낚시단체 육성 지원	45	8.24%
④ 정기적인 낚시 관련 통계자료 발간	95	17.40%
합계	546	100%

홍보 및 계몽수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낚시인 안전지식교육 및 홍보 활동 개최(42.86%)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낚시인 전담부서를 통한 낚시제도 홍보(31.50%), 정기적인 낚시 관련 통계자료 발간(17.40%) 순으로 선택을 하였다.

[표 6-51] 법적근거 마련에 관한 의견

종합적인 낚시 발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빈도수	백분율
①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함	420	76.92%
②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 없음	126	23.08%
합계	546	100%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의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낚시인들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선택을 하였다(76.92%).

[표 6-52] 법안의 내용

낚시 관련법/제도를 신설하게 된다면, 관련법안에 포함될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빈도수	백분율
① 낚시관리제 도입 및 지원방안	289	17.64%
② 낚시터 자원관리 방안	365	22.28%
③ 낚시터 환경관리 방안	501	30.59%
④ 낚시단체 지원 및 육성 방안	65	3.97%
⑤ 낚시산업 지원 및 육성 방안	245	14.96%
⑥ 낚시관련 통계체계 구축 방안	173	10.56%
합계	1638	100%

낙시 관련법/제도 신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법안에 포함될 내용에 대하여 낙시터 환경관리 방안(30.59%)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낙시관리제 도입 및 지원방안(17.64%), 낙시산업 지원 및 육성 방안(14.96%) 순으로 선택을 하였다.

### 제3절 한국형 낙시 관리제도 모델의 개발

#### 1. 주요국의 낙시관리 유형 분류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낙시관리는 여러 가지 유형의 낙시관리에 필수적인 규제와 수단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낙시관리의 기본체계를 이룬다. 이러한 체계는 일반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각종 법 규정으로 구성된 관리체제이다. 낙시관리의 효과적인 체제는 국가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인 자연자원이나 환경관리의 규정에 준하는 법체제로 구축하고 있다.

낙시관리 필수적인 관리수단의 유형은 다양하나 대부분 국가에서는 면허제를 중심으로 관리수단을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낙시관리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낙시면허제 중심의 관리수단의 체계화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기준으로 크게 자율부분형 낙시관리, 개방결합형 낙시관리, 자격분리형 낙시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낙시관리가 어떠한 유형이든지 사용되는 수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거의 유사하게 낙시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배분에 두고 있다. 따라서 낙시관리의 유형과 수단은 유어낙시에 대한 개별 국가가 처해 있는 자연환경적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관리가 추구하는 목표에는 차이가 없음은 인지할 필요가 있다.

#### 가. 자율부분형 낙시관리

낙시관리의 유형에서 자율부분형 낙시관리는 일본에서 행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일본에서는 자율부분형 낙시관리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내수면 제5종 공동어업권 면허를 어협에 맡기게 되고 어협에서는 낙시인들에게 낙시증을 발급하게 된다. 이 때 낙시인은 어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낙시터에서 낙시와 관련한 규정을 준수, 순응하여야 하며, 낙시티켓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즉, 낙시인은 어협에서 정한 요금의 납부와 동시에 규칙에 준수하게 되는 것이다. 낙시의

규정은 다른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력량, 대상어 제한, 지역, 낚시 방법 및 조구제한을 통하여 자원 및 환경의 보존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6-1] 자율부분형 낚시관리(일본)

한편, 일본에서의 바다낚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료화된 유어선제도로 일반 어업제도의 틀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바다낚시보트는 전국의 보트등록제의 운용으로 하고 있으며, 연안 갯바위 바다낚시는 해면의 비어업자에 해당하는 유어인을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부분형 낚시관리의 장점은 낚시규칙의 준수에 따른 감시·감독은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수면 제 5종 공동어업권 면허를 받은 어협에서 자율적으로 감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낚시인의 관리에 많은 감시요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나. 개방결합형 낚시관리

낚시관리의 유형에서 개방결합형 낚시관리는 미국을 비롯하여 호주, 뉴질랜드와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주로 낚시자원의 이용과 같이 자연자원에 대한 공유재산적 성격을 띠고, 이에 대하여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방임적인 유어낚시 접근을 허용하되 시장원리적인 유어낚시 수급체계에 맞도록 관리체계를 기본적으로 갖춘 것으로 자연자원이 대체로 풍부한 국가에서 많

이 도입 시행하고 있다.



[그림 6-2] 개방결합형 낚시관리(미국 등)

개방결합형 낚시관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면허(Fishing License)와 승인(Fishing Permit)을 하나로 묶어 낚시인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낚시관리에서 면허에는 기본적으로 행정자격수단과 행위의 규범화, 낚시유형의 제한과 승인에는 허가승인수단으로 요금납부, 규칙설정, 노력량 및 대상어의 제한, 지역, 방법, 조구의 제한을 통하여 자원 및 환경보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낚시인은 낚시요금의 지불과 동시에 유어규칙을 순응하게 되고, 정부는 읍저버(Ranger) 제도나 자율관리자(Watch Dog) 제도를 통하여 규칙을 단속하고 감시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 바다낚시는 기본적으로 유어선 제도를 통하여 바다낚시보트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 다. 자격분리형 낚시관리

자격분리형 유형의 낚시관리 시스템은 자연자원이나 낚시자원이 공유재산적 자원이라기 보다는 정부나 지자체, 일정지역 또는 단체 등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소유 및 관리를 가능케하는 사회적 제도가 확립된 국가에서 자연자원의 재산권적 활용을 토대로 전개하는 낚시관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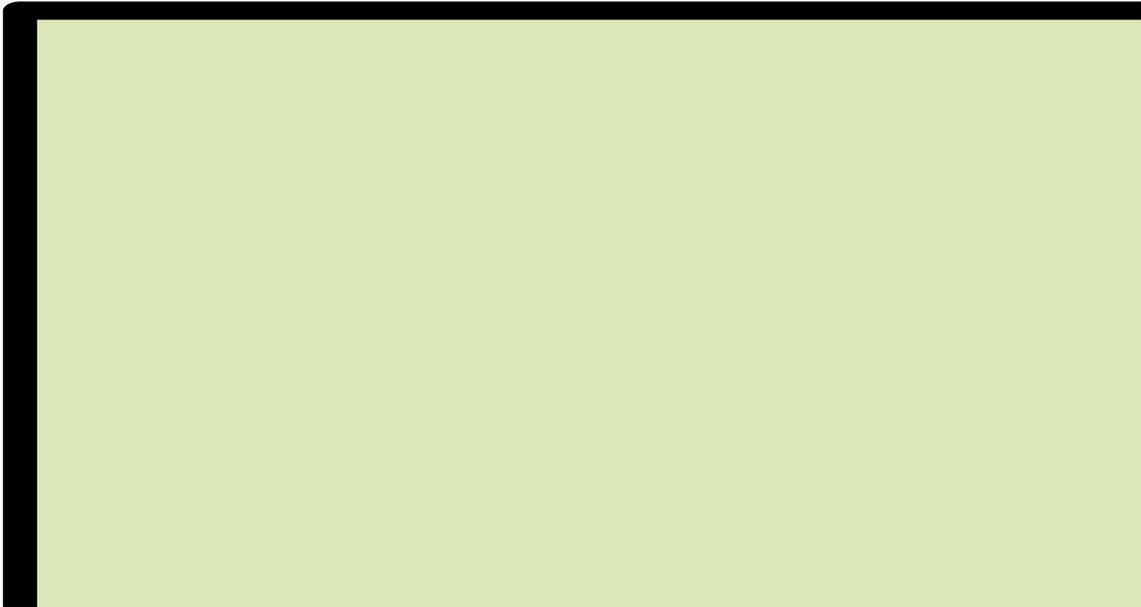


[그림 6-3] 자격분리형 낚시면허제(독일)

독일, 덴마크를 비롯한 여러 유럽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정부가 낚시인에게 면허증을 직접 발급해 주고, 낚시인은 정부에게 자격을 받게 된다. 이때, 면허라는 것은 낚시인이 낚시행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자격에 해당하는 면허는 독일에서처럼 유시험과 무시험 면허 제도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낚시면허증을 취득한 낚시인은 낚시권 소유자에게 낚시행위에 대한 일정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야 비로소 낚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낚시권 소유자는 낚시인에게 유어증(ticket)을 주게 되고, 낚시인은 해당 낚시터에서의 유어규정을 준수하게 된다.

낚시권 소유자의 결정은 정부가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인, 낚시단체 또는 주민 단체를 대상으로 낚시권을 경매를 통해 임대하게 된다. 한편 경매를 통해 임대한 낚시권에 대해서는 낚시권 소유자가 정부에게 경매입찰료를 지불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표 6-53] 독일의 낚시권과 낚시터 임대제



## 2. 낚시관리의 주체구성의 형태

각 국가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낚시관리의 유형에서 관리를 전반적으로 주관하는 운영주체는 국가, 지자체, 그리고 단체 또는 개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바다낚시와 민물낚시에 따라서 달리 운영주체가 결정된다. 이러한 운영주체는 결국 낚시관리가 지향하는 관리목표에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운용하는 주체가 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낚시관리의 관리주체의 구성 유형을 나누어 보면 [그림 6-4]와 같다. 우선 미국에서의 바다낚시는 해양어업관리 체제속에서 해양환경대기청(NOAA)과 해양경찰청(Coast Guard), 그리고 주정부 해양관리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민물낚시의 경우는 자연환경관리 체제안에서 주정부 야생동식물 관리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일본의 유어낚시관리체제는 수산청의 통합관리체제로서 바다낚시는 수산청에서, 민물낚시는 지역어업협동조합에서 제5종어업권의 어장 범위에서 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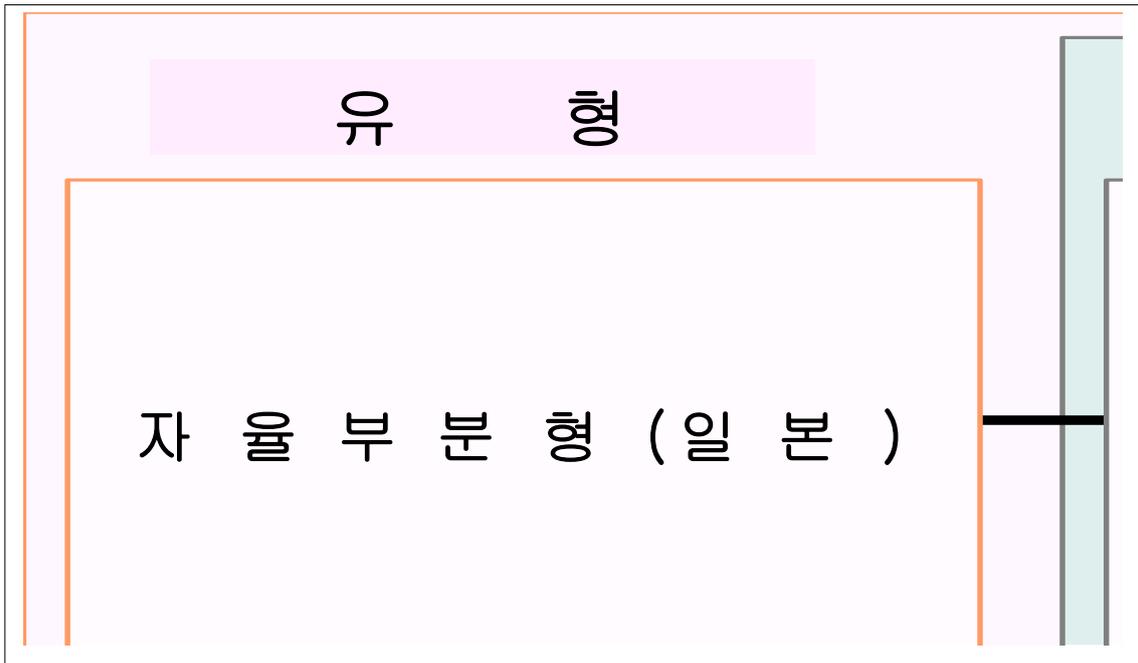


[그림 6-4] 낚시관리 주체구성의 유형

독일의 경우는 자연환경의 통합적 낚시관리체제로서 바다낚시와 민물낚시에 대한 거의 동일한 관리규정을 두면서, 개인이나 단체의 자율적인 관리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는 수산부에서 바다낚시 관리체제를 두고 있는 반면에, 민물 낚시관리에 대해서는 민물낚시를 전문적으로 진흥 관리하는 행정법인을 설립하고, 이로 하여금 민물낚시를 총괄 관리하는 법인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3. 낚시관리 유형별 체제의 비교분석

낚시관리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낚시관리 체제의 일반적인 특성과 장단점을 구분하여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6-5] 낚시관리 유형별 체제의 비교분석

우선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부분형 낚시관리는 어업과 유어의 일체형 관리 시스템으로서 관리주체 또한 단일화하고 있다. 자원 및 환경친화적 생물자원에 중점을 두어 민물낚시터에 있어서는 어협의 자율화하에 낚시터 관리중심의 유료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자원관리의 자율적인 체제로서 바다낚시에 대해서는 어업중시적 유어산업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구미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방결합형 낚시관리는 자원과 환경관리의 일체화하에 정부의 완전한 통제 및 책임시스템으로서 낚시인을 대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기초한 시장접근적 형태이다. 따라서 이는 시장체계적 수요와 공급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결합형 체제는 낚시관리자나 낚시인의 자율적인 관리가 아니므로 낚시규정에 대한 감시 및 수급의 고비용화가 초래된다는 점이 단점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독일과 유럽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분리형 낚시관리는 정부의 자격관리와 낚시터 관리의 이분화를 통해서 정부는 낚시인에게 시험제도를 통한 면허를 발급해 주게 되고, 낚시권을 가진 자는 낚시인들을 대상으로 시장원리에 의한 지역중시적 관리시스템을 통해 낚시를 허용하는 체제이다. 이는 민간과 정부의 기능배분의 효율성을 최대화한 것으로 자율부분형 체제와 개방결합형 체제를 결합한 것이다.

이처럼 여가낚시가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의 적

절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선진 주요국의 여가낚시 관리 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여가낚시 관리를 위해 면허제 등 관리수단을 도입하는 이유는 지속 가능한 여가낚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가낚시로 인한 자원이나 환경 문제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여가낚시인들이 단기적으로 효용을 얻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여가낚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4. 주요국 낚시관리 유형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 검토

##### 가. 민물낚시 관리제 적용 검토

현재 우리나라의 민물낚시 운영체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용수면에 대해서 개인, 양식계, 수리계 등 유료낚시터로서의 운영권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관리권한을 주고 있으며, 이를 다시 일반낚시인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낚시료를 받고서 낚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결국 유료낚시운영자가 낚시터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체계이다.

이는 외국의 낚시관리 수단인 면허제 시스템하에서 정부가 직접 일반낚시인에게 낚시면허증을 발급하고 이에 순응하여 낚시인들은 정부가 규정한 각종 규범에 대하여 자격 준법을 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만약 정부 주관적인 낚시관리의 면허제를 적용한다면 유료낚시업의 허가와 낚시인의 면허로서 이중적인 책무를 부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이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이나 양식계, 수리계 등으로 유료 낚시권을 양도하였기에 유료낚시터 운영자는 일반낚시인들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낚시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범적인 면허규정을 낚시인들에게 순응케 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 그래서 낚시관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면허라는 수단이 비용만 유발할 따름이지 실제적인 관리의 실효성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낚시관리의 면허수단은 현행 운영되고 관리 시스템의 체제를 다시 바꾸지 않으면 접목되기가 어렵고, 낚시터의 자율적인 운영에서 낚시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기능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법에는 낚시터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개별 운영자를 회원으로하는 단체를 조직하고, 이같은 단체를 통한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든지 아니면 현행 허가제도를 낚시관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 하고 보완하는 방법도 있다.



[그림 6-6] 민물낙시 관리에 면허수단 적용시 문제점 (I)

한편 민물낙시터에서 농업기반공사 소속 저수지의 경우는, 외국의 낙시면허제와 같이 낙시인들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면허증 발급과 자격준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낙시단체, 주민단체에게 수면관리권을 경매제도를 통해 낙시권을 임대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경매를 통한 낙시권임대를 받은 자는 농업기반공사에게 경매입찰료를 지불하게 되고 일반낙시인들로부터 낙시료를 받는 자율적인 낙시터 운영 시스템이다.

이러한 낙시관리 시스템에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낙시관리의 면허수단을 도입하여 시행할 경우 농업기반공사가 일반낙시인들 대상으로 면허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의 본연의 기능상 낙시인의 낙시면허와 관련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없으며, 수면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낙시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낙시터를 임대 받은 개별 수면관리자나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주어진 낙시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농업기반공사와 수면관리자와 관계가 낙시관리와는 무관하므로 개별 낙시터의 자율적 운영 자체가 성립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농업기반공사 중심의 임대 낙시터의 운영에서도 낙시관리 면허수단의 도입이나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6-7] 민물낚시 관리에 면허수단 적용시 문제점(II)

#### 나. 바다낚시 적용 가능성 검토

현재 우리나라 바다낚시의 경우는 우선 정부가 낚시어선업자에게 어선낚시영업을 허가를 내어주어 안전규칙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낚시인은 낚시어선업자를 통해서 일정한 요금을 지불하고 선상낚시나 갯바위 낚시를 하고 있다. 따라서 낚시어선업법은 기본적으로 낚시인의 낚시행위에 대한 규정을 기본으로 하는 낚시관리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동 법은 단지 낚시어선의 운영자에 대하여 안전하게 낚시어선을 운영토록 하는 영업 준칙 정도에 그치는 것이다. 따라서 낚시어선업에 따른 바다낚시나 기타 갯바위 낚시의 관리체계는 앞에서 설명해 온 낚시관리와는 별개의 낚시어선 관리이므로 이러한 관리상태에서 외국의 사례에서 같이 정부가 일반낚시인에게 면허증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자격준법을 준수토록 요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낚시어선업자의 허가와 낚시인의 면허로서 이중적인 책무를 부여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낚시업자는 낚시터 관리권한 및 책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낚시관리 면허수단을 통한 낚시인의 관리가 불가능하고, 또한 관리를 해야 하는 동기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낚시어선업자는 낚시터라는 주어진 관리의 영역이 배타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단지 어선의 운영가능 반경이나 지역적인 제한, 그리고 낚시가능 수역이나 갯바위의 위치등에 따라서 영역이 주어질 수 있으나 관리를 위한 배타적인 수역이나

영역은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 낚시어선업자의 관점에서는 낚시관리의 의무를 지니고 낚시인들의 낚시행위를 관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낚시어선업의 허가시에 낚시인들의 안전상 문제 뿐만 아니라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책무나 의무를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허가상 의무사항이라 할지라도 개별낚시어선이 운영되는 수역이나 지역에 대한 배타적 관리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



[그림 6-8] 바다낚시 관리에 면허수단 적용시 문제점 (I)

한편 어촌계와 지구별 조합의 유어낚시터의 경우는 우선 정부가 어촌계, 지구별 조합에게 낚시터로서의 유어낚시터 지정을 하게 되고, 일반낚시인은 일정한 낚시요금을 지불하게 되며 유어낚시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낚시터를 관리하고 있다.

이때는 유어낚시터를 관리하는 어촌계 또는 지구별 조합이 자율적인 낚시터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와 같이 당장의 낚시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면허증을 발급하고 자격준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때도 유어낚시터의 지정과 낚시인의 면허상의 이중적 책무가 부여되고, 낚시업자로 대표되는 유어장 관리주체가 낚시터의 관리권한과 책무가 없다.



[그림 6-9] 바다낚시 관리에 면허수단 적용시 문제점 (Ⅱ)

#### 다. 낚시관리 한국형 모델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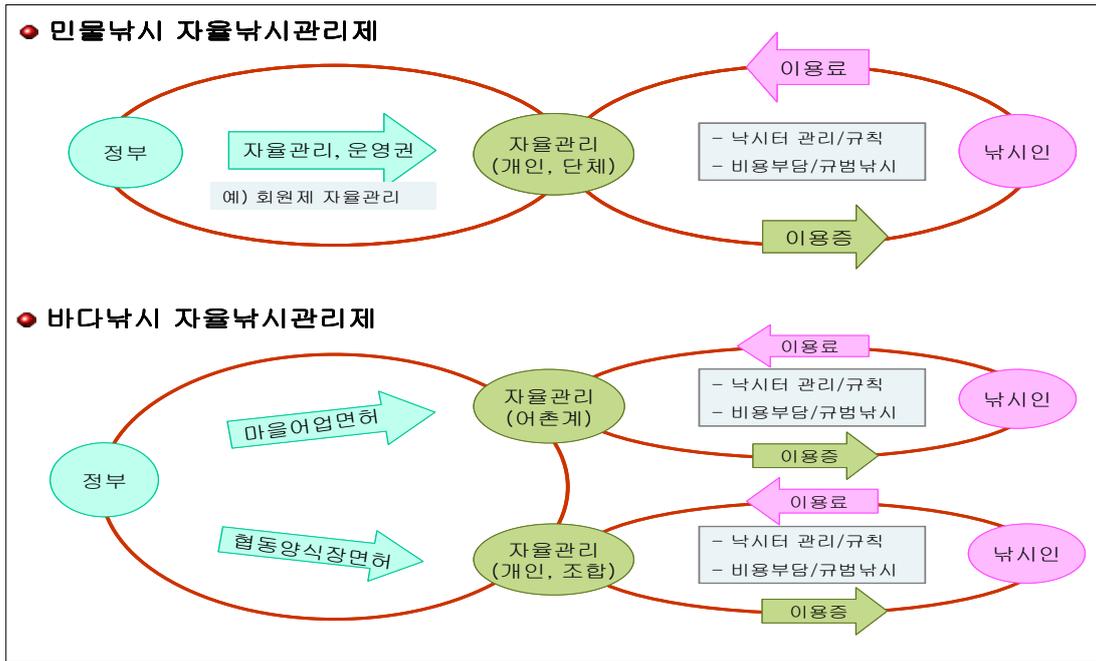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의 민물낚시나 바다낚시의 관리체계는 정부가 일반낚시인을 대상으로 하여 낚시면허증을 교부 및 낚시터 관리 책무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 어촌계, 수리계에 낚시터를 허가해 주거나 대규모 저수지 낚시터의 경우는 농업기반공사가 공개입찰방식에 의한 경매로 수면관리권을 임대하게 된다.

외국의 사례와 같이 정부가 직접 일반낚시인을 대상으로 하여 낚시면허증을 발급하고, 낚시규정을 준수하도록 감시하는 시스템은 현 우리나라 낚시의 여건으로 볼 때 이중적인 책무를 부담하는 특성이 있어 면허제 도입은 곤란한 상태이다. 따라서 현 상태를 유지·보완할 수 있는 자율낚시관리 모델의 적용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6-10] 기존 낚시관리의 개선 및 발전모델: 자율낚시관리

현재의 우리나라 낚시관리의 개선과 발전모델은 자율낚시관리를 기본으로 하여 현상태의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시급한 상태라 볼 수 있다. 정부는 자율낚시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에 자율관리 규정을 승인과 더불어 자율관리권을 부여하게 되고 이때 자율관리주체가 되는 단체는 자율관리규정을 준비 및 제출하게 된다. 그리고 자율관리주체는 낚시인들로부터 낚시이용료를 받게 되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도와줌과 동시에 낚시인은 낚시규정을 준수하면서 이용증을 교부받게 되는 것이 자율관리제 운영의 기본체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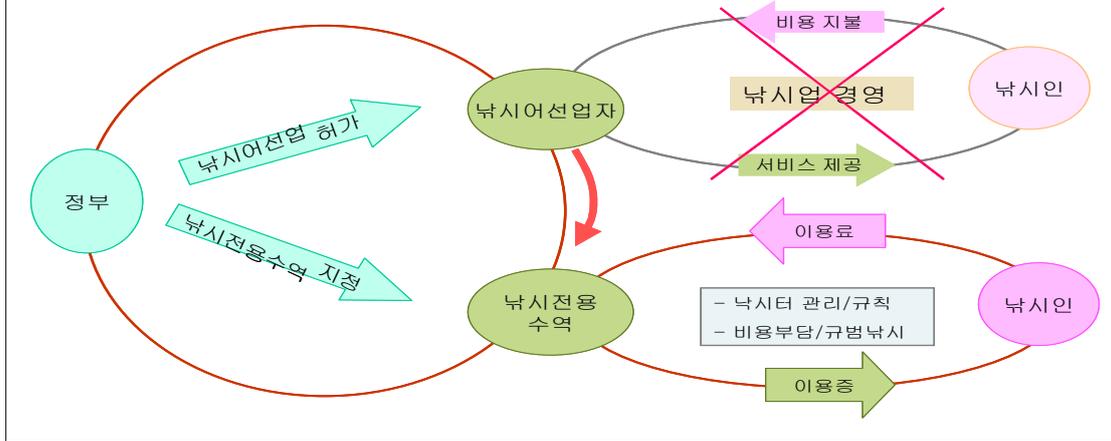
[그림 6-11] 민물·바다낚시의 자율낚시관리 모델

민물낚시의 자율낚시관리는 정부가 자율관리의 주체가 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회원제와 같은 자율관리방식을 채택하여 적당한 주체에 낚시운영권을 부여하고 자율관리주체는 일반낚시인들로부터 낚시이용료를 받고 이용증을 부여함과 동시에 낚시터의 관리와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바다낚시 자율낚시관리도 마찬가지로 자율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곳에 마을어업면허 또는 협동양식장면허를 부여하게 되고 이때 자율관리주체는 일반낚시인들로부터 낚시이용료를 받음과 동시에 모든 낚시터 관리 및 이용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 바다낚시 낚시어선업 자율낚시관리제

- 기존 낚시어선업자의 낚시업 경영체제를 관리체제로 전환
- 낚시전용수역을 설정하여 낚시어선업자의 낚시수역관리 책무부여



[그림 6-12] 낚시어선업 바다낚시의 자율낚시관리 모델

또한 바다낚시의 낚시어선업의 경우는 낚시어선업자에게 낚시어선업을 허가함과 동시에 낚시전용수역을 지정해 주고 기존의 낚시어선업자의 낚시업 경영체제를 관리체제로 전환하여 낚시전용수역안에 관리책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다낚시 낚시어선업 자율낚시관리를 시행하게 된다. 그리고 낚시전용수역을 관리하는 낚시어선업자는 일반낚시인들을 대상으로 낚시이용료를 받게 되고 해당 낚시전용수역내의 낚시터 관리와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제7장 종합적인 낚시발전 방안

낚시인은 쾌적한 환경에서 낚시를 즐기고, 낚시터 주변 지역주민들은 낚시인을 지역에 유치하여 관광소득으로 연결하고, 이를 통하여 상호발전이 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낚시가 매력 있는 레저활동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낚시정책을 수립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낚시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바다 및 민물 낚시에 대한 모델과 종합적인 낚시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제1절 낚시관리 모델 제시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실정에 맞도록 바다와 민물 낚시를 구분하여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모델제시 시 낚시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한 이후, 이에 기초하여 접근하였다. 또한, 제시된 바다 및 민물 낚시관리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모델별 특징을 기술하였다.

#### 1. 낚시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

낚시관리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관링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되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바다의 해수면에 대한 이용권리자(어업권자) 및 공유수면과 민물의 내수면 수면관리자 또는 개인소유 수면에서 개발한 낚시터에 대해 종합적인 이용계획 수립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자(관리자) 수면은 권리자에게 이용권을 전담케 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안코자 한다.

이를 제외한 기타 해수면의 공유수면은 지자체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의 낚시관련 업계 또는 낚시인에게 새로운 부담(2중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낚시터에 대한 인프라가 거의 없는 실정임으로 낚시이용료를 징수할 경우는 선 투자 후 회수를 원칙으로 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정책 방향일 것으로 판단된다.

## 2. 바다 및 민물낚시 관리 유형별 모델

### 가. 바다낚시 관리유형별 모델

바다낚시에 대한 이용권자 및 현행 낚시어선업, 공유수면 등을 고려하여 관리유형별 모델을 제시하면, 제1유형(어업인단체 관리형), 제2유형(낚시어선 관리형), 제3유형(지자체 관리형)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낚시터에 대한 이용, 조성, 지원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 나. 민물낚시 관리유형별 모델

민물에 대한 이용권자,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리 수면, 개인 소유 등을 고려하여 관리유형별 모델을 제시하면 제1유형(어업인단체 관리형), 제2유형(지자체관리형), 제3유형(개인 관리형), 제4유형(공공기관 관리형)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낚시터에 대한 이용, 조성, 지원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표 7-1] 바다 및 민물낚시 유형별 관리모델

구 분	유형별 모델명	관 리 수 역 및 방 안
바다 낚시	제1유형 (어업인단체 관리형)	어업면허(마을어업, 협동양식업, 정치망 등)어장 및 유어장에 해당 어업인들이 주축이 되고 낚시단체가 협력하여 관리하는 방안
	제2유형 (낚시어선 관리형)	현행 낚시어선업법 관련 유어낚시선이 어업인단체(제1형)과 제3유형(지자체관리형)과 협의·조정하여 관리하는 방안
	제3유형 (지자체 관리형)	어업면허를 제외한 지자체관할의 공유수면에 개발한 낚시터
민물 낚시	제1유형 (어업인단체 관리형)	어업면허(마을어업, 협동양식업, 정치망 등) 어장 및 유어장에 낚시단체가 협력하여 관리하는 방안
	제2유형 (지자체 관리형)	어업 면허를 제외한 지자체 관할의 공유수면에 개발한 낚시터
	제3유형 (개인 관리형)	개인이 사유지에 개발한 낚시터
	제4유형 (공공기관 관리형)	수자원공사 관리수면(담)과 농업기반공사(농업용 저수지)가 개인과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료낚시터는 현행대로 유지함을 원칙으로 함

### 3. 낚시관리 모델별 주요 내용

#### 가. 바다낚시 관리현황 및 유형별 모델 내용

##### 1) 바다낚시 이용 현황

우리나라의 바다 낚시는 크게 3가지 형태로 낚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접근성에 제한을 받지 않는 낚시터, 둘째, 접근성에 제한을 받는 낚시터, 셋째, 유어낚시선을 이용하여 낚시를 하는 것 등이다.

##### (가) 접근성에 제한을 받지 않는 낚시터

해안선, 방조제 연장, 어촌계(마을어장등), 연안의 자연부락, 방파제 등의 낚시터에서 낚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해안선 길이는 12,902km로 이 중에서 도서인접이 8,397km(65%), 육지인접이 4,505km(35%)로 나타났으며 전국 방조제 길이는 총 1,155km으로 이 중에서 국가관리가 전체의 271km(23.4%), 지자체관리 854km(74.0%) 조사되었다.

전국의 어촌계 어업권 현황은 정치망어업 942건(5,421ha), 어류등양식어업 720건(2,603 ha), 복합양식어업 512건(5,844ha), 협동양식어업 343건(6,264ha), 마을어업 2,804건(128,587ha) 등 이다(이 중에서 도서지역 어업권도 포함됨).

##### (나) 접근성에 제한을 받는 낚시터

여객선이나 유사한 교통수단(어선 등)을 이용하여 이동해서 유인도 및 무인도서 지역에서 낚시터를 말한다. 전국 도서수는 총 3,170개소(면적 3,787km<sup>2</sup>)이며, 이 중에서 유인도서 491개소(15.5%, 3,701km<sup>2</sup>)이고, 무인도서는 2,679개소(84.5%, 85km<sup>2</sup>) 조사되었다.

##### (다) 유어낚시선을 이용하여 낚시를 하는 것

낚시어선업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바다낚시는 주로 낚시어선상의 선상낚시와 갯바위로 이동하여 갯바위에서 행하는 갯바위 낚시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낚시어선업 바다낚시는 선상낚시를 의미한다. 이러한 낚시어선척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며 2004년말 현재 5,191척으로 조사되었다.

[표 7-2] 바다낚시 유형 구분

구분	낚시장소	비고
용이한 접근성	해안선, 방조제 연장, 어촌계(마을어장), 연안의 자연부락, 방파제 등	해안선 : 12,902km 방조제 : 1,155km
제한된 접근성	유인도 및 무인도서 지역	전국도서수 : 3,170개소
유어낚시선	유어낚시선을 이용하여 해상에서 하는 낚시행위	유어낚시선 : 5,191척('04)

## 2) 바다낚시 유형별 관리모델 내용

우리나라의 낚시관리 기본방향과 바다낚시 이용 현황 및 실태를 고려하여 제시된 제1유형(어업인단체 관리형), 제2유형(낚시어선 관리형), 제3유형(지자체 관리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제1유형(어업인단체 관리형)

현재, 바다낚시의 유어장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55조(유어장의 지정)는,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어업인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당해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역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 또는 낚시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4조(유어장의 지정 등)에 근거하도록 되어있다.

유어장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2월 현재, 전국에 유어장 46개소(979ha) 유료낚시터(21개소 545ha), 체험어장(25개소(434ha))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유어장의 연 이용인원(개소당)은 36명~10,500명(평균 1,445명)이며, 1회 이용료를 2,000원 ~ 50,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건수 및 면적은 '01년 32개소, 1,304ha에서 '04년 46개소, 979ha로, 연도별 평균 이용인원(개소당)은 '01년 912명에서 '04년 1,445명으로, 연도별 평균수입액(천원)은 '01년(6,500천원)에서 '04년(11,259천원)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따라서, 동 유형은 현재의 제도 틀 내에서 낚시터 범위를 이용권자인 어업인들로

하여금 수산업법 제55조에 나타나 있는 유어장제도와 연계하여 낚시단체와 협력하여 관리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제2유형(낚시어선 관리형)

낚시어선업은 낚시어선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낚시어선업신고필증의 교부현황 및 안전점검 실시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2004년도 신고척수 및 이용객 등 현황을 살펴보면, 점차적으로 낚시어선업 신고척수, 이용객 수 및 적당운영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척수는 전년에 비하여 768척(17%) 증가하였고 이용객은 442천명(31%) 증가, 적당운영수입은 2백만원(23%) 증가하였다.

[표 7-3] 년도별 신고척수 및 이용객 등의 변동추이

	2002	2003(A)	2004(B)	증감
신고척수(명)	4,401	4,423	5,191	17%증
이용객(명)	1,014,469	1,442,209	1,884,252	31%증
운항회수(회)	179,099	265,735	290,276	9%증
적당수입(백만원)	6.6	8.6	10.5	23%증

자료: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한편, 시·군·구청장의 안전운항 명령·고시 제정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낚시어선업법 제14조(안전운항등을 위한 조치)에 시장·군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 7-4] 71개 시·군·구의 고시 제정 추진내역

고시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정	65	9	8	4	4	6	6	3	9	5	9	4
미제정	6	-	2	-	-	-	-	-	4	-	-	-

주) '02.7.13~7.14(전남 여수, 고흥, 완도, 경남 통영) 갯바위 등 낚시객 14명 실종사고 발생으로 해수부에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갯바위 등 위험소지가 있는 장소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 등”의 명령을 고시로 제정·운영토록 지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현행 낚시어선업은 현재 체제와 같이 추진하되 어업인

단체와 지자체간의 협의 및 조정을 통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즉, 낚시어선에 요금을 지불한 후 어선을 타고 갯바위나 연안 해역에서 낚시를 하는 낚시인들이 2중으로 어촌계 등(제1유형 및 제3유형)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이용 요금에 대해서는 낚시어선 선주와 지자체 또는 어촌계와 협의 및 조정을 통해서 운영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 제3유형(지자체 관리형)

수산업법상 어업인들이 해면에서 면허받은 마을어업, 복합양식장, 양식장, 정치망 등 이외의 수면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는 낚시터를 개발하여 관리하는 방안(방조제 및 방파제 등)이다. 방파제의 경우는 중앙정부(해수부)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용권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방조제 1,155km 중 국가관리 271km(23.4%), 지자체관리 854km(74.0%)이다.

현재는 지자체에서 직접 및 위탁하여 운영하는 바다낚시터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지원하의 개발 및 지자체 자체별로 먼저 투자 및 개발하여, 여건 조성 후 지자체 실정에 맞는 낚시이용료 부과하는 방안(선투자 후 낚시이용료 회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권리자(관리자)가 있는 무인도에 갯바위 낚시를 할 경우 낚시에 대한 이용요금이 낚시인에게 이중으로 지불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주와 무인도 관리자(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이용요금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 이는 각 지자체별로 해양관광단지 조성 및 어촌종합개발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관광어촌 발전 도모, 인접 관광지 개발과 연계가 가능하여,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표 7-5] 바다낚시 관리 모델별 주요 내용

유형별	낚시터 범위	관리 및 운영주체	관리 방안	관련법
제1유형 (어업인단체관리형)	마을어업, 협동양식업, 정치망 등	어업인 단체 (어촌계)	어촌관광과 연계하여 어업인 소득 도모	수산업법 55조
제2유형 (낚시어선 관리형)	현행 낚시어선 영업	어업인단체와 지자체와 협의	어업인 단체와 지자체간의 협의 및 조정을 통한 운영방안	낚시어선업법
제3유형 (지자체관리형)	어업면허를 제외한 지자체 관할 공유수면 및 인접수면에서 개발한 낚시터	지자체	관광어촌 발전 도모 인접 관광지 개발과 연계 가능, 시너지효과 도모	무

주) 제1유형(어업인단체 관리형), 제2유형(낚시어선 관리형), 제3유형(지자체관리형)

나. 민물낚시 이용 현황 및 유형별 모델 내용

1) 민물낚시 관리 현황

내수면에서 유어행위의 질서 확립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혹은 시도지사가 어구, 시기, 대상 및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내수면어업법 제18조). 민물(내수면)은 바다(해수면)와 달리 이용권자 및 수면관리자 있어 차이 존재하며 내수면은 해수면과는 달리 직접 소유·점유·이용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수면관리자 및 이용자가 존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내수면에서는 유료낚시터의 운영은 낚시터(강, 호수, 저수지 등)가 될 수 있는 곳이 국, 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에 따라 다르고, 관리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허가권과 단속권을 가지고 있다.

내수면은 규모에 따라 대류지, 중류지, 소류지 등으로 구분되며, 대류지의 경우는 2만평 이상, 중류지의 경우는 수면적이 2만평이하 5000평, 소류지 형태는 5000평 이하이며, 소류지 낚시터가 수도권 인근지역의 대부분의 낚시터라고 할 수 있다. 허가 방법으로 분류하는 형태로 볼 때, 낚시업을 허가업으로서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게 도며, 사유지의 경우에는 신고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표 7-6] 내수면 유형별 수면관리자

구 분	종 류	수면관리자
저수지	대류지(20,000평 이상, 농업용 저수지, 국유지)	농림부(농업기반공사), 시·군 관리
	중류지(5,000~20,000평, 시·국유지)	지자체 및 일부 저수지 농업기반공사 관리
	소류지(5,000평 이하, 시·국유지 및 사유지)	지자체 및 개인이 관리
호 수	지자체에 위치한 호수	지자체
댐 및 담수호	댐(소양호), 담수호(시화호) 등	건설교통부(수자원공사)
하천(강)	한강 12개, 낙동강 19개, 금강 13개, 영산강 7개, 섬진강 9개의 자치단체가 관련됨	각 수계별 지자체

이러한 형태의 내수면낚시터는 전국 6,000여곳으로 추정(이중 유료낚시터 : 약 540개소)되고, 무허가 유료낚시터가 500여개소로 추정되고 있다.

[표 7-7] 낚시터 운영과 관리체제

구 분	운영과 관리체제
허가낚시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유지 - 정부·지자체, 농업기반공사 관리, 개인, 수리계, 내수면양식계가 허가/신고 낚시터</li> <li>· 내수면어업법, 지자체신청서→사업계획서, 주민동의서, 위치지적도 등 구비서류 다수</li> <li>· 목적외 사업신청 - 내수면어업허가 신청 - 세무서 사업등록 - 낚시업허가 - 허가낚시터</li> </ul>
경매(임대) 낚시터	· 농어기반공사 저수지→공개경쟁입찰→사전임대차 계약→수면관리권→유료낚시터 운영
사유지 신고 및 허가낚시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유지-농지전용-낚시업 허가(본인 의사에 따른 허가)-허가 없어도 가능-수협 활어입식-허가필요</li> <li>· 농지전용-산업과/농산과-신청서 다수 구비서류-낚시업 신고</li> <li>· 사유지무신고낚시터-양식업으로 신고한 후 낚시업을 운영하는 경우</li> </ul>
불법낚시터	· 양식장 허가를 득한 이후 낚시터 운영

## 2) 민물낚시 유형별 관리모델 내용

우리나라의 낚시관리 기본방향과 민물낚시 이용 현황 및 실태를 고려하여 제시된 제1유형(어업인단체 관리형), 제2유형(지자체관리형), 제3유형(개인 관리형), 제4유형(공공기관 관리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제1유형(어업인단체 관리 모델)

내수면 어업현황을 살펴보면, 면허어업은 2004년 12월말 현재, 전체 166건(양식어업 : 124건, 공동어업 : 42건)이고 허가어업은 4,973건 중 자망이 42%, 대부분 패류 채취, 각망, 낚시업, 연승, 종묘채포, 낭장망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고어업은 전체 3,419건 중 육상양식이 74%로 가장 많았다. 내수면 양식계(면허)어장에 대한 낚시터 운영권은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어업인들과 낚시단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있다.

### (나) 제2유형(지자체 관리형)

지자체 관할의 하천(강), 호수, 저수지 등에 대한 낚시터를 개발하여 관리하는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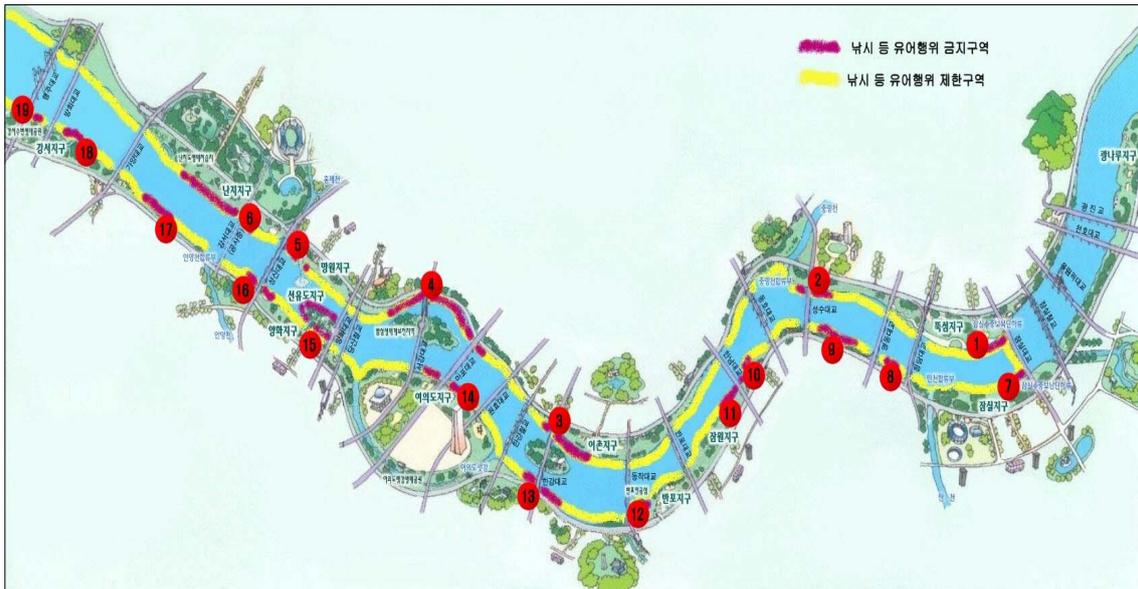
안이며, 현재 이들 낚시가능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허가권과 단속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이와 연계가 가능하다.

지자체 지역에 있는 국·공유지를 이용하여 낚시터를 개발할 중앙정부(관할 중앙 정부, 건교부 및 농림부 등)와 협의하여 낚시터를 개발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특히 지자체관할의 하구호 또는 자연호에 대한 낚시터 개발을 통한 지역 소득 창출 및 관련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낚시인구의 증가를 유도할 수도 있다.

현재 하천(강)에 이루어지는 유어낚시를 관리 및 규제하는 것으로서 내수면어업법에서 유어행위제한을 근거로, 서울시에서 한강의 수계를 관리하는 지자체관리형의 사례로서 한강의 유어낚시 관리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8] 서울시 관할 한강유역 낚시관리 사례

구 분	낚시관리 주요내용	비 고
유어행위 제한 배경	한강에 인접한 생태공원 또는 생태계 보전지역 등 어류 산란처 보호, 낚시투척시 안전사고 방지, 낚시 등 유어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등	내수면어업법 제18조(유어질서)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낚시행위 제한 구역 설정	- 상수원 보호구역인 광나루지구를 제외한 8개 지구 낚시 가능	하천법의 개정 시행으로 떡밥·어분낚시, 야영, 취사행위 금지('99. 8), 한강유역에 대해 낚시 등 유어행위제한 구역 설정('03)
낚시행위 제한 및 금지 범위	- 서울시 관할 한강 잠실수중보 하류지역	<그림 7-1 참조>
제한시기	- 2003년 9월 1일- 2008년 8월 31일	고시 시행일로부터 5년간 제한
제한사항	- 유어행위 금지구역에서는 유어행위 전면금지 - 낚싯대 등을 1인당 4개 이상 동시에 사용하는 행위 금지 - 갈고리모양의 도구(어구)를 사용한 낚시행위(일명 훔치기) 금지	- 현행 법령으로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 어종 외에 서울시에서 방류하고 있는 은어가 다량 번식하여 어족자원이 풍부해지는 시기까지 연중 포획·채취하는 행위 금지
유어행위 제한 예외 규정	-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생태계의 보전·복원행위, 구청장이 인정하는 학술조사, 생태계의 보전·복원행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수 서식지 조사 등	
제한사항 위반벌칙	- 금지행위 위반 등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 과태료 부과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제27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8조
제한지역 관리기관	각 관할구청,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사업소	관할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산업환경과)



[그림 7-1] 한강의 유어행위 제한 및 금지구역 지정대상지

사용요금에 대한 징수는 2003년 11월에 폐지되었으며, 2003년 9월에 한강의 유어 행위 제한 및 금지구역 지정대상지가 지정되었다. 또한, 서울시 한강 「낚시회원제」 운영(안)에 대한 검토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9] 서울시 한강 「낚시회원제」 운영(안)

구 분	주 요 내 용
근 거	서울시 조례(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실시지역	한강낚시터 전 구간 57Km(잠실수중보~행주대교)
회비징수(안)	회원제 운영 : 3종(3월, 6월, 1년제), 회원모집 회원증 발급 회비책정 - 일반인 : 6,000원/개월 -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 2,000원/개월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회원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 사용요금 징수 : '03.11월까지 한시적 운영(폐지) ※ 사용요금 : 1,000원/낚시 1대, 초과 1대당 500원 -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04년부터 시행
회비 사용용도	추후 검토

자료: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사업소, 2003.2

(다) 제3유형(개인 관리형)

내수면에서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혹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면에서 개인이 낚시터를 조성하여 관리하는 방안이다. 내수면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허가낚시터, 사유지신고낚시터, 사유지무신고낚시터(불법낚시터)로 구분된다.

수입어종인 이식승인 어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 거쳐야한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불법낚시터 각종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 공공수면과 연결하지 않은 개인수면의 사유지 낚시터는 낚시업을 목적으로 농지법에 의해 농지전용을 득하고 낚시업 허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허가를 득할 수 있고, 아니하여도 내수면어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등의 유료낚시터로 허가 받지 않은 곳에 양어장으로 허가를 받아 유료낚시터로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약 500여곳으로 추정된다.

(라) 제4유형(공공기관 관리형)

내수면은 소유, 점유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수면관리자가 존재하고 있음으로 기존의 수면관리자로 하여금 현행대로 관리케 하는 방안이다.

중앙정부가 관리를 위임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및 농업기반공사 관할 수면은 다목적댐(13개소), 발전용댐(10개소), 생공용수댐(12), 농업용수댐(4), 저수지(18,750) 등이 있다. 특히,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유료낚시터는 약 540개소이며, 이들 낚시터는 농업기반공사와 개인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현행대로 관리제도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외래어종 낚시어용 입식 문제 및 기본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준수가 필요하다.

[표 7-10] 민물낚시 관리 모델별 주요 내용

구분	유형별	낚시터 범위	관리 및 운영주체	관리 방안	관련법
민물 낚시	제1유형	마을어업, 협동양식업, 정치망 등	어업인 단체 (어촌계)	어촌관광과 연계하여 어업인 소득 도모	수산업법 55조
	제2유형	어업권 수면을 제외한 지자체 관할의 공유수면 - 하천, 댐, 호수, 저수지, 인공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 - 국가나 지자체 혹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관리하는 내수면	지자체	지역사회 관광어촌 발전 도모 인접 관광지 개발과 연계 가능, 시너지효과 도모	무
	제3유형	개인이 개발한 낚시터	개인	허가된 수면 관리	내수면 어업법 제18조
	제4유형	중앙정부가 관리 위임을 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및 농업기반공사 관할 수면	정부 위탁관리 기관	현행 관리제도 유지를 원칙으로 함	

#### 4. 낚시관리모델 요약

##### 가. 바다 및 민물낚시 관리모델 종합

전체적으로 낚시관리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첫째, 바다와 민물의 이용권자와 관리권자가 완전히 상이함으로 이에 기초하여 바다와 민물낚시 관리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둘째, 바다와 민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낚시관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셋째, 종합적인 낚시관리방안이 결정이 되면 모든 유형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준수해야 함이다(개인낚시터 및 공공기관 관리 낚시터 등). 넷째, 어느 유형이든 낚시단체와 협력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를 가장 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선 투자 후 이용료 회수).

이에 근거하여 바다낚시는 제1유형(어업인단체 관리형), 제2유형(낚시어선 관리형), 제3유형(지자체 관리형) 등 크게 3가지 유형, 민물낚시는 1유형(어업인단체 관리형), 제2유형(지자체관리형), 제3유형(개인 관리형), 제4유형(공공기관 관리형)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낚시터에 대한 이용, 조성, 지원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이다.

[표 7-11] 바다 및 민물낚시 관리 모델별 주요 내용

구분	유형별	낚시터 범위	관리 및 운영주체	관리 방안	관련법
바다 낚시	제1유형	마을어업, 협동양식업, 정치망 등	어업인 단체 (어촌계)	어촌관광과 연계하여 어업인 소득 도모, 낚시단체와의 공동	수산업법 55조
	제2유형	현행 낚시어선의 영업	어업인 단체와 지자체와 협의	어업인단체와 지자체간 협의 및 조정 통해 관리하는 방안	낚시어선업법
	제3유형	어업면허를 제외한 지자체 관할 공유수면에서 개발한 낚시터	지자체	관광어촌 발전 도모 인접 관광지 개발과 연계 가능, 시너지효과 도모	무
민물 낚시	제1유형	마을어업, 협동양식업, 정치망 등	어업인 단체 (어촌계)	어촌관광과 연계하여 어업인 소득 도모	수산업법 55조
	제2유형	어업권 수면을 제외한 지자체 관할의 공유수면] - 하천, 댐, 호수, 저수지, 인공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 - 국가나 지자체 혹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관리하는 내수면	지자체	지역사회 관광어촌 발전 도모 인접 관광지 개발과 연계 가능, 시너지효과 도모	무
	제3유형	개인이 개발한 낚시터	개인	허가된 수면 관리	내수면어업법 제18조
	제4유형	중앙정부가 관리 위임을 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및 농업기반공사 관할 수면	정부 위탁관리 기관	현행대로 관리제도유지를 원칙으로 함	관련법

주) 바다낚시 제2유형(낚시어선관리형)은 낚시어선에 요금을 지불한 후 경우 이중으로 지불하지 않도록 어업인단체와 지자체간의 협의 조정

#### 나. 바다 및 민물낚시 관리모델 차이점

동 모델에 대한 바다 및 민물낚시의 공통점은 바다 및 민물에서 자원이용권자인 어업인단체 중심의 각각 제1유형(어업인단체 관리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지자체관리형 바다 제3유형, 민물 제2유형은 지자체 관리하에 있는 공유수면, 방과제 및 방조제(국가소유인 경우 중앙정부와 협의)이나 하천(강), 하구호, 자연호 등에서 낚시터를 조성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차이점은 바다낚시의 경우는 민물에서는 없는 현행 낚시어선업법 관련 유어낚시 선업이 존재함(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현재 없음)으로 제2유형(낚시어선 관리형)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동 유형은 낚시어선에 요금을 지불한 후 타 낚시터로 이동하여 낚시할 경우, 2중 부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어업인단체와 지자체간의 협의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유도하였다. 예를 들면, 어업인단체와 낚시단체간에 상호 협력하여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바다낚시에 비하여 민물낚시는 수면관리권자가 있음을 고려하여, 민물에서 사유지 낚시터 개발 및 운영의 경우는 제3유형(개인관리형)을 제시하였고, 수면관리권자가 정부인 경우는 제4유형(공공기관 관리형)으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여 관리하는 방안이다.

[표 7-12] 바다 및 민물낚시 관리 모델별 유사점과 차이점

	구 분	유형별	모델명	낚시터 범위
유 사 한  사 례	공통 (바다 및 민물)	제1유형	어업단체 관리형	바다 및 민물에서 수산업법 제55조 관련 마을어업, 협동양식업, 정치망 등에서 하는 낚시터
	바 다	제3유형	지자체 관리형	어업면허를 제외한 지자체 관할 공유수면에서 개발한 낚시터
	민 물	제2유형	지자체 관리형	어업권 수면을 제외한 지자체 관할의 공유수면] - 하천, 댐, 호수, 저수지, 인공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 - 국가나 지자체 혹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관리하는 내수면
차 이	바다	제2유형	낚시어선 관리형	현행 낚시어선의 영업(민물은 없음)
	민물	제3유형	개인 관리형	개인이 개발한 낚시터
	민물	제4유형	공공기관 관리형	중앙정부가 관리 위임을 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및 농업기반공사 관할 수면

## 제2절 종합적인 낚시발전 방안

### 1. 정책수립의 필요성 및 목표

#### 가. 정책수립 필요성

낚시인의 쓰레기 방치 및 떡밥 등 과도한 미끼사용으로 해양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원감소 및 어장이용을 둘러싼 어업인과의 마찰 발생을 해소해야 한다.

현재 낚시인의 안전문제나 편의시설 제공 등 낚시를 바람직한 국민 여가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낚시관련 업무의 종합적 관리 지원책이 없는 실정이다. 5개 부처 17개 법률에 의거 각기 분산되어있다. 또한 갯바위나 방파제, 낚시선 등에서 매년 상당수의 사망·부상자 발생하거나 기상 특보 발효시에도 무리하게 출조하여 잦은 사고 등 낚시인의 안전조치 미흡실정임으로 이에 대한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따라서 낚시관련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업 발전을 포함한 종합적인 낚시관리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 나. 정책목표

낚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지원·육성을 통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낚시를 바람직한 국민 여가문화로 정착시키는 한편, 어촌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어촌사회 발전 및 어업인 소득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003말 현재 낚시인은 570만명(바다 130)이고, 낚시터 16천개소(바다 10)에 이른다.

따라서, 낚시발전을 위한 정책목표는 서민들의 레저활동임에도 정책으로 방치되어 있는 낚시를 제도권내로 흡수하여 물고기 자원 및 낚시터 환경보호 등 바람직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 다. 추진 방향

낚시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 구축을 위한 관련법규 정비, 낚시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발전방안 마련하고 중앙정부는 낚시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수면 이용권자 및 관리권자로 하여금 낚시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각 관리주체가 관할수면에서 낚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유어낙시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지역 및 지자체 등의 실정에 맞는 낙시관리체제를 구축하고 낙시터 및 낙시단체, 낙시인, 낙시터용 물고기 자원조성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하여야 하며, 기존의 어촌계(유어장) 또는 낙시 단체, 낙시 동호회, 자원봉사 모임 등을 활용하여 건전한 낙시문화 정착 유도해야 할 것이다.

## 2. 단계별 추진체계(안)

### 가. 단계별 추진목표 및 체계

단계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을 5년간(2006-2010년)으로 정하였으며, 1단계는 낙시발전 기반조성('06), 2단계 낙시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통한 낙시발전 체제 구축('07~'08), 3단계 국민의 삶 질 향상 차원의 이용 및 관리권자 중심의 낙시관리 체제 정착('11~'15)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06)인 낙시발전 기반조성에서는 종합적인 낙시발전 실행을 위한 체제정비 및 제도개선 기반 구축, 연차별 중장기 종합적인 낙시발전계획 수립, 낙시진흥법(가칭) 제정 추진, 낙시발전 본격 추진을 위한 유어낙시팀 구성, 낙시발전 조기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계속), 낙시관련 토털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06), 낙시단체 해수부 일원화 추진('06) 등이다.

다음으로 2단계('07~'08)인 낙시발전 체제 구축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유어낙시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바다 및 민물 낙시에 대한 이용 및 관리권자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모델별 적용을 통한 체제 구축, 이용 및 관리권자별 주요 낙시터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이용 및 발전계획 추진, 낙시발전 모델별(바다/민물)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방안 마련 및 실시, 시범낙시터 선정 및 도상연습을 통한 실시 준비 및 실시 등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09~'10)인 낙시발전 체제 정착을 위한 주요 내용은 전국적인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즐겁게 유어낙시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인 낙시터조성 체제를 정착시켜 국민의 삶 질 향상 도모, 중앙정부차원의 낙시발전 모델을 기초로 이용 및 관리권자 단위의 낙시관리체제로 전환, 낙시발전 정책별 목표에 대한 연차별 이행방안 점검 및 보완을 통한 쾌적한 낙시터 기반 확립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표 7-13] 종합적인 낚시발전방안 목표 및 추진전략

단계별	목 표	추진 전략
1단계 (‘06)	낚시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기반 구축	<b>[낚시발전 기반 조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적인 낚시발전 실행을 위한 체제정비 및 제도개선 기반 구축</li> <li>· “연차별 중장기 종합적인 낚시발전계획” 수립(‘06년말)</li> <li>· “낚시진흥법(가칭)” 제정 추진(‘06~’07)</li> <li>· 낚시발전 본격추진을 위한 유어낚시팀 구성(‘06)</li> <li>· 낚시발전 조기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계속)</li> <li>· 낚시관련 토털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06)</li> <li>· 낚시단체 해수부 일원화 추진(‘06)</li> </ul>
2단계 (‘07~’08)	법·제도정비를 통한 낚시 발전 체제 구축	<b>[낚시발전 체제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차원의 유어낚시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li> <li>· 바다 및 민물 낚시에 대한 이용 및 관리권자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모델별 적용을 통한 체제구축</li> <li>· 이용 및 관리권자별 주요 낚시터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이용 및 발전계획 추진</li> <li>· 낚시발전 모델별(바다/민물)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방안 마련 및 실시</li> <li>· 시범낚시터 선정 및 도상연습을 통한 실시 준비 및 실시</li> </ul>
3단계 (‘09~’10)	국민 삶의 질 향상 차원의 이용 및 관리권자 실정에 적합한 낚시발전 체제 정착	<b>[낚시발전 체제 정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적인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즐겁게 유어낚시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인 낚시터조성 체제를 정착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li> <li>· 중앙정부차원의 낚시발전 모델을 기초로 이용 및 관리권자 단위의 낚시관리체제로 전환</li> <li>· 낚시발전 정책별 목표에 대한 연차별 이행방안 점검 및 보완을 통한 쾌적한 낚시터 기반 확립</li> </ul>

나. 단계별 세부추진 내용

(1) 1단계 : 기반조성

(가) 계획기간 : 2006년

(나) 추진전략

- 종합적인 낚시발전 실행을 위한 체제정비 및 제도개선 등 기초적인 기반 구축
  - 낚시관련 부처간의 낚시관리 업무 역할 정비('06)
  - 낚시단체 및 관련 업계 현황조사('06-'08)
  - 낚시대표 단체 결성을 통한 정부와의 업무협조 체제 구축('06-'08)
  - 중장기 종합적인 낚시발전계획 수립('06)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모델 확정
    - 종합적 발전방안 계획 공청회 개최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정
    - ※ 낚시환경 조성 범위, 낚시인 지원방안, 낚시산업 지원방안 등 계 구축
- 제도정비를 위해 “낚시발전법(가칭)” 제정 추진('06~'07)
- 낚시발전 본격추진을 위한 낚시발전팀 구성 및 운영('06)
  - 종합적인 낚시발전을 위한 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한 유어낚시팀 설치

(2) 2단계 : 낚시발전 체제 구축

(가) 계획기간 : 2007~2008년(2개년)

(나) 추진전략

- 중앙정부차원의 유어낚시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07)
  - '06년도의 유어발전팀의 업무 및 조직을 확대 및 지방자체단체, 낚시관련 단체와의 유기적 관계 강화
- 바다 및 민물 낚시에 대한 이용 및 관리권자 지역 실정에 맞는 낚시발전 모델에 따른 시범실시를 통한 체제구축('07-'08)
  -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별 낚시관리 체제 문제점 발굴 및 개선·보완
- 이용 및 관리권자의 지역별 주요 낚시터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발전계획 추진

- 지역 실정에 맞는 낚시발전 모델과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낚시관리 및 발전방안 세부 추진 계획 확정('07-'08)
- 중앙/수면 이용 및 관리권자/낚시단체 등 역할분담을 통한 연차적·체계적으로 실시
- 낚시발전 모델별(바다/민물)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방안 마련 및 실시
  - 낚시터 환경 개선, 낚시업계 진흥, 낚시인의 낚시문화 증진, 낚시대상 어자원 관리 계획 등
  - 낚시모델의 제도적 정착방안 평가 등을 통해 문제점을 수정·보완

### (3) 3단계 : 낚시발전 체제 정착

(가) 계획기간 : 2009~2010(2개년)

#### (나) 추진전략

- 전국적인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즐겁게 유어낚시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인 낚시터조성 체제를 정착시켜 국민의 삶 질 향상 도모
- 이용 및 관리권자의 지역실정에 맞는 낚시발전 모델 정착
- 중앙정부차원의 낚시발전 모델을 기초로 이용 및 관리권자 단위의 낚시관리 체제로 전환
- 유어낚시 발전 정책별 목표에 대한 연차별 이행방안 점검 및 보완을 통한 쾌적한 낚시터 기반 확립

## 3. 주요내용 세부추진 계획

### 가. (가칭)낚시발전법 제정

#### (1) 현황 및 문제점

낚시관련업무가 5개부처(해양수산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문화관광부)에 산재되어 있으며 5개부처에서 17개의 법을 관장한다. 해양수산부가 8개법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각각 3개, 농림부 2개, 문화관광부가 1개 인 실정이다. 관련법은 낚시인의 입장에서 제정된 법이 아니라 부처의 입장에서 제

정되어 법 종류는 많으나 일부 법은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즉, 국가의 공동재산인 물고기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실현가능한 제도와 전담부서가 필요하나 업무의 사각지대로 방치 상태이다.

## (2) 개선 방안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낚시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가칭)낚시발전법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낚시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수면마다 각기 다른 목적이 있으므로 낚시관련 기본적인 규정을 한곳으로 모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가칭)낚시발전법은 낚시발전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낚시에 관한 조장 및 진흥법으로 제정되어 수면이용권자 및 관리권자(어업인, 지자체, 개인 등)가 낚시에 관한 이용 및 관리가 가능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돕는다. 또한, 채포어종길이 제한, 어구어법의 제한, 채포금지기간, 금지구역 등 낚시인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도 포함되며, 낚시관련 단체, 언론기관 지원·육성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한다.

## (3) 추진일정

(가칭) “낚시발전법” 법안 연구용역('06. 2~'06. 7) 후, 낚시발전법 제정·시행('06~'07)을 하고, 낚시발전법 시행령 제정·시행('07년 이후)한다.

## 나. 낚시관리 전담부서 신설

### (1) 현황 및 문제점

낚시의 대상은 생물자원이므로 생물생태계를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에 유어낚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낚시인을 위한 각종 정보 및 편의시설 제공뿐만 아니라 불법낚시에 대한 규제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해양대기청 수산국내 유어어업과에서 모든 유어행위를 총괄관리하고 있으며 일본도 유어과에서 낚시발전 및 어업인과의 결합 문제 해결 등을 하고 있다.

## (2) 개선방안

유어낙시에 관한 종합적인 발전대책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낙시인의 안전문제나 편의시설 제공 등 낙시를 바람직한 국민 여가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낙시관련 업무의 종합적 관리대책 마련 및 지원도 필수다. 또한 해양환경오염 심화, 자원감소 및 어장이용을 둘러싼 어업인과의 마찰 조정의 역할도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낙시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낙시발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낙시터, 낙시인의 이용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낙시용 물고기자원 방류에 관한 사항, 낙시행위에 따른 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우수 낙시터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낙시용 쓰레기 봉투제 도입 등에 관한 사항과 낙시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낙시인 안전에 관한 사항이 그것이다.

이용 및 관리권자 지역 실정에 맞는 시범사업도 실시해야 한다. 바다 및 민물낙시에 대한 이용 및 관리권자의 지역 실정에 맞는 시범실시를 통해 낙시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 (3) 추진일정

낙시관련 정책을 총괄·관리하기 위한 (가칭) “낙시발전팀” 구성 및 운영('06. 5 - '07.4)하고, (가칭) “낙시발전과” 구성 및 운영, 팀에서 과로 승격('07.5 - 계속) 시킨다. 유어낙시에 관한 종합적인 발전대책 수립 및 시행('06)을 통해 낙시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06-계속)하고 바다 및 민물 낙시에 대한 이용 및 관리권자 지역 실정에 맞는 시범실시('07-'08)를 한다.

### 다. 낙시용 물고기 자원조성

#### (1) 현황 및 문제점

1971년부터 2003년까지 1,194백만마리의 유용수산종묘를 생산하여 그중 133백만마리를 연안에 방류하였음, 또한, 민간 종묘 매입 및 방류는 13년('86~'03)동안 정부에서는 민간에서 생산한 종묘를 약 44억(19,843천마리)을 투입 및 방류하였다. 그러나 낙시인들의 주 대상어종이 감성돔, 붕어 등 특정어종에 대한 자원조성은 거의

없으며 낚시용 자원조성사업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 (2) 개선방안

낚시터용 자원조성 및 방류사업 전개가 필요하고, 낚시 어종의 지속적 관리 및 자원량을 추정 조사하여 방류사업 확대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3) 추진일정

낚시용 물고기자원 방류 계획 수립('07) 후, 낚시용 물고기 자원량 추정('08)하고 낚시용 물고기 방류 사업을 추진('09- 계속)한다.

## 라. 낚시단체 지원·육성

###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낚시단체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4개 부처에 약 5개 사단법인이 등록되어 있고, 각 사단법인에 지부 내지는 지역협회 형식으로 회원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단법인 아닌 임의단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양수산부(2), 문화관광부(2), 환경부(1), 국세청(1), 임의단체(낚시분야 및 영업분야 별로 연합회, 협회, 연맹, 친목회 등 다수))

개별단체별로 전국 혹은 지역단위의 낚시대회를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들은 자체적 치어 방류나 환경기금 운동 혹은 잡는 낚시에서 즐기는 낚시로 유도 등 낚시계 현안에 대한 환경보호 운동 등을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적인 낚시단체의 다양한 치어방류나 환경보호 등의 활동 및 운동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단일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낚시단체와 같이 우리나라도 대표성 있는 낚시단체를 만들어 정부의 지원하에 다양한 낚시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해야만 낚시발전 조기정착 및 지속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통합된 낚시단체를 통하여 정부가 할 수 없는 민간차원의 홍보 및 교육, 감시 등의 노력들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일본의 낚시단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환경성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재단법인) 일본낚시 진흥회 결성하였는데, 본 진흥회는 본

부, 9개 지구지부 및 46개 현지부로 조직화되어 있다. 물고기자원의 보호증식, 낚시터 환경의 정비 보전, 낚시 전반에 관한 지식의 보급,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들, 낚시계의 단체들(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환경성)과 어업관계단체 사이에서 상호 연락 및 협조를 하면서 레크레이션으로서의 낚시의 건전한 진흥 및 발전 도모하는 것이 (재)일본낚시진흥회의 목적이며, 방류사업, 낚시환경 보전사업, 낚시터 조성사업, 낚시진흥을 위한 사업, 낚시보급사업, PR사업, 조사연구사업, 조직강화사업,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제휴사업 등 여러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 (2) 개선방안

먼저, 낚시인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어 민간중심의 환경보호운동으로 확산 필요하다. 그 후에 낚시인들의 통합된 의사전달을 위해 대표성이 있는 단체의 설립을 유도하고 대표낚시단체의 다양한 낚시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 지속적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여러 부처에 등록된 낚시단체를 해수부 중심으로 등록기관 이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추진일정

낚시단체 해양수산부로 이관 유도 추진('08까지) 후, 낚시관련 최고상위단체 결성 등록을 추진('06-'07)하고, (가칭)한국낚시총연합회를 재단법인화('07- 계속)한다.

### 마. 환경친화형 미끼 및 낚시추 연구개발 지원

#### (1) 현황 및 문제점

바다 및 민물 낚시에서 낚시로 인한 떡밥, 납추, 생활쓰레기 등이 연간 9천톤 발생 추정된다. 민물낚시의 떡밥 과다 투기, 바다낚시의 납추 탈락으로 수질오염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친화형 미끼 및 낚시추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하여 바다 및 민물생태계 보전이 필요하다.

#### (2) 개선방안

환경친화형 미끼 및 낚시추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제품개발 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대한 판매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낚시단체와 연계하여 제품사용을 권장하고, 환경친화적인 낚시대회 개최를 통한 낚시인의 인식을 제고시키며 친환경 낚시용구에 환경마크 부여 등의 친환경 낚시용구 제작 업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친환경 낚시터 사용 낚시인 낚시터 이용 할인 혜택 제공 등도 방법이다.

### (3) 추진일정

현행 낚시 미끼 및 낚시추 사용실태조사('06-'07)를 하고, 환경친화형 미끼 및 낚시추 연구개발('07)을 한 후, 환경친화형 미끼 및 낚시추를 상품화('08)한다.

## 바. 낚시문화정착 캠페인

###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낚시관련 업무가 각 중앙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낚시문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전무하고 일부 낚시단체에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나 일회성 및 자체행사로 그치고 있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교육 및 홍보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낚시관리제도의 추진이 일반 국민들에게 생소한 개념일수 있으므로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하여 동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낚시인의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안전위해요소의 파악이 시급하고 각 요소에 대한 개선 및 보완 정책 개발이 필요(방파제, 유어선 등)하다. 울산 동방파제의 경우 낚시인들을 위한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예정에 있다.

### (2) 개선방안

수산자원·해양환경·생태계의 중요성 등에 대한 자료 발간·배포와 낚시단체, 환경단체 등 NGO에 명예환경감시요원 등 적절한 역할 부여를 통해 정부와 연계 방안 추진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낚시관리제도의 조기정착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배 낚시대회 개최나 국정홍보보처 등 관계기관에 협력하여 홍보방안에 대해 추진이 필요하다. 낚시관련 TV 및 언론을 통한 홍보 강화도 중요하다.

### (3) 추진일정

해양수산부 장관배 낚시대회를 바다낚시대회, 민물낚시대회로 구별해 추진 개최('06)한다. 교육 및 홍보 목적의 연 간본으로서, 바다 및 내수면별로 주요 조항 대상 어종, 지역별 정보, 낚시환경 및 자원보호를 위한 홍보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유어 핸드북을 발간('06) 하고, 우수낚시터 선정 및 장관표창수여('07)함으로써 해수욕장과 같이 매년 주요낚시터 등급화도 추진한다.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도 연중 계속 전개한다.

#### 사. 낚시포털사이트 운영

##### (1) 현황 및 문제점

낚시와 관련된 포털사이트가 현재 국내는 없으며, 낚시관련 잡시사가 운영하거나 낚시단체 및 개인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부서가 낚시포털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낚시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물고기자원 보호 및 생태계 보전, 환경보호 등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낚시단체 및 관련 산업 연계, 전세계 낚시관련 사이트와 연계하여 낚시관련 사업기회 창출 기회 제공 등이 필요하다.

##### (2) 개선방안

바다 및 민물낚시와 조구 및 미끼관련 모든 분야의 정보가 모이는 포털 사이트 운영하여 낚시인들에게 어류 생태 및 낚시터 정보 등 낚시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낚시관련 법제도 소개 및 우수낚시터 운영 사례를 제공하고 국내 낚시단체 및 관련 산업 연계, 전 세계 낚시관련 사이트와 연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육성함으로써 낚시관련 사업기회 창출할 수 있다.

##### (3) 추진일정

유사한 포털사이트(Portal Site)를 벤치마킹하고, 낚시인 및 낚시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등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낚시포털사이트 구축을 위한 기초작업('06)을 한 후, 낚시포털사이트를 열고 지속적인 정보 수정·보완과 함께 사이트를 운영('07- 계속)한다.

아. 아름다운 낚시터 100선 자매결연을 통한 낚시발전 도모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해수부에서는 아름다운 어촌 100선(2003)으로 지정된 어촌의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물 관련 업계·단체와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아름다운 어촌 100선 마을 찾아가기 행사 실시 및 안내책자 발간 등을 하고 있다. 낚시발전을 위해서도 아름다운 낚시터 100선을 선정하여 낚시단체와 자매 결연을 맺음으로서 어촌사회 발전과 더불어 낚시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낚시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낚시터의 운영의 주체는 낚시터 관리권자와 낚시이용자임으로 수많은 낚시터와 낚시단체 및 동호회와 자매결연을 통한 낚시관리 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2) 개선방안

주요낚시터 및 낚시동호회, 낚시단체의 현황 파악을 추진하고 자매결연을 원하고 있는 어촌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정부가 주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대표 낚시단체가 주축이 되어 자매결연을 추진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추진일정

분산되어 있는 낚시단체를 일원화(06)하고, 대표낚시단체 선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조성(07) 후, 본격적인 자매결연을 추진(08)한다.

자. 낚시관련 산업 육성

(1) 현황 및 문제점

낚시용품 산업현황(03)은 낚시대 51업체, 낚시릴 13업체, 찌/중/바늘 42업체, 낚시미끼 22개업체, 기타조구용품 업체 188개소 등 총 316개소로 나타났으며, 최근의 저렴한 중국산으로 인하여 조구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업

업체의 지원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 (2) 개선방안

낙시관련 산업의 범위 및 현황을 파악하고 친환경낙시용품에 대한 판매지원 대책과 함께, 관계부처와의 업무협의를 통한 산업관리의 해양수산부로 이관을 추진해야 하며, 낙시관련 산업협회 설립 추진 시 지원해야 한다.

## (3) 추진일정

낙시산업의 범위 및 실태조사('06-'07)를 마친 후, 낙시산업 지원방안 마련('08)하여 낙시산업에 대한 지원('09- 계속)을 실시한다.

차. 낙시관련 통계구축

###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에는 유어낙시 통계(낙시인구, 낙시관련 산업 등)가 없는 실정이므로 낙시관련 통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낙시관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엔 유어낙시와 관련한 통계는 농림수산성에서 발간하는 '어업센서스(5년단위)'와 '유어채포량조사보고서(농림수산성) 등 2종류가 있으며 (전자는 전수조사로서 5년 단위로 여가낙시와 관련한 총체적인 통계를 다루고 있으며 후자는 매년 농림수산성에 등록된 유어낙시선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미국 및 유럽의 경우에도 낙시 쿠폰제 및 낙시면허제를 통하여 관련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 (2) 개선방안

시군의 협조를 받아 바다 및 민물로 구분하여 1년 단위로 낙시기본조사에 관한 통계를 작성 한다. 기초적인 낙시통계자료 구축 후, 통계자료는 정책추진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므로 일본과 같이 5년 단위로 유어낙시 센서스 조사를 한다. 유어낙시인구, 낙시터, 조업업체, 주요 조획어종별 조획량, 출어경비, 연간 조획량, 낙시관련 경비 등 조사 항목도 개발한다.

### (3) 추진일정

매년 낚시기본통계조사('06)를 실시해 기초 자료를 작성한 후 유어낚시센서서 조사 계획수립('07)을 통하여 유어낚시 센서스 도상연습 및 본격으로 실시('08)한다.

#### 4. 낚시발전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

지금까지 제시된 낚시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법제정·시행, 전담부서, 자원조성, 낚시단체 활성화, 환경친화적 용품, 홍보 및 교육, 산업지원, 낚시통계 등 8개분야로 나누어 세부추진 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제정·시행의 경우는 (가칭) “낚시발전법” 법안 연구용역('06. 2~'06. 7) 후, 낚시발전법 제정·시행('06~'07)을 하고, 낚시발전법 시행령 제정·시행('07년 이후)한다. 다음으로, 낚시관리 전담부서 신설은 “낚시발전팀(가칭)” 구성 및 운영('06. 5 - '07.4)하고, 팀에서 과로 승격('07.5 - 계속) 시킨다. 유어낚시에 관한 종합적인 발전대책 수립 및 시행('06)을 통해 낚시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06-계속)하고 바다 및 민물 낚시에 대한 이용 및 관리권자 지역 실정에 맞는 시범 실시('07-'08)를 한다.

낚시용 물고기 자원조성은 낚시용 물고기자원 방류 계획 수립('07) 후, 낚시용 물고기 자원량 추정('08)하고 낚시용 물고기 방류 사업을 추진('09- 계속)한다. 낚시단체 지원·육성은 낚시관련 최고상위단체 결성 등록을 추진('06-'07)하고, (가칭)한국 낚시총연합회를 재단법인화('07- 계속)한다. 환경친화형 미끼 및 낚시추 연구개발 지원은 현행 낚시 미끼 및 낚시추 사용실태조사('06-'07)를 하고, 환경친화형 미끼 및 낚시추 연구개발('07)을 한 후, 환경친화형 미끼 및 낚시추를 상품화('08)한다.

홍보 및 교육에서 낚시문화정착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장관배 낚시대회를 바다낚시대회, 민물낚시대회로 구별해 추진 개최('06)한다. 주요 조획 대상 어종, 지역별 정보, 낚시환경 및 자원보호를 위한 홍보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유어핸드북을 발간('06) 하고, 우수낚시터 선정 및 장관표창수여('07)함으로써 해수욕장과 같이 매년 주요낚시터 등급화도 추진한다.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도 연중 계속 전개한다. 낚시포탈사이트 운영은 기초작업('06)을 한 후, 낚시포탈사이트를 열고 지속적인 정보 수정·보완과 함께 사이트를 운영('07- 계속)한다. 또한, 아름다운 낚시터 100선 자매결연을 통한 낚시발전 도모기 위하여 분산되어 있는 낚시단체를 일원

화('06)하고, 대표낙시단체 선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조성('07) 후, 본격적인 자매결연을 추진('08)한다.

낙시관련 산업 육성은 낙시산업 실태조사('06-'07)를 마친 후, 낙시산업 지원방안 마련('08)하여 낙시산업에 대한 지원('09- 계속)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낙시관련 통계구축은 매년 낙시기본통계조사('06)를 실시해 기초 자료를 작성한 후 유어낙시센서서 조사 계획수립('07)을 통하여 유어낙시 센서스 도상연습 및 본격으로 실시('08)한다.

[표 7-14] 낚시발전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

구분		년도				
		'06	'07	'08	'09	'10
법제정시행	(가칭)“낚시발전법” 법안 연구용역					
	낚시발전법제정·시행					
	낚시발전법 시행령 제정·시행					
전담부서	(가칭)“낚시발전팀” 구성·운영					
	(가칭)“낚시발전과”구성 및 운영 (팀에서 과로 승격)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시행					
	낚시 발전 시행계획 수립·시행					
자원조성	낚시유형별 시범사업실시					
	낚시용 물고기자원 방류 계획 수립					
	낚시용 물고기 자원량 추정					
낚시단체 활성화	낚시용 물고기 방류 사업 추진					
	낚시단체 해수부로 이관 유도 추진					
	낚시관련 최고상위단체 결성 등록 추진					
	대표낚시단체 선정/사업추진 기반조성					
환경친화적 용품	(가칭)한국낚시총연합회 재단법인화					
	어업인과 낚시단체 자매결연					
	낚시 미끼/낚시추 사용실태조사					
홍보 및 교육	환경친화형 미끼/낚시추 연구개발					
	환경친화형 미끼/낚시추 상품화					
	해수부 장관배 낚시대회					
	유어핸드북발간					
	우수낚시터 선정/장관표창수여					
낚시 산업지원	캠페인 전개					
	낚시포탈 사이트 구축 및 운영					
	낚시산업 실태조사					
낚시통계	낚시산업 지원방안 마련					
	낚시산업 지원					
	낚시기본 통계조사					
낚시통계	유어낚시센서스 조사 계획 수립					
	유어낚시 센서스 조사					

## < 참고문헌 >

- 강원도 맑은물보전과, 청정1급수 보전지역 낚시규제의 합리적 조정계획(내부자료), 2000.
- 김진동, 붕어낚시보감-무엇을 낚는가, 낚시춘추, 강마을, 2000.
- 낚시문화, 한국조구산업총람, 2003, pp.286-293.
- 낚시춘추 편집실, 한국낚시 55년 300대 뉴스·사건, 낚시춘추, 2001.
- 농업기반공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각 연도
- 문현주, 수계수질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및 적정 투자·비용분담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연구보고서 RE-05, 1978.
- 박정석, 유어낚시어업의 관리 필요성에 관한 연구, 부경대 대학원 자원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 배상우, 낚시가 사회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서동환, 표준 낚시백과사전, 도서출판 자연과학, 월간낚시, 1998, p676.
- 이정전, 환경경제학, 박영사, 2000.
- 이광남, 낚시면허제 도입관련 정책 발표자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3.2
- 이광남, 낚시면허제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찰" 수산경영학회 제34권 제1호, 2003.6
- 이상고, 21세기 국제해양질서에 대응하는 자원관리체계와 책임성 및 환경친화적 어업정책에 관한 기본연구, 수산경제연구, 제3권 1호, 1996, pp. 59-92.
- 이상고·장창익, 해양환경어업론, 대우학술총서 455 논저, 1999
- 이상고,, "21세기 환경라운드에 대비한 해양식량의 환경친화적 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해양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1999)pp. 545-610.
- 이상고·장창익, 어업관리론(개정·증보판), 도서출판 세종출판사, 2002.
- 이상고, 해양낚시의 제도적 관리 타당성에 관한 공공경제학 및 환경경제학적 분석 연구, 수산경영론집, 제34권 1호, 2003.
- 이상고, 박정석, 해양낚시의 자원 및 생태환경적 문제와 제도적 관리의 필요성, 『수산해양교육학회』, 제15권 1호, 2003.
- 조계근, 강원도 내수면의 낚시면허제도입 타당성 분석, 강원개발연구원 연구보고 00-16, 2000.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낚시면허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2002.5.
- Bally Denis, Philippe Paquotte, (1996), "Aquaculture and Environment Interactions in the Perspective of Renewable Resource Management Theory", Coastal Management, Vol. 24, pp. 251-269.
- Bockstael, N. E., W. M. Hanemann, and C. L. Kling (1987), "Estimating the

Value of Water Quality Improvements in a Recreational Demand Framework," *Water Resources Research*, 23(May) : 951-960

Bockstael, N. E., K. E. McConnell and I. E. Strand (1989), " A Random Utility Model for Sportfishing : Some Preliminary Results for Florida," *Marine Resource Economics*, 6 : 245-260

B. J. Rothschild, J. M. Gates, and A. M. Carlson, (1977) "Management of Marine Recreational Fisheries." paper prepared for the Marine Recreational Fisheries Symposium, Sport Fishing Institute, San Francisco, April 6-7.

Basil M.H. Sharp, (2001) "Integrating Recreational Fisheries into Rights Based Management Systems", Department of Economics The University of Auckland

Clifford, W.,T. Hoban, J. Whitehead, R. McPherson, with J. Thigpen, and V. Kelley. (1999), North Carolina Coastal Recreational Fishing License Survey. North Carolina Sea Grant Program Project No. 98-FEG-40

D. Gordon, D. W. Chapman, and T. C. Bjornn, (1973) Economic evaluation of sport fisheries-What do they mean? *Trans. Amer. Fish. Soc.* 102, 293-311

FAO, (1997), *Social, Economic & Management Aspects of Recreational Fisheries*, Rome.

Glenn R. Piehler, (2000), *Exit Here for Fish: Enjoying and Conserving New Jersey's Recreational Fisheries*, New Jersey, NJ.

Jone C. Whitehead, William B. Clifford, Thomas J. Hoban, (2002) "Willing to Pay for a Saltwater Recreational Fishing License: A Comparison of Angler Groups" *Marine Resource Economics*

John R. Post, Michael Sullivan, Sean Cox, Nigel P. Lester, Carl J. Walters, Eric A. Parkinson, Andrew J. Paul, Leyland Jackson, and Brian J. Shuter, (2002). "Canada's Recreational Fisheries: The Invisible Collapse?" *Fisheries*, Vol 27

Horst Siebert, Mannheim, (1982), "Nature as a Life Support, Renewable Resources and Environmental Disruption" *J. of Economics*, Vol. 42, No. 2, pp. 133-142.

Jung-HeeJung-Hee Cho and Thomas Grigalunas, "The Economic value of Marine Recreational Fishing: Case Study, Lesson, and Implications", *Ocean Policy Research*, Vol. 15, No. 1, 2001

Kaoru, Y, (1988), *A Discrete Choice benefit Analysis of Marine Recreational Fishing: Does Site Definition matter?*, Unpublished Mimeo, Marine Policy Center, Woods Hole, MA. 35pp

Kenneth E. McConnell and Jon G. Sutinen. (1979) "Bioeconomic Models of Marine Recreational Fishing" *Journal of Environmental and Management*

K. E. Mc Connell and V. J. Norton, An economic evaluation of marine recreational fishing, in " Marine Recreational Fisheries" (R. Stroud, Ed.) (1976). Sport Fishing Institute, Washington, D. C.

Korakandy, Ramukrishra, (1999), *Recreational Fisheries Development and Management in India: A Study of Economics and management with Special Reference to Kerala, India.*

Michael R. Ross, Nancy Haver and Robert C. Biagi, (1991), *Recreational Fisheries of Coastal New England*, New York.

McConnell, K.E. and I.E. Strand (1994), *The Economics Value of Mid and South Atlantic Sportfishing Volume 2*, University of Maryland.

Morey, E. R., R.D. Rowe and D. Shaw (1987), *The Logit Model and Expected Consumer's Surplus Measures : Valuing Marine Recreational Fishing*, Unpublished Mimeo.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Co. 31pp

Phil Hickley(ed.), et al, (1998), *Recreational Fisheries: Social, Economic & Management Aspects*, London.

L. G. Anderson, (1981) The demand curve for recreational fishing with an application to stock enhancement activities, *Land Econom.* 59(3), 279-286

Lee G. Anderson, (1993) "Toward a Complete Economic Theory of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Recreational Fisheries", *Journal of Environmental and Management*

R. C. Bishop and K. C. Samples, (1980), Sport and commercial fisheries conflicts: A theoretical analysis, *J. Environ. Econom. Management* 7, 220-233

Robert B. Ditton Stephen M. Holland David K. Anderson, (2002) "Recreational Fishing as Tourism", *Fisheries*

Stephen Cunningham, Michael R. Dunn and David Whitmarsh, (1985), *Fisheries Economics -an introduction*, St. Martin's Press, New York.

Teisl, M.F., and K.J, Boyle.(1997) Needles in a Haystack: Cost-Effective Sampling of Marine Sport Anglers. *Marine Resource Economics* 12(1);1-10

Wegge, T.C., R. T. Carson and W.M. Hanemann (1988), *Site Quality and the Demand for Sportfishing in South Central Alaska*, Unpublished Mimeo, Jones

and Stokes Associations, Inc. Sacramento, CA. 17pp

William F. Sigler, John W. Sigler, (1990), *Recreational Fisheries: Management, Theory, and Application*, Washington D.C.

## 부록 1.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전문개정 2002.2.15 해양수산부령 제21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의 지정 및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어장의 지정신청 등) ① 유어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어장구역이 2 이상의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각각의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속하는 어장별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구역도
  3.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어의 방법 등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한 내용(이하 "유어장관리규정"이라 한다)
  4.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총회의사록 사본
  5.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면허어업의 어장구역과 중복되거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관련어업자의 동의서
  6.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나. 선박검사증서 사본
    - 다.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라.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치·구역도는 축적 1만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로 하여 유어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면허·허가어업의 어장구역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하되, 그 작성방법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유어장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호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 유어장

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이 풍부한 수면일 것
2. 인접한 다른 면허·허가어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4.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일 것
5. 면적이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어장구역의 2분의 1 미만일 것
6. 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 그밖에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합할 것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어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을 지정하는 때에는 유어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유어장 지정의 유효기간은 당해 어장에 대한 면허·허가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로 한다. 다만,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2 이상의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허가어업 중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어업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⑤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유어장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유어장관리규정) ①유어장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유어의 방법 및 시기
2. 유어장에서의 포획·채취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와 수량
3.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유어장 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유어장 안에서의 유어활동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6. 유어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이용자의 안전과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유어장관리규정의 작성례를 정하여 이를 권장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유어장관리규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유어장관리선) ①유어장에 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어업의 어장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어선

2. 법 제41조제2항제1호 또는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3.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사업의 유선으로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선박

②관리선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가 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용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 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동의. 이 경우 비치할 구명동 의중 20퍼센트 이상을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2. 승선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3. 직경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4.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 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5. 용량 2.5킬로그램 이상인 소화기

6. 비상용 구급약품

7. 그 밖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장비

③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을 관리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사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관리선의 최대 승선인원은 선박안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탑재인원으로 한다.

⑤관리선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관리선의 사고로 승선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탑재인원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원의 경우에는 선원법 제85조 내지 제93조에 규정된 선원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①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유어장지정서,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제2조제3항 제6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관리선 또는 그 선명(관리선을 새로이 지정하거나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유어장관리규정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지정서에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 기타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유어장의 출입 등) ①유어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그 이용자가 수면(水面)상태의 유어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선을 이용하여 출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관리선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유어장 이용자를 관리선에 승선시켜 유어장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 출·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관리선을 관리·운용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항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선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선박 출·입항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방법)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유어장의 시설 및 자원조성) ①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간이화장실, 폐기물의 처리 또는 저장시설, 그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되, 그 입간판은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 규모로 제작하여 흰색으로 칠하고, 그 위에 청색글씨로 유어질서유지와 수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유어장의 경계선에는 다음기준에 따라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경계선 표지는 각 모서리와 각 변에 설치하되, 변에는 500m 마다 1개씩 설치할 것

2. 표지는 밑변 50센티미터, 높이 30센티미터 크기의 직삼각형의 붉은색 깃발로 할 것

3. 경계선의 수면부분에는 부자(浮子)로 설치하고, 갯벌인 부분에는 말목으로 설치할 것

④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에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매월 2회 이상 유어장 및 그 주변 수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유어장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①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당해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3인 이상의 어촌계원 또는 조합원에게 유어장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이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유어장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유어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유어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유어장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유어장 이용자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그 밖에 유어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어장을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선원의 증원 또는 교체
2. 유어장 이용시간 또는 구역의 제한
3. 관리선 운항의 제한
4. 그 밖에 관리선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되,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설비의 구비 및 정비현황
2. 사고발생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의 구비 및 작동현황
3. 그 밖에 유어장의 안전유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사고발생의 보고) ①유어장을 관리·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선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어장 이용자 또는 승객이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때
2. 충돌·좌초 그 밖에 관리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인명구조활동 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유어장관리일지) 유어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어장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유어장의 지정취소)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고도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5항에 의한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때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어장관리선에 안전에 관한 장비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운항한 때
3.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5항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항한 때
4.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항한 때
5.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6. 유어장관리규정을 위반한 때
7. 수산업법 제55조에 의한 명령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215호,2002.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낚시터관리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낚시터관리선은 이 규칙에 의한 유어장관리선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 2월 이내에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 2월 이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낚시터관리선은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후에 유어장이용자의 승선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록 2. 일본의 유어규칙

### 1. 유어규칙의 개요

유어로 연권 4,000엔, 일권 1,500엔(현장 판매가는 각각 500엔 증가)이며, 특별유어 중 연권 1,500엔(지정지구내에서 7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자)이 있다(특별유어증의 교부방법은 조합에 문의하여 구매할 수 있다. TEL (0539)26-0813

[표 1] 어종별/낚시종류별 규제사항

어종	어업종류	통수 또는 규모
은어	友釣	괘침은 4개 이내 의심가는 먹이 미끼 금지 릴 금지
	먹이 낚시 호르는 화침조 石川釣(낚시)	낚시바늘은 2개 이내 낚시바늘의 크기는 은어먹이낚시용의 2호 이하 낚시바늘은 7개 이내 낚시바늘은 2개 이내
	고로 인(引)	낚시바늘은 8개 이내 (낚시바늘 1개에 갈고리의 수는 2개 이내) 릴 금지
뱀장어	뱀장어우게 먹이낚시 염주낚시(釣)	5개 이내 낚시바늘은 2개 이내 염주 2개 이내
	사침조(捨針釣)	1인 5통 이내 낚시바늘 1통 10개 이내
황어	먹이낚시	낚시바늘은 2개 이내
	일본식화침조	낚시바늘은 1개
	루어낚시 플라이낚시	낚시바늘은 1개
아마고	먹이낚시	낚시바늘은 2개 이내
	일본식화침조	낚시바늘은 1개
	루어낚시 플라이낚시	낚시바늘은 1개
잉어·붕어	먹이낚시	낚시바늘은 2개 이내
피라미	먹이낚시	낚시바늘은 2개 이내
	호르는 화침조	바늘은 5개 이내
무지개송어	먹이낚시	장대는 1개 이내이고, 다른 어법과 중복하지 않는 것 낚시바늘은 2개 이내
	일본식화침조	장대는 1개 이내, 다른 어법과 중복하지 않는 것 낚시바늘은 1개
	루어낚시 플라이낚시	장대는 1개 이내, 다른 어법과 중복하지 않는 것 낚시바늘은 1개

전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표의 '아'란에 기재된 구역에 대해서는 '이'란에 기재된 어업의 방법에 의해 '우'란의 기간중에는 유어를 해서는 안된다.

'아' 구역	'이' 어구·어법	'우' 기간
	모든 어구 어법	

## 2. 유어핸드북

### 가. 유어규칙

유어규칙에는 전체길이 제한, 어구어법의 제한, 채포금지기간, 금지구역, 유어요금 등 유어에 대해서 유어자가 지켜야하는 사항을 규정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각 조합에 따라 다르다. 유어승인증을 구입할 경우에 제한을 기재한 지침서를 배포하는 조합도 있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조합에 문의하여야 한다. 또 유어규칙에는 유어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다.

#### (1) 유어승인증과 유어료

조합이 관리하는 어장에서 유어를 할 때는 유어승인증(유어권)을 매입함과 동시에 유어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유어료는 조합이 의무로 시행하고 있는 증식이나 어장의 관리에 관련된 비용의 일부를 조합원과 똑같이 일반 유어자에게도 부담을 지우고자 하는 것이다.

#### (2) 유어자의 숙지사항

유어자의 숙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어자는 유어를 하는 경우에 유어승인증을 휴대하고 어장감시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유어자는 유어를 할 경우 어장감시원의 지시에 따라야만 한다. 셋째, 유어자는 상호 적당한 거리를 두고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3) 어장감시원에 관한 사항

유어자의 유어행위를 감시하는 유어감시원, 또는 어장감시원은 유어를 관리하는

어업에 소속된다. 유어감시원은 유어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행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어장감시원은 유어규칙에 규정한 어장감시원증을 휴대하고 동시에 어장감시원이 하는 일을 표시하는 완장을 부착해야만 한다.

#### (4) 유어규칙 위반자에 대한 조치

어협은 유어자가 유어규칙에 위반했을 때는 즉시 그 사람의 유어의 중지를 명하고, 또는 그 사람의 유어를 어협이 거절한다. 이 경우 그 사람이 이미 납부한 유어료의 환불은 하지 않는다.

#### 나. 낚시하는 장소에서의 기본 매너

(가) 유어자가 버리는 낚시줄이나 낚시바늘로 새가 상처를 입는 경우, 낚시추로 인하여 납중독에 걸리는 경우, 방치해 놓은 낚시 또는 기타 낚시용품으로 강에서 낚시를 하고 돌아오는 어린이가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낚시 사용후의 낚시 및 기타 낚시용품은 버리지 말고 가지고 돌아가 자체 처리해야 한다. 또 쓰레기나 휴대용 담배 재떨이를 반드시 가지고 다니고, 낚시장소의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자연과 공존하는 기분으로 낚시를 행해야 한다.

(나)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어권(유어승인증)을 구입하고, 낚시장소에서는 보이기 쉽게 부착한다.

(다) 낚시로 인하여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낚시장소에서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낚시를 행하고, 협소한 장소에서는 서로 협조하는 자세로 낚시를 해야 한다. 또한 주차를 할 때에는 그 고장 사람의 생활이나 일에 폐를 끼쳐서는 안되고 기타 토지나 밭에 무단으로 들어가서도 안된다.

### 3. 일본 지역어업협동조합의 내수면 유어규칙(사례 1)

(내공제11호, 제5종공동어업권)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어업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고 한다)이 면허를 받은 공제11호 제5종 공동어업권과 관련된 어장(이하 「어장」 이라고 한다)의 구역에 있어, 조합원 이외의 사람이 하는 해당어업권의 대상이 되는 수산동물(잉어, 붕어, 뱀장어, 메기를 말한다)의 채포(採捕)(이하 「유어」 라고 한다)에 대한 제한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제2조 (유어의 승인 및 유어료의 납부의무)

1. 어장의 구역내에 있어 유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리 조합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미취학의 유아가 하는 유어에 대해서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앞 조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은 기간 1일의 유어의 경우는 구두로, 기간 1년의 유어의 경우는 유어대상 수산동물, 어구, 어법, 유어구역, 유어기간을 기재한 유어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었을 때는 기간 1일 유어의 경우에는 제 11조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 1년 유어의 경우에는 해당 유어의 승인에 따른 해당 수산동물의 보호 및 배양 혹은 조합원 혹은 타지의 유어자(제1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행하는 수산동물의 채포에 현저하게 지장이 있다고 인정을 받는 경우 또는 제11조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것도 있다.

### 제3조 (유어기간)

제3조 다음 표의 좌측란의 수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유어는 각각 우측란의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

### 제4조 (어구어법의 제한)

수 산 동 물	기 간
잉 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붕 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뱀 장 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메 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어에 이용하는 어구어법은 맨손채포 및 다음 표의 좌측란에 있는 것으로 그 규모는 각각 우측란에 기재한 범위가 아니면 안된다. 단, 그물종류의 그물코는 15cm에 대해 13마디 이하로 한다.

어 구 어 법	규 모
손 낚시	1인당 1개
대 낚시	1인당 3개, 단 부터 까지의 구간은 1인당 1개
투 망	1인당 1통
구 조 망	1인당 1통 · 그물구경은 45cm
4개 수망(手網)	1인당 1통 · 폭(幅) 및 길이 1.6m
	1인당 10통 · 폭 5m 길이 20m · 내(川)폭의 3분의 1이하를 개방해서 설치하는 것도 있다.
	1인당 50통 · 폭 0.6m 길이 1.2m

2.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표의 '아'난(欄)에 기재된 어구어법은 '이'난의 수산동물을 '우'난의 구역에 있어 '에'난의 기간중 유어를 해서는 안된다.

'아'어구어법	'이'수산동물	'우' 구 역	'에' 기간
릴 낚시	전 어 종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투망, 구조망, 4개수망,	전 어 종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앞 각항의 제한 외에 조합은 어구어법, 구역, 기간을 정하고 유어를 제한하는 일 이 있다.

4. 앞 항은 제한은 조합의 게시장에 게시하고 공표하는 것도 한다.

#### 제5조 (금지구역등)

앞 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표의 좌측란에 기재한 구역에 있어서는 각각 우측란의 기간중 유어를 해서는 안된다.

구 역	기 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제6조 (전체길이의 제한)

다음 표의 좌측란에 기재한 수산동물은 각각 우측란에 기재한 전체길이의 것을 채포해서는 안된다.

수산동물	전 체 길 이
잉 어	20cm 이하
붕 어	5cm 이하
뱀 장 어	30cm 이하

제7조 (유어료의 금액 및 납부의 방법)

유어를 하는 경우의 유어료에 대해서는 다음 표의 별표의 유어증권거래소 또는 해당유어를 하는 장소에 납부를 하는 것도 있다.

어 종	어구 어법	기 간	유 어 료
전 어 종	맨손채포 손낚시·대낚시	1일	500엔
		1년	5,000엔
	상기와 동일 투망·구조망, 바늘망, 4개수망	1일	1,000엔
		1년	6,000엔

2. 다음 표의 좌측란에 기재한 유어료는 전(前)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표의 상당란과 같이 한다.

유어자의 종류	유어대상수산동물	어구어법	기 간	유 어 료
초등학교 이하	전 어 종	맨손채포 손낚시·대낚시	1일	무 료
중 학 생	전 어 종	맨손채포 손낚시·대낚시	1일	150엔
70세 이상			1년	제1항에 규정한 것의 1/2 금액

제8조 (유어승인증에 관련된 사항)

조합은 제2조 제1항의 승인을 했을 때는 조합이 정하는 유어승인증(이하 「유어

증」이라고 한다)도 있다. 유어자에게 교부하는 것도 있다.

2. 유어증은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된다.

#### 제9조 (유어를 할 때 지켜야하는 사항)

유어자는 유어를 하는 경우에는 유어증을 휴대하고 어장관리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유어자는 유어를 할 때에는 어장감시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3. 유어자는 유어를 할 때에는 상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타인의 폐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 유어자는 어장에 설치된 산란시설 또는 어장의 바닥을 해서는 안된다.

#### 제10조 (어장감시원)

어장감시원은 이 규칙의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지시를 행하는 일이 있다.

2. 어장감시원은 조합이 정하는 어장감시원증을 휴대해서 동시에 어장감시원인 것을 표시하는 완장을 붙이는 것을 한다.

#### 제11조 (위반자에 관련된 조치)

조합은 유어자가 이 규칙에 위반했을 때는, 즉시 그 사람에게 유어의 중지를 명하고, 또는 이후의 그 사람의 유어를 거절하는 일이 있다. 이 경우 유어자가 납부한 유어료의 환불은 하지 않는다.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하천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는 낚시권의 구입을 위한 유어료를 지불한다. 이러한 유어료는 조합이 의무로 행하고 있는 증식 및 어장관리 비용에 대한 어협 조합원의 부담과 마찬가지로 유어자에게도 이러한 증식 및 어장관리 비용을 부담케하는 것이다.

#### 4. 일본 지역어업협동조합의 내수면 유어규칙(사례 2)

(우쿠타마어업협동조합·영천(히카와)어업협동조합, 내공 제1호 제5종 공동어업권))

평성 15년 9월 1일에 어업권 갱신에 수반해서 동경도지사가 인가한 내공 제1호 제5종 공동어업권(우쿠타마호수하류) 유어규칙은 아래와 같다.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우쿠타마어업협동조합과 히카와어업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고 한다.)이 면허를 받은 내공 제1호 제5종 공동어업권(이하 「어업권」 이라고 한다.)의 어장 구역내에 있는 조합원이외의 사람(이하 「유어자」 라고 한다.)이 행하는 어업권 대상 어종의 채포(採捕)(이하 「유어」 )라고 한다.)에 관계된, 어업권 관리와 자원의 보호를 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유어료 납부의무)

어업권 어장내에서 유어를 행하는 유어자는, 사전에 제8조에서 규정한 유어료를 조합에 납부해야한다.

##### 제3조 (어구, 어법의 제한)

어업권어장에서 유어를 행하는 경우는, 손낚시, 대낚시(낚시대로 하는 낚시)이외의 어구, 어법에 따른 유어를 해서는 안된다.

2. 대낚시로 유어를 행하는 경우는 사용하는 낚시대의 수는 1인당 2개 이내 이어야 한다.

3. 은어의 도랑낚시에 대해서는 해금일부터 1개월간은 타마가와다리 하류단으로부터 하류의 하무라제방, 상류단으로부터 상류 100m까지의 사이이다.

4. 은어의 걸개낚시에 대해서는 유어기간을 9월 15일 이후이고, 군전 오오하시 하류 단부터 하류의 하무라 제방 상류단까지이다.

제4조 (유어시간)

어업권어장내에 있어서는 위험방지 또는 어장 단속상 일몰부터 일출까지의 밤에는 유어를 해서는 안된다.

제5조 (유어기간)

제5조 어업권 어장내에서 유어를 하는 유어자는 아래 표의 어종별 어법별의 유어기간이외는 유어를 해서는 안된다.

수 산 동 물	유 어 기 간
은 어	해금일부터 10월 31일까지
무지개 송어	해금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천어·곤들매기	해금일부터 9월 30일까지
잉어·붕어·황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조합이 해금일을 공시하는 경우는 조합 공시판 또는 요미우리신문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금지구역)

다음에 제시하는 구역에 있어서는 유어자는 유어를 해서는 안된다.

제7조 (크기의 제한)

어업권 대상어종 가운데, 아래표 좌측란의 어류는 각각 우측란에 제시된 것보다 큰 것을 채포해서는 안된다.

어 종	크기
은어·붕어	전체길이 10cm이하
무지개 송어·산천어	전체길이 12cm이하
곤들매기	전체길이 15cm이하
잉어	전체길이 18cm이하

제8조 (유어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제2조에 규정한 것을 납부해야하는 대상어종·어구어법·기간 및 납부장소별의 유어료는 아래표와 같다. 단 3에 기재한 특정 어장에서의 유어료는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대상어종	어구·어법	기간	기간 유어료 (조합사무소 또는 지정점 납부) (소비세포함)	현장에서 감시원에게 납부하는 경우의 유어료 (소비세포함)
은어	대낚시	1년	8,000엔	8,000엔
		1일	2,000엔	3,000엔
산천어 무지개 송어 곤들매기	대낚시	1년	6,000엔	6,000엔
		1일	2,000엔 5월 1일 이후 1,500엔	2,500엔 5월 1일 이후 2,000엔
잉어 붕어 황어	대낚시	1년	2,500엔	2,500엔
		1일	500엔	600엔

주) 조합사무소의 소제지는 다음과 같다.

2. 전항의 규정에 관련이 없고 아래 표에 기재된 자의 유어료는 각각 우측란의 것과 같다.

도시내의 거주로 만 77세 이상의 자 및 신체장애자	반 액
초등학생 이하	무 료

3. 제1항 단서로 기재된 특정 어장은 다음처럼 입어료는 각 어장마다 정하고 각 낚시장소 사무소에 공시해 놓은 금액이다.

제9조 (유어승인증의 교부)

조합은 제2조의 유어료 납부를 받았을 때는 별기 제1호 양식부터 제6호 양식에 의한 유어승인증(이하 「유어증」이라고 한다)을 유어자에게 교부하는 것도 있다.

제10조 (유어에 할 때 지켜야할 사항)

유어자는 유어를 할 때 유어증을 어장감시원이 보기 쉬운 곳에 착용해야 한다.

2. 유어자는 유어를 할 때는 상호 적당한 거리를 두고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 유어자는 유어를 할 때 어장감시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4. 유어자는 조합으로부터 교부받는 유어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를 해서는 안된다.

#### 제11조 (어장감시원에 관한 사항)

조합은 어장관리 및 유어자의 안전이나 트러블을 방지를 위해 어장감시원을 임명하고 그 임무를 맡긴다.

2. 어장감시원은 별기 제7호 양식에 의한 어장감시원증을 휴대하고 동시에 별기 제9호 양식에 의한 완장을 착용해야한다.
3. 어장감시원은 어장관리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어장에 대해 필요한 지시를 행할 수 있다.

#### 제12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조합은 유어자가 이 규칙에 위반을 했을 때 바로 그 사람에게 유어의 중지를 명하고, 또는 이후의 그 사람의 유어를 거절하는 일이 있다. 이 경우 유어자가 이미 납부한 유어료의 환불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제13조 부칙

1. 이 규칙은, 평성 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을 시행하기 전에 교부한 유어증은 그 기간중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 부록 3. 호주의 유어낚시 규정(퀸즐랜드 지역)

#### 1. 일반적인 유어낚시규정

##### 가. 불법낚시직통전화(hot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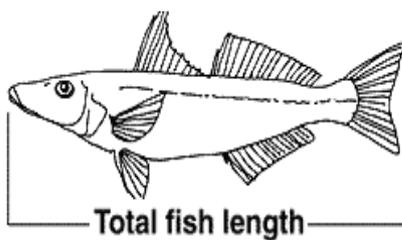
불법낚시를 24시간 감시함으로써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있으며 불법낚시 신고(무료)는 어류감시전화(FISHWATCH HOTLINE) 1800 017 116이다. 퀸즐랜드 어선·어류정찰대(QBFP, Queensland Boating and Fisheries Patrol)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번호는 일반 문의사항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 나. 고기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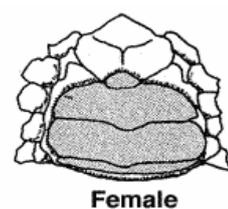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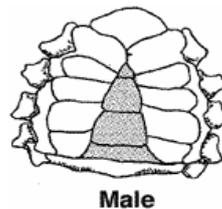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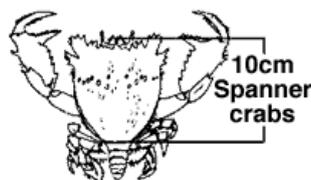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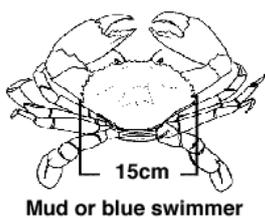
고기판매는 금지되어있다. 면허를 받은 어업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퀸즐랜드에서 판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다. 고기, 게, 가재 크기 측정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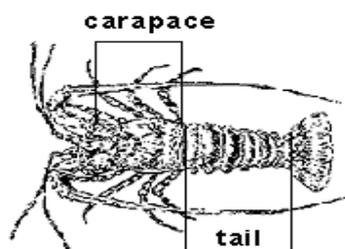
(1) 고기측정법 - 비의도적으로 규제고기(지느러미고기나 게 포함)나 원치 않은 고기(노랑가오리, 복어)는 가능한 초기에 상처 입히지 않고 잡은 즉시 방류해주어야 한다.



##### (2) 게 측정법



### (3) 가재측정법



#### 라. 유해종(Noxious Fish)

유해종을 소유, 양육, 판매해서는 안되며, 블루길, 배스, 틸라피아(Tilapia), 잉어, 톱미노 등이 유해종에 해당된다. 유해외래종은 퀸즐랜드수역으로 방류해서도 안되고, 미끼로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유해종은 고유종의 수를 감소시키고 물고기들의 서식처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잡았을 경우에는 모두 죽여야한다.

#### 마. 태그고기(Tagged fish)

과학자들은 고기의 이동, 성장, 생존율을 조사하기 위해서 연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태그고기는 잡아서는 안 되며 만약 잡게되면 1800-077-001로 전화를 하거나, 태그조정관(Bill Sawynok)에게 태그를 보내 주어야한다(주소:PO Box 9793, Frenchville, Qld 4701).

- 태그번호,
- 잡은 날짜와 장소; 총길이
- 고기를 소유하거나 방류

만약 태그에 "Keep Frame"라고 적혀있으면, 어류관리자가 고기를 측정해야하기 때문에 고기를 냉동시켜서 1800-077-001로 조정관에게 연락을 하거나 QBFP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어야한다.

#### 바. 산미끼 사용

갑각류나 살아있는 고기를 이들의 자연환경범위 밖에서 미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다. 이것은 수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예외적으로 세가지 생물은 사용이 가능하다.

- 빨간 집게가재(redclaw crayfish)
- 새우(shrimp)
- 가재(yabby)

#### 사. 토막낸 고기(filleting fish)

어선에서 낚시를 하는 자는 해안으로 고기를 가져올 때까지 고기의 살갓을 벗기거나 토막을 내서는 안된다. 감시자가 소유한 고기를 쉽게 헤아릴 수 있도록 자신의 몫을 나누어야한다.

#### 아. 고기크기, 소유제한량, 금어기 그리고 금지 구역

##### (1) 고기크기를 정하는 이유

퀸즐랜드에서는 많은 어종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고기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다(최소크기와 최대크기). 고기크기는 일반적으로 각 고기가 개체군에 기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몇몇 어종에 대해서는 최대크기제한을 적용한다. 예로, 대부분의 바라문디(barramundi)는 처음에는 수컷으로 자라다가 나중에 암컷이 된다. 최대크기제한은 암컷을 보호해서 산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2) 조획량제한을 정하는 이유

조획량제한은 법적으로 개인이 잡거나 소유할 수 있는 고기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어조획량제한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 심하게 어획되는 어종 보호
- 포획되기 쉬운 어종 보호
- 낚시인들이 같은 어획량 할당
- 고기의 불법판매행위 감소
- 도덕적이고 책임있는 행동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하는 것이다.

##### (3) 금어기를 정하는 이유

금어기를 정한 이유는 1년의 일정시기에 낚시를 금지시킴으로서 산란기처럼 어종의 수명주기가 취약한 시기에 어종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 (4) 금지수역을 정하는 이유

금지수역은 어떤 지역에서 낚시가 금지되는 지역이다.

- 산란기동안이나 산란하기 전에 고기가 모여있는 곳
- 멸종될 위기에 있는 어종이 살고있는 지역
- 고기가 남획되기 쉬운 지역에 있는 경우, 좌초되기 쉬운 인공장벽에 있는 지역

#### (5) 낚시장비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이유

낚시어구에 대한 제한은 남획으로부터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 2. 민물낚시의 관리규정

### 가. 체장과 소유량 제한

[표 1] 호주 퀸즐랜드 민물낚시의 체장제한과 소유량 제한

어종	체장제한	소유제한량
아치피시	-	20
호주배스	30 min.	2
바라문디(barramundi)	58 min, 120 max.	5
	60 min., 120 max.	5
블루 아이	-	20
도미(bream)	-	20
메기	35 min.	5
케라빈(Cherabins)	-	10
대구	50 min.	1
가재	n/a	100
뱀장어	30 min.	10
망둥이(Goby)	-	20
그룬터(Grunter)	-	20
모샘치(Gudgeon)	-	20
하디헤드(Hardyhead)	-	20
맹그로브 썸	35 min.	5
롱톰(Long tom)	-	20
페니 피시(Penny fish)	-	20
농어(Perch)	30 min.	10
구피(Rainbow fish)	-	50
검은 물고기(River blackfish)	-	1
빙어(Smelt)	-	방류
사라토가	50 min.	1
스트로맨	-	20

### 나. 보호어종

페어, 가시가재, 블럼필드강 대구(Bloomfield River cod)

### 다. 금어기

호주배스, 바라문디, 머레이(Murray) 대구

어 종	금어기
호주배스	6/1 - 8/31
바라문디(Barramundi)	11/1 정오 - 2/1 정오
대 구	9/1 - 11/30

(1) 바라문디 금어기 예외규정

금어기 예외지역은 이 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18개 댐이다. 퀸즐랜드 동부해안과 칼펜테리아만의 18개 댐은 최대크기제한인 120cm보다 큰 것도 어획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1년 내내 120cm이상의 고기를 1마리만 어획할 수 있다. 레저 낚시인은 18개 댐에서 항상 낚시가 가능하지만(소유량 1마리), 다른 지역에서는 이 어종에 대해서는 낚시를 해서는 안된다. 태그없는 고기만 낚시가 가능하다.

라. 금지수역(Closed waters)

금지수역에서 민물고기를 낚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아래 지역이 금지수역이다.

대구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바론강(Barwon River), 메킨트리강(Macintyre River), 두마레스크강(Dumaresq River)에서 낚시가 금지된다.

알베르트강, 베인강(Brisbane River) 버르데킨강(Burdekin River), 버네트하구(Burnett Creek), 버네트강(Burnett River), 콘다민강(Condmine River), 도슨 강(Dawson River), 도우드하구(Dogwood Creek), 두마레스크강(Dumaresq River), 피츠로이 강(Fitzrot River), 콜란강(Kolan River) 등 각각 금어기를 정해 놓고 있다.

마. 낚시어구 규제사항

(1) 낚시줄

내수면에서는 다음의 낚시줄만 사용이 가능하다.

- 낚시대의 유무에 상관없이 손으로 만든 줄로 구성된 장비
- 깡통트랩, 조립식트랩, 폴로 짠 트랩(dilly trap), 깔때기트랩, 원형트랩
- 채그물
- 고정낚시줄(set lines)

낚시인은 혼자 6개 이상의 낚시줄이나 고정낚시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고정낚시줄의 길이는 200m보다 길어서는 안된다.

(2) 뜰채

그물입구 크기가 1m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물코는 25mm 보다 작아야한다. 손잡이는 2.5m보다 길면 안된다.

(3) Canister Trap

너비와 높이는 60cm, 원둘레는 50cm보다 커서는 안된다. 만약 트랩이 단단한 물질로 만들어진 그물이 아니면 그물코는 25mm보다 커서는 안 된다.

(4) Callapsible trap

한 면 또는 이상의 면은 단단한 물질로 만들어야 한다

(5) Dilly net

원둘레가 125cm보다 커서는 안되며, 그물코크기는 25mm보다 커서 도 안된다.

(6) Funnel trap

너비는 70cm, 높이는 50cm보다 커서는 안된다. 입구크기는 10cm이상이어서는 안 되고 입구개수는 4개보다 많아서는 안된다. 트랩 입구는 단단한 물질로 만들고, 그물코크기는 25cm 보다 커서는 안된다.

(7) 원형트랩

원둘레가 70cm이상, 높이가 50cm 보다 커서는 안된다. 입구는 10cm보다 커서는 안되고 개수는 4개보다 많아서는 안된다. 만약 그물이 단단한 물질로 만든것이면 그물크기는 25mm보다 커서는 안된다.

### (8) Making traps, nets and set lines

민물낚시에서 트랩이나 고정낚시줄(set line)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트랩이나 고정 낚시줄에 소유주의 이름, 주소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만약 트랩이 수면위에 고정 되어있지 않으면, 밝은 색깔의 찌를 사용해야한다. 찌에는 소유주의 이름을 반드시 기입하고, 그것의 두께는 적어도 15cm는 되어야 하며 2리터 또는 3리터 우유용기를 사용해도 된다.

### (9)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

낚시를 하는 동안 낚시인은 깡통트랩, 조립식트랩, 폴로 짚 트랩(dilly trap), 깔때기트랩, 원형트랩 각각 4개 이상 사용하지 못하며, 각 트랩을 합쳐서 4개 이상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바. 고기의 저장(Fish stocking)

일부 어종에 대해서는 인공적으로 만든 개인 사유지에 저장할 수 있다.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고기는 저장이 가능하지만 그 지역에서 서식하지 않는 고기를 그곳에 저장하는 것은 위법이다.

### 3.. 바다낚시의 관리규정

#### 가. 체장과 소유량제한

퀸즐랜드에서 바다낚시를 하는 경우에 면허증이 필요하지 않다. 다음 <표 >는 퀸즐랜드 바다낚시에 적용되는 것이다. 소유제한량은 한번 낚시할 때 소유할 수 있는 어종의 총 마리수이다. 하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표 2] 호주 퀸즐랜드 바다낚시의 체장제한과 소유량 제한

어종	크기제한	소유량
호주배스	30 min.	2
바라문디(Barramundi)	58 min., 120 max	5
	60 min., 120 max.	5
해삼(Beche-de-mer)	n/a	5
도미	23 min.	n/a
대구	40 min.	n/a
게	15 min.	n/a
가재	115mm tail 90mm	3
송어	38 min.	10
돌고래	45 min.	n/a
뱀장어	30 min.	3
임페럴(Emperor)	45 min.	10
양태(Flathead)	30 min.	n/a
킹피시(Kingfish)	75 min.	10
고등어(Mackerel)	50 min.	10
망그로브 잭(Mangrove jack)	35 min.	n/a
양놀래기(Maori wrasse)*	75 min.	1
참조개(Oyster)	9 min.	n/a
농어(Perch)	25 min.	n/a
여왕고기(Queenfish)	45 min.	n/a
참바리(Queensland Groper)*	35 min., 120 max.	1
로지 잡 피시(Rosy job fish)*	30 min.	10
연어	40 min.	n/a
송어(Sea mullet)	30 min.	n/a
물통돔(Snapper)*	35 min.	5
Painted crayfish(가재)	115mm tail min.: 90mm 갑각	3
투스크피시(Tusk fish)	30 min.	10
와후(Wahoo)*	75 min.	10
대구(Whiting)	23 min.	n/a
웜(Worms)	-	30

나. 모래톱고기(Reef fish)

모래톱고기 종류를 합해서 총 30마리 또는 60피레트(fillets)를 초과하지 못한다. 온마리(whole fish)와 피레트는 합해서 같은량 30개의 온마리고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개의 피레트는 1개의 온마리와 같다.

다. 토레스해협(Torres Strait)

바위서식바닷가재	1인당 소유제한량	3 max
	어선당 소유제한량	6 max

라. 보호어종

아래의 어종들은 퀸즐랜드 전역에 걸쳐 보호되고 결과적으로 허가없이 어느 누구도 어획이 불허된다.

게	<i>Mud</i> (암컷) <i>Blue swimmer</i> (암컷) <i>Spanner</i> (산란중인 암컷)
새우	<i>Slipper</i> (산란중인 암컷) 열대성 가시 <i>rock Panulirus spp</i> (산란중인 암컷). 색깔있는 갑각류를 포함한다.
버그스(bugs)	<i>Moreton Bay</i> (산란중인 암컷) 다른 바다 버그스(bugs)
상어	<i>Great white</i> <i>Grey nurse</i>
돌고래	이러한 포유동물들은 자연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
듀공(Dugongs)	
참돌고래(porpoises)	
거북	
고래	

마. 금어기

어종	지역	금어기간
호주 배스	간만의 차가 있는 지역	6월1일 자정-8월31일 자정
Barramundi	Carpentaria 灣과 인접하고 동쪽과 서쪽으로 교차하는 경도 142 09'의 높은 수위의 해안	산란시기와 관련하여 연중 변동적이고 조수의 시기와 연관된다. 금어기는 다음과 같다. 2002년 10월 14일에서 2003년 1월 25일, 2003년 10월 3일에서 2004년 1월 28일까지 이 기간외의 세부사항은 QBFP에 있음
	동쪽 해안	11월1일 정오-2월 1일 정오
크랩, 스페너	주(州)전체	11월20일 자정-12월20일 자정
열대 새우/ 갑각류(모든 어종)	주(州)전체	10월1일 자정-1월31일 자정

바. 금어 구역

북쪽류나 쌍각류의 연체동물의 경우(예로, pips와 cockles)

- Deception 灣(Bay)
- Nudgee 해안
- Wynnum

사. 모든 종류의 어업에 대해 금지되는 구역

아래의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어업이 금지된다.

- 해양공원내 일정한 지역
- Coombabah 호수와 호수로부터 상류쪽의 강어귀의 감소하천
- Swan 만과 만의 북쪽 끝에서 합류하는 무명의 강어귀
- Mary 강 댐의 상류로 400m에서 하류 400m 까지
- Tiana 강 댐의 상류로 400m에서 하류 400m 까지
- Fraser 섬의 동쪽 해안과 간조때 동쪽 해안으로부터 400m 내외의 수면,

Waddy Point의

- 북쪽 400m와 Indian Head의 남쪽 400m 사이. 매년 8월 1일 정오부터 9월 30일 정오까지 금지된다.

- Burnett 강 댐의 상류 400m에서 하류 400m 까지
- Kolan 강 댐의 상류 400m에서 하류 400m 까지
- Fitzroy 강 댐의 상류 400m에서 하류 400m 까지
- Middle 섬의 150m 반경의 수중관측 안의 Keppel 만
- Hook 섬 관측의 100m 반경내의 구역
- Orpheus 섬의 Yanks Jetty의 100m 내외나 이하의 구역
- 바닷물이 유입되는 강과 호수인 Lily로 Carirns 에 있는 Greenslopes 거리와

Collins 街 사이.

-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Barron구역의 Barron 강으로 강 건너편에 Stony Creek과의 합류 FEB 간판이 있는데 곳과 Camp Oven Creek사이.

- Cape Grafton 과 False Cape 선을 따라 남쪽의 Misson Bay 으로 유입되는 구역

남쪽 Mitchell 강과 합류하는 곳, 강의 반대쪽 편의 재방 근처의 FEB signs과 Surprise Creek과 합류하는 FEB signs

- 일반적으로 German Bar 하류 2km를 가로지르는 길로부터 Bizant 강의 German Bar Lagoon

사. 금어기

아. 어구규정

(1) 낚시줄

1개의 낚시줄에 갈고리는 6개로 제한하고 있다. 배에서 낚시를 할 경우 한 사람당 3개 이상은 안된다. 인공미끼는 한 개의 갈고리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2) 게잡이 바구니 또는 플로 째 트랩

한 사람당 4개의 바구니가 가능하다. 게잡이 바구니에는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가 있어야한다. 진흙가재와 파란 잠수가재를 낚시할 경우 장치의 소유주는 적어도 15년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장치가 고정되어있지 않을 경우 밝은 색의 띠를 사용하고 넓이는 적어도 15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투망

투망의 'length'가 3.7m보다 커서는 안되며, 그물코크기는 28mm보다 커서는 안된다.

(4) 예인망(seine net)

그물길이 16m, 그물코크기는 28mm 보다 커서는 안된다.

(5) Scoop or dip nets

너비는 2m, 손잡이 길이는 2.5m, 그물코크기는 25mm보다 커서는 안된다.

차. 작살낚시지역

카. 미끼

로타크리크(Lota Creek)와 Wynnum North Esplanade의 북부 근처 방사제사이의 물가에서 지렁이 채굴은 금지되어 있다.

타. 여타 금지조항

다음 표는 퀸즐랜드에서 불법행위이다.

어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이나 전기장치사용금지. 단 다이버들이 상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살총사용가능</li> <li>· 금지수역에서 금지된 장치 소유. 단 장비가 보호용이면 제외</li> </ul>
조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개양식장에서 조개를 가져오는 것. 단 비면허양식장이나 공공 조개구역에서 조개소비하는 것은 제외</li> </ul>
산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없이 산호 채취</li> </ul>
바다동물과 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ish Habitat Area에서 해양생물을 방해하는 행위. 단 낚시어업은 해양공원의 일부 구역에서는 허용되고 Fish Habitat Area에서 낚시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금지사항은 없다.</li> </ul>
상업적 어업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받은 수중활동을 방해하는 행위</li> <li>· 낚시장비에 피해(손상)를 주는 행위, 당국의 허가없이 어구에서 고기를 옮기는 것</li> </ul>

## 부록 4. 국내·외 납 관련 환경기준

[표 1] 국내·외 납 관련 환경기준

국 명	환경기준(mg/L)	
	하천	해수
한 국	0.1	0.1
일 본	0.01	0.01
중 국	0.01~0.1	0.1
미국 워싱턴주	0.0025	0.0081

[표 2] 하천 및 해수

국 명	허용기준(mg/kg.wet)	
	어류	패류, 연체류
호 주	1.5~2.0	2.5~5.5
뉴질랜드	2.0	
영 국	2.0	10.0
네덜란드	0.5	2.0
이 태 리		2.0
미 국		2.0
한 국	2.0	

□ 해산 어패류의 납 허용기준

[표 3] 해양생태계내 납농도 분포

지 역	해 수 $\mu\text{g/L}$	퇴적물 $\mu\text{g/g.dry}$	생 물 $\mu\text{g/g.dry}$	비 고
전국연안	0.30~11.90	ND~140.32		국립수산진흥원 ('85, '98)
남해안			1.95~3.75(진주담치) 1.85~4.05(굴)	국립수산진흥원 ('85)
진해만			1.45~2.70(진주담치)	최 등('92)
전국연안		21~49	0.20~1.39(진주담치)	해양연구소('88)
이스라엘 지중해		3.2~48.3		
스페인 Bidasoa Estuary		70~298	18~70(대합조개)	
홍콩 빅토리항			6.0~40.3(어류)	
쿠웨이트 연안			45.37±19.53(굴)	

## 부록 5. 유어낙시 종합적 발전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낙시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종합적인 낙시 발전 방안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낙시 발전 방안을 강구함에 앞서, 낙시관련 분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이 우리나라 낙시관리제도 운영방안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 9월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

1. 정부가 단기 대책으로 추진할 사항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단기 대책이란 지금 당장 서둘러 추진해야할 사항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① 유어핸드북(교육 및 홍보 및 조획 대상 어종, 지역별 정보 등을 포함)의 발간
- ② 정부차원의 낙시관련 사이트 운영
- ③ 낙시단체의 단일화 및 역할분담을 위한 낙시단체의 육성
- ④ 전국 낙시대회 등의 정부차원 후원 및 지원
- ⑤ 낙시터의 개발 및 환경조성
- ⑥ 낙시관련 통계자료 수집체계의 개발
- ⑦ 환경친화적 낙시용구 기준 작성 및 제시

2. 정부가 중기 대책으로 취해야 할 아래 사항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중기대책이란 향후 2, 3년 안에 완성해야할 사항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① 낙시인을 위한 유어규칙의 제정
- ② 낙시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 ③ 유어장 지정운영의 확대

- ④ 낚시전용 종량제 봉투 실시
- ⑤ 낚시관련 통계자료 체계 구축 및 실시
- ⑥ 낚시터 안전보장 시스템의 개발 및 확보
- ⑦ 주요 낚시어종별 생태환경 및 지속적인 자원조성
- ⑧ 낚시관련단체와 지자체 등과의 협조를 위한 낚시업무 전담과 개설

3. 정부가 장기 대책으로 취해야 할 아래 사항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장기 대책이란 향후 4, 5년 안에 완성해야할 사항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① 신뢰성 높은 통계자료구축을 통한 낚시인/낚시산업 지원방안 검토
- ② 낚시티켓제, 전용종량제 봉투, 수익금 기금화 방안 등의 낚시관리제도 도입
- ③ 올바른 낚시 문화 홍보 및 지도를 위한 선도그룹 결성 및 지원 방안 검토
- ④ 낚시관련업무 관련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
- ⑤ 낚시인을 위한 낚시관련 현행 법령의 통합/제반제도 정비 방안 검토
- ⑥ 낚시관련 종합 웹 사이트를 구축하여 낚시인들의 통합된 의견 수렴

4. 유어낚시 발전방안에서 유어핸드북에 포함될 아래 내용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낚시유형별 어구, 어법의 소개
- ② 조획대상 어종 및 지역별 정보 소개
- ③ 낚시규제사항 및 가능수역소개
- ④ 낚시환경 및 자원보호를 위한 홍보
- ⑤ 유어규칙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 ⑥ 각 지역별 낚시 단체 및 관련site 연락처

5. 낚시관련 통합 웹 사이트의 운영에 있어 컨텐츠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낚시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게시판 운영
- ② 낚시관련 정부정책자료 및 관련제도의 수시 업데이트
- ③ 환경조성과 자원관리를 위한 홍보 및 계몽
- ④ 친환경조구업체리스트 등록 및 홍보
- ⑤ 낚시 대회 등 낚시 단체 행사 홍보
- ⑥ 바다 낚시터 및 내수면 낚시터 정보 제공

6. 낚시관련활동의 홍보 및 계몽 활동방안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전국적인 낚시대회 개최
- ② 정기적인 국제교류낚시대회 개최
- ③ 정기적인 낚시 교실 운영
- ④ 가족단위의 낚시캠프 운영
- ⑤ 낚시를 통한 청소년 현장 체험 학습시설 구축
- ⑥ 낚시터와 생태공원을 결합한 레저시설 개발

7. 귀하께서는 낚시터의 개발 및 환경조성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바다 낚시터 및 내수면 낚시터는 각각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수면 - ① 갯바위 ② 무인도서 ③ 방파제 ④ 어촌계일대

내수면 - ⑤ 저수지 ⑥ 댐/호수 ⑦ 강/하천

8. 내수면 낚시터와 해수면 낚시터에 관리제도가 도입될 때, 불법낚시의 감시 또는 지도는 어떠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낚시인 자율에 맡김
- ② 일정한 교육 후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또는 공익요원 배치
- ③ 일정한 교육 후 낚시단체 소속의 감시인 배치
- ④ 일정한 교육 후 해당 지역소속의 주민(청년회 또는 어촌계) 배치
- ⑤ 일정한 교육 후 낚시업자(내수면관리자 또는 낚시어선업자)에게 위임

9. 귀하께서는 낚시 관련 정부 부처에 낚시업무를 전담하는 주무부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주무부서를 설치해야함
- ② 주무부서 설치의 필요성을 못 느낌

10. 낚시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주무 부서를 설치하게 된다면 그 운영은 어떠한 부처에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해양수산부
- ② 환경부
- ③ 문화관광부
- ④ 농림부

11. 낚시 관련 주무부서의 역할 중 집중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낚시관련법/제도화를 통한 종합적인 지원체제 구축
- ② 낚시터 환경관리 및 어자원관리
- ③ 낚시단체 지원 및 홍보활동
- ④ 낚시산업육성방안
- ⑤ 낚시터 안전시설 구축 방안
- ⑥ 낚시인-어업인간 윈-윈(win-win)전략 구상

12. 친환경적인 낚시용구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떠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친환경 낚시 용구에 환경 마크를 부여
- ② 친환경 낚시 용구를 제작하는 조구업체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원
- ③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낚시인들에 대하여 낚시터 이용 할인 혜택을 제공

13. 낚시 관련 정책 및 제도의 홍보 및 계몽 활동방안으로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낚시 전담부서를 통한 낚시제도 홍보
- ② 낚시인 안전지식교육 및 홍보 활동 개최
- ③ 통합된 낚시단체 육성 지원
- ④ 정기적인 낚시 관련 통계자료 발간

14. 종합적인 낚시 발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 ①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함
- ②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 없음

15. 낚시 관련법/제도를 신설하게 된다면, 관련법안에 포함될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낚시관리제 도입 및 지원방안
- ② 낚시터 자원관리 방안
- ③ 낚시터 환경관리 방안
- ④ 낚시단체 지원 및 육성 방안

- ⑤ 낚시산업 지원 및 육성 방안
- ⑥ 낚시관련 통계체계 구축 방안

### Ⅲ. 응답자의 배경에 대한 질문

1. 귀하의 성별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2. 혼인여부

- ① 미혼 ② 기혼

3. 귀하의 연고지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서울 ② 경기 ③ 대전 ④ 대구 ⑤ 울산 ⑥ 부산 ⑦ 경상 ⑧ 기타

4. 귀하의 연령대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20대 이하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5. 귀하의 직업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 ① 전문직종 ② 공무원 ③ 사업 및 자영업 ④ 회사원 ⑤ 기타 ( )

6. 귀하의 연간소득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연 1,000만원이하 ② 연 1,500만원 ③ 연 2,000만원 ④ 연 2,500만원
- ⑤ 연 3,000만원 ⑥ 연 3,500만원 ⑦ 연 4,000만원 ⑧ 연 5,000만원
- ⑨ 연 5,000만원이상

7.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학 ⑥ 대학교 ⑦ 대학원이상

8. 귀하는 다음 범주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일반낚시인 ② 조구관련 도·소매 및 판매업 ③ 유료낚시업 종사
- ④ 낚시어선업 종사 ⑤ 낚시관련협회나 기관에 소속

9. 귀하는 주로 바다낚시와 민물낚시를 어떻게 배분하여 즐기십니까?

- ① 거의 전적으로 바다낚시만 ② 바다낚시를 주로 ③ 바다와 민물을 거의 절반씩

④ 민물낚시를 주로 ⑤ 거의 전적으로 민물낚시만

응답자의 성함\_\_\_\_\_

응답자의 이-메일 주소:\_\_\_\_\_

응답자의 현주소\_\_\_\_\_

상기의 이-메일 주소와 현 주소는 경품에 당첨하신 분에게 경품을 우송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